

최종보고서 16-04-01

# FTA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체결상대국 원산지 동향 분석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2016. 6.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 제 출 문

관세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사업』에  
관한 용역 중 「FTA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체결상대국 원산지 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용역 1  
차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 6.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 김 기 영



# 연 구 진

〈연구 주관〉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책임자〉

진 병 진 (책임연구원)

〈연 구 진〉

임 병 호 (연 구 원)

김 세 라 (연 구 원)

황 정 애 (연 구 원)

황 정 훈 (연구보조원)



## 목 차

### 제1장 보고서의 목적과 범위 ..... 1

1. 보고서의 배경 .....	1
2. 보고서의 목적 .....	2
3. 보고서의 성격 .....	3
4. 보고서의 범위 .....	4
5. 보고서의 구성 .....	7

### 제2장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사례분석 ..... 8

I. 미국 사전심사 개요 .....	9
1. 개요 .....	9
2. 사전심사 동향 .....	12
3. 조사대상물품의 선정 .....	17
II. 화학산업 .....	18
1. 산업동향 .....	18
2. 주요 통관규제 .....	23
3. 품목분류사례 .....	28
4. 소결 .....	58

III. 섬유산업 .....	59
1. 산업동향 .....	59
2. 주요 통관규제 .....	66
3. 품목분류사례 .....	69
4. 원산지 결정사례 .....	94
5. 소결 .....	105
IV. 금속산업 .....	106
1. 산업동향 .....	106
2. 주요 통관규제 .....	111
3. 품목분류사례 .....	113
4. 원산지 결정사례 .....	140
5. 소결 .....	143
V. 기계산업 .....	145
1. 산업동향 .....	145
2. 주요 통관규제 .....	150
3. 품목분류사례 .....	152
4. 소결 .....	200

VI. 전기기기산업	201
1. 산업동향	201
2. 주요 통관규제	207
3. 품목분류사례	213
4. 소결	246
VII. 자동차 부품	247
1. 산업동향	247
2. 주요 통관규제	252
3. 품목분류사례	256
4. 재수입 감면사례	296
5. 소결	301
VIII. 정밀기기산업	302
1. 산업동향	302
2. 주요 통관규제	307
3. 품목분류사례	310
4. 원산지 결정사례	334
5. 소결	341
제3장 시사점	342

## 표 목차

< 무역장벽의 분류 > .....	5
< 표 1-1 > 연도별 사전심사 총 건수 .....	12
< 표 1-2 > 카테고리별 사전심사 비중(신청 건수 기준) .....	12
< 표 1-3 > 제8708호 한-미 FTA 우리나라 수출 및 미국 수입금액 비교 .....	13
< 표 1-4 > 품목별 사전심사 건수 .....	14
< 표 1-5 > 산업별 사전심사 건수 .....	15
< 표 1-6 > 산업별 연도별 구분(품목수 기준) .....	16
< 표 1-7 > 조사대상물품 50건 .....	17
< 표 2-1 > 우리나라의 對미국 화학제품 일반수출 상위 20대 품목 .....	22
< 표 2-2 > TSCA 승인 및 적용의 구분 .....	24
< 표 2-3 > 오존파괴물질 수입허가요건 .....	27
< 표 2-4 > 관세율표 제39류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 결합물품 분류기준 .....	43
< 표 2-5 > 관세율표 제11부 주7(제품으로 된 것의 정의) .....	47
< 표 2-6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차량용 부분품 분류기준 .....	52
< 표 2-7 >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 .....	53
< 표 3-1 > 우리나라의 對미국 섬유제품 일반수출 상위 20대 품목 .....	65
< 표 3-2 > 관세율표 제60류 주4 .....	92
< 표 3-3 > 관세율표 제59류 주2 .....	95
< 표 3-4 > 제6004.10호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	96

< 표 3-5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원산지 표시기준	97
< 표 3-6 > 19 USC 1202 일반주해 33(b)	101
< 표 3-7 > 19 USC 1202 일반주해 33(o)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102
< 표 3-8 > 제6307.10호의 원산지 표시기준	103
< 표 4-1 > 우리나라의 對미국 금속제품 일반수출 상위 20대 품목	110
< 표 4-2 > 제81류 미국 추가 주 2	141
< 표 4-3 > 제15부 미국 국내 주	143
< 표 5-1 > 우리나라의 對미국 기계류 일반수출 상위 20대 품목	149
< 표 5-2 > 관세율표 제90류 주7	186
< 표 6-1 > 2016년 1분기 업체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03
< 표 6-2 > 우리나라의 對미국 전기제품 일반수출 상위 20대 품목	206
< 표 6-3 > FCC 인증 라벨링 요건	209
< 표 6-4 > 제품 종류별 FCC 인증 방식	210
< 표 6-5 > 관세율표 제8479호 및 제8453호 고유의 기능 정의	227
< 표 6-6 > 제8518호 가청주파증폭기 정의	228
< 표 6-7 > 제85류 미국 추가 주 11	239
< 표 7-1 > 우리나라의 對미국 자동차 부품 일반수출 상위 20대 품목	251
< 표 7-2 > 미국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	252
< 표 7-3 > 2017년 - 2022년 평균 목표 연비	255
< 표 7-4 > HTSUS 제9801.00.20호의 용어	297
< 표 7-5 > 미국 제98류 및 제99류의 표제	298
< 표 7-6 > 미국 제99조 재수입 면세 조항	299
< 표 8-1 > 국내 센서산업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302

< 표 8-2 > 의료기기 유형군별 생산액 현황 .....	303
< 표 8-3 > 미국 의료기기 제품군별 시장규모 .....	304
< 표 8-4 > 우리나라의 對미국 정밀기기 일반수출 상위 20대 품목 .....	306
< 표 8-5 > 19 U.S.C 1304(i) (원산지표시수수료 관련조항) .....	336

## 그림 목차

< 그림 2-1 > 주요 기업별 에틸렌 설비능력 비교	18
< 그림 2-2 > 석유화학 및 수요산업의 생산계통도	20
< 그림 2-3 > 리신의 구조	37
< 그림 2-4 > 오링(Oring) 의 구조	55
< 그림 3-1 > 섬유산업의 생산계통도	60
< 그림 3-2 > 우리나라의 섬유류 수출입 추이	63
< 그림 3-3 > 자카드 직물	70
< 그림 3-4 > 푸르세트가 있는 장갑	85
< 그림 3-5 > 위편물의 구조	94
< 그림 4-1 > 우리나라 철강생산능력 및 수요 현황	107
< 그림 4-2 > 익스팬디드메탈	126
< 그림 5-1 > U.S Tier Schedule (Non-road)	151
< 그림 5-2 > Insert Water Jacket	156
< 그림 5-3 > 스프루·게이트·라이저의 위치	160
< 그림 5-4 > 솔레노이드 밸브의 원리	166
< 그림 5-5 > 스트레이너	172
< 그림 5-6 > 블루투스 키보드	181
< 그림 5-7 > ABS 시스템	186

< 그림 5-8 > 과급압력조절기의 구조	192
< 그림 6-1 > 국내 제조사 스마트폰 해외생산 비중	201
< 그림 6-2 > 에너지 가이드 라벨 예시	211
< 그림 6-3 > VESS시스템	218
< 그림 6-4 > AM/FM 안테나 증폭기	224
< 그림 6-5 > AM/FM 안테나 증폭기	226
< 그림 6-6 > 사각지대 감지기	229
< 그림 6-7 > 모션센서	233
< 그림 6-8 > 진공 인터럽터	237
< 그림 7-1 > 한국 자동차 산업 입지 현황	248
< 그림 7-2 > 에어스프링	262
< 그림 7-3 > 차량 번호판 마운트	267
< 그림 7-4 > 스템핑 개념	268
< 그림 7-5 > 차량 번호판용 브라켓	269
< 그림 7-6 > 변속기 케이블	272
< 그림 7-7 > 구동차축 및 비구동 차축	278
< 그림 7-8 > 차동장치의 원리	279
< 그림 7-9 > DIFFERENTIAL ASSY	280
< 그림 7-10 > CLUTCH PEDAL	284
< 그림 7-11 > 유니버설 조인트	286
< 그림 7-12 > 스티어링 칼럼	286
< 그림 7-13 > 동력전달장치	291
< 그림 8-1 > 배기가스 후처리장치(DPF)	315

< 그림 8-2 > Hose ASM-CHRG AIR OUT .....	318
< 그림 8-3 > 차량용 계기판 .....	320
< 그림 8-4 > <u>스트로보스코프</u> (strobo scope) .....	321
< 그림 8-5 > 노킹 센서 .....	324
< 그림 8-6 > AHL 시스템 .....	330
< 그림 8-7 > 미국 수입통관 프로세스 .....	338

# 제1장 보고서의 목적과 범위

## 1. 보고서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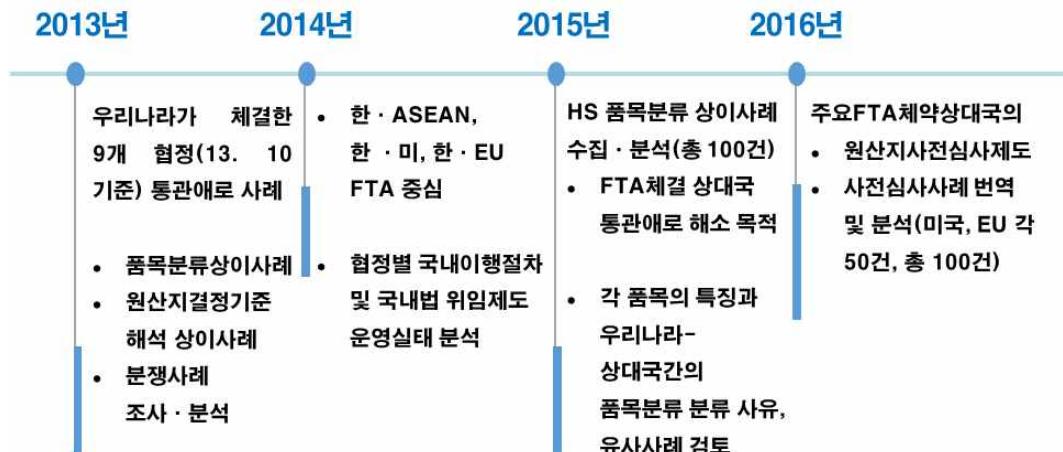
- WTO회원국들은 2001년부터 약 14년간 합의를 거쳐, 2014년 비로소 무역원활화 협정 최종합의문에 서명
  -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은 WTO협정문 부속서 1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다음에 위치하도록 추가
- ‘무역원활화’라는 단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임에도 불구하고 WTO 공식의제에 오른 것은 전 세계의 ‘보이지 않는 장벽’이 무역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 UNCTAD에 의하면 1932년 세계(단순)관세율이 59%였으나, 2001년 기준 선진국 산업별 수입가중 평균관세율은 3.1%, 개도국은 11.0%로 나타남
    - 또한 국제교역에 따르는 각종 거래비용의 규모는 국제교역 총 금액의 약 2~15%로 추정됨
  - 무역원활화협정 제3조(사전심사)에 따라 회원국들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전심사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sup>1)</sup>
  - 제3조 9항에서는 물품의 품목분류와 원산지와 관련한 사전심사를 도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함
  - 동 협정으로 인하여 FTA협정문에 사전심사 조항이 없었던 협정(한-EFTA, 한-아세안)에는 사전심사 조항을 신설하고 사전심사제도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대두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관세당국 및 수출입자는 WTO 무역원활화협정에서 규정한 사전심사제도의 활성화 및 이를 활용한 통관장벽의 제거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할 것임

---

1) 무역원활화협정 발효요건: WTO회원국의 2/3이상(108개국) 수락시 발효. 2016년 6월 24일 현재 총 84개국 수락

## 2. 보고서의 목적

- FTA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체결상대국 원산지 동향분석 보고서 (이하 통관애로분석 보고서)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해외수출시 발생하는 통관상의 문제점의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 이에 따라 통관애로분석 보고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작성되었으며, 2016년 현재 총 4번째 보고서로서 작성됨
  - 보고서는 FTA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통관사례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매년 분석의 범위 및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상이함이 존재



- 2013년 통관애로분석 보고서는 총 9개 FTA협정과 관련하여 수출자가 제시한 통관애로민원 현황을 품목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분석함
- 2014년에는 통관애로민원 현황분석을 지속하고, FTA체약상대국이 협정문상 국내법 위임사항을 자국내에서 적절히 이행하는지에 대한 운영실태를 분석함

- 2015년은 한-아세안 FTA의 주요 통관애로사항인 원산지증명서 서명·인장문제의 해결에 주목함.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상 서명을 아세안 당사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명·인장의 통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이와 동시에 품목분류 상이사례를 통관애로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이전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와 해외의 통관애로 상이사례 100건을 선정함

### 3. 보고서의 성격

- 2016년 통관애로분석 보고서는 현재까지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나, 보다 실무적인 활용도를 위하여 최근(2015년)의 사전심사 사례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음

1. 현재까지 통관애로분석보고서는 수출자가 직접 애로사항을 보고하거나 또는 실제 발생한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사후조치의 성격이 존재 2016 통관애로분석 보고서는 체약상대국 사전심사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관애로에 대한 예방적 성격을 가짐
2. 2016 통관애로보고서에는 사전심사사례 분석을 통하여 수출자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수출통관하고자 하는 수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범용적인 성격을 가짐  
이를 위해서 사례물품의 구체적인 설명과 사진 등을 첨부하여 통관할 물품이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3. 점차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비관세장벽을 고려하여, 조사대상국이 통관시 부과하는 각종 규제를 산업별로 구분, 정리하였음

## 4. 보고서의 범위

- 2016 통관애로분석 보고서는 FTA상대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조사·분석을 범위로 함
  - 그러나 비관세장벽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관계로, FTA와 관련성이 깊은 분야인 ‘사전심사’와 ‘통관규제’에 대한 조사·분석을 보고서의 범위로 한정
  - (사전심사)주로 미국과 EU의 사전심사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이를 근거로 사례요약, 주요쟁점, 동일·유사사례, 수출자 시사점을 제시함
    - 특히 FTA 원산지와 관련한 통관애로의 해결에 주목하여,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표시 문제와 관련한 사전심사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통관규제)사전심사 대상물품 산업관련 통관규제에 대한 조사
- 일반적으로 무역장벽(Trade Barrier)은 관세장벽(Tariff Barrier)과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으로 구분
  - 비관세장벽은 관세장벽 이외의 장벽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서 학자, 국가, 국제기구에 따라 비관세장벽의 정의와 범위는 다르게 정의
    - 가장 대표적인 분류방식 중 1970년에 발표된 블드윈의 분류방식은 12개 카테고리로 ‘지역적 영업관행’, ‘제한적인 이민정책’, ‘선별적 통화통제 및 환율 정책’ 등 국가 내부 정책이 다수 포함
    - UNCTAD는 비관세장벽을 7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수량, 금융, 가격통제조치가 가장 무역제한적이고 빈번하게 사용된다고 판단하여 이 3 가지를 핵심비관세장벽(core non-tariff barriers)으로 규정
    - GATT/WTO는 비관세장벽을 6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분류체계는 특정 장벽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가를 판단하는 분쟁해결의 관점에서 사용
    - 미국은 매년 발간하는 NTE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에서 총 10개의 카테고리로 무역장벽을 분류함

### < 무역장벽의 분류 >

구 분	볼드원	UNCTAD	WTO(GATT)	주요국		
				미국	EU	일본
세금차별	선별적 간접세		수입에 관한 특정제한	수입정책	관세 이외 세금	
수입허가		자동허가조치			수입감시	
수량규제	쿼터, 국영무역정책	수량통제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량규제	수량규제
통관절차	무역제약적 통관절차				등록, 서류, 통관절차	
무역 구제법	반덤핑 규제		세관 및 행정상의 수입절차			반덤핑 등 무역구제법
가격통제		가격통제정책			최소수입가	
독점행위		독점적 조치	독점방지관행	국영무역기업 수입카르텔		
기술장벽	행정 및 기술규제	기술조치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 (환경포함)	표준 및 기술적 요건
수출제한	수출세				수출제한	
정부보조	수출보조금 선별적 국내보조금	제품기준	정부관여	수출보조금	보조금	
정부조달	차별적 정부조달			정부조달	정부조달	정부조달
투자장벽	외국인 투자 제한			투자장벽	투자관련조치	무역관련 투자규정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보호 미비	지재권 관련조치		지재권보호
서비스업 제한						서비스교역
전자상거래 제한						
기타	지역적 영업관행, 제한적 이민정책, 선별적 통화통제	금융통제정책, 기타조치	가격규제, 기타규제	기타	로컬컨텐츠 규정 수입밸런싱 규정	차별관행

자료: 비관세장벽 포털

- FTA 원산지규정 및 이와 관련한 품목분류, 관세평가 등은 기존의 무역장벽 분류기준상 적절한 분류기준이 없는 상태이나, 미국 및 WTO는 통관절차 또는 수입정책 카테고리로 구분
  - 미국의 NTE보고서의 경우 ‘수입정책(Import Policy)’ 카테고리에 원산지 및 원산지 검증 관련사항을 ‘비관세장벽’으로 구분함
  -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는 특혜관세율 인하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수단이나, 기준 자체를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법령 및 통관관행 등 ‘비관세’ 장벽에 해당하며,
  -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 역시 WTO 무역원활화 협정에서 비관세장벽 제거의 일환으로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비관세장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통관애로 해결방안은 크게 정부당국간 비관세장벽 철폐의 합의, 또는 무역거래 당사자의 통관애로 사전예방으로 정리할 수 있음
  - 무역장벽 중 하나인 통관애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해당 통관애로가 발생하는 정부당국의 규제를 관련당국 간의 협의와 노력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임
    - 이러한 시도는 장시간이 소요됨과 동시에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단기간 내에 해결 불가
  - 보다 현실적인 대응방안으로서, 현재 규정된 무역장벽 규제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통관 전 또는 이후에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2016 통관애로분석 보고서는 상기 중 두 번째 방안의 일환으로서, 거래당사자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이에 순응하여 통관시 발생할 수 있는 무역거래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5. 보고서의 구성

- 조사대상을 통관애로 물품 기준 화학산업, 섬유산업, 금속산업, 기계산업, 전기산업, 자동차부품, 정밀기기산업의 7개 산업으로 구분
- 각 산업별로 산업동향 분석, 통관규제 현황, 사전심사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의 순서로 목차를 구성
  - 산업동향 분석에서는 7대 산업의 개괄과 우리나라 및 체약상대국의 생산 동향, 수출동향을 조사하였음
  - 통관규제 현황에서는 7대 산업에 속한 우리나라 수출물품이 준수해야 할 통관규제를 요약 정리하였음
  - 사전심사사례분석 및 대응방안은 다시 품목분류사전심사, 원산지결정기준사전심사 및 기타(재수입 면제)로 구분됨
  - 각 사전심사별 실제 우리나라 수출자가 신청한 사전심사사례를 요약 번역 · 정리하였으며,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우리나라 사전심사사례와 비교하였음. 또한 사례분석 후 우리나라 수출자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 향후 수출시 통관애로 사전예방을 도모함

## 제2장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사례분석

I. 미국 사전심사 개요

II. 화학산업

III. 섬유산업

IV. 금속산업

V. 기계산업

VI. 전기산업

VII. 자동차부품

VIII. 정밀기기산업

# I. 미국 사전심사 개요

## 1. 개요

- 사전심사란, 수출입물품에 관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품목분류, 원산지표시 등 협정 관세의 적용 및 관세 면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 그 충족 여부 등을 협정국 관세 당국에 사전 질의하여 회답을 받는 제도임
- 미국 관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약칭 CBP)은 1989년부터 사전심사제도를 실시
  - 미 관세법 시행령(CFR) 177 조항은 CBP 사전심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
  - 관세평가, 환급,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사항은 ‘본청 소속법규국(Office of Regulations and Ruling; OR&R, 워싱턴 D.C.)’에서 담당하고, 품목분류, 원산지표기, FTA 등에 대한 사항은 ‘국가상품분류국(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 NCSD, 뉴욕)’에서 담당
  - ‘요청내용이 가설인 경우, 신청서에 요청정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수입항구나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부정확한 정보를 세관에 고의로 제공한 경우, 거래가 종료된 경우’는 심사 배제 가능
- 미국의 사전심사제도는 심사대상에 따라 과세가격 사전심사, 품목분류 사전심사, 원산지 사전심사로 구분
- 과세가격 사전심사는 관세평가 적용의 일반원칙에 대한 심사로 본청 OR&R에서 담당
  -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 공제요소에 해당하는 금액,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을 심사
  - 사전심사 신청 접수 후 90일 이내 결정서를 발급하며 심사결정 내용과 동일한 물품의 수입 시 해당 과세가격이 적용

-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해당 물품의 HTS (Harmonized Tariff Schedule) 규정 적용에 대한 심사로 뉴욕 NCSD에서 진행하나 NCSD 품목분류 심사결정에 대한 재심사는 본청 OR&R이 담당
  - 사전심사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되며, 개별 건당 동일한 종류의 5개 물품에 한정됨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은 CBP에서 당해 결정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는 한 모든 세관의 수입신고 시 유효하게 적용
- 원산지 사전심사는 수입예정 물품의 원산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사후 결정된 원산지를 3년간 보장하는 제도로, 결정사항의 유형에 따라 권고의견(Advisory Ruling)과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으로 구분
  - 권고의견은 관련 법규에 대한 해석 및 의견으로서 구속력이 없는 반면, 최종결정은 사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CBP에 의하여 재검토될 수 있음
  - 원산지 사전판정 당시 원산지 결정에 사용된 물품과 상황이 동일해야 하며, 결정된 원산지 사전심사의 내용은 3년간 유효기간으로 보장
- 이 밖에도 해당물품이 원산지에 따라 적절히 표시되거나 라벨링 되었는지 결정하는 원산지표시 사전심사, 항해의 주된 목적을 결정하기 위한 운송수단 사전심사 등이 있음
- 사전심사제도는 크게 ‘신청-심사결정-공개’의 절차로 진행됨
  - 사전심사 신청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30일 내에 NCSD에서 심사 결정되어 E-mail로 통보
    - 서면으로 본청 OR&R에 신청 시, 90일 내에 심사 결정되어 우편으로 발송
    - 사전심사 신청은 수입자, 수출자, 심사신청 관련자 및 이들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사전심사 도중 보정, 사정의 변경 및 철회 가능
    - 사전심사의 요건에 맞지 않는 신청은 서면으로 해당 보정사실이 통지되고,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정보를 보충하여 제출해야 함

- 사전심사 신청자는 신청한 자료의 거래내용이 변경된 경우 즉시 CBP에 통지해야 하며, 심사 결정 전이라면 신청자에 의한 철회가 가능
- 심사결과는 결정서신으로 통보되며 결정 당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
  - 결정서신은 ‘사실관계(facts), 쟁점사항(issue), 법률검토 및 분석(law and analysis), 결정사항(holding)’으로 구성
  - 사전심사 결과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 사이트 및 게시판 등에 게시되며, 공개된 사항은 아직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
  - 사전심사 결정 서신을 받은 신청인은 결정서신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사 신청을 통한 이의제기 가능
- 한국과 미국 양국은 한-미 FTA 협정에 따라 합의사항을 자국 국내 법에 입법화 하고 있음
  - 한국은 FTA 관세특례법에, 미국은 CFR 177 및 181(NAFTA)에 FTA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규정
    - 미국 CFR 177의 적용범위는 관세법과 FTA를 포괄하는 규정으로서, 한미 FTA 협정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사전심사는 CFR 177 규정사항을 준수
    - 이와 별도로 CFR 181에서는 NAFTA 협정과 관련한 입법내용을 따로 분류
  - 한-미 FTA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내용은 동 협정 제7.10조에 규정됨
    - 한-미 FTA 협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전심사 내용을 명시;
      - ①품목분류, ②관세평가협정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의 적용, ③관세환급, 납기 연장 또는 그 밖의 관세감면의 적용, ④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⑤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된 후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재반입된 상품이 제2.6조에 따라 무관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⑥원산지국가 표시, ⑦상품이 쿼터나 관세율할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⑧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안

## 2. 사전심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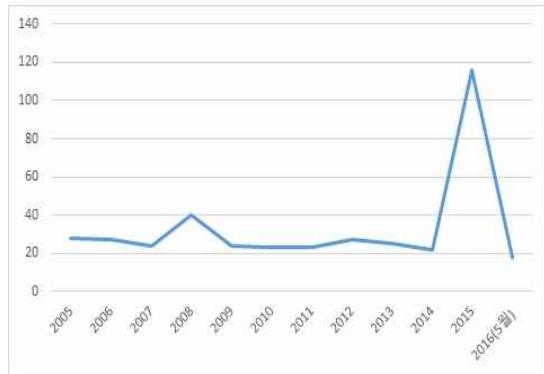
### 가. 전체동향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미국 관세당국의 사전심사 (결정)건수는 총 397건
  -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사전심사 건수는 매년 20~30건 수준이었으나, 2015년 116건으로 크게 증가

< 표 1-1 > 연도별 사전심사 총 건수

[ 단위: 신청 건 ]

연도	건수	연도	건수
2005	28	2011	23
2006	27	2012	27
2007	24	2013	25
2008	40	2014	22
2009	24	2015	116
2010	23	2016 (5월)	18
합 계			397



- 사전심사를 총 6개의 카테고리(품목분류, 원산지표시, 원산지, 운송인, 관세평가, 기타)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음
  - 총 395건 중 품목분류가 357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원산지표시가 17건이고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카테고리는 6~7건 수준으로 나타남
    - 원산지 사전심사는 대부분 세번변경기준을 포함하므로 품목분류사전심사로 대체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표 1-2 > 카테고리별 사전심사 비중(신청 건수 기준)

카테고리	품목분류	원산지표시	원산지	운송인	관세평가	기타	합 계
건수	357	17	7	7	6	1	395*

\* 카테고리 미표시: 3건, 중복표시: 1건

- 2015년도 사전심사 건수는 총 116건으로 2014년 22건에 비하여 5배 이상 증가한 것이 특징
  - 116건 중 47건이 HS 제8708호의 자동차 부분품으로서, 2015년 사전심사 건수의 증가는 상당부분 자동차 부분품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임
- 2015년도 사전심사 건수 증가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8708호 특혜수출입동향을 분석함
  - 제8708호 자동차부분품의 2015년 미국 특혜수입은 전년대비 3%가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 특혜수출은 1.4%가 증가
    - 이는 2014년 증가율 7.5%(미국 수입) 및 1.0%(우리나라 수출)과 비교하였을 때, 미국 수입증가율은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은 증가한 것이 특징

**< 표 1-3 > 제8708호 한-미 FTA 우리나라 수출 및 미국 수입금액 비교**

[ 단위: 천 달러 ]

구 분	2012	증가율	2013	증가율	2014	증가율	2015	증가율
미국 특혜수입	2,192,576	-	3,475,180	58.5	3,734,078	7.5	3,844,937	3.0
우리나라 특혜수출	3,557,509	-	4,936,985	38.8	4,987,988	1.0	5,055,494	1.4

※ 자료: USITC(미국 특혜수입), 관세청(우리나라 특혜수출)

- 2013년 한-미 FTA 특혜적용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제외하면, 2014년 이후로 미국의 특혜수입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이는 미국 관세당국의 한-미 FTA 특혜수입심사가 매년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자(또는 미국 수입자)는 사전심사를 통하여 강화된 미국 관세당국의 특혜심사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나. 품목별 사전심사 동향

- 2005년부터 2016년(5월)까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미국 관세당국의 사전심사 총 품목 수는 415건\*

※ 사전심사 신청시 1개 이상의 품목을 신청한 경우가 있어, 품목 수 기준(415건)은 신청 수 기준(397건)보다 높게 나타남

- 류(Chapter)별 사전심사 품목 수는 제87류(차량)가 87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제85류(전기기기)가 82개, 제39류(플라스틱)가 27개, 제61류(편물제 의류)가 26개, 제73류(철강제품)이 23개 등으로 나타남
  - 사전심사 품목 수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과 관련이 있는 물품 중심으로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표 1-4 > 품목별 사전심사 건수

[ 단위: 품목 수 ]

류	개수	류	개수	류	개수	류	개수
21	4	46	2	64	2	85	82
22	5	49	3	71	1	86	1
27	2	54	5	72	4	87	87
28	1	55	1	73	23	89	2
29	6	56	1	74	3	90	15
32	3	58	1	76	2	91	1
35	2	59	2	79	1	94	6
38	4	60	3	81	1	95	3
39	27	61	26	82	1	96	4
40	4	62	2	83	10	97	2
41	2	63	8	84	45	98	5
						합계	415

## 다. 산업별 사전심사 동향

- 우리나라 수출물품 사전심사 품목을 총 8개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음
- 카테고리 구분은 HS 제2단위별로 구분하였으며, 각 산업에 포함되는 류(Chapter)는 아래와 같음
  - 화학산업: 제28류부터 제40류까지
  - 섬유 및 의류산업: 제50류부터 제64류까지
  - 금속산업: 제71류부터 제83류까지
  - 기계산업: 제84류
  - 전기기기산업: 제85류
  - 자동차산업(자동차 부품 포함): 제87류
  - 정밀기기산업: 제90류, 제91류
  - 기타
- 8개 카테고리 중, 자동차산업(자동차 부품 포함)이 87개로 사전심사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기기기산업 82개, 섬유 및 의류산업 51개, 화학산업 49개, 금속산업 46개, 기계산업 45개, 정밀기기산업 16개 순으로 나타남
  - 산업별 구분시 자동차 및 전기기기 사전심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품목별 구분시 비중과 크게 다르지 않음

**< 표 1-5 > 산업별 사전심사 건수**

**[ 단위: 품목 수 ]**

산업	품목 수	산업	품목 수
화학산업	49	전기기기산업	82
섬유 및 의류산업	51	자동차(부품)산업	87
금속산업	46	정밀기기산업	16
기계산업	45	기타	39
총합계			415

□ 산업별/연도별 구분 사전심사 품목 수는 아래와 같음

- 산업별 구분을 불문하고 사전심사 품목 수는 2015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자동차(부품)산업 사전심사는 2015년 49건으로서 전년 대비 10배 증가하였으며, 기계산업의 경우도 사전심사 건수가 없었던 전년에 비하여 19건으로 증가하였음
  - 반면 2016년에는 자동차(부품)산업 사전심사는 5월까지 사전심사 품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5월까지 사전심사 품목 수는 총 21건으로 이미 2014년 19건을 초과하였으므로, 향후 연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전기기기산업에 대한 신청이 10건에 달한 것으로 보아 2015년 자동차(부품)산업과 같이 특정 산업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음

< 표 1-6 > 산업별 연도별 구분(품목수 기준)

[ 단위: 품목 수 ]

연 도	화학 산업	섬유 산업	금속 산업	기계 산업	전기 산업	자동차 산업	정밀 산업	기타	합계
2005		11	1	2	6	2	2	1	25
2006	5	7	4	1	9	1		1	28
2007	5	1	2	2	3		3	4	20
2008	4	3	7	3	9	13	1	6	46
2009	1	8	8	5	1	3		5	31
2010	3	1	1	1	5	4		6	21
2011	5	1	1	4	6	3		3	23
2012	10	3	1	3	8	2	1	3	31
2013	3	3	7	4	4	5	1	1	28
2014	2	4	1		3	5	1	3	19
2015	9	9	9	19	18	49	7	2	122
2016	2		4	1	10			4	21
합 계	49	51	46	45	82	87	16	39	415

### 3. 조사대상물품의 선정

- 2015년 총 116건(신청건수 기준) 중 조사대상물품 50건 선정
  - 선정대상은 2015년에 신청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서 선별
  - 2015년 총 116건 중 HS 6단위 소호가 동일한 신청 건은 제외(61건)
  - 총 61건을 8개 산업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최종 50개 사례를 선정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사례 및 품목번호는 아래와 같음

**< 표 1-7 > 조사대상물품 50건**

산업	류	HTSUS	품명	산업	류	HTSUS	품명
화학 산업	28	2836.99.5000	파탄산나트륨	전기 산업	85	8512.30.0040	엔진소음발생기
	29	2922.41.0010	L-리신 염산염		85	8517.62.0050	카리스 리시버
	39	3917.40.0090	플라스틱 연결구류		85	8518.40.2000	안테나 증폭기
	39	3921.90.1100	목재 포장용 시트		85	8526.10.0040	사각지대감지기
	40	4009.12.0050	고무호스		85	8537.10.9060	모션센서
	40	4016.93.1020	오일 실		85	8538.90.8020	진공인터럽터
섬유 산업	54	5407.69.4010	자카드 직물		85	8543.70.4000	탑승감지센서
	55	5512.19.0005	업홀스터리패브릭		87	8708.29.5060	서스펜션에어튜브
	58	5803.00.5000	레노위브직물		87	8708.40.7580	수소연료차량 소음기
	60	6004.10.0085	플라스틱위편물		87	8708.50.8900	번호판 마운트
	61	6116.10.5520	작업용 장갑		87	8708.80.6590	변속기 케이블
	63	6307.10.2030	극세사청소포		87	8708.92.5000	차동장치
	63				87	8708.93.6000	클러치 페달
	64	6404.19.9060	신발		87	8708.94.5000	스티어링 칼럼
금속 산업	73	7306.30.5032	스틸파이프		87	8708.99.6805	드라이브샤프트
	73	7311.00.0090	액화가스용기		98	9801.00.2000	자동차부품
	73	7314.50.0000	익스팬디드메탈라스	정밀 산업	90	9018.90.80	의료기기세트
	73	7326.90.8588	물 배관 연결구류		90	9026.20.4000	차압센서
	81	8108.90.60	티타늄관		90	9029.20.4080	차량용 계기판
	83	8302.30.3060	연결브라켓		90	9031.80.8070	노킹센서
기계 산업	84	8409.91.5085	Insert Water Jacket		90	9032.89.6085	전조등 조정기
	84	8413.30.9060	오일펌프				
	84	8414.80.2055	압축기조립품				
	84	8421.23.0000	차량용오일필터				
	84	8424.89.0000	원드실드클리닝				
	84	8471.60.2000	블루투스키보드				
	84	8479.89.9899	ABS시스템				
	84	8481.40.0000	과급압력조절기				
	84	8483.40.1000	토크컨버터				

## II. 화학산업

### 1. 산업동향<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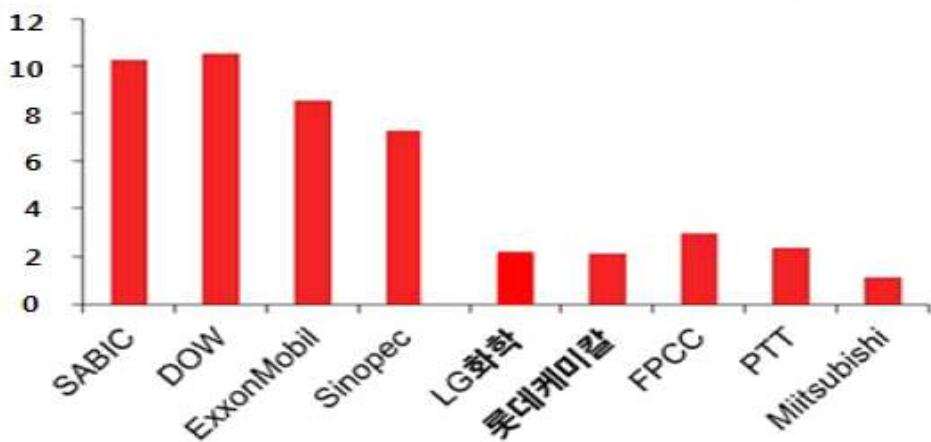
#### 가. 생산동향

##### 1) 우리나라 생산동향

-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세계 4위의 생산규모를 보유, 생산액 기준 국내 제조업 중 3위 차지
- 그러나 업체별 생산규모는 글로벌 메이저 대비 매우 열세하여 규모의 경제가 취약하고, 수익성이 낮은 범용제품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보유

< 그림 2-1 > 주요 기업별 에틸렌 설비능력 비교

[ 단위: 백만톤/년 ]



자료: METI, 하이투자증권(2014), 석유화학편람(2015)

- 국내 기업의 매출액 70% 이상을 외부환경에 취약한 범용제품 부문이 차지하고 있는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이 글로벌 메이저 기업이 10% 이상인데 반해 국내기업은 2~4%대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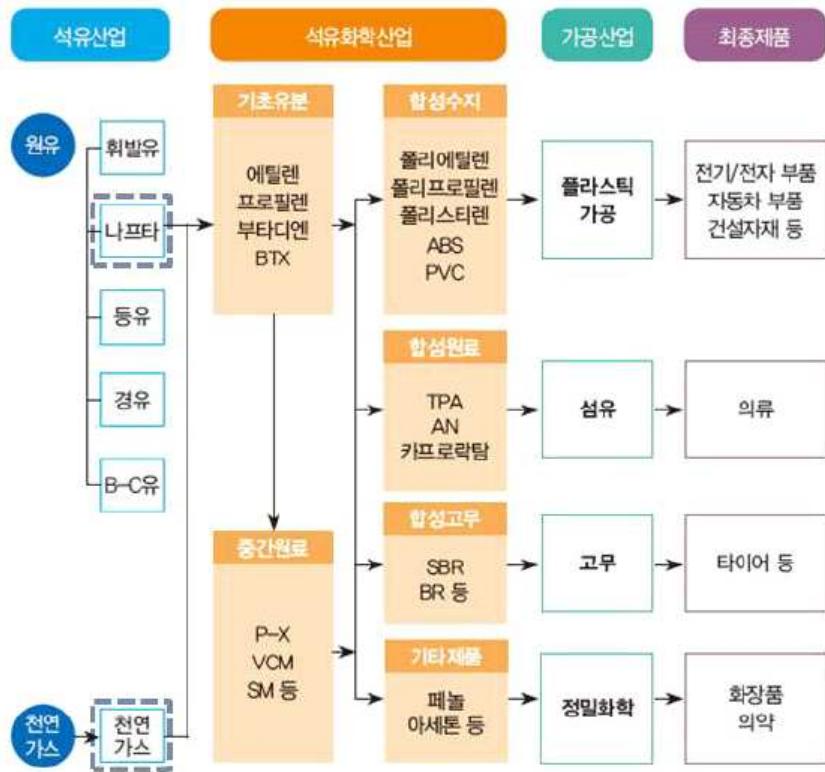
2) 한국수출입은행. 글로벌 석유화학산업 동향 및 전망. Vol. 2015-산업이슈-15

- 국내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은 對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전체 수출의 약 50%)인 가운데 최근 중국시장의 경쟁심화로 실적 부진
  - 중국은 자급률제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으로 특히 석탄화학 중심의 설비투자 확대 추세
- 이로 인해 최근 수년간 국내기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TPA등 경쟁이 심한 제품생산기업의 실적이 부진
  - 다만, 2015년은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나 저유가로 인한 원가절감요인으로 영업이익 증가

## 2) 미국 생산동향

- 석유화학산업의 원료는 크게 석유 기반의 나프타와 천연가스 기반의 에탄가스로 구분
- 동북아, 유럽 지역은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설비(NCC; Naphtha Cracking Center)를 이용하여 기초유분(에틸렌, 프로필렌 등) 생산
- 중동, 북미 등 천연가스 생산지역에서는 천연가스 성분 중 하나인 에탄가스를 열분해(ECC; Ethan Cracking Center)하여 기초유분 생산
- 석유기반의 나프타 원료 비중이 감소한 반면, 미국을 중심으로 셰일가스 기반의 에탄가스 원료 비중이 크게 증가
- 이에 따라 2005년 세계 에틸렌 원료 중 나프타가 거의 50%를 차지했으나 2020년 경에는 나프타 비중이 36%로 급감할 전망
- 미국의 대규모 에탄크래커가 가동되는 ‘18년 이후 미국 수출증가에 따른 세계 석유화학산업의 경쟁심화 우려
  - 운송료 등을 감안하면 에탄가스 기반의 미국제품이 아시아 시장을 장악 할 가능성은 낮으나, 세계공급과잉 및 가격하락 초래 가능성이 있음

< 그림 2-2 > 석유화학 및 수요산업의 생산계통도



주: [ ] 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

자료: 한국석유화학협회

- 미국 글로벌 기업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기능성 제품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로 전환하여 수익성 극대화 추구
- BASF, Dow 등 구미 선진기업들은 수익률이 낮은 범용제품에서 벗어나 고객중심, 후방시장 통합형 사업으로 전환하여 산업재, 소비재 등으로 사업영역 확대

## 나. 수출동향

### 1) 일반 수출동향

- 국내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은 對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가운데 최근 중국시장의 경쟁심화로 실적 부진
  - 특히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對중국 수출의존도는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저성장 기조와 자국 공급능력 확대로 인한 수출감소
  -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0년 들어 한자리수로 전환되었으며, 향후에도 당분간 6%대의 저성장 기조가 유지될 전망
  - 또한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공급능력 확대로 자급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동시에 중국의 우리나라 석유화학제품 수입량 급감
    - 특히 합섬원료 중 하나인 TPA(테레프탈산)의 중국 자급률은 사실상 100%에 달하여, 對중국 수출경쟁력이 사실상 상실

### 2) 對미국 수출동향<sup>3)</sup>

- 우리나라의 2015년 對미국 화학제품 수출금액은 총 59억 달러로서 2014년 63억 달러 대비 약6.3% 감소한 수치
  - 우리나라의 對미국 상위 20대 수출품목 중, 주요 수출품목인 환식탄화수소(제2902호)의 수출이 전년대비 36.1% 감소한 7억3천만달러를 기록
    - 이외에도 스티렌 중합체(제3903호) 14.4%, 합성고무(제4002호) 20.5%, 폴리카르복시산(제2917호) 37.8%, 사진플레이트(제3705호) 25.4% 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고무타이어(제4011호) 9.1%,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 등(제3304호) 59.4% 제품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3) 對미국 수출동향은 관세율표 제6부(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제7부(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의 물품을 기준으로 함

- 이외에도 도프처리된 화학원소 등(제3818호), 조제점결제 등(제3824호),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제3826호) 등의 제품이 증가세를 보여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남

**< 표 2-1 > 우리나라의 对미국 화학제품 일반수출 상위 20대 품목**

[단위: 천 달러, % ]

HS 4	품목명	2014	2015	
		금액	금액	증감률
4011	고무 타이어	1,262,013	1,376,528	9.1
2902	환식 탄화수소	1,149,664	735,061	-36.1
3926	기타 플라스틱 제품	274,132	276,224	0.8
3907	폴리아세탈수지 등	280,067	266,924	-4.7
3920	플라스틱 판·시트·필름 등	233,574	249,476	6.8
3923	플라스틱 용기 등	218,435	212,444	-2.7
3903	스티렌의 종합체 등	245,552	210,104	-14.4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 등	129,933	207,156	59.4
4002	합성고무와 팩티스 등	221,617	176,186	-20.5
3918	플라스틱 바닥깔개 등	150,306	158,674	5.6
4016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	145,228	151,909	4.6
3921	플라스틱 판·시트·필름 등	173,510	142,888	-17.6
3902	프로필렌의 종합체 등	136,330	134,124	-1.6
3818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원소	121,808	132,882	9.1
2917	폴리카르복시산 등	133,757	83,212	-37.8
3705	사진플레이트와 필름 등	83,003	61,958	-25.4
3824	조제점결제 등	44,872	59,439	32.5
3826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	29,826	56,050	87.9
4009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 등	54,851	52,018	-5.2
3919	플라스틱의 접착성 판·시트·필름 등	49,030	50,122	2.2
	합계(석유화학제품)	6,318,777	5,990,663	

자료: 무역협회

## 2. 주요 통관규제<sup>4)</sup>

### 가. 화학물질 및 그 혼합물 수입요건

#### □ 개요

- 화학물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수입업자, 제조업자, 가공업자는 미국 유해물질규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에 규정된 다양한 요건들의 적용 대상임
  - TSCA(15 U.S.C. § 2601 et seq. (1976))는 미국에서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규제하는데 있어 중심이 되는 법률로, 제조전 신고, 규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
  -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이 TSCA 규정과 관련, 화학물질 및 그 혼합물에 대해서 자료의 보관이나 실험요건 및 규제 등을 관할하는 기관임
-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학 물질(Chemical Substance), 혼합물(mixture), 제품(article)이 주요 규제 대상
  - 동 물품은 사전에 TSCA 및 기타 적용가능한 환경규제법에서 정한 요구 사항을 만족함을 증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수입이 금지되거나 반출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 수입요건

##### ① TSCA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ion<sup>5)</sup>)

- 수입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이 TSCA요건을 충족하였는지(positive certification) 또는 비대상인지(negative certification)인지를 확인해야 함
  - Certification은 인보이스나 다른 수입서류에 해당 문구를 기재하고 사인한 것임

4) 비관세장벽 포털에서 주요 내용 인용 및 자료를 추가함

5) <http://www.epa.gov/oppt/import-export/pubs/sec13.html>

- 일부 물품(원재료 등)은 수입증명이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음

**< 표 2-2 > TSCA 승인 및 적용의 구분**

구 분	적용 법령 및 물품
승인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emicals that are a part of articles, unless required by a specific rule under TSCA</li> <li>• Tobacco or tobacco products</li> </ul>
TSCA규정 미적용 물품 ( Negative Certification Stat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ny pesticide</li> <li>• Any food, food additive, drug, cosmetic or device</li> <li>• Source material, special nuclear material, or by-product material</li> <li>• Firearms and ammunitions as defined in section 3 of TSCA</li> </ul>
TSCA 규정 적용 물품 ( Positive Certification Stat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Section 5 premanufacture notification rules</u></li> <li>• <u>Section 5 significant new use rules</u></li> <li>• Section 5(e) orders</li> <li>• Section 5(f) rules and orders</li> <li>• Section 6 rules and orders</li> <li>• Section 7 judicial actions</li> <li>• Title IV rules and orders</li> </ul>

자료: 미국 환경보호청(EPA)

- Certification은 인보이스나 다른 수입서류에 해당 문구를 기재하고 사용한 것임.
  - TSCA규정 미적용 물품(Negative Certification Statement):

“I certify that all chemicals in this shipment are not subject to TSCA”

- TSCA 규정 적용 물품(Positive Certification Statement):

“I certify that all chemical substances in this shipment comply with all applicable rules or orders under TSCA and that I am not offering a chemical substance for entry in violation of TSCA or any applicable rule or order under TSCA.”

## ② 신규화학물질

- 상업적인 목적으로 신규 화학물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수입하기 전에 해당 물질이 TSCA 적용대상인지, “신규화학물질” 인지를 확인해야 함
- 제조전 신고(Pre-manufacture notice)(40 CFR Part 720)
  - 해당 화학물질이 “신규화학물질”인 경우에는 수입업자는 수입하기 최소 90일전까지 EPA에 제조전 신고(이하 PMN)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출한 PMN이 EPA로부터 승인되어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미국으로 수입되면 수입업자는 “Notice of Commencement” (NOC)를 처음 수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EPA에 제출해야 함
  - NOC가 제출되면 해당 화학물질은 이후의 수입과 국내 생산을 위해 EPA의 TSCA 기준 화학물질 목록에 기재되고 기존 화학물질로 분류됨
- Significant New Use Rules (SNURs)(40 CFR Part 721)
  - TSCA의 적용을 받는 화학물질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업자는 그 화학물질이 TSCA의 Significant New Use(Section 5 of TSCA)규정을 적용 받는지 확인해야 함
  - EPA가 “Significant New Use”로 지정한 화학물질의 사용은 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가공하기 최소 90일 전에 EPA에 Significant New Use Notice(SNUN)를 제출해야 함. (SNUN의 제출은 PMN form을 사용하여 같은 방식으로 제출)
- ③ 특정 화학물질 요건(Section 6 TSCA Requirements for Specific Chemicals)
  - 수입업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화학물질이 위험 화학물질과 혼합물 규정 적용대상인지 확인해야 함.
  - EPA는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의 제조 및 수입, 가공, 처리, 사용, 상업적 유통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가져오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임
  - 예시물품: 폴리염화비페닐(PCBs, polychlorinated biphenyls), 수은, 석면 등

## 나. 의약품 마약류 및 파생물 수입요건

### □ 개요

- 마약류 및 파생물의 수입은 미국 법무부 직속기관인 마약단속국 (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의 규제에 의하여,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마약류는 수입이 금지됨

### □ 관련 규제

- 제조업체, 유통업체, 통제되는 물질의 디스펜서의 등록
  - 등록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규제 약물의 모든 제조자, 배포자, 조제자, 수입자, 수출자 또는 규제 약물의 제조, 배포, 유통, 수입, 수출에 대한 계약을 제안하는 자는 법무부의 응용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함
- 통제되는 물질의 라벨링 및 포장의 요구사항
  - 규제 약물은 용기 라벨에 해당 약물의 지정된 schedule 인쇄의무
- 할당량
  - DEA의 규제약물 수입 관리자는 과학실험용, 의학실험용, 기타 산업용, 예비 재고분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다음해 규제 약물 등급별 할당량 결정
  - 정하여진 할당량은 매년 5월 1일 이전에 관보로 공표되며 제조자, 수입자는 이를 근거로 할당수량 내에서 제조·수입 가능
- 등록자의 기록과 보고
  - 법무부 응용프로그램 등록자는 규제약물의 제조, 수입, 조제 등에 대하여 기록, 물품목록 유지 및 요구되는 보고 제출의무 존재

## 다. 오존파괴물질 수입허가요건

- 미국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한 가입국으로서 오존 파괴물질 (ODSs) 수입에 대한 규제를 실시
- 수입물질이 사용여부 및 클래스 구분(Class)에 따라 요건이 구분됨
  - Class I ODSs, Class II ODSs, Used Class I and Class II ODSs

< 표 2-3 > 오존파괴물질 수입허가요건

구 분	수입여부	비 고
미사용 Class I	수입금지	정량흡입기를 위한 CFCs의 필수적인 사용은 수입가능
미사용 Class II	수입허가(수입자)	허가권 양도가능
사용 Class I & II	수입허가(수입물품)	청원서는 반드시 수출항에서 선적되기 40일 (working day)전까지 EPA에 제출

### 3. 품목분류사례

#### 가. 상이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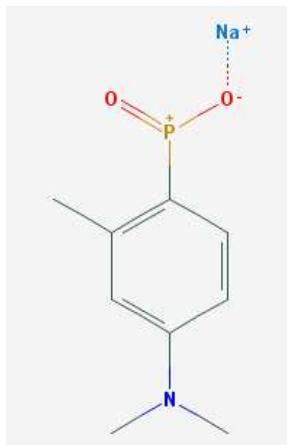
##### 1) 파라핀 오일(농약원제)

- 농약원제로 사용되는 파라핀오일을 우리나라에서는 제2710호에 분류하였으나, 필리핀에서는 제3808호에 분류한 사례

사례출처	수출업체 민원	
물품설명	<p>파라핀오일이란 파라핀계 탄화수소를 많이 함유하는 원유. 일반식이 <math>C_nH_{2n+2}</math>인 포화탄화수소로서 알칸이라고도 함</p> <p>동 물품은 원가절감을 위해 소포장 완제품 형태가 아닌 벌크로 공급하며, 현지에서 직접 유화제를 사용하여 물과 섞어 바나나 농장에 살포</p>	
사 진		
국 가	우리나라	필리핀
H S	2710.19	3808.99
분류근거	우리나라에서는 파라핀 오일을 제2710호의 석유로 분류	필리핀에서는 주 용도인 살충제로 분류(벌레 표면에 기름피막을 형성하여 질식시킴으로서 약효를 나타냄. 감귤, 사과, 바나나 재배에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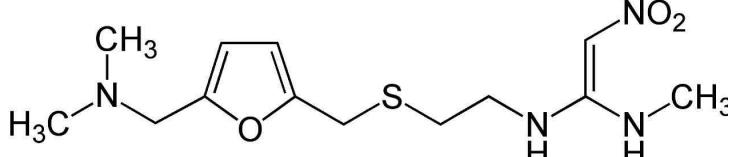
## 2) 토노포스판

- 토노포스판을 우리나라에서는 제2931호(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에 분류하였으나, 인도에서는 제2942(그 밖의 유기화합물)호에 분류한 사례

사례출처	수출업체 민원	
물품설명	체내 필수 미네랄이 균형있게 조성되어 있어 전신 대사장애 치료 및 골결함증, 경직 및 마비증세 개선을 돋는 속효성 자양강장 대사 촉진제 (분자식: C9H12NNaO2P+)	
사 진		
국 가	우리나라	인도
H S	2931.90	2942.00
분류근거	토노포스판은 방향족 탄화수소에 무기질(하이포인산나트륨)이 결합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제2931호의 유기-무기 화합물에 분류	인도에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상 제2942.00호로 표기

### 3) 염산 라니티딘

-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라니티딘을 우리나라에서는 제2932호(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에 분류하였으나, 인도에서는 제2942호(그 밖의 유기화합물)에 분류한 사례

사례출처	수출업체 민원(FTA콜센터)	
물품설명	<p>라니티딘은 수용체 차단제로 작용하여 위 내부에서 산의 생성작용을 억제. 이러한 기능으로 위궤양 또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사용. 국내에서는 '잔탁', '큐란'이라는 브랜드로 출시</p> <p>라니티딘이 바로 의약품으로 출시되는 것은 아니며, 라니티딘 성분과 함께 제산제를 함유하고 있는데, 주로 라니티딘과 마그네슘염 및 알루미늄염의 복합제로 구성되어 있음</p>	
사 진		
국 가	우리나라	인도
H S	2932.19	2942.00
분류근거	<p>라니티딘은 고리 내에 산소원자가 포함되어 있는 헤�테로고리 화합물로서 퓨란 구조에 다양한 분자가 붙어 생긴 화합물로서 제2932호에 포함됨.</p> <p>또한 제2932.19호에 '붙지 않는 푸란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이 분류되므로 라니티딘 염은 제2932.19호에 분류됨</p>	<p>제2942호는 그 밖의 유기화합물이 분류되며, 염산 라니티딘은 제29류에 별도로 분류되는 호가 없으므로 제2942호에 분류</p>

## 나. 사전심사사례

- 2015년 미국 관세청에 신청된 우리나라 화학산업관련 사전심사물품에  
는 다음과 같은 물품을 포함함

순번	HS	품명
1	2836.99.5000	과탄산나트륨
2	2922.41.0010	L-리신 염산염
3	3917.40.0090	플라스틱 연결구류
4	3921.90.1100	목재포장용 시트
5	4009.12.0050	고무호스
6	4016.93.1020	오일 실

### 1) 과탄산나트륨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0714
- 신청물품: 과탄산나트륨(sodium percarbonate)(CAS#15630-89-4)
  - 흰색, 무취, 고운 알갱이 또는 파우더로서 알칼리수소 과산화물의 안정제로 사용됨. 이는 친환경적인 표백제로 사용됨
- 결정세번: 제2836.99-5000호
  - 동 물품은 과탄산나트륨으로서 제2836호의 탄산염에 분류되며, 기타의 탄산염인 제2836.99-5000호에 분류됨
    - 표백제로서 사용되는 물품이나, 화학적 구성이 단일한 과탄산나트륨이므로 제2836호에 분류할 수 있음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2836.99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 율 (기본/KORUS)
10	탄산염	10	염산코발트	4.2/0
10	탄산마그네슘	20	탄산비스무트	5.5/0
20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과 그 밖의 탄산암모늄	30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과 기 타 탄산암모늄	1.7/0
3	탄산망간	40	탄산연	0.5/0
31	이차전지 제조용	50	기타	3.7/0
39	기타			
90	기타			
2000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 제2836호에는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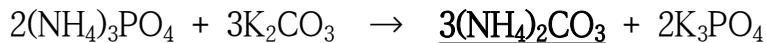
- 제2836.99호에는 탄산이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 탄산칼륨, 탄산칼슘, 탄산바륨, 탄산리튬, 탄산스트론튬을 제외한 기타의 물품이 분류됨

□ 우리나라는 탄산염과 과탄산염으로 구분하나, 미국은 이와 관계없이 탄산염에 포함된 금속의 종류별로 구분

- 우리나라는 제2836.99호를 탄산염과 과산화탄산염으로 구분하고, 탄산염을 다시 탄산마그네슘과 기타 탄산암모늄, 탄산망간으로 구분
- 이에 반하여 미국은 제2836.99호를 염산코발트, 탄산비스무트, 기타 탄산암모늄, 탄산연, 기타 등 금속염의 종류별로 구분

□ 탄산염이란 탄산( $H_2CO_3$ )속의 수소가 다양한 금속 또는 금속의 산화물(염기)과 반응하여 염을 생성한 것을 총칭하여 일컬음

- 예를 들면, 탄산암모늄[ $(NH_4)_2CO_3$ ]은 인산암모늄[ $(NH_4)_3PO_4$ ]과 탄산칼륨( $K_2CO_3$ )과의 반응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만들어짐



- 탄산염에는 탄산암모늄, 탄산나트륨, 탄산칼륨, 침전탄산칼슘, 침전탄산바륨, 탄산연, 탄산리튬, 침전탄산스토론튬, 탄산비스무트, 침전탄산마그네슘, 탄산망간, 탄산철, 탄산코발트, 탄화니켈, 탄산동, 침전탄산아연 등이 있음
  -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은 여러 불순물(염화물·황산염·유기물질)이 첨가되어 있고 탄산수소암모늄과 카르밥산암모늄( $\text{NH}_2\text{COONH}_4$ )을 함유
  -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은 백색 결정성 괴 또는 분말로 온수에 용해되며 습한 공기에서 변질되어 산성 탄산염이 형성되나 이 상태로 사용할 수도 있음
-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에는 과산화탄산나트륨, 과산화탄산칼륨, 기타 과산화탄산염 등이 있음

### ③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 신청물품: 과탄산나트륨

- 백색 입상의 과탄산나트륨을 소다회(탄산나트륨, Sodium Carbonate)로 표면을 코팅한 것으로서 표백제 및 세제원료로 사용됨
- 결정세번: 제3824.90-9090호
- 본 품은 과탄산나트륨을 소다회로 표면을 코팅한 것으로서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코팅하여 보관 및 운송 중 물품의 안전을 위한 목적 및 세척력을 증가하기 위한 또 다른 목적이 있으므로 제28류 주 제1호에 부합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28류 주1에 따르면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고 하면서,
  -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고 규정되어, 동 물품은 제28류 주 1 가목에 따라 제28류에 제외됨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은 소다회로 표면처리한 과탄산나트륨이므로 관세율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 ④ 수출자 유의사항

- 표백제로 사용되는 과탄산나트륨의 품목분류 오류 가능성
- 과탄산나트륨은 탄산염의 일종으로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물품인 경우 제2836호에 분류되는 물품임
  - 과탄산나트륨은 물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표백제로 사용되는데, 여기에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황산나트륨이나 탄산나트륨(소다회)를 첨가할 수 있음
  - 이 경우, 화학적으로 단일해야 한다는 제29류의 분류기준에 어긋나게 되므로, 기타의 화학물질이 분류되는 제3824호에 분류됨
- 이에 따라, 제시되는 물품이 화학적으로 단일한지 여부가 품목분류의 쟁점이 되며, 동 물품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음
- 제2836호인 과탄산나트륨에 동일한 제2836호의 탄산나트륨(소다회)를 섞는 경우, 화학적으로 단일한 물품이 아니므로 제28류 주 1 규정에 따라 제28류에서 제외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함

## 2) L-리신<sup>6)</sup> 염산염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70706
- 신청물품: L-리신 염산염(L-Lysine monohydrochloride)(CAS 657-27-2)
  - 제시물품 1: L-리신 염산염으로서 FCC, 국제식품규격, 미국약전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
  - 제시물품 2: L-리신 염산염으로서 FCC, 국제식품규격, 미국약전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 결정세번: 제2922.41-0010호, 제2922.41-0090호
  - 동 물품은 리신 염산염(CAS 657-27-2)으로서 산소관능화합물이며, 리신의 염이므로 FCC, 국제식품규격, 미국약전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은 제2922.41-0010호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제2922.41-0090호에 분류함
    - 과거 리신의 염은 일반주해(General Note) 13에 따라 무관세로 수입되었으나, 리신이 Presidential Proclamation 6982 부속서상의 pharmaceutical appendix에서 제외됨에 따라 3.7%의 관세를 부과함(요구충족여부와 무관)

---

6) 라이신이라고도 함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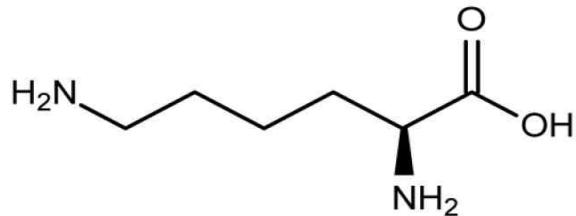
□ 제2922.41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 율 (기본/KORUS)
1000	리신	00			3.7/0
2000	리신의 에스테르	10	Food Chemical Codex, Codex Alimentarius or United States Pharmacopeia 요건을 충족한 것		
3000	리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90	기타		

□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이 분류되며, 제2922.41호에는 리신과 그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이 분류됨

- “산소관능 아미노화합물”은 아민관능에 산소관능(알코올·에테르·페놀·아세탈·알데히드·케톤 등의 관능)을 한 개 이상 함유한 아미노화합물(그리고 이들의 유기에스테르)을 말함
  - 아민관능: 암모니아의 수소 원자를 탄화수소기로 치환한 화합물
  - 산소관능: 알코올·에테르·페놀·아세탈·알데히드·케톤 등의 관능
-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제2905호부터 제2920호까지)을 함유한 아민화합물의 치환유도체인 아미노화합물과 이들의 유기산에스테르 및 무기산에스테르를 말함
- 리신은 아미노산의 하나로서,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의 일종인데, 아래와 같이 아민기(아미노기,  $-NH_2$ )에 산소관능의 일종인 카르복시기( $-COOH$ )을 포함한 분자식을 가지고 있음

### < 그림 2-3 > 리신의 구조



- 우리나라는 리신을 에스테르와 염 등으로 구분하나, 미국은 10단위의 경우 분자구조와 관계없이 특정 관련기관의 요구사항의 충족여부에 따라 품목번호가 구분됨
  - 우리나라는 리신을 리신, 리신의 에스테르, 리신·리신에스테르의 염으로 구분하고 있음
    - 리신의 에스테르는 리신의 수소원자를 탄화수소기(R)와 치환한 것이며, 리신의 염은 리신(산, acid)을 염기성 물질과 중화한 후의 잔재물임
  - 미국은 리신의 성분별로 구분하지 않으며, 단일하게 분류<sup>7)</sup>

### (3)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리신 황산염(L-Lysine sulphate)
  - 리신 황산염(65%), 균체 9%, 미반응원료 및 부산물 26%로 구성된 담갈색과립상의 것으로 보조사료로 사용됨
  - 제조공정
    - 균체 → 멱이(액화포도당, 황산암모늄, 당밀, 황산마그네슘, 인산, 옥수수 가루 가수분해물 등) 투입 → 균체가 제공된 멱이를 소비하여 리신황산염을 생산 → 브로드(균체가 리신황산염 생산을 완료한 상태의 액) → 수분제거 → 과립상

7) 특정 기관의 요건을 충족한 것과 기타의 것으로 구분하고 있음

- FCC(Food Chemical Codex): 미국 식품용 화학약품집. 미국에는 식품보호위원회(Food Protection committee)가 있으며 여기에서 FCC를 제작하고 있음

- 국제식품규격(Codex Alimentarius): 소비자의 건강보호 및 공정한 식품무역의 확보를 목적으로 FAO(식량농업기구)와 WHO(세계보건기구)가 합동으로 설립

- 미국약전(USP, United States Pharmacopeia): 의약에 사용되는 중요한 의약품에 대하여 제법, 성상, 성능, 품질 및 저장방법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서

□ 결정세번: 제2922.41-3000호

- 관세율표 제29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류에 분류되는 화학적으로 단일인화합물에는 불순물을 함유한 경우도 있다. 불순물은 공정에 관련된 특정 요인에 의한 결과이며, 불순물의 예로는 변환되지 않은 초기의 원료, 초기의 원료에 기초함되어 있는 불순물, 제조공정중에 사용된 시약, 부산물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리신황산염 약 65%에 균체와 미반응원료 약 35%가 함유된 물품이나, 리신황산염을 정제(균체여과)하지 않는 이유는 순수한 리신황산염의 특성상 균체를 제거할 경우 정상적인 형상의 제품으로 생산이 불가능하므로 단지 리신황산염을 과립상으로 제조하기 위함임
  - 사료관리법에서 리신황산염은 “황산리신( $C_{12}H_{28}N_4O_4 \cdot H_2SO_4$ ) 으로서 62.5%이상과 리신황산염 제조시 원료로 사용했던 발효부산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본품에 함유된 균체와 미반응원료는 제29류에서 설명하고 있는 불순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본품은 불순물을 함유한 “리신황산염” 이므로 제29류 주1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으므로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2922.41-3000호에 분류함

#### ④ 수출자 유의사항

- 의약품무역 협정(Agreement on Trade in Pharmaceutical Products)  
비적용 물품
  - 미국 관세율표(HTSUS 2016)에 따르면 동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일반세율(General)이 3.7%이며, 특혜세율(Special)이 0%임
    - 특혜세율에는 다양한 국가와 체결한 FTA협정 뿐만 아니라, 해당 수입물품이 의약품무역협정 대상품목인 경우에도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과거 리신은 의약품무역협정 부속서 물품으로서 0%의 특혜세율을 받았으나, 현재는 부속서에서 제외되었음
    - 이에 따라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특혜적용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임
  - 특정기관 요건충족여부에 따른 세율차이는 없음
    - HTSUS 10단위상 제2922.41-0010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FCC등 특정기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제2922.41-0090호의 물품인 경우에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3) 플라스틱 연결구류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8088

□ 신청물품: 플라스틱 연결구류

-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연결구류로서 자동차의 엔진블럭에 장착되도록 만들어짐
  - 엔진블럭에 고무호스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로서 호스를 통하여 냉매가 엔진으로 흐를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음. 동 연결구류는 밸브를 장착하고 있지 않으며 고무호스와 별도로 수입됨

□ 결정세번: 제3917.40-0090호

- 동 물품은 자동차용의 것이나 엔진블럭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연결구류로서 제3917.40-0090호에 분류되며 적용세율은 5.3%임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3917.40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율 (기본/KORUS)
0000	연결구류	00	연결구류	
		10	브레이크 호스용의 것으로서 소호 제8701.20호 또는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 제8705호 또는 제8711호용의 것	5.3/2.6
		90	기타	

-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됨
-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제3917.40호의 연결구류 세부구분 없이 규정하였으나,

- 미국은 통계목적상의 10단위 구분에서 차량용의 것은 제3917.40-0010호에 분류하고 기타의 것은 제3917.40-0090호에 분류함
- 미국 차량용의 것이란, 제8701.20호(세미트레일러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제8702호(수송용 자동차), 제8703호(승용자동차), 제8704호(화물자동차), 제8705호(특수용도차량), 제8711호(모터사이클)을 말함
  - 미국의 10단위 품목분류는 관세율에 차등을 두기 위한 것이 아닌, 통계상의 목적임

### ③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 신청물품: 플라스틱 연결구류

- 엔진블럭에 장착되어 엔진에 공급되는 냉각수의 흐름을 제어하는 Cooling System의 Gate역할을 수행하는 WTC(Water Temp Controller)의 Assy의 구성부품인 플라스틱 재질의 Fitting임
- 결정세번: 제8708.99-9000호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 (a)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그리고
      -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 본 물품은 엔진에 공급되는 냉각수의 흐름을 제어하는 WTC(Water Temp Controller)의 Assy의 구성부품으로서 차량전용으로 설계·제작된 물품임
    - 따라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기타 부분 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

#### ④ 수출자 유의사항

- 플라스틱 연결구류: 미국과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상이사례
  - 동 물품은 엔진블럭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연결구류로서 미국에서는 플라스틱 연결구류로 보아 제3917호에,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용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708호에 분류함
  - 엔진블럭용 플라스틱 연결구류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어야 함
    - 우리나라는 동 물품이 엔진블럭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인 것으로 보아 제8708호에 분류하였으나,
    - 미국은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3917호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한 것으로 판단됨
- 미국 수출시 엔진블럭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필요 있음
  - 동 물품은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차이가 2.6%(2016년도 기준) 존재하는 품목임
    - 제3917.40-00호: 한-미 FTA 적용시 2.6%, 일반세율 5.3%
    - 제8708.99호: 한-미 FTA 적용시 0%, 일반세율 0~2.5%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자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사전심사사례 와 같이 플라스틱 연결구류로 품목분류를 받는 것보다, 자동차용 부분 품으로 품목분류 받는 것이 유리함
  - 미국 사전심사를 이용하여 동 물품이 엔진블럭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을 증빙서류 제시를 통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음

## 4) 목재포장용 시트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4349
- 신청물품: 목재포장용 시트(Lumberwrap sheeting)
  - 합판 등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시트. 시트는 플라스틱 스트립을 직조하여 만들어져 있으며, 플라스틱 스트립은 방직용 섬유직물로 넓이 3.175밀리미터이며 양면이 모두 플라스틱(폴리프로필렌)으로 피복되어 있음
- 결정세번: 제3921.90-1100호
  - 동 물품은 플라스틱의 시트로서 제3921.90-1100호에 분류됨
    - 제39류 해설서에서는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 < 표 2-4 > 관세율표 제39류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 결합물품 분류기준

#####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의 결합 물품

...다음의 물품도 이 류(제39류)에 포함된다.

- (a)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이하의 펠트 또는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된 펠트
- (b)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c)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으로서 15°C~30°C의 온도에서 직경 7mm의 원통돌레에 꺾지 않고는 순으로 감을 수 없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 (d)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제의 판·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

- 동 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의 양면을 완전히 플라스틱으로 피복한 시트모양의 것으로서 제39류 해설서에서 규정한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에 해당함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3921.90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울 (기본/KORUS)]		
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섬유재료가 사용된 것으로서 1,492kg/m <sup>2</sup> 미만의 것	
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 섬유성분이 사용된 것으로서 섬유성분 중 인조섬유가 중량 기준으로 가장 많은 것	
3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11	-- 플라스틱 중량이 70%이상인 것	4.2/2.1
4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15	-- 기타	6.5/0
10	경질의 것	19	- 기타	5.3/0
20	연질의 것		섬유재료가 사용된 것으로서 1,492kg/m <sup>2</sup> 이상의 것	
50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21	- 섬유성분이 사용된 것으로서 섬유성분 중 면이 중량기준으로 가장 많은 것	6.5/3.2
10	폴리메틸메타클레이트로 만든 것	25	- 섬유성분이 사용된 것으로서 섬유성분 중 인조섬유가 중량 기준으로 가장 많은 것	6.5/0
90	기타	29	- 기타	4.4/2.2
60	폴리카보네이트 · 알카드수지 · 폴리아릴에스테르나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기타	
1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40	- 연질의 것	4.2/2.1
2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50	- 기타	4.8/2.4
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90	기타			
70	셀룰로오스나 그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10	재생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2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로 만든 것			
3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90	기타			
90	기타			
10	폴리비닐부티랄로 만든 것			
2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3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40	페놀수지로 만든 것			
5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 제3921호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이 분류됨
- 우리나라는 중합체의 종류별로 구분하나, 미국은 이와 관계없이 제곱미터당 중량에 따라 구분하고, 이어 가장 많은 중량을 차지하는 재질 등으로 구분
  - 우리나라는 에틸렌, 프로필렌, 스티렌, 염화비닐,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셀룰로오스 및 기타로 구분
  - 미국은 대분류 단위로 제곱미터당 중량이 1,492kg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고, 하위에서 가장 많은 중량을 차지하는 것이 인조섬유, 식물성 섬유, 면인지에 따라 구분하며 또한 플라스틱의 함유중량(70%)에 따라 구분
  - 미국은 수입세번에 따라 일반세율 및 특혜세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품목분류가 중요

### ③ 동일 및 유사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①폴리에틸렌 시트, ②폴리에틸렌 타포린
  - ①의 물품: 시폭 2.5mm의 무색투명 스트립을 위·경사로 직조한 평직 물에 폴리에틸렌제 청색수지로 양면을 코팅한 후 롤상으로 감은 폴리에틸렌제의 시트(롤상의 것). 폭 114cm, 두께 0.13mm. 타포린의 원단
  - ②의 물품: 위의 폴리에틸렌제의 시트를 폭 약 171cm, 길이 약 237cm로 재단 및 가장자리를 재봉 마무리한 후 아이릿을 부착한 타포린. 주로 목재, 수영장 등 덮개로 사용
- 결정세번: ①제3921.90-1000호, ②제6306.12-0000호
  - ①의 물품: 관세율표 3921호의 용어에서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1부 주1.아. 및 제59류 주2.가.(3)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로 양면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물품(육안으로 확인 가능함)”은 제39류로 분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①의 물품은 분석결과 “폴리에틸렌제의 기타 쉬트”로 확인된 물품이므로 HSK 3921.90-1000호로 분류함.
- ②의 물품: 관세율표 제6306.1-호 소호의 용어에서 “타포린, 천막 및 차양”이 규정되어 있고, 동 해설서 제 6306호 (1)에서 “타포린은 노천이나 선박, 화물차량 등에 화물을 적재할 때 우천 등의 악천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덮는 것이다.
- 이들은 일반적으로 인조섬유의 직물(도포하였거나 도포하지 아니한 것) 또는 중후한 캔버스(대마.황마.아마 또는 면)로 만들어져 있다. 캔버스로 만든 타포린은 보통 타르나 화학적인 처리로서 방수 또는 방부 가공을 한다.
- 타포린은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의 쉬트상으로 되어 있으며 감쳐져 있고 아이릿, 코드, 스트랩 등이 부착될 수도 있다. 타포린은 특수한 형태(예: 건초더미. 소형선박의 갑판. 화물차량 등의 덮개)로 되었다 할지라도 평판상으로 되어 있는 한 이 호에 역시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3. (가)호에 의하면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물품명으로 게기되어 있는 것은 종류로 게기되어 있는 것보다 더 한정적인 의미라고 해설하고 있음. 따라서 ②번 물품은 “타포린”으로서 타포린이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보다 더 협의로 표현된 물품명이므로 통칙 3. (가)호의 규정에 의거 HSK 6306.12-0000호로 분류함

#### ④ 수출자 유의사항

- 플라스틱 시트는 제39류, 타포린 용도(제품의 것)로 사용되는 것은 제63류로 분류함에 유의
- 동 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를 플라스틱으로 피복한 스트립 형상의 것을 재료로 하여, 시트상의 것으로 만든 물품임

-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는 공통적으로 플라스틱 스트립으로 만든 시트상의 물품은 제3921호에 분류하여 플라스틱제의 시트로 보는 것에는 이견이 없음
- 그러나 플라스틱 시트를 재단하고, 가장자리를 마무리하고, 아이릿을 부착하여 ‘타포린’으로 만들게 되면 이것은 제6306호의 타포린으로 분류하게 됨
- 관세율표 제11부 주7에 따르면 ‘제품으로 된 것’ 이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표 2-5 > 관세율표 제11부 주7(제품으로 된 것의 정의)**

- |   |
|---|
| 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   |
| 나. 봉제나 그 밖의 가공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간사를 절단함으로써 단지 분리만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예: 더스터(duster) · 타월 · 탁상보 · 정사각형 스카프 · 모포]   |
| 다. 일정한 크기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최소한 하나의 가장자리를 눈에 뜨일 정도로 끝을 가늘게 하거나 압착하여 열봉합하고, 다른 가장자리들은 이 주의 그 밖의 다른 목에서 규정한 대로 처리를 한 것(열 절단이나 그 밖의 간단한 방법으로 그 절단된 가장자리가 풀리지 않도록 된 직물은 제외한다) |
| 라.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이나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직물의 절단된 가장자리를 감치거나 그 밖의 단순한 방법으로 풀리지 않도록 한 것은 제외한다)  |
| 마. 일정한 크기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드로온 드레드워크(drawn thread work)를 한 것  |
| 바. 봉제 · 풀칠 · 그 밖의 방법으로 이어붙인 물품[동종의 직물류를 두 가지 이상 끝과 끝을 이어 붙인 천과 두 가지 이상의 직물류를 적층하여 만든 천(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제외한다]  |
| 사. 특정 모양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분리된 부분이나 특정 길이의 여러 모양으로 제시되었는지에 상관없다)  |

- 플라스틱제의 시트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장자리를 재단하고, 다른 물품을 부착하는 등 ‘제품’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제61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하는 바,
- 수출되는 플라스틱제의 시트가 제품으로서의 특징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5) 고무호스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6361

□ 신청물품

- ①번 물품: 연질고무(EPDM, Ethyl Propylene Diene Monomer)에 다양한 연결구류가 부착된 복합물품

- 폴리에스테르로 보강되어 있으며, 스테인리스 브라켓이 부착되어 있어 자동차의 엔진 및 오일쿨러 사이를 연결하고 냉매(coolant)를 이송하는 역할을 수행. 복합물품의 형상을 한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고무호스에 있음

- ②번 물품: Water Hose Inlet은 실리콘고무제의 호스로서 스테인리스 재질의 클램프, 브라켓과 조립되어 있음

□ 결정세번: ①제4009.32-0050호, ②제8708.99-8180호

- 상기 두가지 물품은 고무제의 호스연결구류로서 자동차용의 부분품으로 분류되거나(제8708호) 재질에 따라 고무제의 호스(제4009호)로 분류될 수 있음

- ①번 물품은 자동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고무제의 호스로 보아 제4009호에 분류하며,

- ②번 물품은 자동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제8708호에 분류함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708.99호 및 제4009.32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 율 (기본/KORUS)
10	섀시		농업용도에 적합한 트랙터의 부분품	
10	제8701호의 것	03	- 고무를 포함한 진동제어물품	0
20	제8702호의 것	06	- 볼베어링을 포함하는 더블플랜지 휠 허브	0
30	제8703호의 것	16	- 파워 트레인의 기타 부분품	0
40	제8704호의 것	23	- 기타	0
50	제8705호의 것		기타 트랙터의 부분품(로드 트랙터 제외)	
9000	기타	27	- 고무를 포함한 진동제어물품	0
		31	- 볼베어링을 포함하는 더블플랜지 휠 허브	0
		41	- 파워 트레인의 기타 부분품	0
		48	- 기타	0
			기타	
		53	- 주조용의 것	0
			- 기타	
		55	-- 고무를 포함하는 진동제어물품	2.5/0
		58	-- 볼베어링을 포함하는 더블플랜지 휠 허브	2.5/0
			-- 기타	
		68	--- 파워 트레인의 기타 부분품	2.5/0
		81	--- 기타	2.5/0

-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을 분류

- 우리나라는 크게 섀시와 기타로 구분한 반면,
- 미국은 농업용 트랙터의 것(제03호~23호), 로드 트랙터를 제외한 트랙터의 것(제27~48호), 기타의 부분품(제53~81호)으로 구분하며, 하위구분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음

한 국		미 국		세 율 (기본/KORUS)
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2.5/0
		20	브레이크 호스로서 제8701.20호,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 제8705호, 제8711호 차량의 것	
		50	기타	

- 제4009호는 고무로 만든 관 · 파이프 · 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 · 엘보(elbow) · 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가 분류됨
- 우리나라에는 제4009.32호(방직용 섬유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이하 하위 구분이 없으나, 미국은 10단위에서 차량용의 것과 기타용으로 구분

### ③ 유사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고무호스
  - 내부에 방직용 섬유를 보강한 가황한 연결고무(EPDM)제 호스를 “ㄱ”자 형상으로 성형한 것으로서, 꺾인 부분에 연결의 셀룰러 고무가 감겨있고 금속제 클립 2개를 부착한 것(크기: 외경 약 13.8mm, 내경 약 6.8mm)
    - 용도: 냉각수 이송 호스
- 결정세번: 제4009.31-0000호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III)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제17부 분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른 호, 특히 제4009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소호 제4009.31호에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고무로 만든 호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경질고무를 제외한다)만으로 된 관·파이프 및 호스와 예를 들면, 한 개 이상의 방직용 섬유직물의 플라이어스(plies) 또는 평행으로 된 1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 또는 금속사를 고무속에 삽입함으로써 이루어진 적층에 의해 보강된 가황한 고무의 관·파이프 및 호스(고무호스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 이러한 관·파이프 및 호스는 얇은 직물제 덮개나 짐프 또는 플레이트한 방직용 섬유사로 피복된 것도 있다. 또한 이들 물품에 내부 또는 외부 나선형의 와이어를 부착한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가황한 고무로 만든 관으로서, 관세율표 제4009호에 ‘고무제의 관·파이프 및 호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류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고무제의 호스로서 내부에 방직용 섬유만으로 보강하였으며 연결구류가 부착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009.31-0000호에 분류함

#### ④ 수출자 유의사항

- 자동차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른 품목분류 구분
  - 상기물품은 고무제의 호스연결구류로서 자동차 전용 여부에 따라 자동차용의 부분품으로 분류되거나(제8708호) 재질에 따라 고무제의 호스(제4009호)로 분류가능
    - 제17부 총설에서 차량용의 부분품 분류기준을 검토해야 할 것임.

#### < 표 2-6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차량용 부분품 분류기준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 (b) 제86류~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

- 미국 사례② 물품의 경우, 고무호스 외에 다양한 연결구류를 갖추고 있어 차량에 전용되도록 만들진 것으로 판단되어 제8708호의 차량용 부분품으로 분류
- 이에 따라 미국 수출시, 해당 부분품이 차량용으로 전용되도록 설계되었음이 증명된다면 제8708호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고무제품이 분류되는 제4009호로 분류될 것임
  - 제4009호의 고무호스와 제8708호의 자동차 부분품 모두 세율이 동일(2.5%)하여 세율차이에 따른 실익은 없으나,
  - 원산지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품목분류에 따른 비원산지 재료의 원산지충족여부가 구분되므로 품목분류의 중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할 수 있음

## 6) 오일 실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6161

□ 신청물품: 오일 실

- 플라스틱(PTFE; polytetrafluoroethylene), 고무(AEM; ethylene-acrylic rubber), 금속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오일 실. 1번 오일실은 PTFE로 크랭크샤프트에, 2번 오일실은 AEM으로 엔진블럭에 부착되도록 구성됨. 엔진에 부착하도록 하는 알루미늄 브라켓이 함께 제시
- ※ PTFE: 폴리테트라 플루오로에틸렌. 불소수지로 테프론(듀퐁사), 플루온(ICI사) 등의 상품명이 있음
- ※ AEM: 에틸렌아크릴고무. 에틸렌, 메틸, 아크릴레이트에 카르복실산기를 가진 가교단량체와의 삼원 공중합체

□ 결정세번: 제4016.93-1020호

- 동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오일 실과 고무제의 오일 실로 구성된 복합 물품이므로, 통칙 제3호 나(GRI 3(b))에 의하여 분류되어야 함

#### < 표 2-7 >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생략)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u>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u> 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종에서 <u>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u> 로 분류한다.

- 동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오일의 누수를 막는 오일 실로서의 기능인데, 플라스틱 오일 실과 고무제의 오일 실 모두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어느 하나의 물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 이에 따라 통칙 제3호 나를 적용할 수 없으며, 다음 적용순서로 통칙 제3호 다를 적용함. 플라스틱(제3926호) 및 고무(제4016호)중 마지막 호인 고무제의 물품으로 보아 제4016.93-1020호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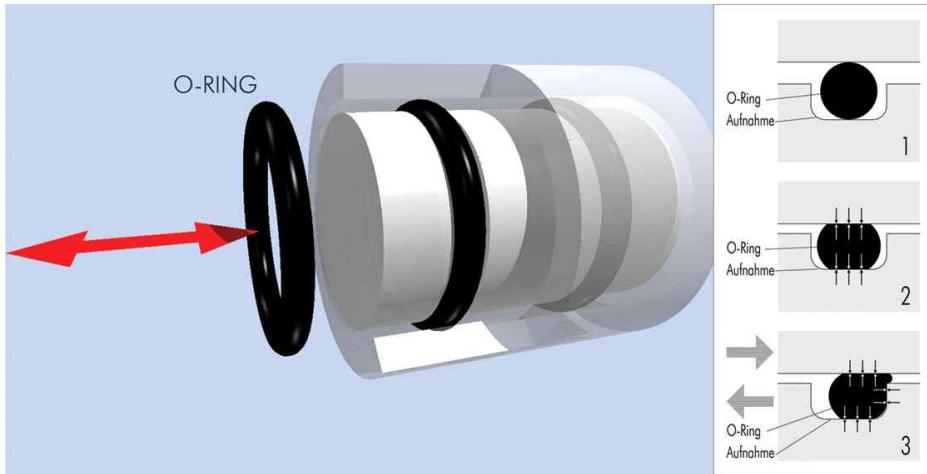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4016.93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 울 (기본/KORUS)
0000	개스킷 (gasket) · 와셔 (washer) · 그 밖의 실(seal)	10	제87류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것	2.5/0
		50	기타	2.5/0

- 제4016호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이 분류됨
- 우리나라는 제4016호의 하위구분이 없으나, 미국은 제87류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
  - 미국의 경우, 하위 구분으로서 오링(Oring) 및 오일 실(Oil Seal), 기타로 추가 구분됨
  - 오링이란 물 따위가 새는 것을 막는 데에 쓰는 원형의 고리이며, 오일 실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나, 링이 아닌 원판 고리 모양임

< 그림 2-4 > 오링(Oring) 의 구조



### ③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참조번호: 2355

□ 신청물품: 오일 실

- 고무(상대물에 장착되고, 내측의 Lip은 작동시 탄력성 유지 및 텐션을 가짐)와 철강(제품 형상 유지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한 보형물)의 링 형상의 복합물로서 이물질 유입 및 누유를 차단하기 위한 물품임

- 용도 : 자동차 엔진의 clutch pulley에 부착

□ 결정세번: 제4016.93-0000호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 4016호)” 을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 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전 호까지 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고 해설하고 있으며, 이 호에는 “가스켓 · 워셔 및 기타 시일” 을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40류 총설에서 이 류의 범위를 “이 류에는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원료 또는 반제품상태의 고무(가황 또는 경질의 여부불문) 및 전부가 고무로 되어 있거나 또는 주요 특성이 고무로 부터 유도된 제품(이 류 주2의 제외품목은 제외)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보강재에 밀봉기능이 있는 고무를 조립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 ④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참조번호: 5765

□ 신청물품: 오일 실

- 아크릴수지(ACM) 내부에 철강제 원형의 프레임과 스프링이 보강되어 있는 링형상의 실(seal)[크기: 약 39mm, 내경 약 18mm, 두께(내경부위 약간 돌출되어 있음, 약 10mm)]
- 용도: Engine Head Cover에 장착되어 엔진내부의 누유방지
- 결정세번: 제8487.90-9010호
-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 중 다음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비전기식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중략) 이러한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오일실링이 포함된다.
- 일반적으로 횡단면이 원형인 이들 링은 움직이는 부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구조가 대단히 간단하다(예를 들면 경질의 고무링과 금속보강재를 별개나이즈드하여 조립한 것).
- 이들 물품은 수많은 기계 및 기기에서 연결 표면을 밀폐하여 오일 또는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는데 혹은 먼지 등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아크릴수지(ACM) 내부에 철강제 원형 프레임이 완전히 보강된 형태의 것으로 엔진 헤드커버에 장착되어 누유를 방지하는 오일 실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87.90-9010호에 분류함

## ⑤ 수출자 유의사항

### 오일 실: 미국과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상이사례

- 오일 실 품목분류에 있어서 미국은 가황한 고무제품으로, 우리나라는 기계류의 부분품으로 분류
  - 미국의 품목분류 과정을 살펴보면, 고무와 플라스틱, 금속으로 이루어진 오일 실의 분류에 있어서 해당 물품이 기계류의 부분품(제16부)의 물품인지 보다는 재질이 고무(제40류)인지 플라스틱(제39류)인지를 검토하고,
  - 오일 실이 복합물품이므로 본질적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고무와 플라스틱 모두 본질적 특성이 있으므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고 다목을 적용하여 마지막 호인 제4016호로 분류함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물품이 기계류의 부분품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고무제의 경우 제16부 주1 가목에서 ‘가황한 고무의 그밖의 제품’을 제외한다고 하여 제4016호로 분류하고, 플라스틱의 것은 제외규정이 없어 제8487호에 분류함
- 오일 실은 기계류의 부분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는 동시에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기계류의 부분품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견해 차이가 존재함
- 따라서 동 물품 수출자는 오일 실이 기계류의 부분품으로서의 특징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특히 제8487호)에 분류되거나 또는 재질에 따라 고무(제4016호)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주의해야 함

## 4. 소결

- 화학제품 품목분류는 크게 화학 원재료 품목분류(제28류 · 제29류)와 석유화학제품(제30류부터 제40류까지)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로 구분됨
  - 화학 원재료 품목분류의 경우, 비교적 분류기준이 명확하고 호의 용어가 구체적이므로 우리나라와 미국간 품목분류로 인한 사전심사의 차이가 없음
  - 그러나 석유화학제품은 용도가 다양하고 주 용도로 인한 품목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간 상이한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사례 중 플라스틱 연결구류, 오일 실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품목분류가 상이한 ‘상이사례’로 분류할 수 있음
- 품목분류 상이사례는 품목분류 자체로 인한 통관애로에 그치지 않고, 원산지결정기준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FTA특혜세율 적용여부에도 관련성이 존재
  - 품목분류 상이사례로 인한 원산지 검증 및 특혜세율 배제 등, FTA활용에의 파급효과는 무시할 수 없음
    - 특히 석유화학제품이 주로 분류될 수 있는 자동차 부분품의 경우, ‘전용 또는 주로 사용’의 기준이 국가마다 달라질 수 있어, 미국 자동차 부분품 주요 수출국인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자동차 부분품 수출자 및 관세당국은 석유화학제품 품목분류 상이사례를 분석 · 배포하여 미국의 품목분류 견해차이로 인한 FTA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할 것임

## III. 섬유산업

### 1. 산업동향

#### 가. 생산동향<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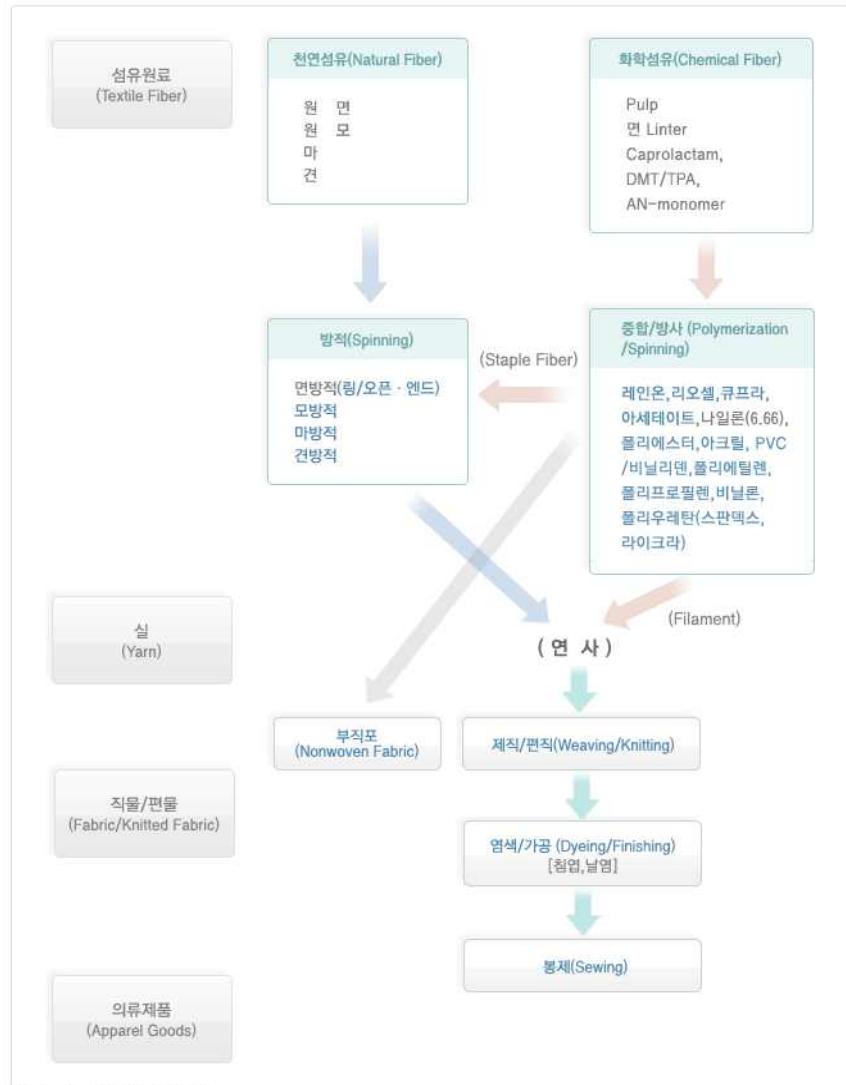
##### 1) 우리나라 생산동향

-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은 원자재의 1/3을 해외에서 수입, 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들고 그 완제품의 2/3를 해외로 수출하는 해외의존형,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임
- 국내 섬유패션산업은 원사, 직물, 염색가공, 패션의류 등 Up Stream에서 Down Stream까지 균형된 생산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기술도 고르게 발달됨
  - 의류용의 경우 중·저가 범용품보다 고부가가치 기능성 섬유, 친환경섬유에 치중하는 한편 산업용섬유 등 신섬유 개발 및 생산 확대를 위한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있음
  - 업종별로는 봉제산업 진출이 활발하며, 최근에는 화섬대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
- 섬유패션산업 업체 수는 2014년 기준 47,408개로 제조업 대비 11.9% 차지, 고용인원은 305천명으로 7.7% 점유
- 우리나라 섬유 기술력은 세계 4위로 스페인, 타이어코드 등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또한 다수 보유

---

8)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6 섬유패션산업 통계

< 그림 3-1 > 섬유산업의 생산계통도



자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화섬 생산 설비를 보유, 폴리에스테르 섬유 생산이 압도적으로 많음
  - 국내 합성섬유 생산 설비는 1,916천 톤의 규모이며, 주요 합성섬유 생산량은 1,529천 톤으로 전세계 생산량의 2.7% 비중을 차지

- 2015년 생산량 기준 전체 화학섬유의 92%가 폴리에스테르 섬유이며, 나일론과 아크릴이 그 뒤를 이음
- 그러나 최근 화섬·교직물 경기 불황으로 인한 원자 수요 감소, 중국과 인도산 원자 수입 급증, 달러대비 원화 약세, 중국 경기 악화로 인한 對 중국 수출 부진 등의 이유로 국내 화학섬유 생산이 위축됨

□ 면방산업과 모방산업은 전년동기대비 생산량 감소

- 방적사의 경우 '16년 1~3월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11.1% 감소한 55,462톤 기록
- 세계 방적설비 과잉과 면제품 수요 감소, 국내 방적설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국내 방적사 생산 감소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소모사의 경우 '16년 1~3월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10.9% 감소한 1,456톤을 기록

## 2) 미국 생산동향

- 미국은 슈퍼섬유, 나노섬유를 비롯한 산업용섬유 제조분야에서 세계 1위 수준임
- Dupont(아라미드), Gore-tex(고어텍스), Invista(스판덱스) 등 미국의 주요 기업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미국은 정부 부처별로 섬유산업 관련 R&D를 수행
    - 국방부의 경우 탄소나노튜브 및 고기능성 섬유화이버, 웨어러블 센서 군복 등을 개발
    - 새로 출범한 '혁명적 섬유직물제조혁신기구'는 초경량, 내연 소재에서부터 강화섬유 및 전자 센서 탑재 섬유에 이르는 혁신적 섬유와 직물 개발을 위해 7500만 달러의 연방정부 예산과 2억 5000만 달러의 민간 기금을 조성
- 미국의 원면 생산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3% 차지

- 미농무성(USDA)에 따르면, 면화산업은 면 농작에서 섬유산업에 이르기까지 연간 200,000명을 고용, 250억 달러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음
  - 미국 주요 면 생산지는 텍사스, 조지아,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등 17개 남부 지역이며, 미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대표적인 면화 품종은 육지면화(Upland Cotton)임
  - 2015년 미국은 재배지 감소와 폭우로 인한 작물 피해로 약 290만 톤의 원면을 생산하였으나, 미농무성(USDA)은 2016년 미국의 원면 생산량이 310만톤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측함 (2016년 글로벌 소비량은 약 2390만 톤으로 추정)
  - 미국의 제직 설비는 40,958대로 한국(43,172대)보다 적은 규모지만, 면직기(29,000대) 설비 규모는 한국(262대)을 상회
- 미국의 화학섬유 생산 설비는 2,453천톤으로 세계 6위이며,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임
- 2014년 기준 미국의 합성섬유 생산량은 2,026천톤으로 전 세계의 3.6%의 비중을 차지하며 64%가 폴리에스테르 섬유임
  - 나일론의 경우 미국 내에서 폴리에스테르 보다 생산 비중이 적지만 전 세계 1위 나일론 생산국인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생산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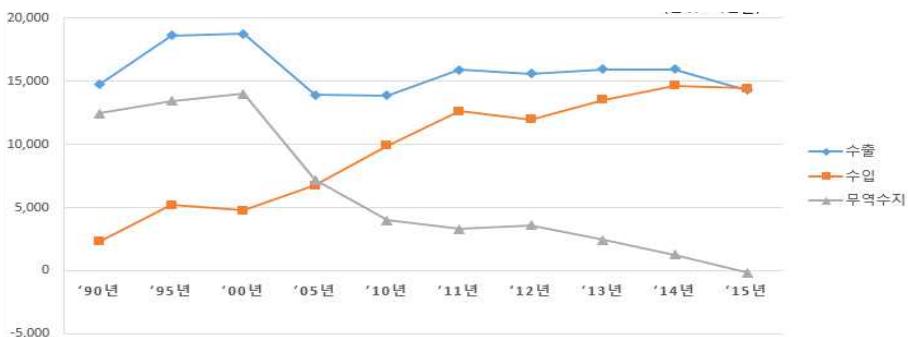
## 나. 수출동향

### 1) 일반 수출동향

-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섬유 수출국으로 2014년까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의류의 수입 증가로 2015년도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

< 그림 3-2 > 우리나라의 섬유류 수출입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2016년 3월 기준 섬유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1% 감소한 1,190백만 달러, 수입은 12.0% 증가한 1,221백만달러로 무역수지 31백만달러 적자 기록
- 의류는 중국경기 둔화, 부분품·부속품 해외조달 증가, 대일 수출환경 악화 등에 기인하여 전년동기대비 3.4% 수출이 감소한 3억 99백만달러를 기록
- 직물의 경우 주요 수출 품목인 편직물, 기타직물, 인조장섬유직물 등이 감소하였으며, 섬유제품은 기타섬유제품이 호조세를 보이며 수출 증가
- 면사는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 악화와 면사 가격 하락으로 전년대비 수출액이 23.9% 감소한 4,320만달러를 기록
- 화학섬유의 경우 수출량은 284.4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하였으나, 수출액은 수출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8.0% 감소한 517.2백만달러를 기록

## 2) 對미국 수출동향<sup>9)</sup>

- 우리나라의 2015년 對미국 섬유제품 수출금액은 총 13억 달러로서 2014년 14억 달러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 우리나라의 對미국 상위 20대 수출품목 중, 주요 수출품목인 합성스테이플섬유(제5503호)의 수출이 전년대비 9% 감소한 1억7천만달러를 나타냄
    - 그 밖에 수출 감소품목으로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6004호) 20.9%, 합성필라멘트의 직물(제5407호) 24.8%, 기타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6006호) 30.5% 등 주로 기초 편직물 등의 품목의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섬유제품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증가율 두 자릿수를 기록한 품목은 합성필라멘트사(제5402호) 17.3%, 부직포(제5603호) 13.1%, 기타의 모자(제11.2%) 등이 있음
    - 수출감소 품목이 기초 편직물인 반면, 주요 증가품목인 부직포와 기타의 모자 등은 가공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으로 나타남
    - 특히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낸 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 코트(제6110호)는 전년대비 약 31%를 넘는 증가율을 보임

---

9) 對미국 수출동향은 관세율표 제11부(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12부(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의 물품을 기준으로 함

< 표 3-1 > 우리나라의 對 미국 섬유제품 일반수출 상위 20대 품목

[ 단위: 천 달러, % ]

HS 4	품목명	2014	2015	
		금액	금액	증감률
5503	합성스테이플 섬유	188,176	171,174	-9
5402	합성 필라멘트사	108,932	127,818	17.3
5208	면직물	119,226	126,442	6.1
6115	팬티호스, 타이즈, 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	106,635	107,762	1.1
6004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106,379	84,109	-20.9
5903	플라스틱을 침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등	77,852	78,780	1.2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90,669	68,199	-24.8
6005	경편직직물류	67,712	63,905	-5.6
6116	장갑류	60,103	54,354	-9.6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 직물	43,829	53,525	22.1
6006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57,873	40,241	-30.5
5603	부직포	30,906	34,954	13.1
6506	그 밖의 모자	26,375	29,321	11.2
5205	면사	27,495	27,173	-1.2
6110	저지, 풀오버, 카디건, 웨이스트코트 등	20,435	26,819	31.2
5007	견직물	28,777	25,211	-12.4
6307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	21,000	17,102	-18.6
5806	세폭직물 등	14,902	13,457	-9.7
6001	파일 편물	13,805	11,773	-14.7
6104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 양상블, 재킷, 블레이저 등	18,485	11,364	-38.5
	합 계(섬유제품)	1,434,509	1,378,102	

자료: 무역협회

## 2. 주요 통관규제

### 가. 방직용 섬유제품의 가연성 기준

#### □ 개요

- 미국 내 판매되는 모든 의류나 방직용 섬유제품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가연성 시험을 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 가연성이 위험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는 경우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됨

※ 예외 대상 : 모자, 장갑, 신발, 인터라이닝 섬유

#### □ 가연성 시험 절차

- ① 가연성 시험 전, 해당 제품의 직물 표면 타입이 plain fabric<sup>10)</sup>인지 raised fabric<sup>11)</sup>인지 결정
- ② 건조기(desiccator)에서 건조시킨 직물 샘플을 시험 장치에 고정시키고 추를 끼운 뒤 점화 장치 가동
- ③ 타이머에 기록된 연소시간 및 관측 결과를 기록 후, 샘플 5개를 같은 방법으로 시험하여 연소시간의 평균으로 등급 판정
  - 연소시간 : 점화된 불꽃이 샘플을 따라 타고 올라가서 실이 끊어지면 실에 매달려 있던 추가 떨어지고 타이머가 자동 정지 됨

#### □ 가연성 기준 요건

- 샘플 시험 결과 3등급으로 지정 시 가연성 기준 요건 불충족
  - Plain surface fabrics : 평균 화염전파 시간 3.5초 미만
  - Raised surface fabrics : 평균 화염전파 시간 4초 미만
- 샘플 시험 결과 1~2등급으로 지정 시 가연성 기준 요건 충족

10) 파일, 보풀이나 술 같이 표면을 의도적으로 도드라지게 만든 섬유나 실로 만들지 않은 직물

11) 파일, 보풀이나 술 같이 표면을 의도적으로 도드라지게 만든 섬유나 실로 만든 직물

## 나. 직물, 모직, 모피의 라벨링 요건

### □ 개요

- 모든 직물과 모직 제품들은 라벨에 섬유 함유량, 원산지, 그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판매업자 등에 대한 정보 기재가 필수이며, 모피제품은 ‘모피제품 라벨링 규정’(Fur Products Labeling Act)이 적용됨

### □ 직물·모직의 라벨링 요건

#### ① 섬유 함유량

- 직물 또는 모직 규정(Textile or Wool Act and Rules)이 적용되는 제품은 반드시 라벨에 섬유 함유량을 표시해야 함
  - 전체 섬유 중량에 대한 백분율이 높은 순서대로 섬유 이름과 백분율을 기재
  - 하나의 섬유로만 구성된 제품은 “ALL”이나 “100%”로 표시
  - 전체 섬유 중량의 5% 미만인 섬유는 “Other fiber”나 “Other fibers”로 표시
- 직물이나 모직 제품의 허리 또는 손목밴드, 삼각 천 등의 장식, (보온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안감, 적은 양의 장식품, 직물을 엮는 실과 같은 부분은 라벨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 보온을 위해 사용된 안감 및 제품 면적의 15%를 초과하거나 제품 섬유 중량의 5%를 초과하면 별도의 섬유 함유량 표시

#### ② 원산지

- 직물 또는 모직 규정이 적용되는 제품은 반드시 원산지를 라벨에 표시해야 함
  - 수입된 제품 : 라벨에 해당 제품이 가공되고 제조된 국가 표시
  - 미국 재료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 : “Made in U.S.A.” 표시

- 수입 재료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 : 라벨에 가공 및 제조 국가가 미국이라는 내용과 수입된 재료를 사용했다는 것을 명시
- 미국에서 일부, 해외에서도 일부 만들어진 제품 : 모두 명시
- 원산지 표기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관세청(CBP)의 규정
  - 연방거래위원회(FTC) 규정 : 제품이 판매 가능하게 되기 전에는 라벨링을 요구하지 않으며, 마무리 되지 않은 직물제품의 수입은 라벨에 기재되어야 하는 정보들이 기재된 송장이 동반되어야 함
  - 미국관세청(CBP) 규정 : 미완성 제품에도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함
  -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FTC와 CBP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③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자 정보

- 제품의 라벨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등의 회사 이름이나 RN(Registered Identification Number)이 표시되어야 함
  - RN은 연방거래위원회가 미국 내에 있는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판매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발행하는 것으로, 제품의 라벨에는 회사 이름 대신 RN을 사용할 수 있음

#### □ 모피의 라벨링 요건

- 모피제품은 반드시 라벨에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기재해야 함
  - 동물의 이름과 원산지
  -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유통업자 등의 회사 이름이나 RN
  - 수입된 모피제품의 원산지
  - 해당 모피제품에 포함된 직물이나 모직 함유량
  - 모피가 염색·표백·인위적인 채색 등의 처리가 된 경우 해당 내용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라벨에 “Natural”로 표시

### 3. 품목분류사례

#### 가. 상이사례

- 기모한 폴리에스테르 직물을 우리나라에서는 제5903.20호(플라스틱을 침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폴리우레탄의 것)로 분류하였으나, 미국에서는 제5903.90호(기타의 플라스틱을 침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사례출처	수출신고필증-발급요청 원산지증명서 품목번호 상이사례	
물품설명	기모한 백색계 폴리에스테르 직물 일면에 살구색계 폴리우레탄 시트를 적층한 것	
사진		
국가	우리나라	미국
H S	제5903.20호	제5903.90호
분류근거	본 품은 기모한 폴리에스테르 직물 일면에 폴리우레탄 시트를 적층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호의 용어에 의하여 제5903.20호에 분류함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나, 동 물품의 경우 적층한 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라 분류되는 소호를 달리해야 할 것임

## 나. 사전심사사례

- 2015년 미국 관세청에 신청된 우리나라 섬유산업관련 사전심사물품에  
는 다음과 같은 물품을 포함함

순번	HS	품 명
1	5407.69.4010	자카드 직물
2	5512.19.0005	업홀스터리 패브릭
3	5803.00.5000	레노위브 직물
4	6004.10.0085	플라스틱 위편물
5	6116.10.5520	작업용 장갑
6	6307.10.2030	극세사청소포
7	6404.19.9060	신발

### 1) 자카드직물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8626
- 신청물품: 폴리에스테르 자카드직물(커튼용)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자카드 직물로서 에어제트직기(air jet loom)로 직조되었으며, 54.4%의 비텍스처 필라멘트와 45.6%의 텍스처 필라멘트 폴리에스테르 실로 구성됨. 제곱미터당 95그램, 폭 275센티미터의 것
- 자카드직물(jarcard)은 문직물(figured fabric) 중 하나
  - 문직물은 여러가지 조직을 조합하여 복잡한 무늬가 생기게 한 직물로서 도비직물, 자카드직물, 엑스트라얀 직물이 있음
  - 특히 자카드직물은 크고 복잡한 무늬, 곡선무늬가 나도록 편치카드가 있는 자카드직기로 제작된 직물을 말함

< 그림 3-3 > 자카드 직물



□ 결정세번: 제5407.69-4010호

- 동 물품은 에어제트직기로 직조된 자카드 직물로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구성된 합성직물이므로 제5407호에 분류함
- 또한 미국 관세율표 제5407.69-30호의 용어에 따라 센티미터당 실의 수(복합사 또는 케이블사)가 경사의 경우 69이상 142미만인 것, 위사의 경우 31이상 71미만인 것에 해당되므로 동 호에 분류함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5407.69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율 (기본/KORUS)
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4.9/7.4
2000	염색한 것	20	염색한 것	14.9/7.4
3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000	날염한 것	3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센티미터당 실의 수(복합사 또는 케이블사)가 경사의 경우 69이상 142미만인 것, 위사의 경우 31이상 71미만인 것	0
		40	기타	8.5/4.2
		90	날염한 것	14.9/7.4

- 제5407호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제5407.69호에는 ‘그 밖의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기타의 것’을 분류
-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5407.69호 이하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미국은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음
  - 제5407.69-30과, 제5407.69-40호는 모두 서로 다른 색실로 된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이 분류되나,

- 제5407.69-30호는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센티미터당 실의 수(복합사 또는 케이블사)가 경사의 경우 69이상 142미만인 것, 위사의 경우 31이상 71미만인 것이 분류되며,
- 제5407.69-40호는 기타의 것이 분류됨

□ 방직용 섬유에는 단사,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가 있음

- 단사란 스테이플 섬유를 통상적으로 꼬은 것(방적사) 또는 모노필라멘트나 멀티필라멘트로 구성된 사(꼬았는지 여부는 불문)를 말함
- 복합사(연합사)란 둘 이상의 단사를 1회의 접는 조작으로 합연한 사를 말함
- 케이블사란 둘 이상의 사(적어도 한개의 사가 복합사인 경우)가 1회 이상의 접는 과정에서 서로 꼬인 것을 말함

### ③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폴리에스테르 자카드 직물

- 서로 다른 색실(청색, 검정색)의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약 55%)와 검정색의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약 45%)로 직조된 자카드 직물
- 기능 및 용도: 여성용 의류 및 침구류 제조용

□ 결정세번: 제5407.69-3000호

-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6호에는 “그 밖의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작한 직물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옷안감·커튼재료·실내장식용 직물·텐트용 직물·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사목에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날 염직물은 제외한다) - (1)서로 다른 색실이나 동일한 색상의 색조가 다른 실로 조성된 것(구성하는 섬유의 고유 색상은 제외한다)”을 설

명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검정색사와 청색사로 구성된 것으로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약 55%),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약 45%)로 직조된 서로 다른 색실의 자카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7.69-3000호에 분류함

#### ④ 수출자 유의사항

##### □ 실수(Thread Count)에 따른 관세율 차이 주의

- 동 물품은 서로 다른 색실로 구성된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로서 제5407호에 분류되며, 6단위 분류까지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동일한 품목분류 체계를 가지며
- 제5407.69-30호 및 5407.69-40호(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단일한 소호로 되어 있으나, 미국은 다시 2개의 분류구조를 가지는 것이 차이점
  -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실수(Thread count)이며, 이에 따라 센티미터상 위사와 경사의 수가 일정 범위 내의 것은 제5407.69-30호로 분류되어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실수(Thread Count)란 1인치 스퀘어(가로 2.54cm × 2.54cm)안에 교차되는 위사(Weft)와 경사(Warp)의 개수를 의미
  - 보통 실수가 높을수록 촉감이 부드럽고 촉촉하며 밀도가 높아져 품질이 좋은 것으로 인식됨
- 우리나라 수출신고시에는 단일 품목번호로 신고되는 동 물품은 미국에서 정한 별도의 분류기준으로 관세율의 차이가 최대 8.5%까지 존재하므로, 수출물품이 동 기준에 분류되는지 송품장 및 샘플 등에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2) 업홀스터리 패브릭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0126

□ 신청물품: 업홀스터리 패브릭

- 두 장의 직물로 구성된 업홀스터리 패브릭. 전면은 라미네이트(laminated)된 직물이 편물제의 뒷면에 접착제로 고정되어 있음
  - 전면은 헤더(heather)모양이며, 전면부를 구성하는 직물은 9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사와 8% 린넨 스테이플사로 구성됨. 뒷면을 구성하는 편물은 표백되어 있고 100% 폴리에스테르로 구성됨
  - 동 물품은 수입 후 업홀스터리 패브릭으로 사용됨
- 업홀스터리 패브릭(Upholstery fabric): 커튼이나 카펫을 포함하여 벽걸이, 쿠션, 테이블 클로스 등 실내장식품 또는 그러한 장식품에 쓰이는 여러 가지 천 종류를 가리킴

□ 결정세번: 제5512.19-0005호

- 제시된 물품의 상대적인 중량비율, 용도, 수량 및 전면부와 후면부의 직물디자인을 검토한 결과, 동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전면부의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사로 구성된 직물이라고 볼 수 있음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5512.19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 율 (기본/KORUS)
1000	염색한 것	00	기타	
2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5	서로다른 색사로 된 것, 청 데님 또는 자카드직물 제외	
3000	날염한 것	10	청 데님	
			기타	
		15	포플린 또는 브로드천	
			시트의 것	
		22	- 폭이 254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13.6/0
		27	- 기타	
		30	날염된 것	
		35	치즈클로즈	
		40	범포(Duck)	
		45	새틴 또는 트윌 직조	
		50	옥스포드클로즈	
		90	기타	

□ 제5512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함

- 6단위 이하 분류기준에 있어 우리나라는 3개의 하위구분을 가지는 반면, 미국은 11개의 분류기준을 가짐
- 우리나라에는 단시 염색한 것(Dyed), 서로 다른 색실로 한 것, 날염한 것(Printed)의 3가지로 구분하나,
- 미국은 보다 세분화된 하위구분을 가지고 있음
  - 데님: 3올이나 4올의 능직물로서, 경사에 동일한 하나의 색실을 사용하며, 위사에 미표백·표백·회색이나 경사의 색상보다 짙은 색실을 사용하는 직물로서 경사를 표면으로 한 서로 다른 색실의 직물을 말함

- 치즈클로즈(Cheese Cloth):<sup>12)</sup> 치즈, 버터, 육류 등의 포장에 쓰이는 평직의 얇은 면직물. 용도나 마무리 방법에 따라 스모키트 네트, 가제, 스크림, 타바코 클로스, 크리놀린 등으로도 불린다. 가공천은 커튼, 침구, 심지 등에 이용되며 캐주얼 웨어 등에도 사용됨
- 범포(Duck): 세일 클로스, 또는 덕, 캔버스라고도 함. 본래는 둑에 사용되는 천인데, 현재는 두꺼운 면직물로 산업용으로 폭넓게 쓰임. 용도는 차일·스니커·천막 등임
- 새틴(Satin): 경사(經絲:날실) · 위사(緯絲:씨실)의 조직점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직물의 표면에 경사 또는 위사가 많이 나타나게 하는 직물
- 옥스포드클로즈(Oxford Cloth): 셔츠감의 일종. 베튼다운 셔츠의 대표적 소재로 널리 알려져 있음

### ③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 신청물품: 적층 직물

- 흑색 직물(겉감-나일론 필라멘트사 약 88%와 폴리우레탄 필라멘트사 약 12%)에 폴리우레탄 수지와 접착제를 도포하고 기모가공한 흑색 편물(안감-폴리에스테르와 폴리우레탄)을 적층한 직물

- 용도 : 의류 제조용

#### □ 결정세번: 제5407.42-0000호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4호에 “그 밖의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되고 있음

- HS해설서 제11부 총설에 “2 이상의 상이한 직물의 조직으로 조성된 제품(제5811호의 제품은 제외한다)이 봉재, gumming 등에 의하여 겹 붙여진 경우에는 통칙3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직물과 편물을 적층한 물품으로 의류 제조에 사용되므로 겹

---

12) 네이버 지식백과

감으로 사용되는 직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나일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염색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5407.42-0000호에 분류함

#### ④ 수출자 유의사항

- 둘 이상의 상이한 직물의 분류는 본질적 특성에 따름
- 방직용 섬유재료는 ①방적이전의 단계 또는 방적과정, ②꼬임과정, ③직조과정 단계에서 혼합됨
  - 이러한 물품이 2종 이상의 상이한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물품은 최대 중량을 가진 방직용 섬유로 된 물품으로 분류됨
- 그러나 대상 물품이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직물의 조작으로 조성된 제품, 즉 직물과 직물이 봉재, 접착(gumming) 등에 의하여 겹 붙여진 경우에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istic)에 따라 분류해야 함
-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와 같이 직물과 편물이 접착되어 하나의 완제품을 구성하는 섬유제품의 분류는 해당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알아야 정확한 품목분류가 가능
  - 사례와 같이 ‘직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면 제50류~제55류에 분류될 것이나, ‘편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면 제60류에 분류되어야 할 것임
  - 직물 또는 편물제품의 경우 최대 25%까지 관세가 있는 민감품목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품의 용도, 기능, 재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3) 레노위브직물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6875

□ 신청물품: 가구제조용 레노위브직물

○ 제시된 직물은 레노위브직물(leno weave fabric)으로서, 텍스처드 폴리 에스테르 복합사가 30.1%, 모노필라멘트사가 69.9%이며, 제곱미터당 중량이 415그램인 물품

- 를 상태의 것으로서 폭이 54인치(137.16 센티미터)이며, 의자의 등받이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물품

□ 결정세번: 제5803.00-5000호

○ 거즈라고도 불리는 레노위브직물은 HTSUS 제58류의 주3에 규정되어 있음

- “거즈란 그 조직의 전부나 일부에서 지경사(standing thread)와 익경사(crossing thread)로 구성되며, 익경사가 지경사를 반회전, 1회전이나 2회 이상의 회전을 하면서 교전하거나 교착하여 고리(loop)를 만들고 이 고리(loop)에 위사(weft thread)가 통과함으로서 짜인 직물을 말한다.”

- 신청인은 동 직물이 제5407호의 필라멘트 직물이라고 하였으나, 물품의 외관상으로 보아 동 물품은 레노위브직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제5803호에 분류함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5803.00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 울 (기본/KORUS)
0000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직물은 제외한다]	10	면의 것	0
			기타 섬유재료의 것	
			- 양모	
		20	-- 태피스트리 직물 및 업홀스터리직물로서 제곱미터당 중량 140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7/0
		30	-- 기타	16.5/0
		40	- 식물성 섬유(면 제외)의 것	0
		50	- 인조섬유의 것	0
		90	기타	0

- 제5803호에는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직물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 우리나라는 제5803.00호 이하 세부구분 없이 규정하였으나, 미국은 크게 면과 기타 섬유재료의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기타 섬유재료는 다시 양모, 식물성 섬유, 인조섬유, 기타 등으로 재질별로 구분함

- 특히 미국은 양모로 된 거즈를 다시 두가지 물품으로 구분하면서, 태피스트리 직물 및 업홀스터리직물로서 제곱미터당 중량 140그램을 초과하지 않은 것(제5803.00-20호)과 기타의 것(제5803.00-30호)로 구분함

## ③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블라인드 제조용 거즈

- 두 경사가 서로 회전하면서 교착하여 고리를 만들고 이 고리에 위사가 통과함으로써 짜여진 거즈. 용도 : 블라인드 제조용
- 결정세번: 제5803.00-0000호
- 관세율표 제5803호에는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표의 제58류 주 제3호에서 “제5803호에서 “거즈”란 그 조직의 전부나 일부에서 지경사와 익경사로 구성되며 익경사가 지경사를 반회전, 1회전이나 2회 이상의 회전을 하면서 교전하거나 교착하여 고리(loop)를 만들고 이 고리(loop)에 위사(緯絲)가 통과함으로써 짜인 직물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2호에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는 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류·제60류로 분류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플라스틱의 침지여부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두 경사가 서로 회전하면서 교착하여 고리를 만들고 이 고리에 위사가 통과함으로써 짜여진 거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5803.00-0000호에 분류

#### ④ 유사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1

- 신청물품: 수술용 포
- 직사각형 부직포 쉬트( $228 \times 300\text{cm}$ )의 중심부에 직사각형( $30 \times 15\text{cm}$ )의 투명한 비닐쉬트를 붙이고 그 중심부에 타원형의 구멍( $6 \times 8\text{cm}$ )이 있는 물품으로 접어서 소매용 포장함. 용도: 수술용 포
- 결정세번: 제6307.90-9000호
- 본품은 수술부위를 치료하거나 보호하는 기능이 없는 단순한 수술용 포임

- HS 제3005호에는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되는 의료물질을 도포한 탈지면, 거즈, 붕대 등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생용 수건과 위생지혈대(제6307호)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단순한 수술용 포이므로 탈지면, 거즈, 붕대 등 이와 유사한 물품에 분류 할 수 없고 기타의 방직용 섬유제품이 분류되는 HSK6307.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⑤ 유사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2

□ 신청물품: 접착제 도포 거즈

- 아크릴계 접착제를 거즈와 같이 합성섬유제 직물이 완전 함침되도록 두껍게 코팅하고 양면에 이형지를 부착한 것(규격: 50mm×25m, 롤상)

□ 결정세번: 제3506.91-0000호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
- 본 품은 끈적끈적한 상태의 접착제를 거즈와 같이 성기게 짠 합성섬유제 직물이 완전 함침되도록 두껍게 코팅한 것으로 직물이 접착제로 완전 덮혀 있으며,
- 직물은 끈적한 상태의 접착제 지지역할로서 직물은 끈적한 접착제를 시트상으로 형태를 어느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며 직물에 접착제를 도포한 것으로서 제59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품은 아크릴계 접착제를 거즈와 같이 합성섬유제 직물이 완전 함침되도록 두껍게 코팅한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로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6.91-0000호에 분류함

## ⑥ 수출자 유의사항

- 필라멘트 사 직물(14.9%) vs 필라멘트 사 거즈(0%)
  - 거즈(제5803호)와 기타 제58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이들 물품을 구성하는 섬유재료와는 무관함
  - 특히 거즈는 면 등을 포함한 식물성 섬유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 등 다양한 재질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바, 거즈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5803호의 거즈로 분류할 수 있음
    - “거즈란 그 조직의 전부나 일부에서 지경사(standing thread)와 익경사(crossing thread)로 구성되며, 익경사가 지경사를 반회전, 1회전이나 2회 이상의 회전을 하면서 교전하거나 교착하여 고리(loop)를 만들고 이 고리(loop)에 위사(weft thread)가 통과함으로서 짜인 직물을 말한다.”
  - 거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필라멘트사 직물의 경우, 미국은 제54류에 분류되며 이 경우 일반세율 14.9%(한-미 FTA 7.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됨
  - 또한 거즈에 접착제(제3506호)나 플라스틱(제5903호)등을 도포하고, 거즈는 이를 보강하는 수준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5803호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

## 4) 작업용 장갑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6503

□ 신청물품: 작업용 니트릴 장갑

- 나일론 97%, 폴리에스테르 3%로 이루어진 작업용 장갑으로서, 니트릴로 코팅되어 있고 스트링 니트로 만들어진 것. 니트릴 코팅이 손바닥부분 전체와 옆면 전체에 도포되어 있음. 전체 중량에서 섬유부분의 중량이 50%를 초과함

□ 결정세번: 제6116.10-5520호

- 동 물품은 편물제의 장갑으로서,

1. 스포츠용으로 만들어진 장갑이 아니며,
  2. 푸르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고,
  3. 기존 기계로부터 재단 및 봉제되지 않았고,
  4. 면, 합성섬유 또는 기타 섬유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된 것으로서 이들의 중량이 전체 중량의 50%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 HTSUS 제6116.10-5520호에 분류함(일반세율 13.2%, 한-미 FTA 0%)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6116.10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 울 (기본/KORUS)
000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05	아이스하키 또는 필드하키 장갑	0
		08	스키 및 스노우모빌을 포함한 스포츠용으로 만들어진 기타 장갑	2.8/0
			기타	
			- 푸르세트(fourchettes)가 없는 것	
			-- 기존 기계로부터 재단 및 봉재되고,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침투, 도포 또는 피복된 편물	
			--- 식물성 섬유의 것	
		13	---- 플라스틱이나 고무가 중량기준 50 퍼센트 이상의 것	12.5/0
		17	---- 기타	23.5/0
			--- 기타	
		44	---- 플라스틱이나 고무가 중량기준 50 퍼센트 이상의 것	9.9/0
		48	---- 기타	18.6/0
			-- 기타	
		55	--- 면, 합성섬유 또는 기타 섬유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된 것의 중량이 50%를 초과하는 것	13.2/0
		65	--- 기타	7/0
			- 푸르세트(fourchettes)가 있는 것	
		75	-- 면, 합성섬유 또는 기타 섬유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된 것의 중량이 50%를 초과하는 것	13.2/0
		95	-- 기타	7/0

- 제6116호에는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
- 우리나라는 별도의 하위 구분이 없으나, 미국은 총 4단계의 기준으로 하위물품을 구분함

- 푸르세트(fourchettes)의 유무: 푸르세트란 손가락 사이에 바느질되어 장갑의 옆면을 이루는 좁은 가죽 띠를 말함

< 그림 3-4 > 푸르세트가 있는 장갑



- 기존 기계로부터 재단 및 봉재되고,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침투, 도포 또는 피복된 편물인지 여부
- 식물성 섬유의 것인지 여부
- 플라스틱이나 고무가 중량기준 50퍼센트 이상의 것인지 여부

### ③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고무 도포 작업용 장갑

- 면 편물제 손가락 분리형 장갑의 일면에 적색 고무를 도포한 것
  - 용도 : 작업용 장갑
- 결정세번: 제6116.10-0000호
- 관세율표 제6116호에는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6.10호에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과 남자 또는 소년용 장갑을 불문하고 모든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의 장갑을 분류한다.
- 이 호에는 보통 손가락이 분리된 짧은 장갑·손가락 부분만을 덮는 장갑·엄지손가락만 분리된 장갑·아래팔 또는 위팔까지 덮는 긴 장갑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면 편물제 손가락 분리형 장갑의 일면에 적색 고무를 도포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16.10-0000호에 분류함

#### ④ 유사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플라스틱 도포 작업용 장갑
  - 플라스틱이 합침된 부직포(손바닥 및 손가락 사이; 전체 표면적의 50% 초과)와 편물(손등부분) 등으로 구성된 손가락 사이와 손날부분이 봉제되지 않은 미완성의 장갑(S.M.L.XL.XXL)
    - 용도 : 장갑 제조용(미완성물품)
  - 결정세번: 제6216.00-1000호
    - 관세율표 제6216호에는 “장갑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이외의 방직용 섬유직물로 제조된(레이스 포함) 장갑류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동 호 해설서에 “제6116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동 표 해설서 제6116호에 “이 호에는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한 미완성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장갑을 포함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플라스틱이 합침된 부직포로 제조된 미완성의 장갑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6216.00-1000호에 분류함

## ⑤ 수출자 유의사항

### □ HTSUS 제6116.10호의 분류기준: 4단계 분류기준

- 동 물품은 편물제의 장갑에 니트릴을 손바닥 등에 도포한 작업용 장갑으로서, 우리나라 품목분류상 제6116.10-0000호에 분류
- 그러나, 미국의 경우 제6116.10호 하위구분 기준이 총4단계로서 다양하며, 이에 따라 세율차이가 최대 23.5%까지 존재하는 것이 특징
  - 제6116.10-17호: 23.5%
  - 제6116.10-05호: 0%
  - 단, 한-미 FTA 적용시 모두 0% 적용 가능
- 이에 우리나라 수출자는 미국 수입자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물품을 제작하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권유하거나 관세율 검토를 선행하는 것이 필요

### □ 편물과 편물제 이외의 직물로 이루어진 장갑: 중량기준

- 편물제 장갑은 제6116호, 기타의 장갑은 제6216호에 분류되며, 혼용된 물품의 경우 중량기준으로 분류함
- 또한 미완성 장갑(손가락과 손날부분이 봉제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완성된 장갑으로 간주함

## 5) 신발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9525

□ 신청물품

- 남녀공용, 발목이 없는 신발로서 바깥 바닥이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갑피가 양모직물로 된 것으로서 캘레당 가격이 FOB 12달러를 초과함

□ 결정세번: 제6404.19-9060호

- 동 물품은 바깥바닥이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구성되고 갑피가 섬유직물로 이루어진 신발로서 HTSUS 제6404.19-9060호에 분류함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6404.19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율 (기본/KO RUS)
1000	실내화	15	갑피의 외부 표면적이 50%이상 가죽인 신발류(이 류 주 4(a)에 규정된 것과 같은 기타 가죽 악세사리나 보강재를 포함한다)	10.5/0
9000	기타	20	물, 기름, 그리스 또는 화학약품, 추위 및 악천후에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된 신발류	37.5/37.5
			앞이 뚫려 있거나 뒷굽치가 뚫려 있는 신발류; 슬립온 타입으로서 레이스나 버클, 잠금장치가 없이 된 것 단, 제6404.19.20호의 것과 윗가죽 또는 윗가죽과 같은 밴드가 완전히 또는 거의 완전히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나, 바닥에 몰드되고 갑피로 감싼 것은 제외한다. - 고무나 플라스틱의 중량이 10%미만인 것	
		25	-- 식물성 섬유재질의 갑피로 된 것	7.5/0
		30	-- 기타	12.5/0
			- 기타	
		36	-- 갑피가 식물성 섬유로 되고 바깥바닥이 바닥과 접촉하는 가장 큰 표면적이 방직용섬유로 된 것, 그러나	7.5/0

		이 류 주5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37	-- 갑피가 식물성 섬유 이외의 섬유로 되고, 바깥바닥이 바닥과 접촉하는 가장 큰 표면적이 방직용섬유로 된 것, 그러나 이 류 추가 주5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12.5/0
	39	-- 기타	37.5/0
		기타	
		- 결례당 3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것	
		-- 바깥바닥(또는 중간바닥)이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서 갑피와 접착제로 고정된 것(중간바닥 또한 상호 및 바깥바닥에 접착제로 고정된 것) 단, 윗가죽 또는 윗가죽과 같은 밴드가 부착되거나 바닥에 몰드되고 갑피로 감싼 것은 제외한다. 또한 발가락이나 뒷꿈치 이외의 부분을 바닥이 갑피를 감싸는 신발은 제외한다.	
	42	--- 갑피가 식물성 섬유이고 바깥바닥이 섬유로 된 것, 바깥바닥이 바닥과 접촉하는 가장 큰 표면적이 방직용섬유로 된 것, 그러나 이 류 추가 주5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7.5/0
	47	--- 갑피가 식물성 섬유이고, 바깥바닥이 섬유로 된 것, 바깥바닥이 바닥과 접촉하는 가장 큰 표면적이 방직용 섬유로 된 것, 그러나 이 류 추가 주5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12.5/0
	49	--- 기타	37.5/0
		-- 기타	
	52	--- 갑피가 식물성 섬유이고 바깥바닥이 섬유재질의 것으로, 바깥바닥이 바닥과 접촉하는 가장 큰 표면적이 섬유로 된 것, 그러나 이 류 추가 주5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7.5/0
	57	--- 갑피가 식물성 섬유 이외의 섬유재질이고 바깥바닥이 섬유재질의 것으로, 바깥바닥이 바닥과 접촉하는 가장 큰 표면적이 섬유로 된 것, 그러나 이 류 추가 주5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12.5/0
	59	--- 기타	48/0
		- 결례당 6.5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것	
		-- 바닥(또는 중간바닥)이 고무나 플라스틱이고 갑피에 접착제로 고정된 것(중간바닥 또한 상호 및 바깥바닥에 접착제로 고정된 것) 단, 윗가죽 또는 윗가죽과 같은 밴드가 부착되거나 바닥에 몰드되고 갑피로 감싼 것은 제외한다. 또한 발가락이나 뒷꿈치 이외의 부분을 바닥이 갑피를 감싸는 신발은 제외한다.	

	61	--- 갑피가 식물성 섬유 이외의 섬유재질이고 바깥바닥이 섬유재질의 것으로, 바깥바닥이 바닥과 접촉하는 가장 큰 표면적이 섬유로 된 것, 그러나 이 류 추가 주5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12.5/0
	69	--- 기타	37.5/0
		-- 기타	
	72	--- 갑피가 식물성 섬유이고 바깥바닥이 섬유재질의 것으로, 바깥바닥이 바닥과 접촉하는 가장 큰 표면적이 섬유로 된 것, 그러나 이 류 주5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7.5/0
	77	--- 갑피가 식물성 섬유 이외의 섬유재질이고 바깥바닥이 섬유재질의 것으로, 바깥바닥이 바닥과 접촉하는 가장 큰 표면적이 섬유로 된 것, 그러나 이 류 추가 주5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12.5/0
	79	--- 기타	90c/pr. +37.5/0
		- 컬레당 12달러 초과하지 않는 것	
	82	-- 갑피가 식물성 섬유이고 바깥바닥이 섬유재질의 것으로, 바깥바닥이 바닥과 접촉하는 가장 큰 표면적이 섬유로 된 것, 그러나 이 류 추가 주5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7.5/0
	87	-- 갑피가 식물성 섬유 이외의 섬유재질이고 바깥바닥이 섬유재질의 것으로, 바깥바닥이 바닥과 접촉하는 가장 큰 표면적이 섬유로 된 것, 그러나 이 류 추가 주5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12.5/0
	89	-- 기타	90c/pr. +20/0
	90	- 컬레당 12달러 초과하는 것	9

□ 제6404호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파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함

- 우리나라는 실내화와 기타로 구분한 반면,
- 미국의 제6404호 분류체계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하위구분을 설정하고 있음(하위 구분에 대한 설명은 ④수출자 유의사항 참조)

### ③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 신청물품: 신발

- 바깥 바닥을 고무로, 갑피의 가장 넓은 외부 표면적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신발로 발목을 덮지 않으며 신발 끈이 발등부분에 부착된 경등산화(트레킹화)

#### □ 결정세번: 제6404.19-9000호

-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파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표 제64류 주 제4호에서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목-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  
나목- 바깥 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6402.12호·제6402.19호·제6403.12호·제6404.11호의 스포츠용 신발류라 함은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스프리그·스톱·클립·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 스케이팅부츠·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레슬링부츠·복싱부츠·사이클화”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의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방직용 섬유제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스포츠용 신발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의 신발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 ④ 수출자 유의사항

- 미국으로 신발류를 수출하는 수출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품목분류 및 관세율이 0 ~ 37.5%까지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

##### 1. 갑피의 외부 표면적이 50%이상 가죽인 신발류

- 이러한 신발류의 가죽이란 제60류 주4 가.에 해당하는 악세사리를 포함한다고 규정

##### < 표 3-2 > 관세율표 제60류 주4

###### 제60류 주4

- 가.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 · 에징(edging) · 장식품 · 버클(buckle) · 탭(tab) · 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 나. 바깥 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스파이크 · 바(bar) · 뭇 · 프로텍터(protecto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바깥 바닥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 갑피의 재료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HTSUS 제6404.19-15호에 분류할 때 가죽이란 앵클패치, 에징, 장식품, 버클, 탭, 아일릿스테이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를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함

##### 2. 물, 기름, 그리스 또는 화학약품, 추위 및 악천후에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된 신발류

- 이러한 신발류는 한-미 FTA 특혜적용대상이 아님에 주의

##### 3. 슬립온 타입의 신발류

- 슬립온 타입의 신발류는 다시 고무 · 플라스틱의 중량이 10% 미만인지에 따라 구분됨

##### 4. 기타의 신발류

- 위의 1~3에 따라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신발류는 콜레당 가격에 따라 총 4가지 구간으로 구분됨

- ① 결레당 3달러 초과하지 않는 것
  - ② 결레당 6.5달러 초과하지 않는 것
  - ③ 결레당 12달러 초과하지 않는 것
  - ④ 결레당 12달러 초과하는 것
- 이러한 물품은 갑피가 식물성 섬유인지, 바깥바닥의 접지하는 가장 큰 표면이 섬유재질인지에 따라 다시 구분되며 다음의 제64류 미국 국내 주5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5.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the constituent material of the outer sole pursuant to note 4(b) of this chapter, no account shall be taken of textile materials which do not possess the characteristics usually required for normal use of an outer sole, including durability and strength.

## 4. 원산지 결정사례

### 가. 플라스틱 인쇄 위편직물

#### ① 사례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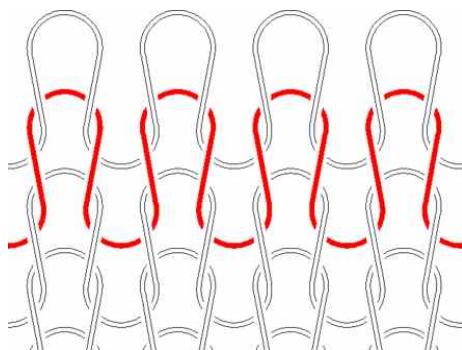
□ 참조번호: N267195

□ 신청물품: 플라스틱 인쇄 위편물

○ 플라스틱으로 디자인 인쇄된 편직물로서 한쪽 면에 작은 점 모양이 반원모양으로 인쇄(foil-printed)되어 있음. 위편직(weft-knitted)직물로서 구성성분은 폴리에스테르 88%, 스판덱스(탄성사) 12%이며 폭 58~60인치의 의류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 위편직은 연속적으로 사를 감아 직물의 동일 가로 방향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편환렬을 형성시켜 만든 것으로서 인접한 편환렬을 서로 연결시켜 편목을 형성한 것이다. 편목 간에는 편지의 어느 방향으로든지 쉽게 신출할 수 있도록 얹혀 있다. 사가 절단되었을 때는 사다리꼴의 해진 구멍(ladder)이 생긴다.

< 그림 3-5 > 위편물의 구조



#### < 구성재료 및 공정 >

- 폴리에스테르사(한국, 대만)
- 탄성사(한국과 중국의 수지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사출)
- 한국에서 편직

-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틱으로 점 모양으로 프린트됨
- 기타 마무리 공정은 한국에서 수행
- 미국으로 직접운송

**쟁점사항**

- 수출물품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는가?
- 품목분류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시 한-미 FTA 적용가능?
- 한국산으로 원산지표시는 가능한가?

**② 품목번호 결정**

동 플라스틱 인쇄 편물은 일반 위편물의 한면에 플라스틱으로 점 모양을 디자인 인쇄한 물품으로서 미 관세청 결정에 따라 제6004.10호에 분류함

- 신청인은 제5903호(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피복·적층 직물)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미 관세청은 제6004호(탄성사를 포함한 편물)에 분류한다고 결정한 사례임
  - 신청인: 동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도포된 것으로서 제5903.90-2500호에 분류되어야 함. 인쇄된 점 모양이 편물 전반에 걸쳐 반짝임을 주고 있으므로, 특정 디자인이나 패턴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님. 따라서, HTSUS 제59류 주2 (관세율표 제59류 주2)에 따라 제5903호에서 제외되지 않음
  - 미관세청: 인쇄된 foil-printed dots가 의도적인 위치에 놓여져 일정 패턴 또는 디자인적 요소를 만들고 있음. ‘디자인’을 구성하는 플라스틱이 인쇄된 경우 HTSUS 제59류 주2(a)(4) (관세율표 제59류 주2 가목 4)에 해당하여 제5903호에서 제외되며, 제6004.10-0085호에 분류됨

**< 표 3-3 > 관세율표 제59류 주2**

2. 제5903호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가.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나 플라스틱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다]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

- 1)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류·제60류로 분류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 2) 섭씨 15도부터 30도까지의 온도에서 지름 7밀리미터의 원통 둘레에 꺽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물품(보통 제39류)
- 3)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로 양면을 완전히 도포·피복한 물품. 다만, 이러한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제39류).
- 4) 플라스틱을 부분적으로 도포하거나 피복한 그림 모양을 나타낸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류·제60류로 분류한다)

## ② 한-미 FTA 원산지 충족여부

- 동 플라스틱 편직물을 제6004.10호에 분류됨에 따라, 이에 적용 가능한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며, 동 물품은 한-미 FTA원산지를 충족하지 못함
- 당초 신청인이 주장한 제5903.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시 사용된 모든 원재료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여 원산지가 충족되었으나,
  - 미관세청이 결정한 제6004.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한다면, 일부 원재료의 세번변경이 미발생하여 원산지 불충족
    - 대만에서 수입된 폴리에스테르사(비원산지)는 제5402호에 분류됨. 제5402호는 제6004.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제외세번에 해당되므로 비원산지 폴리에스테르사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를 충족할 수 없음

### < 표 3-4 > 제6004.10호의 둘째원산지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류,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소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소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제5501호 내지 소호 제5503.20호, 소호 제5503.40호 내지 제5503.90호, 또는 제5505호 내지 제551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 ③ 원산지 표시 충족여부

- 미국 섬유 및 의류물품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인 19 C.F.R. 102.21 (c) (1)~(5)까지 조항에 따라, 동 플라스틱 편직물은 한국산으로 원산지 표시가 가능함
- 동 규정에 따르면, 섬유 및 의류제품은 해당 물품이 완전히 생산되는 경우 원산지를 충족[(c) (1)]
- 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경우, 각 비원산지재료가 결합되어 세번변경이 발생하여 (e)항에 따른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를 충족[(c) (2)]
- 섬유 및 의류물품의 원산지(표시)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의 결합기준임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 이외의 호에서 동 그룹으로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제작공정(fabric-making process)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 < 표 3-5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원산지 표시기준

- |  |
|--|
| (1) Except for fabric of wool or of fine animal hair, a change from greige fabric of heading 6001 through 6006 to finished fabric of heading 6001 through 6006 by both dyeing and printing when accompanied by two or more of the following finishing operations: bleaching, shrinking, fulling, napping, decating, permanent stiffening, weighting, permanent embossing, or moireing; or, |
| (2) If the country of origin cannot be determined under paragraph (1) of this entry, <u>a change to heading 6001 through 6006 from any heading outside that group, provided that the change is the result of a fabric-making process.</u>  |

### ④ 유사물품 국내사례

- 신청물품

- 폴리에스테르 93%, 탄성사 7%의 혼방사로 편직한 위편직물로 일면에 반짝이는 원형 플라스틱 박편을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하여 규칙적인 무늬로 표현한 것(폭 30cm 초과)

- 용도: 의류제조용
- 결정세번: 제6004.10-0000호
- 관세율표 제6004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 이 분류됨
- 참고로,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2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  
“제5903호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1제곱미터 당 중량이나 플라스틱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다]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  
....(중략)...
- (4) 플라스틱을 부분적으로 도포하거나 피복한 그림 모양을 나타낸 직물류 (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 제58류 · 제60류로 분류한다)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합성섬유 주기제로 만든 위편직물로,
  - 폭이 30cm를 초과하고, 탄성사는 전중량의 100분의 5이상이며, 고무사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4.10-0000호에 분류함

## ⑤ 수출자 유의사항

- 동 플라스틱 편직물 사례는 신청인의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에 관한 것임
  - 신청인은 수출물품이 제5903.90호로 분류되는 것을 가정하고, 이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및 한-미 FTA특혜세율 적용을 기대하였음
  - 그러나 미관세청은 주 규정을 달리 해석하여, 수출물품을 제6004.10호로 분류하였고, 이에 따라 적용가능한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 · 불충족됨에 따라 한-미 FTA특혜세율 적용이 불가하게 됨
- 한-미 FTA 섬유 및 의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에는 제외세번이 폭넓게 규정되어, 세번변경기준 충족이 쉽지 않음
  - 수출자는 국내 사례를 근거로 정확히 품목분류를 선행하고, 제외세번으로 규정된 섬유원재료를 역내산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임

## 나. 극세사 청소포

### ① 사례개요

□ 참조번호: N266569

□ 신청물품: 극세사 청소포

○ 극세사 청소포는 80% 폴리에스테르 및 20% 폴리아미드 편물로 구성됨

- 크기는 대략 5  $\frac{3}{4}$  X 7  $\frac{1}{2}$ 인치이며 끝 부분은 분홍색으로 처리. 주로 광학 렌즈, 전화기 및 컴퓨터 스크린 청소용

□ 쟁점사항

- 수출물품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는가?

- 품목분류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시 한-미 FTA 적용가능?

- 한국산으로 원산지표시는 가능한가?

### ② 품목번호 결정

□ 미국 관세청은 신청된 물품이 '극세사 청소포(micro fiber cleaning cloth)'이며, 제6307.10-2030호에 분류된다고 결정

○ 품목분류 결정에 있어 검토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첫 번째, 청소포의 구성이 폴리에스테르와 폴리아미드로 이루어져 있다 는 것

- 두 번째, 청소포의 크기

- 세 번째, 청소포의 용도(광학렌즈, 전화기, 컴퓨터 스크린의 청소)

### ③ 한-미 FTA 원산지 충족여부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19 U.S.C 1202에 규정되어 있는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일반주해(GN) 33에 따라 결정

- 동 물품 극세사포는 신청인이 제시한 물품설명만으로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원산지 불충족 결정함

**< 표 3-6 > 19 USC 1202 일반주해 33(b)**

33.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p>(b) For the purposes of this not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divisions (c), (d), (n) and (o) thereof, a good imported into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is eligible for treatment as an originating good of a UKFTA country under the terms of this note if -</p> <p>(i) the good is <u>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Korea or of the United States, or both;</u></p> <p>(ii) the good is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Korea or of the United States, or both, and--</p> <p style="margin-left: 20px;">(A) each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undergoes an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specified in subdivision (o) of this note; or</p> <p style="margin-left: 20px;">(B) the good otherwise satisfies any applicable regional value-content or other requirements set forth in such subdivision (o); and</p> <p style="margin-left: 20px;">satisfies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is note and of applicable regulations; or</p> <p>(iii) the good is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Korea or of the United States, or both, exclusively from materials described in subdivisions (i) or (ii), above.</p> <p>For the purposes of this note, the term "UKFTA country" refers only to Korea or to the United States.</p>
---	--

일반주해 33(b)(i)의 검토: 완전생산된 것

- 그러나 미 관세청은 동 물품이 한-미 FTA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하면서,
  - '대한민국 또는 미국, 또는 양국 모두의 영토에서 완전 생산된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켰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상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설명

일반주해 33(b)(ii)의 검토: 실질적 변형기준

- 미 관세청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실질적변형기준을 충족해야 함

- 실질적 변형기준이란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으로서 33(o)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함

**< 표 3-7 > 19 USC 1202 일반주에 33(o)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제63류

4. A change to headings 6304 through 6308 from any other chapter(2단위 세번변경기준), except from headings 5106 through 5113, 5204 through 5212, 5307 through 5308, 5310 through 5311 or 5401 through 5402, subheadings 5403.33 through 5403.39 or 5403.42 through heading 5408 or headings 5508 through 5516, 5801 through 5802 or 6001 through 6006, provided that the good is both cut (or knit to shape) and sewn or otherwise assembled in the territory of Korea or of the United States, or both.(가공공정기준)

- 동 규정에 따르면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을 동시에 충족 해야 함
  - 가공공정기준은 ‘해당 상품은 대한민국 또는 미국, 또는 양국 모두에서 재 단(또는 제품형태로 편직된 물품), 봉제 또는 결합되어야 한다.’고 규정
- 그러나, 미 관세청은 신청인이 ‘모든 의류 생산과정이 대한민국 내에 서 이루어졌으며, 실도 한국에서 제작되었다(Yarns are woven there)..’라고 설명하였으나, 실은 ‘제작(woven)’ 될 수 없으며 ‘방사(extruded)’ 또는 ‘방직(spun)’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신청인의 물 품설명에 대한 오류를 지적

In a recent e-mail correspondence with your office it was stated “the entire process of creating the cloths is ALL done in South Korea. (Yarns are woven there, fibers originate from there, printing is done there.)” This office finds the sample submitted was knit rather than woven. Additionally, while fabrics may be woven, yarns are generally made from fibers or filaments and considered to be spun or extruded. As a result of your brief details and these inconsistencies, we are unable to rule on the status of the cleaning cloth under the UKFTA.

- 즉, 신청인의 설명과 제시된 물품의 성질이 불일치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원산지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결정 (조합기준으로 제시된 가공공정기준 불충족)

#### ④ 원산지 표시

- 미국 섬유 및 의류물품 원산지표시에 관한 원산지결정기준인 19 C.F.R. 102.21 (c) (1)~(5)까지 조항에 따라, 동 플라스틱 편직물은 한국산으로 원산지 표시가 가능함
- 동 규정에 따르면, 섬유 및 의류제품은 해당 물품이 완전히 생산되는 경우 원산지를 충족[(c) (1)]
  - 미 관세청은 (c)항(1)호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신청자가 상품의 완전생산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 적용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
- 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경우, 각 비원산지재료가 결합되어 세번변경이 발생하여 (e)항에 따른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를 충족[(c) (2)]
- (e)항에 따른 섬유 및 의류물품의 원산지(표시)결정기준
  - 미 관세청은 완전생산기준의 적용이 불가하여, 세번변경기준 적용을 검토
  - 이에 상품의 제조과정을 거친 국가가 원산국임을 설명하면서, 제시된 물품이 한국에서 직조되었다면 한국이 원산지라고 설명

#### < 표 3-8 > 제6307.10호의 원산지 표시기준

The country of origin of a good classifiable under subheading 6307.10 is the country, territory, or insular possession in which the fabric comprising the good was formed by a fabric-making process.

## ⑤ 수출자 유의사항

- 극세사 청소포에 관한 품목분류, 한-미 FTA 특혜 원산지, 원산지표시에 관한 시사점은 아래와 같음
  - 품목분류의 경우 해당 물품의 상세한 설명자료를 함께 첨부
  - 원산지표시는 완전생산 또는 기타 원산지결정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해당 직물이 생산된 공정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었다면 한국산 원산지 표시 가능
- 그러나 한-미 FTA원산지의 경우, 가공공정기준 적용을 위한 설명자료의 오류로 특혜적용 배제
  - ‘편물’은 ‘편직(knit)’ 되며 ‘제직(woven)’ 되지 않는데, 신청인은 편물로 ‘제직’ 하였다고 설명
  - 또한 ‘실’은 방사(extruded) 또는 방직(spun)되는데, ‘제직(woven)’ 된다고 설명
- 동 사례는 사전심사 신청자료의 구체성과 신뢰성, 정확성이 원산지 지위 판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실제 물품이 원산지를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 관세청은 단지 신청자료에 대한 용어의 정확성만을 근거로 특혜관세를 배제함
- 따라서 수출자는 물품의 원산지충족여부 뿐만 아니라, 물품설명을 위한 정확한 용어사용 및 구체적 설명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 동 사전심사건은 약 2개월 후, 신청자의 자료보완에 따라 가공공정 기준을 충족하여 한-미 FTA원산지를 충족하는 것으로 결론(참조번호 N270565)

## 5. 소결

- 섬유산업에 있어서 미국은 주요 원재료 공급국이자 최종 완제품 수입국이며, 이에 따라 섬유관련 주요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
  - 이러한 섬유산업의 특성에 따라 미국은 매우 세분화된 품목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섬유산업의 구체적 지식이 있어야 적정한 품목분류를 수행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품목분류체계에는 없는 실수(Thread Count)에 따른 품목분류의 차이 또는 신발 갑피와 바깥바닥의 재질에 의한 품목분류 구분은 우리나라 관세율표에는 없는 분류기준임
    - 또한 품목분류에 따라 품목별 세율차이가 매우 큼
  - 이와 동시에 품목분류 대상물품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증빙자료 및 물품설명이 수반되지 않으면, 미국 관세당국은 품목분류 신청은 각하함
    - 극세사 청소포(참조번호 N266569)의 경우, 편물을 ‘편직’ 하지 않고 ‘제직’ 하였다고 설명한 것을 근거로 품목분류를 결정하지 않고 배제함
    - 경우에 따라 단순한 어휘사용 실수로 볼 수도 있으나, 미국 관세당국은 이러한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경향이 존재
    - 또 다른 사례(참조번호 N267195)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해석차이로 품목분류 결정에 차이가 발생함
- 미국에 있어 섬유산업은 복잡한 품목분류, 해석상의 차이, 높은 세율 등 일종의 민감산업이므로, 수출자는 충분한 자료준비를 통하여 사전 심사를 받고 수출하는 것이 효율적임

## IV. 금속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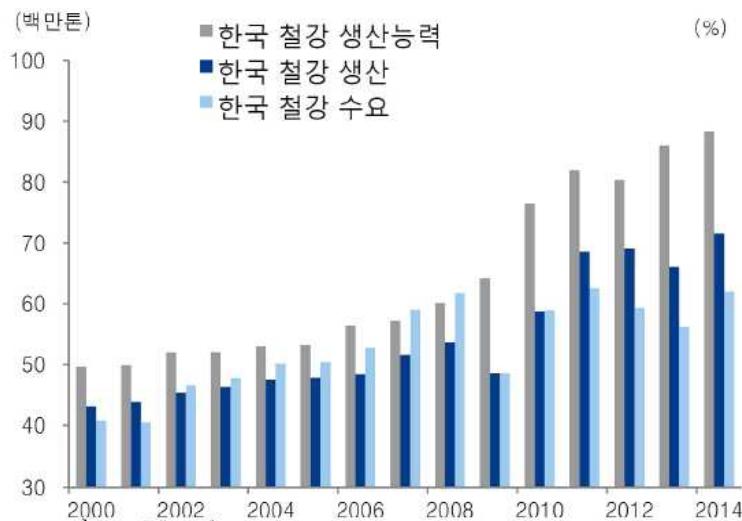
### 1. 산업동향

#### 가. 생산동향

##### 1) 우리나라 생산동향

- 우리나라 6대 비철금속 생산 규모는 223만톤으로 세계 9위, 소비는 334만톤으로 세계 5위
- 국내 비철금속 산업은 6대 비철금속 가운데 아연, 연, 니켈 4개 제품을 제련에서 가공에 이르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반면 알루미늄은 제련소 부재로 원자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
  - 주석 역시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내에 생산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수입에 의존
- 국내 비철금속 제련 분야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가공 분야는 산업 특성상 대부분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어 세계적인 수준에 다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철강 생산량은 71백만톤으로 세계 5위 철강생산국
- 2000년 이후 철강 생산용량이 연평균 3.7%씩 증가하여 2014년 기준 생산용량은 88백만 톤이며, 수요량은 62백만 톤으로 26백만 톤이 공급 과잉인 상황
  - 내수경기 악화 및 중국 등 주변국의 경기 침체로 2015년 철강 생산량은 전년대비 감소

< 그림 4-1 > 우리나라 철강생산능력 및 수요 현황



자료 : Bloomberg

## 2) 미국 생산동향

- 미국 6대 비철금속 생산 규모는 402만톤으로 세계 4위, 소비는 983만톤으로 세계 2위
  - 미국의 비철금속 생산 규모는 전 세계 생산량의 38% 비중을 차지
- 미국의 철강 생산량은 81백만톤으로 세계 3위 철강생산국
  - 2015년 철강 생산량은 2014년 88.2백만톤에 비해 약 8.16% 감소
    - 저가의 철강이 대거 수입되면서 미국 내 철강 생산이 위축, 2015년 미국 내 소비된 철강의 약 1/3이 수입산인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미국은 값싼 철강의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 등에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철강 수입 관세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철강의 가격인상과 생산 확대에 나서고 있음

## 나. 수출동향

### 1) 일반 수출동향

- 우리나라 철강 순수출은 951만톤(수출 3,226만톤, 수입 951만톤)으로 순수출 기준 세계 5위의 철강 국가
- 2010년 이후 철강설비 대규모 증설(현대제철 1,200만톤, POSCO 860만톤) 영향으로 2011년부터 철강 순수출 국가로 전환
  - 철강 생산의 45.1%를 수출하고 철강 수요의 36.7%를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 대부분을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
  - 2000년대 초반까지 중국은 순수출국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이후 중국산 저가 제품이 유입되면서 순수입국으로 전환
  - 일본으로부터의 철강 수입은 2010년을 기점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
- 2015년도 우리나라 비철금속의 수출은 92억달러, 수입은 141달러로 국내 비철금속 원자재 수출로는 높은 수출치 기록
- 특히 전기동과 아연은 국내에서 생산되며 수출 견인차 역할을 하는 품목
  - 국내 생산능력 증강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증가, 생산제품 대부분 수출로 소화되는 현상을 보임

### 2) 對미국 수출동향<sup>13)</sup>

- 우리나라의 2015년 對미국 금속제품 수출금액은 총 55억 달러로서 2014년 74억 달러 대비 약25.7% 감소한 수치
- 우리나라의 對미국 상위 20대 수출품목 중, 주요 수출품목인 기타 철강제 관과 중공프로파일(제7306호)의 수출이 전년대비 68.1% 감소한 6억7천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

13) 對미국 수출동향은 관세율표 제15부(비금속과 그 제품)의 물품을 기준으로 함

- 이외에도 수공구용·기계용 호환성 공구(제8207호) 5.9%, 철강제 관·연결구류(제7307호) 25.9%, 구리로 만든 관(제7411호) 27.5%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철·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은 (제7208호 26.9%, 제7209호 17%, 제7210호 6.1%) 모두 전년대비 수출이 감소
- 반면, 비금속 장착구(제8302호) 2.1%, 철강제 스크루·볼트·나사(제7318호) 3.1%, 합금철(제7202호) 40.2% 등의 제품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수출 증가 폭이 가장 큰 품목은 납의 괴(제7801호) 94.1% 와 철강 구조물(제7308호) 78.7%로 對미국 수출에 기여도가 큼

< 표 4-1 > 우리나라의 對 미국 금속제품 일반수출 상위 20대 품목

[ 단위: 천 달러, % ]

HS 4	품목명	2014	2015	
		금액	금액	증감률
7208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1,004,701	734,570	-26.9
730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과 종공프로파일	2,102,711	670,786	-68.1
721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564,267	530,114	-6.1
7308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	198,697	355,032	78.7
8302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 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202,880	207,192	2.1
7318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 볼트, 너트 등	183,678	189,454	3.1
8207	수공구용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	201,083	189,170	-5.9
7801	납의 괴	86,128	167,192	94.1
7307	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	225,394	167,085	-25.9
7225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144,629	162,354	12.3
730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	203,062	150,998	-25.6
7411	구리로 만든 관	159,573	115,722	-27.5
732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107,235	113,958	6.3
7312	철강으로 만든 연선, 로프, 케이블 등	142,651	110,603	-22.5
7202	합금철	73,750	103,369	40.2
7209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평판압연제품	109,558	90,883	-17
7304	철강으로 만든 관과 종공프로파일	189,922	89,094	-53.1
7309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의 저장조, 탱크, 통	83,877	87,906	4.8
7216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	119,851	75,711	-36.8
8301	비금속으로 만든 자물쇠 등	59,297	70,970	19.7
합 계(제15부)		7,430,619	5,517,118	

자료: 무역협회

## 2. 주요 통관규제

### 가. 철강재 수입 License

#### □ 개요

-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재는 SIMA(The Steel Import Monitoring and Analysis)로부터 라이센스를 발급 받아야 하며, 수입 라이센스는 SIMA Licensing System을 통해 등록 · 신청한 수입자, 통관대행업체나 그들의 대리인에게만 발급 가능

#### □ 내용

- 수입 라이센스 발급 방법 : SIMA Licensing System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자동 발급
- 수입 라이센스 발급 시기 : 통관신고서 작성 이전
  - 통관신고서 작성 시에 발급 받은 해당 라이센스의 개수 기입
  - 통관신고 시, 라이센스 사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함
- 수입 라이센스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75일
  - 통관신고서 작성시에 이미 라이센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수입 일자까지 라이센스가 유효하였다면 수입이 허가됨

#### □ 라이센스의 적용

- 수입되는 여러 개의 철강재가 수입자, 수출자, 제조자, 원산지 등이 같은 경우 : 하나의 라이센스를 여러 개의 제품들에 적용 가능
  - 수입자, 수출자, 제조자, 원산지 등의 해당 정보들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제품별로 라이센스를 따로 발급받아야 함
  - 따라서 한 개의 통관신고서에 여러 개의 수입 라이센스가 요청 될 수 있음
- 수입되는 총 철강재의 금액이 \$250보다 적은 경우 : low-value license 를 발급받아 사용

- 여러 개의 제품들이 수입되는 경우 제품별로 수입자, 수출자, 제조자, 원산지 등의 정보가 다르더라도 여러 개의 라이센스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음

## **나. 철강재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 개요

- 미국에서 철강재를 수입할 때에는 통관 시에 Commercial Invoice와 함께 제품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or mill analysis or mill test report)가 요구됨

###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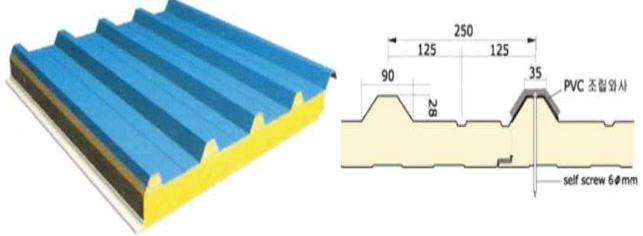
- 철강재 검사 증명서는 주조공장이나 제품 제조업체, 또는 검사기관에서 제품의 품질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증명서임
- 검사 증명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함
  - 제조업체와 검사기관 관련 정보(이름, 주소 등)
  - 원산지 정보
  - 제품 번호, 중량, 수량 등의 제품 규격정보
  - 압축강도, 인장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등의 역학적 시험내용
  - 철, 납, 규소 등의 화학성분내용(중량 대비 %) 등

### 3. 품목분류사례

#### 가. 상이사례

##### 1) 샌드위치 패널

- 샌드위치 패널을 우리나라에서는 제7308호(철강제의 구조물)로 분류하였으나, 인도네시아에서는 제9406호(조립식 건축물)로 분류한 사례

사례출처	수출CO상이	
물품설명	스티로폼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철판을 붙여 만든 판재. 일반적으로 표면판은 강철판,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 강도가 큰 재료를, 심재에는 종이, 플라스틱 등 보온 및 방음 기능이 있는 재료를 사용함. 주로 가건물이나 창고 등의 건립에 사용함	
사 진		
국 가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H S	7308.90	9406.00
분류근거	<p>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p> <p>동 물품은 구조물에 사용되는 패널로서 강판과 스티로폼 등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제7308호에 분류</p>	<p>관세율표 제9406호에는 '조립식 건축물'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서는 각종 재료로 만든 이른바 "industrialized building"으로 불리우는 조립식 건축물을 분류한다. 이들 조립식 건축물은 여러 용도, 즉 가옥·작업현장의 숙박시설·사무실·학교·상점·헛간·차고 및 온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제작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시된다.'고 설명</p> <p>동 물품은 조립식 건축물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제9406호에 분류</p>

## 2) 다이아몬드 원형톱

- 다이아몬드 원형톱을 우리나라에서는 제8202호(수동식 톱 등)으로 분류하였으나, 태국에서는 제6804호(그라인딩 훨 등)으로 분류한 사례

사례출처	수출업체 민원(FTA콜센터)	
물품설명	다이아몬드 원형톱은 건축자재, 묘석류, 조각제품류 등을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공구로서 다이아몬드가 부착된 톱날을 회전시켜 가공물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작동함. 날의 개수에 따라 문형식, 단주형식, 다날식 등이 있음	
사진		
국가	우리나라	태국
H S	8202.39	6804.21
분류근거	관세율표 제8202호에는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 · 슬로팅(slotting) · 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제8202.39호에는 '원형 톱날[슬리팅(slitting)이나 슬로팅(slotting) 톱날을 포함한다]'을 분류 우리나라 관세율표 HSK상에서 제8202.39-20호에는 '작용하는 부분이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	제6804호에는 '밀스톤(millstone) · 그라인드스톤(grindstone) ·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하며 동호 해설서에서는 '(3) 그라인딩 훨 · 헤드 · 디스크 · 포인트 등 : 이것은 금속 · 석 · 유리 · 플라스틱 · 도자기 · 고무 · 가죽 · 자개 · 아이보리 등을 다듬기 · 연마 · 벼리기 정형 또는 때때로 절단을 하기 위한 기계공구 · 전동공구 또는 압축공기식 수공구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3) 기어 커터

- 밀링머신용 기어커터를 우리나라에서는 제8207.70호(밀링용 공구 등)으로 분류하였으나, 인도에서는 제8207.90호(그 밖의 호환성 공구)로 분류한 사례

사례출처	만족도 조사	
물품설명	기어커터는 밀링 머신(milling machine)에 장착하여 기어를 절삭하는데 사용하는 공구임. 기어를 가공하는 기계는 주로 창성법에 의한 가공 기계를 말하며 사용하는 공구나 기어 절삭 방식에 따라 호브 커터(Hob cutter), 밀링 커터(milling cutter), 피니언 커터(pinion cutter), 브로치 커터(broach cutter)를 사용한 것으로 분류 가능	
사 진		
국 가	우리나라	인도
H S	8207.70	8207.90
분류근거	제8207.70호의 용어에 따라 밀링(milling)용 공구가 분류되며, 10단위에서 '기어커터(gear cutters)'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제8207.7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인도에서는 기어커터를 제8207.90호의 그 밖의 호환성 공구(Other interchangeable tools)에 분류함

## 4) 다이아몬드 공구

-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우리나라에서는 제8209호(공구용 판·봉·팁 등)으로 분류하였으나, 태국에서는 제8207(호환성 공구)로 분류한 사례

사례출처	수출CO상이	
물품설명	공업용 다이아몬드(Poly-Crystalline Diamond) 소재의 TIP을 마름모꼴 형상의 초경 본체에 용접한 형태의 INSERT로서, 머시닝센터 등 공작기계(밀링, 보링, 터닝, 드릴링 등의 가공용 호환성 공구에 사용됨)의 외경 훌더나 TOOL에 고정되어 절삭작업에 사용되는 물품이며, 절삭날 부분은 다이아몬드(Poly-Crystalline Diamond) 소재의 TIP 부분임	
사 진		
국 가	우리나라	태국
H S	8209.00	8207.90
분류근거	<p>관세율표 제8209호의 용어에는 '공구용 판·봉·팁과 이와 유사한 것[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p> <p>동 물품은 다이아몬드 TIP부분이며 호환성 공구에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되었으므로 제8209호의 용어에 따라 제8209호에 분류함</p>	<p>관세율표 제82류 주2에서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생략) (다)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비금속(卑金屬)·금속탄화물·서멧(cermet)의 지지물에 부착된 것"을 설명하고 있음</p>

## 나. 사전심사사례

- 2015년 미국 관세청에 신청된 우리나라 금속산업관련 사전심사물품에  
는 다음과 같은 물품을 포함함

순번	HS	품 명
1	7306.30-5032	스틸파이프
2	7311.00-0090	액화가스용기
3	7314.50-0000	익스팬디드 메탈라스
4	7326.90-8588	물 배관 연결구류
5	8108.90-60	티타늄관
6	8302.30-3060	연결브라켓

### 1) 스틸파이프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2649
- 신청물품: 아연도금 스틸파이프(Galvanized Steel Pipe)
  - 용융도금(hot-dipped)방식으로 아연을 도금한 스틸파이프로서, 두께가 2.4 밀리미터, 직경 48.6밀리미터임. 길이는 59, 79, 157인치이며, 펜스(fences)나 발판(scaffolding) 등으로 사용됨
    - ‘Galvanized’란 본래 아연을 치거하는 말이 아니라 이온화 성질을 이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도금의 원소로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 아연이기 때문에 ‘아연도금’의 의미로 인식되고 있음
    - 스틸 외부에 아연을 도금함으로써 스틸보다 산화경향이 큰 아연이 스틸 대신 산화되어 스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 결정세번: 제7306.30-5032호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7306.30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 율 (기본/KORUS)
10	바깥지름이 114.3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두께가 1.65밀리미터 이하인 것	0
10	아연도금한 것		두께가 1.6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20	아연 이외의 금속으로 도금이나 클래드한 것	30	- 일루미네이팅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테이퍼 스틸과 튜브	0
30	비금속으로 도포한 것	50	- 기타	0
90	기타			
20	바깥지름이 114.3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아연도금한 것			
20	아연 이외의 금속으로 도금이나 클래드한 것			
30	비금속으로 도포한 것			
90	기타			

-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 · 용접 · 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을 분류함

- 또한 제7306.30호에는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
-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7306.30호 이하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바깥지름 또는 두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
- 우리나라는 바깥지름 114.3밀리미터를 기준으로, 미국은 두께가 1.65밀리미터를 기준으로 세부구분을 두고 있음

- 다만, 미국의 세부분류에 있어서는 어느 경우에도 세율이 0%이므로 세율로 인한 품목분류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이에 더하여 어떠한 재질의 금속으로 도금을 하였는지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함
  - 철강의 도금재질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아연 이외에 비금속으로 도금한 것, 기타 등으로 세부분류가 존재함

### ③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용융아연도금강판의 관
  - 조립식 건축물의 빗물 배수관 끝단에 연결하여 배출구 부분에서 빗물 텀 방지를 위해 사용(높이 200mm, 직경 195mm)
    - 재질 : 갈바나이즈 스틸(galvanized steel)
    - 스틸 : 용융아연도금강판(ksd3506)
    - 성분 : C 0.04%, Si 0.003%, Mn 0.209%, P 0.007%, S 0.004 % 등
    - 제작법 : 원통 부분은 직사각형의 철강 plate를 원통형으로 말은 후 접합 부분은 용접하여 마무리 하고 고리부분과의 연결 또한 용접 방법으로 접합
  - 결정세번: 제7306.30-1010호
  -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서 “(1) 관 :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 강관은 주로 원형 · 타원형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지만 그 이외에 이등변삼각형 및 기타 볼록정다각형의 횡단면인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 원형 이외의 횡단면을 갖는 제품으로 전 길이를 통하여 둥근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과, 끝이 업셋되어 있는 관도 또한 관으로 간주된다.

- 이들은 연마한 것 · 도포한 것 · 구부린 것(코일상의 관을 포함한다) · 나선 가공된 것, 연결구를 붙인 것이나 붙이지 않은 것 · 천공한 것 · 웨이스트 한 것 · 익스팬디드한 것 · 원추형으로 한 것 또는 플랜지 · 고리 또는 링이 붙은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제730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 오픈심 또는 용접 · 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중략) 건물 내의 물 배관용의 아연도금 관 또는 흑관(가스관이라 부름)은 물론 물 또는 가스의 가로배관용의 본관용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조립식 건축물에서 빗물의 배관용으로 사용되는 관의 일부분으로서 끝단에 고리가 부착된 형태임
  - 관의 가운데 연결부분은 용접 방법으로 부착되었으며 비합금강제이고 직경이 195mm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06.30-1010호에 분류함

#### ④ 유사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용융아연도금강관의 관
  - 위의 ③물품과 동일하나, 제작법이 강판을 나선모양으로 감으면서 양 끝단을 교차하여 접은 후 압착하는 방법으로 연결한 점이 차이점
- 결정세번: 제7306.90-9000호
  - 제730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 오픈심 또는 용접 · 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_중략\_건물내의 물 배관용의 아연도금 관 또는 흑관(가스관이라 부름)은 물론 물 또는 가스의 가로배관용의 본관용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조립식 건축물에서 빗물의 배관용으로 사용되는 관으로서 용접하지 않고 양 끝단을 교차하여 접은 후 압착하는 방법으로 제작되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06.90-9000호에 분류함

## ⑤ 수출자 유의사항

- 관 또는 관연연결구류 여부에 따른 세율차이 최대 6.2% 존재
  - 동 물품은 철강제의 관에 외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연으로 도금한 용융아연도금강판의 관으로서, 용접한 것은 제7306.30호에, 그렇지 않은 것은 제7306.90호에 분류함
  - 미국의 품목분류상 용접한 철강제의 관으로서 제7306.30호의 것은 어느 것이나 세율 0% 적용이 가능함
    - 이에 따라 제7306.30호로서 비합금강의 관이나 용접한 철의 8단위 품목 분류는 어느 것으로 하여도 무방함
  - 다만, 제7307호(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의 경우 최대 6.2%의 관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물품이 관 연결구류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특히 제7307호의 관 연결구류는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차량용으로 사용되거나 기계 또는 전기기기에 사용되더라도 제7307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함

## 2) 액화가스용기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4596

□ 신청물품: 액화가스용기

- 철강제의 용기(cargo tanks)와 파이프(piping)로서, 액화된 무수암모니아(liquefied anhydrous ammonia) 또는 액화가스(liquefied gas)를 운반하기 위한 용도. 수입 후 바지선(ocean barges)에 장착될 예정임. 각 탱크는 길이 95피트, 높이 41피트, 넓이 75피트의 것으로서 무수암모니아 5,500톤을 담을 수 있음
  - 탱크 안쪽에는 냉각 및 액화기능을 하는 강철파이프가 내장되어 있으며, 펌프 및 각종 기구와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한 두 개의 연결부분이 존재함. 동 물품은 CFR 49 Section 178.36~178.63에 따라 공인되지 못한 상태임

□ 결정세번: 제7311.00-0090호

- 동 물품은 탱크와 파이프 두 개로 구성된 것으로서, 파이프는 탱크와 함께 분류되어야 함. 파이프는 수입신고시에 탱크에 장착된 상태로 제시되며 제7311호의 용어 및 해설상 이러한 장착구류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음
  - 또한 NY B86348(1997.6.23.)에 따르면 파이프는 탱크와 함께 분류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존재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7311.00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 을 (기본/KORUS)
1000	용적이 30리터 이하인 것	하위구분 없음	0
2000	용적이 30리터 초과하고 100리터 이하인 것		
3000	용적이 100리터를 초과하는 것		

- 제7311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 제7311호는 별도의 6단위 소호를 가지지 않는 단일 호임
- 우리나라는 제7311호 이하 하위구분으로서 용적에 따라 구분되나, 미국은 제7311호 이하 하위구분을 가지지 않으며 관세율은 0%임

### ③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액화가스용기
  - 직경 65mm, 높이 157mm(용기 상부의 돌출부 제외)의 원통형 주석도금된 철강제 액화가스용 용기로서 밸브가 부착되지 않은 것임(용적 520ml)
- 결정세번: 제7311.00-1000호
  - 본품은 용적이 520ml인 철강제의 액화가스용 용기이므로 HSK 7311.00-1000호에 분류함

### ④ 유사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의약품 운반용기
  - Hastelloy성분의 원통형 탱크로 지지대와 바퀴가 장착되어 있으며, 수송시 운송수단과 결합시킬 수 있도록 고리가 부착되어 있고, 세척 및 멸균을 수행할 수 있는 노즐 등이 장착되어 있음
    - 바이오의약품 등의 액체운반 용기로서 주로 항공에 의한 운반용으로 사용되며, 용기는 반복 사용함
- 결정세번: 제8609.00-1000호
  - 관세율표 제8609호에 “콘테이너(액체운반용 콘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콘테이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송방식

(예: 도로 · 철도 · 해상 또는 항공에 의한 수송)에 의한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되었거나 구조를 갖춘 용기(packing receptacles)이다.

- 이러한 것은 차량,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한 수송을 할 때에 취급상의 용이 및 안전을 위하여 장착구(훅 · 링 · 카스터 · 받침대 등)를 갖추고 있다. 이리하여 중간에서 재포장하지 않고 화물을 “문앞에서 문앞까지 (door-to-door)”로 운송하는데 적합하고, 또한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어 반복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어
- 본 물품은 반복 사용하는 용기로서 지지대와 이동이 용이하게 바퀴가 장착되어 있고, 수송시 운송수단과 결합시킬 수 있도록 고리가 부착되어 있으며, 주로 항공에 의한 운반용으로 설계 제작된 액체운반용 콘테이너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609호의 용어)에 의거 제8609.00-1000호에 분류함

## ⑤ 유사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황산 운반용기

- 석탄 연소시 발생하는 폐가스를 이용하여 황산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액체상의 황산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원통형의 철강제 용기로,
- 내부에는 수위 측정기 설치를 위한 Dip pipe 및 고온의 황산과 저온의 황산이 잘 섞이도록 하기 위하여 내부를 분리한 Partition plate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대 저장용량은 3,830리터임

### 결정세번: 제7309.00-0000호

- 관세율표 제7309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 · 탱크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 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용기는 예를 들면, 공장·화학공업·염색가공·가스제조·양조업·증류 및 정제업에서부터 가정·상점 등의 작은 범위에 이르기까지 저장용 또는 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정물로써 보통 설치된다.” 및 “반면에 단순히 탭·밸브·수준계·안전밸브·압력계 등이 붙어 있는 용기는 이 호에 해당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석유 및 가스저장 탱크 : 맥아제조소에서 대맥을 담그기 위한 통, 액체(포도주, 맥주 등)용 발효통, 각종 디캔터 또는 정화용 통 : 금속의 반죽 및 소둔용을 위한 통, 저수용 탱크[가정용 또는 기타 용도의 것, 중앙난방식 장치용의 익스팬션 리저바이어 (expansion reservoir)도 포함됨], 고체용 용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생성된 황산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용적 300리터 이상의 철강제 탱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7309.00-0000호에 분류함

## ⑥ 수출자 유의사항

### □ 용도에 따른 용기의 분류

- 동 물품은 무수암모니아를 수송하기 위하여 철강으로 제작된 용기로서 제7311호에 분류되며, 이하 하위구분 없이 모두 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임
- 그러나 철강으로 만든 용기는 이외에도 제7309호(300리터 초과), 제7310호(300리터 이하), 제8609호(컨테이너)를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제7311호가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 용기로 한정되는 반면, 제7309호와 제7310호는 이를 제외한 기타의 용기로서 용량에 따라 분류되며
  - 제8609호에는 차량,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한 수송을 할 때에 취급상의 용이 및 안전을 위하여 장착구를 갖추고 있는 용기임
- 상기 용기는 모두 철강재질로 구성된 것으로서 용도 및 장착구의 부착 여부에 따라 품목번호가 구분되므로, 수출물품 용기의 용도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3) 익스팬디드 메탈 라스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1438

□ 신청물품: 익스팬디드 메탈 라스

- 건설산업에 사용되는 메탈 라스(metal lath)로서 아연으로 도금된 철강 제품임
  - 제조방법은 강판을 가늘게 절단한 후 이를 다이아몬드 형상의 구멍을 가지는 망으로 늘려 만듦. 특히 spray rib lath는 v자 형상의 rib running이 망을 가로질러 형성되어 있음. 메탈 라스는 롤 형상으로 판매됨
- 익스팬디드메탈(Expanded Metal)<sup>14)</sup>
  - 얇은 금속판에 일정한 간격으로 절삭 자국을 내어, 이것을 절삭자국과 직각방향으로 잡아당겨 늘여서 그물 모양으로 만든 재료로, 특히 두께가 0.4~0.8mm의 것으로 만든 것을 메탈라스라고 함
  - 매우 견고하고 장인하며 울타리용의 와이어 그릴이나 뚫어진 판의 대용 · 기계의 안전방호물용 · 육교의 상재(床材)와 기중기의 사로(斜路) 등 여러가지 건축자재(콘크리트 · 시멘트 · 플라스틱 · 유리)의 보강용 등에 사용됨

< 그림 4-2 > 익스팬디드메탈



□ 결정세번: 제7314.50-0000호

---

14) 두산백과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7314.50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 율 (기본/KORUS)
0000	익스팬디드 메탈	00	익스팬디드 메탈	0

- 제7314호에는 ‘철강선제의 클로드(엔드리스밴드를 포함한다) · 그릴 · 망 · 울타리와 익스팬디드 메탈’ 을 분류하며,
- 특히 제7314.50호에는 ‘익스팬디드 메탈’ 을 특별히 분류함
  - 동 물품은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제7314.50호까지 분류하며, 이하 하위분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③ 유사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1

- 신청물품: 철강제의 클로드

- 아연이 도금된 철강제 와이어(직경 약 0.6mm)를 나선형으로 감은 것을 서로 교차하여 다이아몬드 형상의 망독이 형성되도록 한 철강제 클로드(크기: 7900mm x 2020mm)
  - 용도/기능 : 파티션 용도

- 결정세번: 제7314.41-0000호

- 관세율표 제7314호에는 “철강선제의 클로드(엔드레스밴드 포함) · 그릴 · 망 · 울타리와 익스팬디드 메탈” 이 분류되며
  - 제7314.4-호에는 “그 밖의 클로스(cloth) · 그릴 · 망 · 울타리” 를 분류함

- 같은 호의 해설서 “(A) 클로드(엔드레스밴드 포함) · 그릴 · 망 및 울타리”에서 “이 그룹에 해당되는 제품은 주로 철강제의 선을, 손 또는 기계로 교착, 교직, 망목으로 형성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그 제조방법은 섬유산업에 사용되는 방법(단순한 경위사로 된 직물, 메리야스 편물, 크로세편물 등을 제조하는 방법)과 대체로 유사하다.
- “선”이라는 용어는 횡단면이 각종형상이고, 열간성형 또는 냉간성형된 제품으로 횡단면의 치수가 16mm이하인 것을 말하며, 압연한 선 · 와이어로드와 판으로부터 절단한 플랫스트립과 같은 것이 있다(이 류 주2 참조)”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아연이 도금된 철강제의 선(직경 약 0.6mm)을 나선형으로 감아 서로 교차하여 다이아몬드 형상의 망목이 형성되도록 한 철강제의 클로드이므로,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제7314.41-0000호에 분류함

#### ④ 유사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2

신청물품: 엔진오일 망

- 자동차 엔진오일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철강제 망임 (규격: 121mm×46mm)
- 자동차 가솔린 엔진의 오일팬에 장착되는 “SCREEN ASSY-OIL” (엔진오일내의 불순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함)에 사용되어 엔진오일의 불순물을 제거함
- Over Mold(플라스틱), Mesh망(철강, SWRM)

결정세번: 제7314.49-0000호

-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오일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철강제 망으로, 자동차 가솔린 엔진의 오일팬에 장착되는 “SCREEN ASSY-OIL” (엔진오일내의 불순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함)에 사용됨.

- 관세율표 제7314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 [엔드리스 밴드 (endless band)를 포함한다] · 그릴 · 망 · 울타리 · 익스팬디드 메탈 (expanded metal)”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주로 철강제의 선을, 손 또는 기계로 교착 · 교직 · 망목으로 형성하여 제조한 것” 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용도에 대하여 “많은 재료의 세척용 · 건조용 · 여과용, 울타리 · 음식물 보호용커버 및 방충용 스크린 · 기계용 안전 보호물 · 컨베이어 용 벨팅 · 선반 · 매트리스 · 가구류 · 체 및 어레미 등의 제조, 콘크리트 보강용 등” 의 여러 용도에 사용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을 철강선으로 만든 그 밖의 망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4.49-0000호에 분류함

## ⑤ 수출자 유의사항

- 아연도금한 철강제의 것과 아연의 것의 구분필요
  - 동 물품은 아연을 도금한(galvanized) 철강제의 익스팬디드 메탈로서 제7314.50호에 분류되며 동 품목번호의 미국 수입관세율은 0%로 확인됨
  - 반면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서 튜브, 관, 관 연결구류(커플링, 엘보우, 슬리브 등)는 제7907호에 분류되며 미국 수입관세율은 일반세율 3%에 해당하는 품목임(한-미 FTA 적용시 0%)
  - 따라서 수출되는 익스팬디드 메탈의 성분이 철강에 아연을 도금한 것인지, 아연의 것인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
    - 이러한 구분은 제15부 주7 ‘복합물품의 분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임
    - 복합물품의 분류는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의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함
      - i) 철과 강은 동일한 종류의 금속으로 본다
      - ii) 합금은 그 합금으로 보는 금속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 iii) 제8113호의 서멧은 단일의 비금속으로 본다

- 특히, ‘도금’의 정의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해설서에서는 금속을 전기 분해, 증착, 분사 또는 염 용액에 담그는 등의 화학적 방법을 거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그러므로 도금여부 및 제품을 구성하는 금속의 중량비율 측정 등을 통하여, 구성성분에 따라 철강 또는 아연으로 보는 제품인지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4) 물 배관 연결구류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8533

□ 신청물품: 물 배관 연결구류(water by-pass joint)

- 자동차의 부분품으로서 몸체와 강철로 만들어진 꼭지로 구성되어 있음. 몸체는 엔진에 부착되며, 꼭지는 고무튜브를 통하여 다른 유압기구에 연결됨. 유압기구로부터 들어오는 물은 몸체를 통과하여 엔진 실린더 블록에 공급되므로, 동 물품은 물을 운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품임
  - 물 배관 연결구류: 물을 정상 회로(또는 배관)가 아닌 다른 회로(배관)로 흐르도록 하기 위해 추가한 분리 회로(배관)를 말함

□ 결정세번: 제7326.90-8588호

- 동 물품은 엔진블럭과 고무튜브를 연결하는 물 배관 연결구류로서, 제7326호에 분류됨
  - 제7307호의 용어에도 '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예: 커플링, 엘보우, 슬리브)'를 분류할 수 있으나, 동 물품은 한쪽에는 엔진을 다른 한쪽에는 철강제의 것이 아닌 다양한 재질의 것(예: 고무튜브)을 연결하므로, 제7307호의 관 연결구류로 볼 수 없음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7326.90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 율 (기본/KORUS)
1000	방직기계용 보빈 (bobbin)	10	주석판의 것	0
9000	기타		기타	
		25	- 캘리퍼 및 캔틸레버 브레이크와 케이 싱용의 케이블 또는 이너와이어로서 절단했는지 상관없다	0
		35	- 보통 사람이 운반하는 종류의 컨테이 너로서 주머니나 핸드백에 넣을 수 있는 것	7.8/0
		45	- 말과 나귀의 발굽	0
			- 기타	
		60	-- 귀금속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것	8.6/0
		85	-- 기타	2.9/0

-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제7326.90호에는 기타의 것이 분류됨

- 우리나라는 방직기계용 보빈 및 기타의 것으로 구분하나, 미국은 주석판의 것과 기타 및 용도와 크기, 재질 등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음

- 특히, 귀금속의 것(8.6%), 휴대용의 것(7.8%) 등은 높은 기본세율이 부과되므로 품목분류시 이를 품목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③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스테인리스 슬리브

- 자동차의 브레이크에서 스틸튜브(STEEL TUBE)와 티테플렉스 호스 (TITEFLEX HOSE, 재질: 철강)를 고정하는 철강제의 물품임(조립된 후 압입을 통해 서로 결합 및 고정됨)
  - 재질: 스테인레스 스틸(SUS304J1)
  - 원자재 입고 → Drawing(110톤 PRESS) → TC세척 → 열처리 → 산세처리 → 바렐 → 검사포장

□ 결정세번: 제7326.90-9000호

- 본 물품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에서 STEEL TUBE와 TITEFLEX HOSE를 고정하기 위해 서로 조립되어 압입을 통해 결합되는 철강제의 물품임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 i)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 ii)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iii)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 이상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함
- 이에 따라 동 물품이 제17부 이외의 호(특히 제7307호 및 제7326호)에 분류되는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1.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 분류여부
    - 제7307호 해설서에서 “관을 장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경질의 관 · 탭 · 연결용피스 등에 플렉시블 튜빙이나 호스를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는 고정용 또는 조임용 밴드 또는 칼라(hose clips)]”는 제7307호에서 제외한다고 예시하여 설명하고, 이러한 물품은 제7325호 또는 제7326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2.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분류여부
    - 제7307호 해설서에 따라,

- 본 물품은 자동차 브레이크에서 STEEL TUBE와 TITEFLEX HOSE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강제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④ 유사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철강제의 가스 · 냉각수관
  - 전기로에서 나오는 고온의 가스 및 공기를 이동하기 위한 관상의 철강제 물품으로 고온에 견딜 수 있도록 관벽 내부에 냉각수가 흐를 수 있도록 관로가 형성되어 있음
- 결정세번: 제7326.90-9000호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편침, 절단이나 스템핑 또는 접음 · 조립 · 용접 · 연삭 · 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전기로에서 발생한 고온 고압의 가스가 이동하는 철강제 기타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⑤ 수출자 유의사항

- 관 연결구류(제7307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관(tube or pipe)’ 을 양쪽으로 연결하는 구멍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해야 함
- 동 물품과 같이 두 개의 물품을 연결하여 액체 등과 같은 내용물을 연결하는 물품은 제7307호의 관 연결구류 또는 제7326호의 기타의 물품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음
- 제7307호의 관 연결구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되어야 하며,

- 관을 장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제7307호에서 제외하여 제7326호로 분류함
- 관 연결구류(제7307호)의 세율은 최대 6.2%, 기타 철강제품(제7326호)의 세율은 최대 8.6%으로서 품목분류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수출물품이 두 개 이상의 관을 연결하는 ‘관 연결구류’ 인지 또는 하나의 관을 관이 아닌 다른 물품에 연결하는 ‘기타의 제품’ 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

## 5) 엔진브라켓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7895

□ 신청물품

- 동 물품은 차량용 부분품 크랭크케이스 보강재(Stiffener-crankcase)로서 철강의 주조물이 삼각형 형상의 것임
  - 엔진의 왼쪽에 부착되어 엔진을 새시 또는 차량의 프레임에 부착시키는 기능을 수행함. 엔진에 부착되는 볼트구멍이 3개, 새시에 부착되는 볼트 구멍이 4개 형성되어 있음

□ 결정세번: 제8302.30-3060호

- 차량의 엔진에 사용되는 브라켓으로서, 제8302호에 분류되는 범용성 부분품의 일종이므로 제8302.30-3060호에 분류함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302.30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율 (기본/KORUS)
000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 · 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30	철강, 알루미늄, 아연의 것	2/0
		60	기타	3.5/0

□ 제8302호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의 분류됨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 · 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가구 · 문 · 계단 · 창 · 블라인드 · 차체(coachwork) · 마구 · 트렁크 · 장 · 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 · 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 우리나라는 6단위 소호의 구분이 없으나,
- 미국은 재질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아연의 것(제8302.30-30호)과 기타의 것(제8302.30-60호)으로 구분
- 철강, 알루미늄, 아연으로 만든 제8302호의 물품은 관세율 2%로서, 기타의 것이 3.5%인 것에 비하여 관세율이 낮은 것이 특징

### ③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 신청물품: 엔진브라켓

- 기능 및 용도: 타이밍벨트 옆에 부착된 BRACKET A-ENGINE MOUNT TOP과 결합하여 엔진을 차체에 고정하고, 맵핑부쉬(고무)가 장착되어 엔진의 진동을 흡수, 차체의 떨림을 최소화 하는 역할
- 구성요소 및 재질: 브래킷, 볼트: 철강, 부쉬(BUSH): 천연고무

#### □ 결정세번: 제8302.30-0000호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중 나목에 의하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를 예시하면서 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헌지).”라고 설명하면서 브래킷, 패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엔진을 차체에 고정하고 탬핑부쉬(고무)가 장착되어 엔진의 진동을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장착구이므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④ 유사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엔진브라켓

- 동력조향펌프(Power Steering Pump)를 엔진 블럭에 고정하기 위한 알루미늄 재질의 브라켓과 브라켓 내부에는 냉각수가 흐르는 통로가 있고 양쪽에는 Nipple이 조립되어 냉각수가 흐를 수 있도록 Pipe가 연결되어 있는 물품

□ 결정세번: 제8708.99-9000호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함.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중략)…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i)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

- 본 물품은 동력조향펌프(Power Steering Pump)를 엔진 블럭에 고정하기 위한 브라켓과 브라켓 내부에는 냉각수가 흐르는 통로가 있고 양쪽에는 Nipple이 조립되어 냉각수가 흐를 수 있도록 Pipe가 연결되어 있는 물품으로

-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차량의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⑤ 수출자 유의사항

- 범용성이 있는 엔진브라켓과 차량용에 사용되는 엔진브라켓
  - 엔진브라켓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차량에 사용되는 엔진에 부착되어 다양한 장치와 연결을 용이하게 해 주는 물품임
  - 그러나 엔진브라켓이라 하더라도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엔진브라켓은 제8708호(관세율 최대 2.5%)에 분류되어야 하며, 범용성이 있는 엔진브라켓은 제8302호(관세율 최대 3.5%)로 분류되어야 함
    - 차량에 전용·주로 사용의 기준은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물품의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브라켓 이외의 추가되는 특징적인 기능(예: 냉각수 통로, 파이프 부착 등)이 있다면 차량에 전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재질에 따른 엔진브라켓의 품목분류 및 관세율 차이 존재
  - 우리나라에서는 제8302.30호 이하 10단위 구분이 없으나, 미국에서는 재질에 따라 8단위 구분이 존재함
    - 철강, 알루미늄, 아연 재질의 브라켓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2%(한-미 FTA 0%)로서 기타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3.5%(한-미 FTA 0%)보다 낮으므로 브라켓의 재질에 대한 판단이 필요
    - 브라켓의 재질은 제15부 주5에 따른 합금의 분류규정을 적용하여 첫째, 비금속의 합금은 합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보며, 둘째, 제15부의 비금속 중량의 합계가 그 밖의 원소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 제15부의 비금속으로 봄
    - 합금의 정의에 있어서 합금은 금속가루의 혼합물을 소결한 것과 용융으로 제조한 금속의 혼합물 및 금속간 화합물을 포함함

## 4. 원산지 결정사례

### 가. 티타늄 관

#### ① 사례개요

□ 참조번호: N265600

□ 신청물품: 티타늄 관

-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냉간압연 티타늄 스트립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제조된 티타늄 관으로서 미국 내 생산 후 내수용으로 사용되거나 재수출되는 물품

□ 쟁점사항

- 수출물품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는가?
- 미국산으로 원산지표시는 가능한가?

#### ② 품목번호 결정

□ 미국 관세청은 신청된 물품이 ‘티타늄 관(Titanium tubes)’이며, 제8108.90.60호에 분류된다고 결정

- 제8108.90호는 크게 제8108.90.30호(티타늄 제품) 및 제8108.90.60호(기타의 티타늄)으로 구분되며 세율은 각각 5.5%, 15%임
  - 제8108.90.30호의 일반세율이 더 낮으나, ‘티타늄 제품’으로 볼 것인지 ‘기타의 티타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요청
- 이에 미 관세청은 제8108.90.60호의 기타의 티타늄으로 분류함

□ 다만 관 연결구류가 부착되어야 민간항공기 교역에 관한 협정<sup>15)</sup>특혜세율(Free C)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 주의

15) 민간항공기 교역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WTO Annex 4 다자간 무역 협정 중 민간항공기 교역에 관한 협정. 가입국간 민간항공기 제조 및 수리 등에 사용되는 원자재 또는 부분품 등 민간항공기 수리에 부과되는 관세의 철폐를 주요 내용으로 함. 우리나라에는 옵저버(Observer)자격으로 가입되어 있음

- 제81류에 대한 미국 추가 주(US Additional Notes) 2에 따르면, 제 8108.90.60호(기타의 티타늄)가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 연결구류(fittings)가 장착되어 있어야 함을 규정

**< 표 4-2 > 제81류 미국 추가 주 2**

For the purposes of subheading 8108.90.60, the rate of duty "Free (C)" appearing in the "Special" subcolumn applies only to tubes and pipes with attached fittings, suitable for conducting gases or liquids.

### ③ 원산지 표시

- 미국 일반물품(섬유 및 의류물품을 제외한 물품)원산지표시를 규정하는 19 C.F.R. 134.1 (b)항에 따라 동 티타늄 관은 미국산으로 원산지 표시가 가능함
- 미국의 원산지규정은 특혜원산지와 비특혜원산지 규정으로 구분하고, 이를 모두 관세법(19 U.S.C) 및 관세법 시행규칙(19 C.F.R)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 중 19 C.F.R 134는 비특혜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증명 및 관세행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 그리고 비특혜원산지결정기준은 19 C.F.R. 102.0~102.21에 명시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범위를 규정
    - ① 섬유 및 의류물품 PSR: 제102.21조
    - ② 기타 일반물품: 명시적 규정 없음(판례에 따름)
- 원산지표시와 같은 비특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섬유 및 의류물품을 제외하고는 PSR(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이 없음
- 다만 미 관세청에서는 원산지를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성장한 국가’로 정의하고,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인정한다고 규정
- 티타늄 관은 미국 내에서 티타늄 스트립(strip)으로부터 생산되어 실질적변형이 발생하였으므로 미국산으로 표시 가능

- 특히 미 관세청은 티타늄 스트립(titanium strip)에서 티타늄 관(titanium pipe)이라는 구별되는 명칭(distinctive name)으로 바뀌었으므로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한다고 설명
- 미국 내 생산된 티타늄 관에 대하여 FTC관할 대상임
- 미국 내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규제는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의 연방거래위원회법(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제5부 ‘불공정한 사기 행위 및 관행의 금지’에 명시됨

## ⑤ 수출자 유의사항

- 미국의 비특혜물품 원산지표시 규정은 19 C.F.R. 134에 방법 및 절차 등이 존재하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은 섬유 및 의류물품을 제외하고는 부재한 상태
-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해야 한다는 추상적 개념을 이해해야 함
  - 미국 법원과 관세청의 판정사례에서 적용되는 원칙은 제조과정에서 구별되는 명칭, 특성, 또는 용도를 갖는 새롭고 다른 물품 (a new and different article, having a distinctive name, character, or use) 등임
  - 그러나 이 같은 사례별 원산지판정 방식은 필연적으로 명료성, 예측 가능성,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 점은 미국도 스스로 인정<sup>16)</sup>
- 원산지 표시가 중요한 경우, 반드시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전심사를 거쳐 미국수입 통관시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16) 김영환, 특혜-비특혜 원산지규정의 상관관계와 원산지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월간 관세와무역 2014년 1/2월 호 재인용.

## 5. 소결

- 비금속 제품에 적용되는 미국 국내 주(Additional U.S. Notes)를 고려한 품목분류 결정 필요
  - 우리나라 관세율표 국내 주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미국 HTSUS에 적용되는 미국 국내 주가 있으며, 이 중 철강제의 관 및 비철금속제의 관 물품에 적용되는 국내 주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표 4-3 > 제15부 미국 국내 주**

류	US Additional Note
72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term "unwrought" refers to metal, whether or not refined, in the form of ingots, blocks, lumps, billets, cakes, slabs, pigs, cathodes, anodes, briquettes, cubes, sticks, grains, sponge, pellets, flattened pellets, rounds, rondelles, shot and similar manufactured primary forms, but does not cover rolled, forged, drawn or extruded products, tubular products or cast or sintered forms which have been machined or processed otherwise than by simple trimming, scalping or descalin
73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For the purposes of heading 7304 or 7306, <u>the rate of duty "Free (C)" appearing in the "Special" subcolumn applies only to tubes and pipes</u> with attached fittings, suitable for conducting gases or liquids.</li> <li>2. For the purposes of subheading 7307.19.30, the expression "ductile fittings" refers to fittings which contain over 2.5 percent carbon and over 0.02 percent of magnesium or of magnesium and cerium, by weight.</li> </ol>
74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The deduction provided for in additional U.S. note 1 to chapter 26 shall apply to cement copper and copper precipitates of subheading 7401.20</li> </ol>
76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For the purposes of heading 7608, <u>the rate of duty "Free (C)" appearing in the "Special" subcolumn applies only to tubes and pipes</u> with attached fittings, suitable for conducting gases or liquids.</li> </ol>
79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For the purposes of heading 7901, "casting-grade zinc" contains by weight at least 97.5 percent of zinc and contains by weight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elements in the quantity indicated: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more than 1.8 percent of lead,</li> <li>(b) more than 1.8 percent of cadmium,</li> <li>(c) more than 1.8 percent of iron,</li> <li>(d) more than 0.5 percent of aluminum,</li> <li>(e) more than 1 percent of copper,</li> </ol> </li> </ol>

	(f) more than 0.08 percent of titanium, (g) more than 0.1 percent of any other base metal, taken separately.
81	<p>1. Alloys of each of the base metals provided for in chapter 81 are metals in which the content of the respective base metal is, by weight, less than 99 percent, but not less than any other metallic element.</p> <p>2. For the purposes of subheading 8108.90.60, <u>the rate of duty "Free (C)" appearing in the "Special" subcolumn applies only to tubes and pipes</u> with attached fittings, suitable for conducting gases or liquids.</p>
82	<p>1. The provisions in this chapter which specifically refer to kitchen or tableware include articles of types which are used outdoors as well as those which are used indoors.</p> <p>2. In determining the length of files and rasps (heading 8203), the tang (if any) should not be included.</p> <p>3.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the rate of duty applicable to sets provided for in heading 8205, 8206, 8211 or 8215, a specific rate of duty or a compound rate of duty for any article in the set shall be converted to its ad valorem equivalent rate, i.e., the ad valorem rate which, when applied to the full value of the articl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402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would provide the same amount of duties as the specific or compound rate.</p>
83	1. The dutiable weight of hooks, eyes and eyelets in subheading 8308.10 includes the weight of cards, cartons and immediate wrappings and labels.

- 민간항공기 교류에 관한 협정(Free C) 적용시 관 연결구류를 부착한 관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규정한 주 규정이 존재함
- 제73류(철강제의 제품), 제76류(알루미늄 및 그 제품), 제81류(기타 비금속 및 그 제품)에 속하는 관(tube) 제품은 관 연결구류가 부착되어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규정
    - 우리나라 수출물품 사전심사 사례 중 3개 물품이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은 사례로서, 관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을 반드시 연결구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 비록 우리나라는 동 협정 회원국은 아니나, 수출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미국 국내주에 대한 사전 분석이 반드시 필요할 것임

## V. 기계산업

### 1. 산업동향

#### 가. 생산동향

##### 1) 일반 생산동향

- 2015년 기계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0.5% 증가한 105조원으로, 2012년 이후 1%대의 낮은 생산 증가율 지속<sup>17)</sup>
  - 전방 산업의 가동률 하락, 설비투자 감소, 글로벌 제조업 경기 부진에 따른 내수·수출 동반 감소가 생산율 저하의 주된 원인
    - 2015년 3월 이후 재고 증가율이 출하 증가율을 지속 상회하고 있으며, 3분기 이후 출하 감소가 심화되는 등 경기 둔화 구조 고착화 우려
    - 2016년 기계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104조원으로 전망되며, 자동차를 제외한 주요 전방 산업의 설비 가동률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아 2016년 내수 성장은 소폭에 그치거나 감소할 전망
  - 공작기계는 전기·전자, 철강·금속, 일반기계 수주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면서 생산량 감소
    - 2015년 공작기계 수주는 3.2조원으로 전년 대비 14.1% 감소
      - 미국 에너지산업 둔화, 중국 내 자체조달 비중 상승 등으로 수출이 부진하면서 전체 생산량 감소
    - 2015년 건설기계에 신규 배출가스 규제 도입
      - 2015년 하반기 배출가스 규제 Tier 4 적용에 따른 상반기 Tier 3 모델 판매 촉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판매량 감소

17) 한국기계연구원. 기계산업 2015년 성과와 2016년 전망. 기계기술정책 No. 82

- Tier 3<sup>18)</sup>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는 2015년 6월·9월까지만 생산·출고가 가능함에 따라 상반기 업계의 공격적 영업이 진행, 굴삭기를 중심으로 일시적 판매 증가
  - 그러나 Tier 4 규제가 적용되면서 장비 가격 상승과 시장의 가격 저항까지 심화될 가능성성이 높아 내수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
- 보일러 산업은 대체에너지기기의 강세로 산업용 보일러의 보급이 점차 둔화
- 전통적 보일러시장은 최근 수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히트펌프 등의 대체기기시장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
  - 국내 주요 보일러제조사들의 기존 주력보일러 단일 매출은 전년대비 평균(5개사) 17% 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
  - 다만 국내에 보급된 보일러 중 40% 이상이 2000년 이전에 설치된 보일러로서 산업용보일러의 기기수명이 15년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보일러 수요는 올해 교체시장에서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

## 2) 미국 생산동향

- 미국 내 기계산업은 수출이 급감했던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 2015년 1,710억 달러 수출을 기록
- 미국 제조업체의 시설 및 기지의 미국 유턴이 산업기계 산업 전반에 호재로 작용하며 성장을 견인
    - 특히 캐터필러와 같은 대형 중장비 및 상용차 제조업체들이 해외공장 확대 일변도에서 벗어나 미국 생산시설을 증설하는 것도 미국 기계시장 확대에 크게 일조한 것으로 분석
  - 미국 기계 산업의 주 수출국은 캐나다, 멕시코, EU 순이며, 기계 생산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주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

18) 'Tier'는 건설기계나 농기계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허용 기준으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규제 수준도 높아진다. 2009년부터 Tier3 기준을 따르던 우리나라는 2015년 Tier4 기준을 적용했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10월1일부터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판매 가능하다. Tier3에서 Tier4로 바뀌면 질소산화물(NOx)과 디젤 미립자(PM) 배출량을 각각 90% 감축해야 한다.

- 기계 산업 중에서도 건설기계, 내연기관, 터빈 및 농기계가 수출 견인에 큰 역할을 함
- 반면, 미국의 공작기계 수주(2015년 1~10월)는 3,453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7.4% 감소했으며, 절삭기계 및 성형기계 모두 감소세를 보여 전체 공작기계의 생산이 둔화

## 나. 수출동향

### 1) 일반 수출동향

- 기계 전반의 2015년 수출은 유럽 경기 부진, 엔저 영향, 하반기 대 미국 수출 둔화 등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 전년대비 수출이 2.4% 감소
  - 해외시장에서 엔저 이후 일본 업체의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국내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 중국의 성장속도 둔화와 중국산 일반기계의 경쟁력 상승, 중국내 조달 비중 확대 등으로 인해 수요가 지속적으로 위축
  -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설비 투자 감소 및 대미 기계류 수출 둔화
- 공작기계의 대중·대미 수출은 2년 연속 감소하였으며, 유럽은 두자리 수 감소세로 전환
  - 1월의 단발성 수주(기아자동차 멕시코 엔진공장 건설에 따른 대규모 수주)를 제외하고는 수출 수주 비중이 40%대로 하락하며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내수 수주가 수출 수주를 역전
  - 일본 자동차 기업의 중국 공장 건설 마무리 단계 진입 및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대중 수주 감소가 전체 수출 수주 감소의 주요 원인
  - 또한 일본 공작기계 업계는 호황기에 미국, 유럽 등을 주요 시장으로 공략하나, 침체기에 저사양 제품을 출시함에 따라 우리나라와의 경쟁이 증가하는 경향 발생
- 건설기계 수출은 중국, 아시아 등 주력 수출 시장의 경기 둔화 및 유럽과 미국의 수요 정체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

- 특히 중국의 굴착기 수요가 4년 만에 30%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건설 기계 수출 감소 심화
  - 그러나 굴착기의 평균 수명(5년 ~ 7년) 및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프로젝트<sup>19)</sup> 추진에 따라 2016년 하반기 이후 수요 회복 기대

## 2) 對미국 수출동향

- 우리나라의 2015년 대미 기계류 수출금액은 총 122억 달러로서 2014년 120억 달러 대비 약 1.7% 증가한 수치
- 우리나라의 대미 상위 20대 수출품목 중, 주요 수출품목인 기계(제8469호 ~ 제8472호)의 전용 부분품(제8473호)의 수출이 전년대비 7% 증가한 20억3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 이외에도 냉장고 및 냉동고(제8418호) 3.6%,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 기기(제8471호) 3.5%, 세탁용·클리닝용·건조용 기계(제8451호) 7.4%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증기발생보일러(제8402호)는 전년 대비 수출이 122.2% 증가하면서 대미 수출 상위 20위 내에 진입
- 반면, 자주식 불도저 등(제8429호) 15%, 기체·진공펌프 등(제8414호) 12.7%, 반도체디바이스 등 제조기계(제8486호) 29.9%의 제품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내연기관 중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제8408호)의 수출은 20.6% 증가하였으나,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제8407호)의 수출은 21.3% 감소

---

19)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해상 실크로드와 연관된 유라시아, 동남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국가와 중국의 교역로를 구축하는 거대 프로젝트로, 자유무역구 설립·교통 인프라 시설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건설기계 수요 증가 기대

< 표 5-1 > 우리나라의 對 미국 기계류 일반수출 상위 20대 품목

[단위: 천 달러, % ]

HS 4	품목명	2014	2015	
		금액	금액	증감률
8473	제8469호~제8472호 기계의 전용 부분품 등	1,901,737	2,035,106	7
8418	냉장고, 냉동고 등	1,119,455	1,159,689	3.6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817,886	846,467	3.5
8429	자주식 불도저 등	646,710	549,929	-15
8409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 부분품 등	597,967	548,249	-8.3
8479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	551,512	533,298	-3.3
8451	세탁용, 클리닝용, 건조용 기계 등	465,758	500,136	7.4
8414	기체펌프나 진공펌프, 팬 등	566,733	494,619	-12.7
8486	반도체디바이스 등 제조기계	674,079	472,646	-29.9
8419	가열, 조리, 배소 등 온도의 변화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283,875	411,410	44.9
8431	제8425호~제8430호 기계의 전용 부분품 등	345,330	338,805	-1.9
8483	전동축 등	286,882	328,669	14.6
8413	액체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218,887	270,020	23.4
8481	탭, 코크, 밸브 등	281,877	266,711	-5.4
8402	증기발생보일러	117,762	261,696	122.2
8407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324,867	255,675	-21.3
8408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166,068	200,332	20.6
8411	터보제트, 터보프로펠러와 기타 가스터빈	277,654	185,336	-33.2
8421	원삼분리기	181,676	172,084	-5.3
8427	포크리프트 트럭 등	162,364	171,059	5.4
	합계(기계류)	12,089,205	12,227,387	

자료: 무역협회

## 2. 주요 통관규제

### 가. 상업·산업용 장비의 에너지 보호 기준

#### □ 개요

- 미국 내 상업·산업용 장비의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제품의 에너지 보호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샘플을 시험해야 하며, 상업적으로 유통하기 전 또는 매년 제품별 지정된 날짜 이전에 해당 제품이 에너지 보호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에너지국(DOE; Department of Energy)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함

#### □ 에너지 보호 기준

- 에너지 보호 기준치는 에너지국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구체적인 검사 절차 및 측정 역시 에너지국 규정에 근거하여 에너지정책법으로 제정
  - 제품별로 상이한 에너지 보호 기준은 미국연방규정집<sup>20)</sup>(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의 제10권에 수록됨
  - 예를 들어 전동기의 경우, 제조업자가 제품이 에너지 보호 기준에 맞게 제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DOE는 모든 요건 충족 시 CC번호(Compliance Certification number)를 부여

### 나. 비도로용 엔진 배기ガ스 규제(Tier-4)

#### □ 개요

- 비도로용 엔진 배기ガ스 규제(Tier-4)는 오프로드용 압축차화엔진에 대한 배기ガ스 배출 허용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일산화탄소(CO), 질소 산화물(NOx), 미세먼지(PM), 포름알데히드(HCHO), 비메탄 유기ガ스 (NMOG), 비메탄 탄화수소(NMHC) 등과 같은 배기ガ스를 제한함

---

20) 미국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은 연방행정부가 발한 행정명령을 집대성한 것으로 규정집의 각권은 매년 한 차례씩 갱신되며, 미국정부간행물실(Government Printing Office: GPO)에서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다.

## □ 내용

- 엔진에 대한 배기ガス 규제인 Tier는 미국 환경부(Environment Protect Agency; EPA)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1~4단계가 있어 단계가 높을수록 배출기준이 엄격
  - 현재 미국은 비도로용 엔진에 대해 Tier-4 Interim에 이어 한층 강화된 Tier-4 Final 규제가 2014년부터 적용

< 그림 5-1 > U.S Tier Schedule (Non-road)



자료: Cummins emissionsolutions

-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 등의 디젤엔진에 적용되며, 각종 엔진기술 및 배기 후 처리기술 등의 적용이 요구
  - 차량 대신 엔진 동력계를 이용, 엔진 출력 범위에 따라 기준이 분류되며 배기ガス 규제 단위는 g/kWh

### 3. 품목분류사례

#### 가. 상이사례

##### 1) 영상판독장치

- 영상판독장치를 우리나라에서는 제8471호(자기식이나 광학식 독취기)로 분류하였으나, 독일에서는 제8543호(그 밖의 전기기기)로 분류한 사례

사례출처	사전심사 결정사례 비교	
물품설명	컴퓨터를 이용한 엑스레이(X-Ray) 영상촬영기술(CR; Computed Radiography)에서 사용되는 영상판독장치. Image plate를 삽입하여 스캔하고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로 전송함 (Image plate는 환자의 X선 영상이 촬영된 고감도 영상판)	
사 진		
국 가	우리나라	독일
H S	8471.90	8543.70
분류근거	제8471호에는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특수한 형상의 문자를 독취하여 이것을 부호화된 정보의 전사 또는 처리를 행하는 기계에 의하여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전기신호로 변환시키는 것"이라고 규정	동 물품은 대상을 읽기 위한 레이저, 거울, 프리즘, 포토멀티플라이어, 통합드럼유닛, USB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기계가 결합된 복합기계이나 이 중에서 전체의 기능을 결정하는 것은 리더(Reader)임. 관세율표 통칙 제1호와 제3호의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제8543.70호에 분류함

## 2) 환기장치

- 실내 환기장치를 우리나라에서는 제8421호(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로 분류하였으나, 필리핀에서는 제8414호(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로 분류한 사례

사례출처	수출CO상이	
물품설명	동 물품은 실내 환기장치로서 내부에 탑재된 열교환기(heat exchanger)를 사용하여 내부의 오염된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외부로 배출함	
사 진		
국 가	우리나라	필리핀
H S	8421.39	8414.59
분류근거	<p>제8421호 해설에 따르면 기체용의 여과기, 청정기란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기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예: 가스 또는 연무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기타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라고 규정</p> <p>- 이에 따라, 동 물품은 제8421호의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p>	<p>제8414호에는 “주로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 구동식의 기계 및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가 포함되며”라고 설명</p>

### 3) 비데

- 비데를 우리나라에서는 제8424호(액체의 분사용·분무용 기기)로 분류하였으나, 태국에서는 제3922호(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세면기·비데 등)로 분류한 사례

사례출처	수출CO상이	
물품설명	<p>화장실에 설치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식 비데 및 수동식 비데. 두 가지 물품은 기능상 동일하지만, 기계식은 수압이나 온도 등을 직접 조정하여 사용해야 함. 주요 구성요소로서 밸브와 노즐 및 플라스틱제의 좌변기로 되어 있으며 자동식의 것은 전동기를 장착</p>	
사 진		
국 가	우리나라	태국
H S	8424.89	3922.20
분류근거	<p>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위생용품인 변기 시트와 커버(제3922호), 분사장치(제8424호), 전열기(온수·분무·온열 시트·열풍 건조)(제8516호)(자동식의 것에 한함)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 물품으로서, 주기능이 오염된 부위를 세척하는 '분사장치'에 있음</p>	<p>태국의 경우 제3922호에 분류하는데, 제3922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샤워통·설거지통·세면기·비데·화장실용 팬·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수세용 물탱크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으로 규정한 것을 들어, 통칙 제1호 호의 용어에 따라 '비데'를 제3922호에 특게하여 분류함</p>

## 나. 사전심사사례

- 2015년 미국 관세청에 신청된 우리나라 기계산업 관련 사전심사 물품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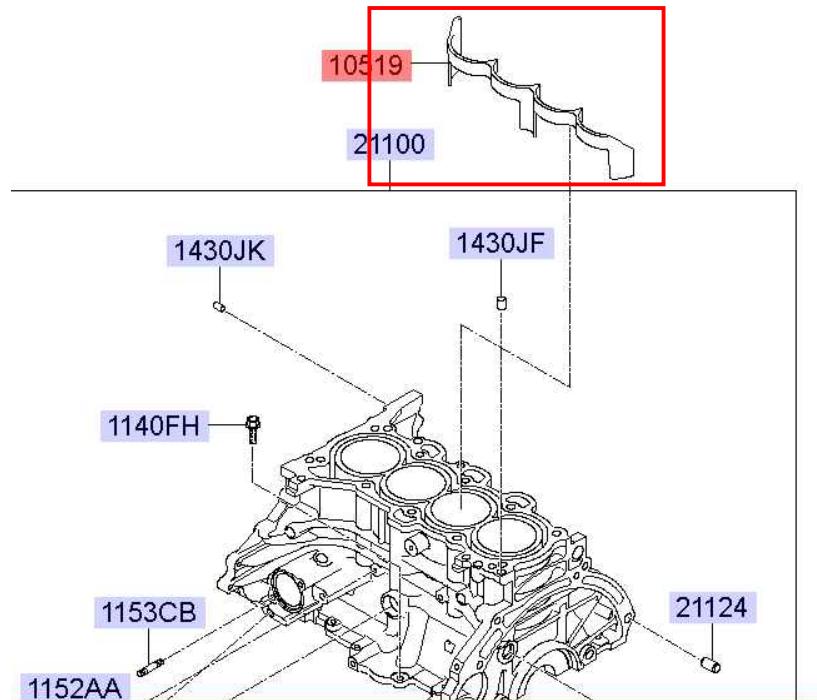
순번	HS	품명
1	8409.91-5085	Insert Water Jacket
2	8413.30-9060	오일펌프
3	8414.80-2055	압축기 및 솔레노이드 밸브의 조립품
4	8421.23-0000	차량용 오일필터
5	8424.89-0000	원드실드 클리닝 기기
6	8471.60-2000	블루투스 키보드
7	8479.89-9899	ABS시스템
8	8481.40-0000	과급압력조절기
9	8483.40-1000	토크컨버터

### 1) Insert Water Jacket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7465
- 신청물품: Insert Water Jacket
- 100% 플라스틱(PTA, Purified Terephthalic Acid) 재질의 것으로서 차량용 엔진블럭에 삽입되며 실린더와 워터파이프 사이에 위치함. Insert는 실린더와 냉각파이프 사이에 보호층을 형성하게 되며 냉각수(coolant) 및 다른 종류의 액체가 실린더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함

< 그림 5-2 > Insert Water Jacket



□ 결정세번: 제8409.91-5085호

- 동 물품은 HTSUS 제8409.91-5085호의 물품으로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기타: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기타: 제8701.20호,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의 차량용의 것: 기타: 기타”에 분류되며, 동 물품의 일반세율은 2.5%임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409.91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율 (기본/KORUS)
1000	제87류의 차량용	10	주철로 만든 부분품으로서, 클리닝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핀·게이트·스프루·라이저의 제거 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에서 위치확인을 위한 공정만을 거친 것	0
2000	아웃보드(outboard) 모터의 것		기타	
9000	기타		- 제8701.20호 또는 제8702호,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의 차량용의 것	
		30	-- 알루미늄 실린더 헤드	2.5/0
		50	-- 기타	2.5/0
		92	- 해상 추진용 엔진	2.5/0
		99	- 기타	2.5/0

-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
- 우리나라는 제87류 차량용의 것, 아웃보드모터의 것, 기타의 것 등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데 비해
- 미국은 일정수준의 공정을 거친 것과 기타로 구분하고, 이하 특정 차량용의 것인지, 특정 물품인지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음
- 제8409.91-10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세율 2.5%가 부과되므로 해당 호의 분류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음

## ③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insert water jacket

- 플라스틱으로 굴곡이 있는 삼각형 모양(사면체를 반 절단한 모양) 3개가 山자 모양을 형성하도록 성형한 것으로 차량의 엔진 실린더 블록 내에 장착되어 냉각수 순환을 도와 연료효율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물품(전체 길이 약 21cm이며, 높이는 약 8.0cm)
  - 용도 : 실린더 블록 내 삽입되어 냉각수 순환을 도와 연료효율을 높임

□ 결정세번: 제8409.91-100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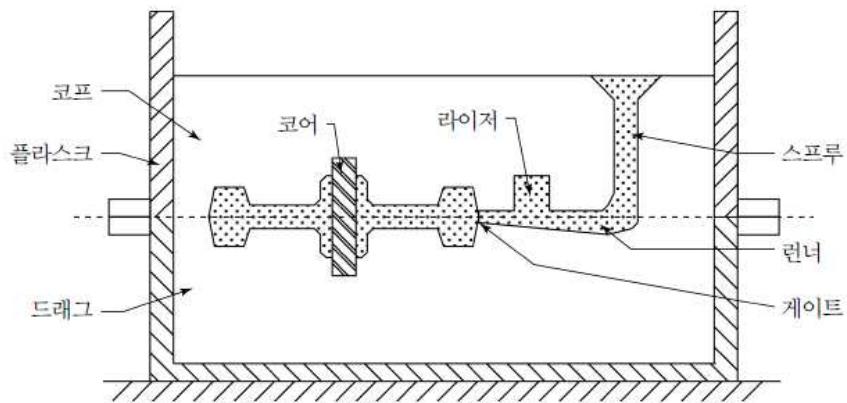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제외규정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부 총설 (III)에서 제17부 주2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제8407호 내지 제8412호에 해당하는 각종엔진(기어박스를 갖춘 엔진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부분품’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밸브, 흡배기 메니포울드, 피스톤링, 콘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부 총설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 (B)항에서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 품은 그 재질이 무엇인지를 불문한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기(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 · 나무 · 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의 내용에 의하면 “제8407호 내지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은 독립된 호인 제8409호에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엔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 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 8409.91-1000호에 분류

#### ④ 수출자 유의사항

- 일반세율 0% 적용을 위해서 특정 공정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함에 유의
- 제8409.91-10호: 주철로 만든 부분품으로서, 클리닝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핀 · 게이트 · 스프루 · 라이저의 제거 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에서 위치확인을 위한 공정만을 거친 것 (Cast-iron parts, not advanced beyond cleaning, and machined only for the removal of fins, gates, sprues and risers or to permit location in finishing machinery )
- 주철(cast-iron): 관세율표상 주철이란 주조 방식으로 제조되고, 철의 함유 중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서 ‘강(steel)’의 화학적 구성비에 해당하지 않은 물품을 말함. 주조 방식이란 금속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서 제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열간압연방식과 대비되는 제조방식임

< 그림 5-3 > 스프루 · 게이트 · 라이저의 위치<sup>21)</sup>



- 녹은 금속은 스프루(sprues)에서 런너를 통해 게이트(gates)라는 입구부를 통해 금형으로 들어감. 라이저(riser)는 주조 형상이 냉각되어 수축하게 되는데, 이때 공급할 액체 상태의 금속이 저장된 곳임

---

21) 다이캐스팅 금형. 초보기구쟁이의 기구설계 공부하기.

## 2) 오일펌프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6745

□ 신청물품: 오일펌프 밸런스샤프트

- 차량에 사용되는 오일펌프로서 총 5부분으로 구성됨. 밸런스 샤프트 (balance shaft), 오일펌프(oil pump), 해제밸브(relief valve), 인풋 스프로켓(input sprocket), 인풋 기어(input gear). 엔진 실린더블록의 바닥에 장착되어 엔진에 오일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함. 밸런스샤프트는 크랭크샤프트에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회전하면서 엔진의 소음과 진동을 감소시켜 줌

□ 결정세번: 제8413.30-9060호

- 동 물품의 주요 기능은 엔진에 오일을 공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오일 펌프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13.30-9060호의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에 사용되는 오일펌프로 분류함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413.30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율 (기본/KORUS)
1000	항공기용	10	압축 점화식엔진용 연료주입 펌프	2.5/0
2000	철도용 기관차용	90	기타	2.5/0
3000	선박용			
4000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용			
9000	기타			

-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를 분류하며, 제8413.30호에는 ‘연료·윤활유·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함
  - 제8413.30호 이하 하위구분은 우리나라의 경우 용도별로 5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미국은 2가지로 구분하여 우리나라의 하위 구분이 보다 세부적임
    - 미국의 8단위 구분은 원산지가 충족된다면 모두 0%로서 제8413.30호 이하의 구분은 관세율 측면에서 별도의 실익이 없음
    - 다만, 엔진오일펌프의 부분품의 경우 한-미 FTA특혜세율 1.2%가 부과되므로, 부분품 상태의 것보다 완제품 상태의 것으로 수출통관하는 것이 유리할 것임(수출자 유의사항 참조)

### ③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엔진오일펌프
  - 엔진오일 팬에서 오일을 흡입하여 베어링, 피스톤, 캠샤프트, 밸브 계통 등 엔진기관의 각 부분을 보호하고 윤활하기 위해 압송하는 펌프(가로 240mm × 세로 350mm × 높이 125mm)
    - 오일팬 안에 장착되어 크랭크샤프트와 연결된 기어에 의해 강제구동 됨
    - 주요 구성요소 : 하우징 및 커버(알루미늄), 로터(소결재) 등
- 결정세번: 제8413.30-4000호
  - 엔진오일펌프는 차량 엔진의 부분품으로서 차량의 부분품(제87류)로 분류되거나 액체펌프(제84류)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2단위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함
    - 제17부 주2 마.목에 따르면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물품은 제84류에 분류될 수 있을 것임<sup>22)</sup>

22) 또한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 (e) 펌프·압축기 및 팬(제8413

- 또한 제16부 부분품 분류규정인 주2호에 따르면, 제84류나 제85류의 어느 특정한 호(부분품이 분류되는 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부분품은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
- 동 규정 적용을 위하여,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3.30호에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 기타의 기계와 차량 등에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펌프(내연기관의 급유용 또는 급수용 펌프와 인조섬유의 방적기계펌프를 포함한다)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차량용 엔진기관의 각 부분에 오일을 압송하여 보호 및 윤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엔진오일 펌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13.30-4000호에 분류함

#### ④ 유사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 신청물품: 오일펌프 커버

- 디젤 또는 가솔린 차량 오일펌프 하우징의 커버
- 기능 : 엔진오일을 순환하여 엔진 냉각
- 제조공정 : 용해 → 주조(다이캐스팅) → 사상 → 쇼트(shot blast) → 가공 → 초음파세척 → De-Burring/최종검사 → 검사/포장
- 재질 : 알루미늄(ALDC 12.1)

##### □ 결정세번: 제8413.91-2000호

---

호 또는 제8414호)”이라고 설명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 규정,
- 또한 제16부 총설 “(II) 부분품...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1)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 및 제8414호)...”고 해설함
-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에서는 “이러한 부분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펌프의 하우징 또는 보디, 원동기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설치된 펌프의 피스톤에 접속하여 구동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된 로드(예: 펌핑로드·“서커로드”), 피스톤·플런저·베인, 캠·나선 스크루·임펠러휠·확산익(擴散翼), 버킷과 버킷이 부착된 체인, 밴드식의 액체엘리베이터용 밴드, 압력실”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오일펌프 하우징의 커버이므로 액체펌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3.91-2000호에 분류함

## ⑤ 수출자 유의사항

- 엔진오일펌프 수출시 부분품 상태의 관세율(한-미 FTA 1.2%) 및 오일펌프 완제품 상태의 관세율(한-미 FTA 0%)에 주의
- 내연기관의 엔진블럭에 장착되어 오일을 공급하는 오일펌프는 엔진의 부분품으로 보일 수 있으나,
  - 완전한 오일펌프인 경우에는 제8413.30호로 분류되어 FTA특혜세율 0%가 부과되고, 완전한 오일펌프가 아닌 부분품 상태의 것은 제8413.91-10호로 분류되어 1.2%의 관세가 부과됨
  - 완전한 오일펌프와 오일펌프의 부분품 구분 기준은 해설서에 다음과 같

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야 함. 이러한 부분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펌프의 하우징 또는 보디,
- 원동기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설치된 펌프의 피스톤에 접속하여 구동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된 로드(예: 펌핑로드 · “서커로드”),
- 피스톤 · 플런저 · 베인,
- 캠 · 나선 스크루 · 임펠러휠 · 확산익(擴散翼),
- 베킷과 베킷이 부착된 체인,
- 밴드식의 액체엘리베이터용 밴드, 압력실

### 3) 압축기 및 솔레노이드 밸브의 조립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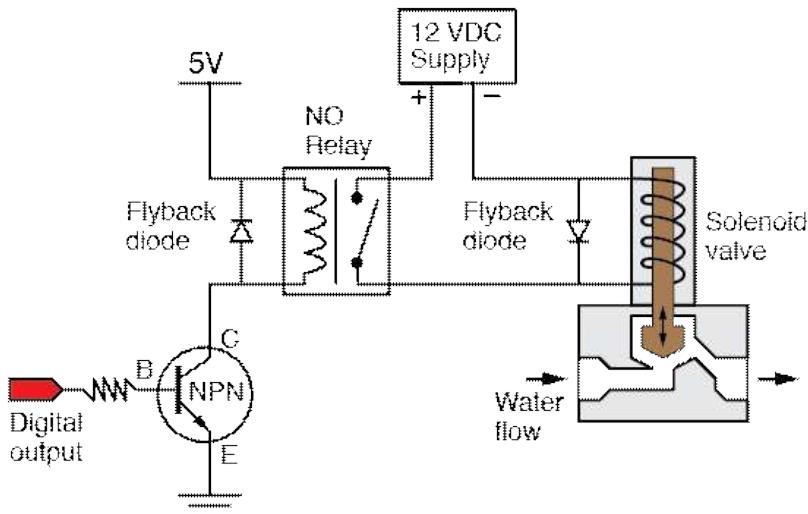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71073

□ 신청물품: 압축기 및 솔레노이드 밸브의 조립품

- 압축기는 압축기와 솔레노이드 밸브 및 이를 차량에 고정시키는 장착 구로 구성되어 있음. 공기를 압축하여 약 384와트의 전력을 생산함. 압축된 공기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여 압축된 공기는 차량의 서스펜션 시스템 내부에 분배됨. 압축기 및 솔레노이드 조립품의 무게는 5.4킬로그램임
- 솔레노이드 밸브(Solenoid Valve):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흘러 자기장이 형성되면 근처의 금속 물체에 인력을 작용하게 되어 밸브의 작동을 전기적 신호로 제어할 수 있는 밸브를 말함. ‘솔레노이드’란 단어는 전기에너지를 자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임

< 그림 5-4 > 솔레노이드 밸브의 원리



□ 결정세번: 제8414.80-2055호

- 동 조립품 중에서 압축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압축기가 분류되는 제8414호에 분류함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414.80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율 (기본/KORUS)
1000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기체 압축기	
9	기타	05	- 터보차저 및 수퍼차저	0
91	그 밖의 기체펌프	16	- 기타	0
10	항공기용	20	기타 압축기	0
90	기타	90	기타	3.7/0
92	그 밖의 기체압축기			
10	사용동력이 74.6킬로와트 미만인 것			
20	사용동력이 74.6킬로와트 이상 373킬로와트 미만인 것			
30	사용동력이 373킬로와트 이상인 것			
9900	기타			

□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제8414.80호에는 진공펌프,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예인용 바퀴달린 쇄시 위에 장착된 기체 압축기, 팬, 후드 등을 제외한 기타의 물품이 분류됨

□ 제8414.80호의 하위 분류에 있어 우리나라와 미국의 분류기준에는 차이가 존재함

- 우리나라는 후드와 기타로 우선 분류 후, 이하 기체펌프와 기체압축기로 분류한 반면, 미국은 압축기를 기준으로 한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음
  - 기체압축기와 기타압축기 모두 일반세율이 0%이나 이를 제외한 기타의 것은 3.7%의 일반세율이 적용됨(한-미 FTA 0%)

### ③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 신청물품: 기체 압축기

- 중·대형 상용차의 제동 동력원으로 공압을 사용하기 위해 엔진의 기어로 구동하여 압축공기를 만들어내는 장치(사용동력 5.6kw)
  - 작동원리 : 엔진의 기어가 구동하면 크랭크샤프트가 회전하고 샤프트에 장착된 커넥팅로드와 피스톤이 수직왕복운동으로 변환됨. 피스톤의 수직왕복운동에 의해 압축된 공기를 실린더 헤드로 보내주고 에어탱크로 전달
  - 장착차량 : 버스, 크레인, 중대형트럭, 건설기계

#### □ 결정세번: 제8414.80-9210호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4류 총설 (B)그룹에서 제8402호에서 제8424호까지의 호에는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의 종류여하를 불문하고 주로 고유의 기능에 따른 기기를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기계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 (A) 펌프와 압축기 그룹에 공기 또는 기타 기체압축기(저압용 또는 간헐적으로 작동하는 압축기는 제외한다)는 수냉식으로 되어 있거나, 압축시에 발생하는 상당한 열을 분산시키기 위한 공냉용(표면냉각)의 펀 또는 기타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왕복피스톤식 · 원심식 · 축류식 및 회전식의 압축기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압축기는 압축공기식원동기 · 브레이크 · 공기식 수송관 등의 기계 또는 장치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중 · 대형 상용차의 제동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왕복 피스톤식에 의해 압축공기를 만들어 내고 수냉식의 냉각장치를 갖춘 사용 동력이 5.6kw인 기타 기체압축기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2가, 제841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414.80-9210호에 분류함

#### ④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 신청물품: 압축공기 제어용 밸브

- 선박 디젤엔진의 압축공기 시동장치(Air starting system)\*에 사용되는 압축공기 분배기로 철강제 body 내부에 회전하는 게이트(distributor disc)가 있어 게이트의 회전에 따라 엔진의 각 실린더에 압축공기를 순차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물품
- 압축기(또는 압축공기 탱크)와 엔진의 사이에 위치하여 압축기로부터 발생된 30bar의 압축공기가 본 건 물품으로 유입되며 본 건 물품 내부의 pilot valve 타입의 distributor disc가 회전(캡슐프트의 작동에 따라 회전)하면서 각 실린더로 이어지는 압축공기의 유로가 개폐되고 이에 따라 각각의 실린더에 압축공기가 유입되어 피스톤을 움직이게 됨

##### □ 결정세번: 제8481.80-1030호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 · 보일러 · 동체 · 탱크 · 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 코크 ·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 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의 흐름(공급용 · 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 · 탱크 · 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텨 · 콕 · 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 · 디스크 · 볼 · 플러그 · 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 · 휠 · 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 · 솔레이노드 ·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선박용 내연기관(디젤엔진)의 시동장치의 일부로 고압의 압축공기를 엔진의 각 실린더에 순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개폐구(distributor disc)를 회전시켜 유로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압축공기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제8481호의 범위에 포함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자동제어식 밸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1.80-1030호에 분류함

## ⑤ 수출자 유의사항

- 압축기용 밸브는 별도 제시(최대 5.6%)하는 것보다 압축기와 함께 제시(최대 3.7%)하는 것이 유리
-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압축기와 밸브는 별도로 수입되어 통관되고, 이러한 경우 압축기(제8414호)와 밸브(제8481호)는 품목분류가 구분되며 이에 따라 미국 수입관세율도 상이함
  - 제8414호의 압축기는 경우에 따라 최대 3.7%이나, 제8481호의 밸브는 최대 5.6%로서 일반적으로 밸브의 일반세율이 더 높음
- 동 사례에서는 압축기와 밸브가 결합된 상태로 제시된 것으로서, 미국 관세당국에서는 밸브보다는 압축기에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이 있다고 보아 통칙 제3호의 나목을 적용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짐

- 이를 활용한다면, 압축기와 밸브를 별도로 수입하는 것 보다 관세율이 낮은 압축기(제8414호)로서 수입통관하는 것이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유리할 것임
  - 다만, 이는 압축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어야 하며, 밸브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면 제8481호에 분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는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4) 차량용 오일필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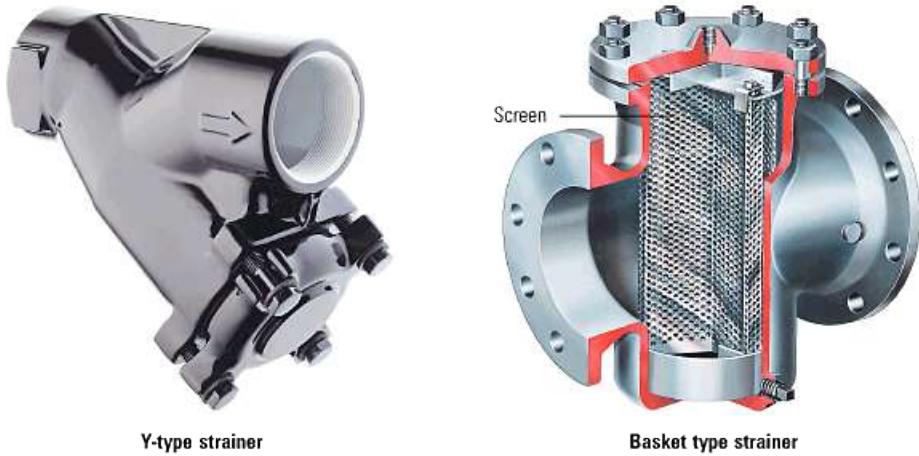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6493

□ 신청물품: 차량용 오일필터

- 차량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서, 동 물품은 플랜지(flange), 파이프, 커버 그리고 브라켓으로 구성되어 있음. 엔진오일에서 불순물과 이물질을 걸러내는 철강재의 스트레이너(strainer)임
  - 플랜지: 관과 관을 이을 때 사용하는 원판모양의 철강재. 볼트 등을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음
  - 스트레이너: 유체 속에 포함된 고형물을 제거하여 기기 등에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의 총칭

< 그림 5-5 > 스트레이너



□ 결정세번: 제8421.23-0000호

- 동 물품은 원심분리기로서 원심탈수기를 포함한 것, 필터 또는 이물질 제거용의 기기, 액체 또는 가스의 것; 그 부분품: 액체용의 필터 또는 이물질 여과기: 내연엔진의 오일 또는 연료필터로 분류하며 일반세율 2.5%를 적용함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421.23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 율 (기본/KORUS)
1000	제87류 차량의 내연기관의 것	00		2.5/0
2000	항공기용			
9000	기타			

□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제8421.23호에는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를 분류함

-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의 하위 분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87류 차량용의 것, 항공기용, 기타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별도의 구분기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③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오일필터

- 하우징내에 갈바늄(galvalume) 재질의 Spiral core, 섬유제(면, 목재, 광물 및 인조 등)의 Media 등으로 구성되어 엔진 오일의 불용성 물질, 금속 분말, 먼지 등을 여과하는 장치로 중장비 디젤 엔진에 사용

□ 결정세번: 제8421.23-9000호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23호에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내연기관용 및 공작기계용의 오일필터에 “보통 펠트·금망·스티일을 등의 적층으로 된 필터엘리먼트를 갖춘 것”을 포함하고 있음

- 동 물품은 하우징내에 갈바늄(galvalume) 재질의 Spiral core, 섬유제(면, 목재, 광물 및 인조 등)의 Media 등으로 구성되어 엔진 오일의 불용성 물질, 금속 분말, 먼지 등을 여과하는 장치로 중장비 디젤 엔진에 사용되는 오일필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23-9000호에 분류함

#### ④ 유사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오일필터용 철강제의 망

- 자동차 변속기의 하단에 장착되어 미션오일이 순환할 때 이물질을 정화하는 기능
  - 재질 : Steel Coil(SPCC), SUS(Steel Use Stainless)
  - 제조 : SUS망-BLANKING → SPOT용접

□ 결정세번: 제7314.49-0000호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1호 해설서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단순히 금속망 또는 기타의 여과용물질을 갖춘 것은 제외” 해야 하고, “제4812호에 분류되는 필프제의 필터블록과 기타의 여과재(세라믹 · 직물 · 펠트 등)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4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주로 철강제의 선을, 손 또는 기계로 교착 · 교직 · 망목으로 형성하여 제조한 것이고 여러 용도에 사용되며 한 예로 여과용(filtering)’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변속기 내부의 하단에 장착되어 미션오일이 순환할 때 이 물질을 정화하는 filter이므로 제17부 주2.(마)에 의하여 제8421호로 분류될 수 있으나, Washer에 SUS재질의 망이 단순 결합되었으므로 제8421호의 해설에 의거 “구성재료”를 기준으로 분류되어야 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제의 기타의 망’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14.49-0000호에 분류함

## ⑤ 수출자 유의사항

- 여과기는 제8421호에 분류(일반세율 2.5%)되나, 여과기 중의 철강제의 망은 제73류(제7314호 일반세율 0%)에 분류함
- 차량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오일 내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를 ‘오일필터’라고 하며,
  - 이러한 오일필터는 일반적으로 철강제의 망을 중심으로 이를 둘러싸고 있는 플랜지와 브라켓 그리고 하우징(커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러한 여과기로서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춘 것에 한하여 제8421호에 분류하며, 이 중 철강제의 망 등이 일부만 제시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호에 분류함(철강제의 망은 철강제품으로 보아 제7314호에 분류)
- 여과기의 부분품은 제16부 부분품 규정에 따라 제8421.91호 및 제8421.99호에 분류되나, 철강제의 망은 부분품임에도 불구하고 제73류로 분류됨에 유의하여야 함

## 5) 원드실드 클리닝 기기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6171
- 신청물품: 차량용 원드실드 · 헤드램프 클리닝 기기
  - 두 개의 플라스틱 용기와 모터로 구동되는 헤드램프 펌프, 원드실드 펌프, 레벨 스위치 및 다양한 호스와 클램프 · 커넥터로 이루어진 기기임
    - 운전자가 작동하면 워셔액이 용기에서 뿜어져 나오면서 적당한 위치에 호스를 통하여 분사됨
- 결정세번: 제8424.89-0000호
  - 신청인은 동 물품이 제트노즐(jet nozzle) 없이 제시된다고 하였으나, 동 기기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부분은 제트노즐이므로 동 물품을 제8424.89-0000호에 분류함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424.89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 을 (기본/KORUS)
1000	반도체 제조용	00	하위 분류 없음	1.8/0
9000	기타			

-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 · 살포용 · 분무용 기기(수동식 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가 분류되며,

- 제8424.89호에는 소화기, 스프레이건 등, 제트분사기, 농업용 및 원예용 기기를 제외한 기타의 기기가 분류됨
- 제8424.89호 하위분류는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제조용 및 기타로 구분하고 있으나, 미국은 별도 세부분류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③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윈드스크린 및 헤드램프 세정장치
  - 윈드쉴드(windshield), 헤드램프(head lamp) 세척을 위한 물을 보관하는 플라스틱 사출물의 물통과 물통에서 물을 펌핑하기 위한 모터펌프 및 물의 이동을 위한 고무호스 등이 조립된 물품 (구성 : Reservior, Windshield pump, H/Lamp pump, Level sensor, Cap)
    - 레벨센서(level sensor): 와셔액 잔량을 감지하여 일정량 이하로 떨어지면 운전석 계기판에 경고등을 점등시켜 운전자에게 와셔액 보충을 알림
    - 차량의 범퍼쪽에 장착되어 물통에서 보관하고 있던 물을 운전자의 작동에 따라 물통에 장착되어 있는 motor pump가 물통 안의 물을 펌핑하여 호스를 통해 물을 분사 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장치
- 결정세번: 제8424.89-9000호
  - 동 물품은 차량용 부분품(제87류)이면서 동시에 액체의 분사기(제8424호)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임. 그러나 관세율표 17부 주2에서 “8401호 내지 8479호의 기기는 부분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제8424호에 분류
    - 제8424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동차용의 기계식윈드스크린과 헤드램프세정 장치 및 잡초구제 또는 기타의 농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화염방사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차량의 범퍼쪽에 장착되어 물통에서 보관하고 있던 물을 운전자의 작동에 따라 물통에 장착되어 있는 motor pump가 물통 안의 물을 펌핑하여 호스를 통해 물을 분사하여 windshield 및 head lamp를 세정하는 기기임

- 다만 분사되는 노즐부분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본 건물품이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품목분류에는 영향을 끼치지는 않음
- 따라서 본 건물품은 자동차용의 윈드스크린과 헤드램프 세정장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 및 6에 의거 8424.89-9000에 분류함

#### ④ 유사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 신청물품: 윈드스크린 및 헤드램프 세정장치

- 본 물품은 자동차의 본네트 내부에 장착되는 것으로 Windshield(자동차 앞 유리)에 워셔액을 보관하고, 분사노즐까지 워셔액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물품
- 주요 구성요소
  - Washer Pump : 플라스틱 하우징 내에 모터, 임펠러, 다이어프램 등이 결합되어 있고 하우징 외부에는 접속단자, 밸브 흡입부, 토출부 등이 장착되어 있는 원심형 펌프
  - Container Body : 플라스틱재질의 워셔액 보관 용기
  - Hose Assembly : 가황한 EPDM 고무제로서 워셔액 토출구에 연결

##### □ 결정세번: 제8413.70-9090호

- 본 물품은 자동차 Windshield(자동차 앞 유리)에 워셔액을 보관하고, 분사 노즐까지 워셔액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원심형 펌프와 워셔액을 보관하는 플라스틱 용기, 고무제의 Hose A'ssy로 구성된 물품임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서로 상이한 재료로 세트 구성된 복합물로서 토출구를 통하여 워셔액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펌프를 작동시켜 분사하므로 펌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함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펴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기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 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원심펌프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되며 로터의 회전블레이드(임펠러)에 의하여 회전이 시작 되고 그 결과 원심력에 의하여 접선방향으로 배치된 토출구(吐出口)를 갖춘 환상(環狀)의 케이싱의 원주방향으로 향하여 흘러가게 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축방향으로 유입된 워셔액을 직선형태의 임펠러의 회전력에 의하여 원심력에 접선방향으로 배치된 토출구 쪽으로 배출해 주는 기타의 원심 펌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나)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3.70-9090호에 분류함

## ⑤ 수출자 유의사항

-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액체펌프(제8414호)로 분류되거나 액체분사기(제8424호)로 분류될 수 있음
- 동 물품은 차량 앞 유리를 세척하는 워셔액을 보관하고, 작동에 따라 앞 유리에 액체를 분사하도록 하는 장치임
  - 미국과 우리나라 사례에서는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분사노즐(jet nozzle)이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기타의 장치가 액체분사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 제8424호에 분류하였음
- 그러나 우리나라 유사물품사례를 보면, 레벨센서(level sensor)를 제외한 기타 구성이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액체분사기가 아닌 액체펌프로 분류한 사례가 존재

- 이는 액체분사기(제8424호)에 분류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의 부분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능 및 구조를 확인하여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특히 미국은 액체분사기(제8424.89호)에 일반세율 1.8%를 부과하나, 액체펌프에는 0%의 일반세율을 부과하는 바, 유사품목간 품목분류의 분쟁 소지가 존재함
-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자는 가능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 한-미 FTA 특혜세율(0%)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것이 불가할 시에는 가능한 차량용 윈드스크린 세정장치가 액체펌프에 분류될 수 있도록 미국세관에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6) 블루투스 키보드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9426

□ 신청물품: 블루투스 키보드

- 약 10인치 길이에 높이 1인치를 가지는 블루투스 키보드로서 일명 쿼티(QWERTY) 키보드로 불림. 스마트폰, 태블릿과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iOS 및 안드로이드, 윈도우 기기 등을 지원함. 동 물품의 특징은 접거나 동그랗게 말아서 보관할 수 있다는 것임

< 그림 5-6 > 블루투스 키보드



□ 결정세번: 제8471.60-2000호

- 동 물품은 제84류 주5 다.목을 충족하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 기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8471.60-2000호로 분류함

5.

다. 아래 라목이나 마목의 것은 제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 1)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접속되거나 한 개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 3)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나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로 분류한다. 그러나 다목 2)와 3)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 엑스-와이 코디네이트(X-Y co-ordinate) 입력장치,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로 분류한다.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제8471.60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율 (기본/KORUS)
10	입력장치	10	입력출력 장치가 결합된 것	0
10	문자(표식)판독장치		기타	
20	키 입력장치	20	- 키보드	0
30	마우스	70	- 자동자료처리장치 또는 그 단위기기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도록 만들어진 장치	0
40	스캐너	80	- 광학스캐너 및 마그네틱 잉크 인식 장치	0
90	기타	90	- 기타	0
20	출력장치			
30	입출력 겸용의 것			
20	비디오텍스 · 텔레텍스			
30	음성 입출력장치			
90	기타			

-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제8471.60호에는 입력장치나 출력장치(동일 하우징 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우리나라는 제8471.60호 하위에 입력장치와 출력장치, 그리고 입출력 겸용의 것으로 구분되며, 미국도 이와 유사하게 입출력 장치가 결합된 것과 기타의 것으로 구분하고 있음

### ③ 유사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LCD · 통화기능을 갖춘 키보드
  - 일반적인 디지털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인 키보드의 형태에 블룸버그사의 제품에 사용될 수 있는 특수 단축키가 일부 추가되어 있으며, 자체 내에 스피커와 마이크를 내장하고 있어 별도의 교환설비 없이 인터넷 전화 및 각종 음향기능을 지원하며, 통화상태 및 키보드의 상태를 표시하는 LCD창을 가지고 있음
    - 일반 키보드 자판외에 특정회사의 증권관련 업무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수 단축키를 추가하였으며 컴퓨터의 입력장치로서의 키보드 기능 외에 인터넷 전화기능 및 각종 음향기능을 지원하며, 통화상태 및 키보드의 상태를 표시하는 기능
- 결정세번: 제8471.60-1020호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는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
  - 본품은 동상 위에 영구적으로 결합되어 사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제8471호, 제8517호에 분류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기계로서 주기능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며,

- 제84류 주5항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될 경우, 제8471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면서,
  -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본품은 제84류 주 나.다.마.항을 충족하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 해당하며,
  - 인터넷 전화기능은 키보드 본연의 기능에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부가적인 기능이므로 통칙제1호 및 6호에 의거 제8471.60-1020호에 분류함

#### ④ 수출자 유의사항

- 태블릿 PC가 자동자료처리기기(제8471호)에 분류됨에 따라 태블릿 PC에 사용되는 단위기기들은 한-미 FTA원산지 규정에 관계없이 IT 협정에 따른 0%세율을 받을 수 있음
- 2012년 세계관세기구(WCO) 제49차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태블릿 PC를 IT협정에 의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컴퓨터(자동자료처리기기)로 최종 분류함
- 동 사례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블루투스 키보드로서, 스마트폰(제8517호) 및 태블릿 pc(제8471호)에 전용되느냐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
  - 그러나 스마트폰에만 전용되도록 디자인되고 태블릿 pc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기는 사실상 없는 상태
- 동 물품은 키보드이지만 동그랗게 말아서 가방 속에 휴대할 수 있다 는 특징을 지닌 것으로서, 외관상 일반 키보드와 다르지만 여전히 키보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471호에 분류함
- 이러한 IT제품들은 IT협정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무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한-미 FTA원산지규정을 충족할 필요가 없음

## 7) ABS 시스템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7460

□ 신청물품: ESC · ABS 시스템<sup>23)</sup>

- ABS(Anti-lock Brake System and Bracket Assembly) 및 ESC(Electronic Stability Control and Bracke Assembly)는 스키드(skid)를 감지하고 최소화 함으로서 운전안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
  - ESC는 차량의 정숙성(stability)을 높이기 위한 제어시스템으로서 가속, 운전, 감속 등을 담당함. 차량이 급격한 커브 도로를 달릴 때, 4개의 바퀴에 브레이크 및 가속력을 제어하여 가능하게 됨. ESC에는 바퀴를 제어하기 위한 통합압력센서가 탑재되어 있음
  - ABS는 급작스런 제동시 차량의 안전을 위한 장치로서, 운전자가 미끄러운 도로 위에서 급제동할 경우, 타이어가 잠기는(locking) 것을 방지하고 마찰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작동함

□ 결정세번: 제8479.89-9899호

- 신청인은 ESC와 ABS시스템이 제9032호(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물품은 제90류 주7 (자동조절용 및 자동제어용 기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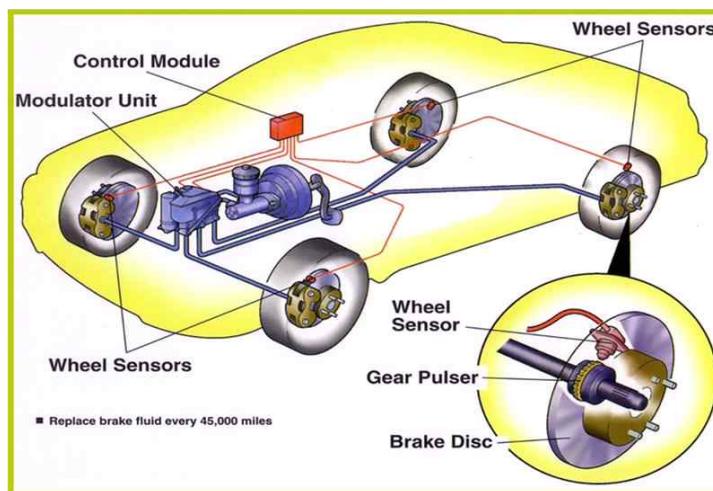
23)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으면 제동력에 의해 차량이 멈추기 전에 바퀴가 멈추게 되는데 이를 락업(lock-up)이라 한다. 즉 바퀴가 잠기는 것. 하지만 자동차는 여전히 움직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에 스키드마크를 그리며 차량은 계속 밀려나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자동차의 제동력은 평소보다 떨어지게 되는데, 이 때는 운동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정지마찰력 > 운동마찰력)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타이어가 도로의 접지력을 놓쳐서 주욱 미끄러지며 멈추는 것보다 브레이크를 잠깐 놓다가 다시 잡더라도 타이어가 제대로 땅을 잡고 있을 때 제동력이 더 뛰어나다는 의미이다. 또한, 락업이 걸린 상태에서는 (타이어가 노면을 놓친상황) 아무리 핸들을 돌려도 조향이 전혀 불가능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전부터 ABS가 안 달린 차량을 운전할 때 운전자의 상식 중 하나는 브레이크를 꽉 눌러도 차가 멈추지 않으면 연속해서 빠르게 떼었다 끝까지 밟는다 라는 테크닉이 있었다. 그리고 이걸 기계가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ABS이다.(나무위키)

### < 표 5-2 > 관세율표 제90류 주7

7. 제9032호에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
- 가. 액체나 기체의 유량·깊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해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나.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해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동 장치가 정보를 수신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측정된 요소와 목적하는 수준을 비교하여 개별적인 액츄에이터로 하여금 그러한 목표치에 유지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님 (예: 집 내부의 온도와 설정값을 비교하여 목표온도에 맞추고 유지되도록 난방을 수행)
- 오히려 동 기기는 차량제어가 가능한 제동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브레이크 유동 압력(brake fluid pressure to optimal level)’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 HQ 085281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제9032호에는 기능을 ‘최적화’ 하는 기기(optimize a function)를 포함하지 않으며, 목표치에 요소를 ‘유지’하는 기기(maintain a factor)를 포함함

### < 그림 5-7 > ABS 시스템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479.89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 을 (기본/KORUS)
10	가정형의 기기		전기모터를 내장한 전자기기	
10	공기청정기(제습 및 가습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 공기가습기 또는 제습기	0
90	기타	20	- 바닥광택기	0
90	기타	55	- 쓰레기 압축기	2.8/0
10	프레스 · 압출기	65	- 기타	2.8/0
20	선박용 · 어업용 기기	70	카펫청소기	0
30	아이레팅기 · 투불러리베텅기	83	광학소재 제조기기	0
40	자동 마그네틱 테이프 제조기	98	기타	2.5/0
50	코팅머신(도포기)			
60	자동도어 작동기			
80	조상기			
9	기타			
91	제87류의 차량용			
92	전자부품장착기			
99	기타			

□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 제8479.89호에는 다른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기기를 분류함

□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8479.89호 이하 하위구분은 상이한 구조를 나타냄

○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형의 기기와 기타로 크게 구분하며 기타에서는 구체적인 기계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 미국은 크게 전기모터의 장착 여부에 따라 구분하며, 카펫청소기와 광학 소재 제조기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 공기가습기 또는 제습기, 바닥광택기, 카펫청소기, 광학소재 제조기기를 제외한 기타 나머지 물품에는 일반세율 2.8%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③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 신청물품: ABS ECU

- 차량 각 바퀴의 장착된 휠스피드 센서에 의해 4륜 각각의 속도를 연산하여 차륜의 슬립상태를 판단하여 이를 통하여 모듈레이터(HCU)의 밸브 및 모터를 구동하여 증압, 감압, 펌핑 등을 제어하는 물품

#### □ 결정세번: 제9032.89-9090호

-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주7 나항에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이들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들 요소를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것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32호의 용어에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II)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 및 비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에서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 또는 비전기적인 양의 실제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완전 자동 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기 위한 것이다. 이것들은 주로 (A) 측정장치, (B) 전기조절장치, (C) 점화장치 · 정지장치 또는 조작장치로 구성되고, 전기식조절장치는 불완전자동조절기기로 9032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전자식 조절기는 전부 전기식 원리로 작동하는 것으로, 이 기기의 특징은 반도체(트랜지스터) 또는 집적회로가 있고, 전자식 조절기는 전기적 양(예: 볼트수 · 암페어수 · 주파수 및 전력) 뿐만 아니라 기타의 양[예: 분당 회전수 · 염력(捻力) · 견인력 · 수면 · 압력 · 유량 또는 온도]에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차량 각 바퀴의 장착된 휠스피드 센서에 의해 4륜 각각의 속도를 끊임없이 측정·연산하여 차륜의 슬립상태 여부를 판단하며 이를 통하여 모듈레이터(HCU)의 밸브 및 모터를 구동하여 중압, 감압, 펌핑 등을 제어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제 90류 주7, 제9032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비전기적량의 자동조절기’가 분류되는 제9032.89-9090호에 분류함

#### ④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 신청물품: ESC ECU

- 본 물품은 갑작스런 코너링 등 급핸들 조작시 관성에 의해 차체 회전, 코스 이탈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해, 주행 중 불안정한 차체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 엔진 출력 및 각각의 바퀴를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차량 자세 제어장치(Electronic Stability Control)의 ECU임
  - 외부의 속도센서(Wheel Speed Sensor), 스티어링 휠 각도센서(Steering Angle Sensor), 혼들림 및 좌우 진동센서(Yaw Lateral& G Sensor), 실린더 압력센서(Pressure Sensor)로부터 신호가 들어오면, 이 값을 바탕으로 각각 바퀴의 slip 상태를 연산함
  - 차체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면, 엔진 토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EMS(CAN 통신)로 신호를 전송하고, 각각의 바퀴에 해당되는 밸브 및 모터를 구동(제동을 위해)시키기 위해 구동 신호를 외부 HU(Hydraulic Unit)에 전송함

##### □ 결정세번: 제9032.89-9090호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전기적 양의 자동 조절기 및 비전기적 양의 자동 조절기”에 대해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 또는 비전기적인 양의 실제 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회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완전 자동 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기 위한 것이다.”

- “이것들은 주로 측정장치(감응장치·변환기·저항탐침·열전대등), 전기 조절장치(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신호(일반적으로 변조전류의 형태)를 부여), 점화·정지 또는 조작 장치로 구성되며, 전기식 조절장치는 불완전 자동 조절기기로 제9032호에 분류되며, 전자식 조절기는 전부 전기식 원리로 작동하는 것으로, 이 기기의 특징은 반도체(트랜지스터) 또는 집적회로가 있다는 것이다.”
- “전자식 조절기는 전기적 량[예: 볼트수·암페어수·주파수 및 전력] 뿐만 아니라 기타의 량[예: 분당 회전수·염력(捻力)·견인력·수면·압력·유량 또는 온도]에 사용된다.” 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외부 각종 센서로부터 입력되는 값(속도, 차체 흔들림 등)을 주기적으로 연산하여 차체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면 외부 Actuator(제동장치, 엔진출력장치)에 동작 신호를 출력하여 차체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제어하는 물품으로, 비전기적 양의 자동 제어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2.89-9090호에 분류함

## ⑤ 수출자 유의사항

- ABS 및 ESC 시스템: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 상이사례
  - 차량의 안전장치의 일종인 ABS 및 ESC 시스템에 대한 품목분류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에서는 동 물품을 제9032호의 자동제어용 기기 또는 자동조절기기로 분류하였으나, 미국에서는 제8479호의 기타의 기계장치로 분류하였음
  - 쟁점이 된 부분은 ABS 및 ESC 시스템이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특정한 요소값을 측정하고 목표치에 맞추어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관한 것임
    - 우리나라는 ABS 및 ESC 시스템이 이러한 기능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미국은 요소의 실제값을 측정하고 목표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최적수준’에 유지되도록 기능한다고 판단, 제9032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음

- 미국 관세율표에 따르면 제8479.89호는 최대 2.5%의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제9032.89호에는 1.7%의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세율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한-미 FTA 적용시에는 모두 0%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특혜세율을 적용하고,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와 미국 관세당국 간 품목분류 해결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8) 과급압력조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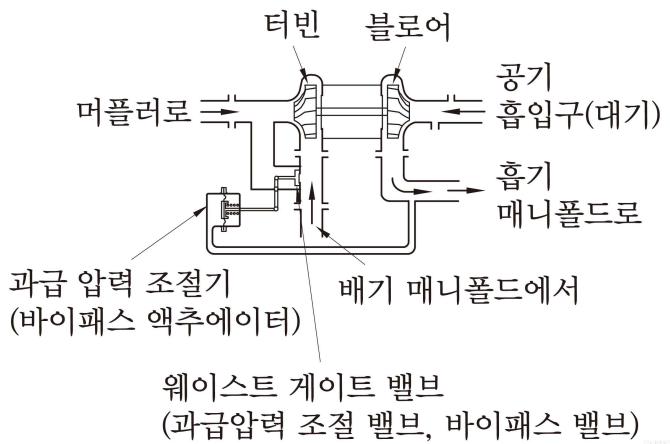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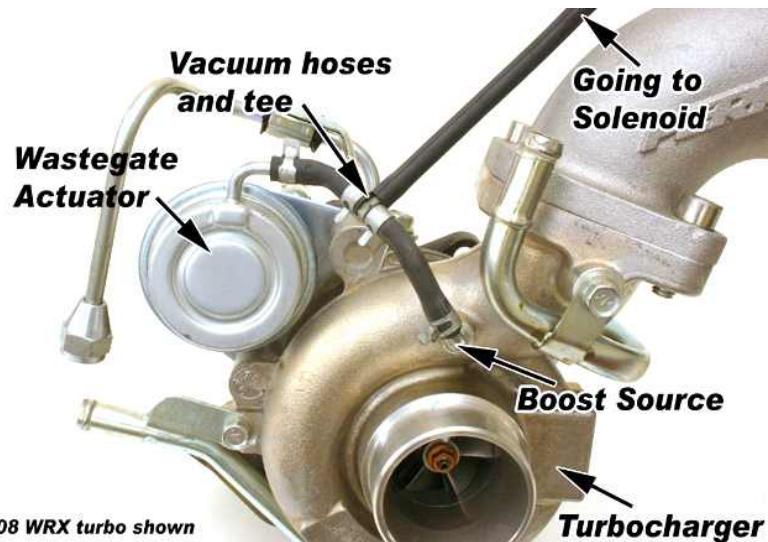
□ 참조번호: N268109

□ 신청물품: 과급압력조절기(웨이스트게이트 액추에이터)

- 터보차저에 부착되어 배기가스를 바이패스(bypass)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분품. 과급압력조절기는 크게 강철 액추에이터, 알루미늄 히드 실드, 알루미늄 바디 3부분으로 구성됨
  - 배기가스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방하는 바이패스 밸브를 포함함. 히트 실드는 액추에이터를 보호하며, 액추에이터는 몸체와 diaphragm, rod, 스프링으로 구성됨. 일정수준 이상 압력이 되면 rod가 밸브를 작동시켜, 초과 압력의 배기가스를 배출시킴
  - 터보차저(터빈과급기, turbo charger):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힘으로 터빈을 회전시키면 동일한 회전축(로터 샤프트)에 설치된 컴프레셔 휠이 함께 회전하며 그 회전력으로 흡기를 압축하여 실린더로 보내어 엔진의 출력을 향상시키는 엔진 보조 장치

< 그림 5-8 > 과급압력조절기의 구조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결정세번: 제8481.40-0000호

- 신청인은 웨이스트게이트 액추에이터가 제8481.90호(밸브의 부분품)에 분류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알루미늄 바디, 히트실드 및 액추에이터를 작동시키는 배기밸브가 포함된 엑추에이터로 구성됨
  - 또한 알루미늄 바디는 완전한 밸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밸브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음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제8481.40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 율 (기본/KORUS)
0000	안전밸브	00		2/0

- 제8481호에는 ‘파이프 · 보일러 동체 · 탱크 · 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 품에 사용하는 텨 · 코크 ·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 제8481.40호에는 안전밸브를 분류함
- 제8481.40호 이하 하위분류는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없는 것으로 확인됨

### ③ 유사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과급압력조절밸브
  - Arm, poppet, rivet이 결합되어 차량의 엔진에 사용되는 배기가스 터빈과급기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유입되는 공기량이 일정압력 이상일 때 개구를 열어 공기를 외부로 유출시킴으로써 압축공기가 엔진으로의 과급을 방지하기 위한 물품임
- 결정세번: 제8414.90-9020호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 · 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4.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기계 및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 (A)항 ‘펌프와 압축기’에 대한 설명에서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식 · 원심식 · 축류식 및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특수형태의 압축기에는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내부연소 피스톤 엔진에 사용되는 배기가스 터빈과급기가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유체의 흐름을 개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밸브가 분류되는 제8481호에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1호에서 “탭 · 콕 · 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 또는 기기용 · 차량용 또는 항공기용 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다만 완전한 밸브를 갖추었거나 또는 그 자체는 완전한 밸브를 형성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계내부의 유체흐름을 조정하는 특정 기계부분 품은 그 관련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면 터보차저의 내벽을 막았다 하 는 디스크형태이므로 완전한 밸브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8481호 의 밸브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엔진에 사용되는 기체압축기인 배기가스 터빈과급 기(turbocharger)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4.90-9020호에 분류함

## ⑤ 수출자 유의사항

- 품목분류 상이사례: 우리나라에서는 과급압력조절기를 기체펌프의 부분품(제8414.90호)로 분류하나 미국에서는 밸브(제8481.40호)로 분 류하므로 관세율 차이 주의 요망
- 동 물품은 차량의 배기가스를 조절하는 터보차저의 부분품으로서, 주 요 쟁점은 동 물품을 기체펌프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 의 완전한 밸브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임
  - 우리나라는 터보차저를 기체펌프의 일종으로 보고, 터보차저의 부분품인 과급압력조절밸브를 기체펌프의 부분품인 제8414.90호(미국 일반세율 0~4.7%, 한-미 FTA협정세율 2.3%)에 분류하였으나,
  - 미국은 이것을 하나의 완전한 물품으로 보아 밸브가 분류되는 제8481호 (미국 일반세율 2%)로 분류하였음
- 과급압력조절기는 기체의 압력을 조절하는 기기로서 기체펌프의 부 分 품으로 볼 수 있지만, 밸브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밸브로도 볼 수 있 어, 통칙 3 나.목에 따라 결정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제8481호에 분류되는 경우와 제8414호에 분류되는 경우의 일반세 율 및 FTA특혜세율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품목분류에 특히 주의하여야 할 것임

## 9) 토크컨버터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6952

□ 신청물품: 토크컨버터

- 토크컨버터는 엔진의 drive plate와 자동변속기의 input shaft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함. 엔진에서 발생하는 원심력을 자동변속기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함
  - 동 물품은 주로 하우징과 3개의 회전부품(임펠러, 터빈, 리액터)로 구성됨. 임펠러는 엔진 토크를 자동변속호름으로 변환하며, 터빈으로 힘을 전달함. 터빈은 이 힘을 자동변속호름으로 전달하여 변속기를 작동시킴. 리액터는 터빈에서 나온 힘을 다시 되돌림
  - 토크컨버터<sup>24)</sup>: 자동변속기에서 사용되는 장치로서 엔진과 기어박스 사이에 위치하여 동력을 변환·전달하는 장치. 자동차의 주행 저항에 따라 자동적으로 구동력을 변화시킬 수 있음

□ 결정세번: 제8483.40-1000호

- 토크컨버터는 제8483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미국 관세율표 제8483.40-1000호에 분류함

---

24) 엔진은 항상 일정 회전수 이상으로 회전해야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수동 변속차량의 경우 클러치를 밟으면, 엔진과 미션의 연결이 끊기면서 차량이 정차해도 엔진은 계속 회전할 수 있으나, 자동변속의 경우 D에 위치하면 기어는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차 시에도 엔진의 회전이 유지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므로 토크컨버터가 필요하다.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483.40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 율 (기본/KORUS)
10	항공기용	10	토크컨버터	0
10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와 기타 변속기	
90	기타		- 고정비율변속기와 가변비 율변속기로서 수동조작으 로 각 변속비율이 선택가 능한 것	
90	기타	30	-- 셀룰로오스펄프, 종이 또 는 판지 제조기계용으로 수입된 것	0
10	기어	50	-- 기타	2.5/0
20	기어박스	70	- 기타 변속기	25 ¢ each+3.9/0
30	무단변속기	80	볼 또는 롤러스크루	3.8/0
4	롤러 스크루	90	기어와 기어링(기어휠, 체인 스프로켓과 기타 변속기구성 요소로서 별도로 제시되는 것을 제외한다)	2.5/0
41	제87류 차량용			
49	기타			
90	기타			

□ 제8483호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을 분류함

- 전동축[캠 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  
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  
(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  
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 또한 제8483.40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함
  -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날이 붙은 훨·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 볼이나 롤러스크루(roller screw),
  -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 우리나라를 크게 항공기용과 기타의 것으로 구분하고, 이하 하위구분으로 기어, 기어박스, 무단변속기, 롤러스크루, 기타로 세분화 하고 있음
- 반면, 미국에서는 토크컨버터와 기어박스, 스크루, 기어로 구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별도로 분류하지 않던 토크컨버터를 제8483.40-10호에 분류하고 있음

### ③ 유사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토크컨버터용 베어링
  - 토크컨버터에 장착되어 토크컨버터를 지지하고 회전 시 마찰 저항을 작게하는 원통형의 롤러를 갖춘 니들 베어링
    - 구성요소 : OUTER RING, ROLLER, RETAINER, SEAL RING
    - 규격 : 외경 38mm, 내경 33mm
    - 롤러 : 직경 1.8mm, 길이 7.8mm
- 결정세번: 제8482.40-0000호
  -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 따라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해당호로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을 규정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볼·롤러 또는 니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된다. 보통 베어링은 볼 또는 롤러를 넣은 두 개의 동심링(레

이스) 및 볼 또는 롤러를 적당한 위치로 유지시켜 그 간격을 일정하게 확보하는 케이지(cage)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 이 호에 분류되는 베어링에 “니들롤러 베어링 [이것은 균일한 직경이 5mm 이하이고 길이가 최소한 직경의 3배 이상인 원통형의 롤러를 갖춘 베어링이라는 점에서 보통의 롤러 베어링과는 상이하다. 롤러의 양 끝은 둑근 것 일수도 있다(이 류 소호 주 제1호 참조). 이들 롤러는 베어링의 양 링 사이에 부착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케이지(cage)는 사용되지 아니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외륜과 내륜 사이에 롤러의 직경이 5mm 이하이고, 길이가 최소한 직경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Needle roller가 위치한 니들 롤러베어링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2.40-0000호에 분류함

## ⑤ 수출자 유의사항

- 토크컨버터는 제8483호의 용어에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분류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 단, 토크컨버터의 부분품은 제8482호에 분류됨에 유의
- 원칙적으로 HS 6단위까지의 물품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물품이며, 토크컨버터는 제8483호에 분류됨
- 다만, 토크컨버터에 사용되는 부분품의 분류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토크컨버터와 다른 제8482호에 분류하였음에 유의해야 함
  - 이는 제16부 주2 가.목에 따른 분류로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 · 제8431호 · 제8448호 · 제8466호 · 제8473호 · 제8487호 · 제8503호 · 제8522호 · 제8529호 · 제8538호 ·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제8482호(볼 베어링 · 롤러 베어링)의 수입관세율은 최대 9%(한-미 FTA세율 4.5%)이므로, 수출자는 토크컨버터 수출시 부분품 상태로 수출하지 않는 것이 유리함

## 4. 소결

- 기계산업에서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수출물품은 기계의 부분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일반세율 0%인 품목도 존재하나 여전히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중요성은 존재
- 2015년 우리나라 대미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수출금액을 차지한 물품은 제8473호(특정 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의 것으로서 전년 대비 7% 증가한 20억 달러 수출을 기록
- 기계의 부분품에는 일반세율이 0%인 품목이 일부 존재
  - 압축기 및 솔레노이드 밸브의 조립품(제8414.80-2055호), 블루투스 키보드(제8471.60-2000호), 토크 컨버터(제8483.40-1000호)는 일반세율 0%인 품목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분품들이 한-미 FTA 적용을 받아 다시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완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된다면, ‘누적(cumulation)’ 조항의 활용을 위하여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
- ※ 누적기준: 한-미 FTA 원산지 결정시, 자국 뿐만 아니라 체약상대국에서 생산된 원재료에 대해서도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원산지기준
- 기계산업 사전심사 사례의 특징은 우리나라-미국간 상대적으로 품목분류 상이사례가 적다는 것이며, 이는 곧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해석기준이 미국과 유사하는 것을 증명
- 기계산업 사전심사 사례 9건 중 2건이 우리나라와 미국간 사전심사 결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ABS 시스템(미국 제8479호, 우리나라 제9032호), 과급압력조절기(미국 제8481호, 우리나라 제8414호)는 품목분류 상이사례로 볼 수 있음
- 나머지 7건은 우리나라와 미국간 사전심사 결과가 동일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말함

## VI. 전기기기산업

### 1. 산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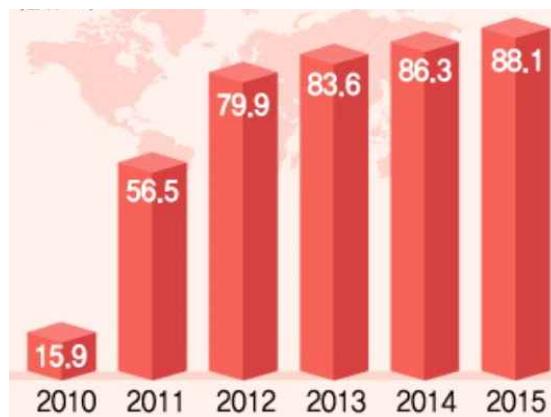
#### 가. 생산동향

##### 1) 일반 생산동향

- 무선통신기기 산업은 해외 생산 비중 증가로 수출 성장률 저조
  - 저조한 수출 성장률은 국내 제조사들이 스마트폰 신제품의 초기물량 만 국내에서 생산하고, 이후 해외생산 비중을 높이고 있기 때문
    - 스마트폰 해외생산 비중은 2010년 15.9%에서 2015년 88.1%에까지 이를
    - 그동안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지 않던 LG전자까지 현지 생산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2016년 국내 스마트폰 해외생산 비중이 90%를 넘어설 전망

< 그림 6-1 > 국내 제조사 스마트폰 해외생산 비중

[ 단위 : % ]



자료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반도체 산업은 미세공정<sup>25)</sup> 적용 확대로 생산 증가세 유지
  - 국내 반도체 업체의 미세 공정 전환과 삼성전자의 증설투자로 반도체 생산량 증가

25) 반도체 장비는 일반적으로 공정이 미세화 될수록 소비전력과 발열 및 성능 개선에 유리하다.

- 또한 SSD, IoT, 웨어러블기기 시장 확대와 스마트 자동차의 전장화 가속 등으로 핵심부품인 반도체의 내수는 견실한 성장을 기록
  - 반도체를 핵심부품으로 하는 신제품이 경쟁적으로 출시됨에 따라 생산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D램 수요 증가의 주축을 담당했던 PC 및 스마트폰의 성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어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임
    - 향후 메모리 가격도 반도체 공급 대비 수요부진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약세 기조 지속 전망
  - 반도체 제조사의 수익 극대화와 데이터 트래픽 증가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활성화 될 전망
  - 모바일에서의 게임, 동영상 등의 컨텐츠 소비 증가 및 하드웨어의 대화면/고화소화가 데이터 트래픽 증가를 야기하면서 AP 성능 안정화와 저전력 구현을 위한 설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DDR4 DRAM, 3D 및 TLC(Triple Layer Cell) 기술을 이용한 SSD(Solid State Disk), 응용복합 NAND 제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활성화 될 전망
- 디스플레이 산업은 중국발 LCD 패널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부담 가중
- 국내 업체들은 고부가가치 라인 전환 및 가동률 조정 등 공급과잉 해소에 주력하고 있으나 중국의 LCD 패널 신규 생산라인 확대로 공급 과잉 발생
  - 한편, 최근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교육용 전자칠판, 광고, 건축, 의료 등 디스플레이 응용분야는 확대될 전망

## 2) 미국 생산동향

- 미국 반도체 산업은 중국 경제 둔화와 미국 달러 강세가 반도체 생산업체들의 수요 둔화로 이어짐

-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수요가 꾸준히 줄어든 데다가 최근 달러와 유로 등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전체 판매가 줄어듦
  - 2015년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반도체 판매량은 전년대비 감소
  - 전년 대비로는 유럽과 일본에서의 매출이 각각 10.6%, 11.4% 급감했으며 아시아태평양(-3.5%) 등 중국(5.0%)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출이 감소
  - 한편,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 인텔은 최근 PC용 칩 판매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로 전체 직원의 10%가 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행
- 애플사로 대표되는 미국의 무선통신기기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달러 강세와 중국 기업 여파로 신흥 시장에서의 판매량 감소
- 미국 시장조사 기업 ‘스트래티지 앤리티кс’(SA)가 발표한 매출 기준 2016년 1분기 세계 스마트폰시장 점유율에서 애플사는 1위를 차지

**< 표 6-1 > 2016년 1분기 업체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 단위: %, 대 ]

순위	업체명	매출 대비 점유율	판매 대수
1	애플(Apple)	40.7	5120만
2	삼성전자	24.1	7900만
3	화웨이(Huawei)	6.5	2830만
4	오포(Oppo)	4.1	1550만
5	비보(Vivo)	2.8	1350만

자료: 스트래티지 앤리티克斯(SA)

- 그러나 지난해 1분기 46.2%대비 40.7%로 낮아졌고, 중국 업체의 약진이 더욱 두드러짐
- 강달러 현상이 진행돼 신흥국에서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른 데다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신흥 시장을 속속 잠식한 것이 판매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 나. 수출동향

### 1) 일반 수출동향

- 2015년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전년 대비 12.2% 증가한 332억 달러 추정
  - 고가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든 반면 인도, 중동·아프리카 등 신 흥시장을 중심으로 중저가폰 수요가 확대
  - 무선통신부품도 전년 대비 31.1% 증가한 179.9억 달러 추정
    - 신흥시장 스마트폰 수요 증가로 국내 업체는 중국·베트남·인도·브라질 등 해외 거점생산을 확대하면서 이에 필요한 부품 수출이 호조
  - 2016년 수출은 제품라인업 개선을 통한 대응 강화, 생산거점인 중국·베트남을 중심으로 부품 수출의 호조세 지속에 힘입어 전년대비 2.1% 증가한 339억 달러 전망
- 2015년 디스플레이 수출은 TV 수요 감소와 중국의 공급과잉에 따른 LCD 패널가격 하락 영향으로 2014년 대비 5.7% 감소한 305억 달러 추정
  - 2016년 수출은 LCD TV 수요 회복의 불확실성과 LCD 패널가격 하락 지속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3% 감소한 298억 달러 전망
- 반도체의 2015년 수출은 하반기 글로벌 IT 수요부진으로 D램 가격 약세가 지속되면서 메모리반도체 증가 추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시스템 반도체의 회복으로 전년대비 2.5% 증가
  - 2015년 상반기는 D램이, 하반기는 멀티칩패키지(MCP)가 수출 상승세 견인
    -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내수 부진으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대중 수출은 감소할 전망
    - 중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강화되고 있으나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생산 공정이 분업화되어 있어 단기적으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 2016년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6% 감소한 625억 달러 전망
  - 특히 중국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중저가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기기에서의 수요가 확대될 전망
  - 중저가 제품 제조사는 가격 하락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성능보다 원가 개선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첨단 공정을 도입하여 이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국내 파운드리 기업에 긍정적 영향

## 2) 對미국 수출동향<sup>26)</sup>

- 우리나라의 2015년 대미 전기기기 수출금액은 총 123억 7천만달러로서 2014년 127억 6천만달러 대비 약 3% 감소한 수치
- 우리나라의 대미 상위 20대 수출품목 중, 전체의 약 88%의 비중을 차지하는 전화기 및 음성·영상 송수신기(제8517호)의 수출이 전년대비 11.7% 감소한 71억 1천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 이외에도 전자집적회로(제8542호) 20.9%, 전기식 조명용·신호용 기구(제8512호) 2.9%, 기계(제8525호 ~ 제8528호) 전용 부분품 등(제8529호) 20.1%, 라디오·텔레비전 송신기기 등(제8525호) 11.9%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축전지(제8507호) 23.1%, 변압기·정지형 변압기 등(제8504호) 25.9%, 전동기와 발전기(제8501호) 28.1%, 모니터·텔레비전(제8528호) 8.8% 등 다수 제품은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반도체디바이스(제8542호)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133.4% 증가하여 수출 견인에 대한 기여도가 큼

---

26) 대미수출 동향은 제85류(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의 물품을 대상으로 함

< 표 6-2 > 우리나라의 對미국 전기제품 일반수출 상위 20대 품목

[단위: 천 달러, %]

HS 4	품목명	2014	2015	
		금액	금액	증감률
8517	전화기, 음성이나 영상 송수신기 등	8,052,208	7,112,248	-11.7
8541	반도체디바이스 등	298,553	696,711	133.4
8542	전자집적회로	620,125	490,500	-20.9
8507	축전지	396,630	488,350	23.1
8504	변압기, 정지형변환기 등	298,693	376,189	25.9
8501	전동기와 발전기	280,573	359,508	28.1
8512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	369,421	358,779	-2.9
8528	모니터, 텔레비전 등	292,566	318,278	8.8
8529	제8525호~제8528호 기계의 전용 부분품 등	255,452	204,198	-20.1
8536	전기회로의 보호용, 접속용 기기 등	180,724	203,155	12.4
8537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등	152,874	176,935	15.7
8534	인쇄회로	150,375	176,140	17.1
8544	절연전선 등	163,130	175,518	7.6
8523	비휘발성 기억장치 등	154,124	170,202	10.4
8525	라디오, 텔레비전 송신기기 등	165,081	145,465	-11.9
8516	전기식 가열기 등	137,819	144,957	5.2
8543	기타의 전기기기	83,283	91,119	9.4
8511	내연기관의 시동용 전기기기	71,464	70,098	-1.9
8538	제8535호~제8537호의 기계 전용 부분품 등	70,125	63,406	-9.6
8515	전기식 용접용 기기 등	40,426	51,879	28.3
	합계 (전기기기)	12,767,613	12,373,415	

자료: 무역협회

## 2. 주요 통관규제

### 가. 전자파 장치의 기술기준 및 라벨링 요건(FCC 인증)

#### □ 개요

- 미국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에서는 전자파 장치의 일정 물품으로서 전자파를 발하는 전기제품에 대한 기술기준 및 라벨링 규정을 두고 있음

#### □ FCC 인증의 필요성

- 전자파 장치의 수입규정에 있어서 FCC는 세관과 연계하여 인증되지 않은 제품은 통관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입되는 대상품의 선적서류는 FCC Form 740과 일치해야 함
  - 또한 제품의 판매규정에 있어서도 인증을 획득하기 전까지 규제대상 제품의 판매를 금지
  - 위반시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전반에 걸친 강력한 제재가 수반되기 때문에 전기/전자제품의 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FCC인증이 반드시 필요

#### □ FCC 인증 절차

- 주요 대상기기 및 규격
  - Part 15 [Radio Frequency Devices] : PC 및 주변기기, TV, 무선통신기기 등 대부분의 정보 통신기기류
  - Part 18 [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Equipment] : 의료기기 등
  - Part 68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 케이블모뎀, 전화기 등

#### ○ 인증절차

- ① FCC에 등록된 시험소에서 제품시험 실시
  - 시험은 FCC 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시험기간은 약 2~3주 소요

## ② FRN(FCC Registration Number) 및 FCC ID 취득

- 인증을 요구하는 기기의 FCC 등록번호(FRN)를 취득
- FCC ID는 ‘취득자코드<sup>27)</sup>+제품식별코드’로 구성되며 인터넷을 통해 발급

## ③ 인증신청 및 승인

- 제품시험이 완료되고 FCC ID가 구성되면 인증신청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FCC에 인증 신청 → FCC는 인증신청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4~6주 이후 인증서 발급

### □ FCC 인증 구분

- FCC 인증은 모든 대상기기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별로 차등을 두어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인증절차로 구분하여 운영

#### ① 승인 (Certification)

- 의도적으로 전자파 에너지를 사용하는 송신기 및 일부 수신기 등 전자파를 많이 발생하는 제품은 통신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FCC에 등록된 시험소에서 시험을 한 후, 시험성적서 및 관련서류 등을 FCC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 신청자는 이 인증구분에 해당하는 제품에 반드시 FCC ID를 부착

#### ② 적합성선언 (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

- 승인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제품에 대하여,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국제 공인시험기관 인정제도(NVLAP)에 의해 인정된 시험소에서 FCC 규정에 따른 적합성시험을 시행
- 해당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표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 절차없이 제품에 관련 마킹을 부착하여 직접 출하 가능

---

27) 취득자코드는 신청자가 선택하는 14개의 문자와 숫자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할당하며, 신청자를 상징하는 세 개의 문자 및 숫자의 조합으로 된 코드이다. 한편, 제품식별코드는 신청자가 숫자, 알파벳대문자, 부호 등을 조합하여 14자리 이내로 결정한다.

### ③ 입증 (Verification)

- 불요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제품이라도, 전반적으로 제품의 Noise Level이 안정되어 있고 통신수단이나, 다른 제품의 동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제품은 제조자가 직접 관련 FCC 규정에 따라 제3자 시험소에서 제품 시험을 하고, 만족할 경우 별도의 확인 없이 제품 출하 가능

#### FCC 인증 라벨링 요건

- 인증을 받은 제품은 해당 장치의 눈에 띠는 곳에 라벨이 표시되어야 하며, 해당 라벨에는 고유식별부호가 포함되어야 함

**< 표 6-3 > FCC 인증 라벨링 요건**

인증 구분	라벨 표시
승인 (Certification)	FCC ID : XXXABC123
적합성선언 (DoC)	 Trade name Model number
입증 (Verification)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this device does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 표 6-4 > 제품 종류별 FCC 인증 방식

제품종류	인증방식
TV broadcast receiver	Verification
FM broadcast receiver	Verification
CB receiver	Certification or DoC
Super regenerative receiver	Certification or DoC
Scanning receiver	Certification
All other receivers subject to part 15	Certification or DoC
TV interface device	Certification or DoC
Cable System terminal device	DoC
Stand-alone cable input selector switch	Verification
Class B personal computers and peripherals	DOC or Certification
CPU boards and power suppliers used with class B personal computer	DOC or Certification
Class B personal computers assembled using authorized CPU boards and power supplies	DOC
Class B external switching power supplies note used with personal computers	Verification
Other Class B digital devices & peripherals	Verification
Other class A digital devices & peripherals & external switching power supplies	Verification
All other devices	Verification

자료: 주식회사 씨티케이

## 나. 가정용 기기의 에너지 보호 기준 및 라벨링 요건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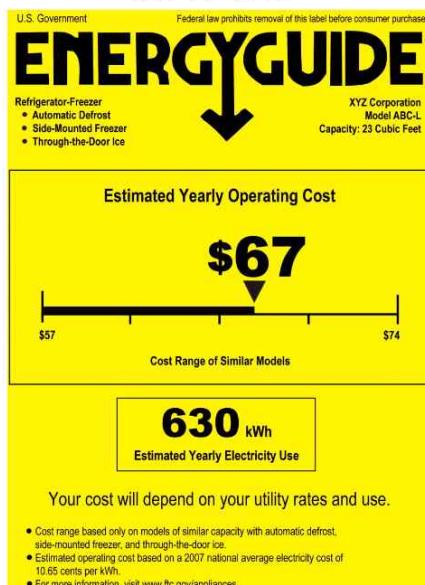
- 미국 내 가정용 소비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제품의 에너지 보호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샘플을 시험하여야 하며, 상업적으로 유통하기 전 또는 매년 제품별 지정된 날짜 이전에 해당 제품이 에너지 보호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미국 에너지국 (DOE; Department of Energy)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함

## □ 에너지 보호 기준 및 라벨링 요건

### ① 에너지 보호 기준

- 에너지 보호 기준치는 에너지국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구체적인 검사 절차 및 측정 역시 에너지국 규정에 근거하여 에너지정책법으로 제정
- 제품별로 상이한 에너지 보호 기준은 미국연방규정집<sup>28)</sup>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의 제10권에 수록됨

< 그림 6-2 > 에너지 가이드 라벨 예시



자료 : 미 에너지국(DOE)

### ② 에너지 가이드 라벨링 요건

- 가정용 기기 제조업자는 해당 제품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가이드 라벨을 표시해야 함
- 에너지 가이드 라벨에는 에너지국 규정 절차에 따른 시험을 통해 얻은 에너지 소비량이나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표시

28) 미국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은 연방행정부가 발한 행정명령을 집대성한 것으로 규정집의 각권은 매년 한 차례씩 갱신되며, 미국정부간행물실(Government Printing Office: GPO)에서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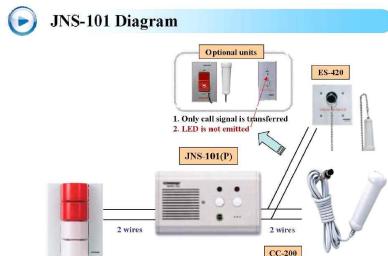
- 에너지 가이드 라벨의 관할기관은 연방거래위원회(FTC)로서, 매년 제시하고 있는 수치에 따라 대상 품목의 제품에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함
- 라벨 부착 의무 이외에도 각 제조업자들은 제품 에너지 소비량의 최대치·최소치를 정하기 위해 매년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추정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나 에너지효율 등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3. 품목분류사례

#### 가. 상이사례

##### 1) 호출시스템

- 호출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는 제8517호(무선 송수신기기)로 분류하였으나, 태국에서는 제8531호(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로 분류한 사례

사례출처	수출CO상이	
물품설명	동 물품은 병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호출표시기능이 있으며, 통화중 위급신호 기능, 병실전체 방송기능, 복도 등 표시 기능 등이 있는 물품임	
사 진		
국 가	우리나라	태국
H S	8517.62	8531.80
분류근거	<p>우리나라에서는 제8517호의 무선 송수신 기기로 분류하는데 제8517호의 해설서에 따르면 (II) 그룹에는 기지국, 엔트리폰 시스템, 비디오플, 전신기기, 전화용 또는 전신용 스위칭 기기,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수신 기기, 기타 통신기기가 분류되며, 특히 엔트리폰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설명</p> <p>너스콜은 이와 역시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음성 송수신 기기로서 제8517호에 분류될 수 있음</p>	<p>태국의 경우 제8531호에 분류하는데,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로서 벨, 사이렌, 표시반, 도난 경보기, 화재경보기 등이 분류</p> <p>동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되며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이든 또는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이든, 수동식 또는 자동식을 불문</p>

## 2) TV용 스마트 무선키보드

- 스마트 무선키보드를 우리나라에서는 제8529호(텔레비전용 송신기기 및 무선원격조절기기 등의 부분품)로 분류하였으나, 태국에서는 제8543호(그 밖의 전기기기)로 분류한 사례

사례출처	수출CO상이	
물품설명	스마트 무선키보드는 스마트 TV와 태블릿 PC에 전용되는 키보드로서 블루투스 방식으로 연결되어 가정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임. 키보드와 무선터치패드가 결합되어 있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사 진		
국 가	우리나라	태국
H S	8529.90	8543.70
분류근거	<p>스마트 키보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접속되며(스마트 TV의 중앙처리장치),</li> <li>-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나 신호의 형식(블루투스 방식)으로 자료를 전송하는 기기임</li> <li>- 이에 따라 제84류 주5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스마트 키보드는 제8471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li> </ul> <p>이에 따라 스마트 TV용 키보드는 제8471호에 분류되며, 우리나라의 제8529호와 태국의 제8543호의 분류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p>	

### 3) 이온정수기

- 이온정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제8543호(그 밖의 전기기기)로 분류하였으나, 태국에서는 제8421호(액체용 여과기 및 청정기)로 분류한 사례

사례출처	수출업체 민원	
물품설명	알칼리이온수생성기로서 먹는 물을 전기분해 등을 하여 pH 8.5초과~10.0까지의 알칼리 이온수를 생성하여 위장증상(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장내 이상발효, 위산과다)개선에 도움이 되는 음용의 수소이온농도 (pH) 9.5의 알칼리 이온수를 생성하는 기기	
사 진		
국 가	우리나라	태국
H S	8543.70	8421.21
분류근거	<p>정수된 물을 공급하거나 정수된 물을 전기분해를 통해 알칼리수와 산성수로 전환한 뒤 공급하는 물 품으로서 수돗물의 여과기능과 정수된 물의 이온수 전환기능을 함께 수행하므로, 제16부 주3의 복합기계에 해당됨.</p> <p>물품의 주된 용도와 기능들의 비중을 고려할 때 주기능은 이온수 전환이라 할 수 있으므로, 관세율 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가정형의 이온정수기'에 해당하는 제8543.70-2010 호에 분류함.</p>	<p>제8421호의 해설서 '(A)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호에는 중력식, 흡인식(또는 진공식) 또는 가압식의 액체용 필터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부분품이 아닌 액체용 여과기(Filter)로 보아야 할 것임.</p> <p>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1.21-1000호의 '가정형의 액체용 여과기'로 분류함.</p>

## 나. 사전심사사례

- 2015년 미국 관세청에 신청된 우리나라 전기산업관련 사전심사물품에  
는 다음과 같은 물품을 포함함

순번	HS	품 명
1	8512.30-0040	엔진소음발생기
2	8517.62-0050	키리스 리시버
3	8518.40-2000	AM/FM 안테나 증폭기
4	8526.10-0040	사각지대 감지기
5	8537.10-9060	모션센서
6	8538.90-8020	진공인터럽터
7	8543.70.4000	탑승감지센서

### 1) 엔진소음발생기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7633
- 신청물품: VESS(Virtual Engine Sound System)
- VESS시스템은 친환경자동차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가상의 엔진소음을 발생시켜 차량이 접근하고 있음을 보행자에게 알리기 위한 장치임
- 결정세번: 제8512.30-0040호
- 동 물품은 HTSUS 제8512.30-0040호의 물품으로서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 · 제상기(defroster) · 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음향신호용 기구”에 분류되며 일반세율 2.5%가 적용됨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512.30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 율 (기본/KORUS)
0000 음향신호용 기구	00 음향신호용기구	2.5/0

-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 · 제상기(defroster) · 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 제8512.30호에는 음향신호용 기구가 분류됨

-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제8512.30호 이하 하위구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③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VESS시스템

-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는 주행시 엔진 소음이 없어 보행자들이 차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본 물품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저속 주행시 일부러 가상의 엔진 효과음을 내보내는 역할을 수행하며, 알미늄 하우징(케이스), PCB assy, Connector로 구성되어 있음
- 작동원리: CAN 통신으로 차량 속도, 기어 위치, 엔진 구동 여부 등의 신호 입력 → MCU에서 입력값 연산 → 메모리에 저장된 음성 데이터를 아날로그 사운드로 변환 → 증폭 후 스피커로 음성신호 출력

< 그림 6-3 > VESS시스템



□ 결정세번: 제8512.30-0000호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경보기·사이렌, 기타의 전기식 음향 신호용 기기’를 예시함
- 본 물품은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에 장착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저속 주행시 일부러 가상의 엔진 효과음을 내보내는 전기식 음향 신호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30-0000호에 분류함

#### ④ 수출자 유의사항

□ VESS시스템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에서 동일하게 결정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유의사항은 없음

## 2) 키리스 리시버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8326

□ 신청물품: 키리스 리시버

- 동 물품은 키리스 리시버(keyless receiver)로서 433Mhz 주파주신호를 사용하여 무선으로 작동함.
  - 동 리시버는 PCBA(populated 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스마트키(keyless transmitter)로부터 무선 신호를 수신하는 역할을 수행
  - 즉, 주파수신호는 스마트키에서 동 리시버로 전송되며, 해당 신호를 차량의 ECU(electronic control unit)로 전송한 후, ECU는 트렁크를 열거나, 잠금장치를 작동시키거나, 엔진을 시동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 동 물품은 통상 운전자 좌석 하단의 콕핏(cockpit)모듈에 장착되어 있음

□ 결정세번: 제8517.62-0050호

- 키리스 리시버는 “음성 ·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 · 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
  - : 음성 ·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 · 변환용 · 송신용 · 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기기를 포함): 기타”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제8517.62-0050호에 분류함. 관세율은 0%임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517.62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율 (기본/KORUS)
1000	텔레프린터	00		0
20	유선전화용 · 유선전신용 교환기			

10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			
20	사설통신용 교환기			
90	기타			
3	그 밖의 반송통신용 · 디지털 통신용 기기			
31	페어케이블 반송장치			
10	단국장치			
20	중계장치			
90	기타			
32	동축케이블 반송장치			
10	단국장치			
20	중계장치			
90	기타			
33	광섬유 케이블 전송시스템			
10	광증계장치			
20	광단국장치			
90	기타			
34	신호 변환기			
10	에이/디(A/D), 디/에이(D/A)변환기			
20	코덱			
30	모뎀(모뎀카드를 포함한다)			
90	기타			
35	다중화장치			
10	아날로그 신호전송방식			
20	디지털신호 전송방식			
90	기타			
3900	기타			
40	그 밖의 유선전화용 · 유선전신용 기기			
10	키-폰			
20	영상전신기기			
90	기타			
5000	무선전화용 · 무선전신용 송신기기			
60	무선전화용 · 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10	인쇄전신기기			
20	영상전신기기			
3	트랜시버			
31	워키토키 세트			
39	기타			
40	모사전송기기			
50	무선통신용 교환기			
60	무선통신용 중계기			
90	기타			
700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것			
9000	기타			

- 제8517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분류됨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 음성 ·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 · 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 제8525호 · 제8527호 · 제8528호의 송신용 · 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 또한 제8517.62호에는 음성 ·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 · 변환용 · 송신용 · 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

### ③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리시버
  - 운전자의 무선 도어조작신호를 수신하여 도어의 전동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명령신호를 전달하는 컨트롤러
  - 물품의 구성요소별 기능
    - ① MCU : Receiver 의 모든 기능을 Control
    - ② 정전압단 : B+ 전원을 MCU가 동작할 수 있는 전원으로 변경 · 유지
    - ③ Reset IC : 전원 전압 및 MCU 클리어 펄스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견 시 Reset 시키는 기능의 IC
    - ④ EEPROM IC : Receiver의 메모리를 저장
    - ⑤ DRIVER IC : Lamp로 출력되는 전원을 제어
    - ⑥ RF Module : 송신기로부터 무선 신호를 받아 MCU로 전달
- 결정세번: 제8537.10-9000호

- 관세율표 제16부 주 2(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 제8431호 · 제8448호 · 제8466호 · 제8473호 · 제8487호 · 제8503호 · 제8522호 · 제8529호 · 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 · 패널 · 콘솔 · 책상 · 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여 ... ”를 규정하고
  - 동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 · 패널 · 콘솔(console)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넷 · 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 · 3개의 스위치 · 퓨즈 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 · 압연기 · 발전소 · 무선국 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또한 특수기능(예: 논리적인 것 · 연속적인 것 · 시간적조절 · 계산 및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형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운전자의 무선 도어조작신호를 수신하여 도어의 전동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명령신호를 전달하는 전기제어용의 보드로 다수의 스위치 및 커넥터 등의 능수동 소자가 장착된 기타의 전기제어용 기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37의 용어)및 6에 의거 제8537.10-9000호로 분류함

#### ④ 수출자 유의사항

- 우리나라에서는 제어반으로 보아 제8537호에, 미국에서는 무선통신 기기로 보아 제8517호에 분류한 품목분류상이사례

- 동 물품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키리스 리시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제어용의 보드(제어반)으로 보며, 미국에서는 무선 통신기기로 보아 품목분류 상이사례에 해당함
  - 특히 우리나라에서 결정한 품목번호 제8537.10호의 미국 수입관세율은 일반세율2.7%로서, 제8517.62호가 일반세율0%인 것과 비교에 관세율 차이가 존재함
  - 비록 우리나라 수출시 제8537.10호에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미국 수입시에 제8517.62호에 분류된다면 일반세율0%이므로 굳이 한-미 FTA원산지 규정을 충족할 필요가 없음
  - 이에 따라 동 물품 또는 이와 유사물품 미국 수출시, 원산지 기준 충족에 앞서 제8517.62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사전심사를 통해 확인받는 것이 중요할 것임

### 3) AM/FM 안테나 증폭기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5335

□ 신청물품: AM/FM 안테나 증폭기

○ 안테나 증폭기는 입력전원터미널, 신호출력커넥터, 그리고 PCB로 구성된 물품임

- 안테나 증폭기는 차량 뒷 유리창에 있는 히팅패턴(heating pattern)에 연결되어, 히팅패턴이 수신한 전자기파(라디오 파장)를 감지하고 증폭하여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함
- 모델명: AMP ASSY-G/ANT(96270-3X000)

< 그림 6-4 > AM/FM 안테나 증폭기



□ 결정세번: 제8518.40-2000호

○ 동 물품은 “가청주파증폭기(Audio-frequency electric amplifiers): 기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8518.40-2000호에 분류되며, 일반세율 4.9% 적용됨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518.40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울 (기본/KORUS)
0000	가청주파증폭기	10	유선전화기의 리피터용으로 사용되는 것	0
		20	기타	4.9/0

-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며,

- 제8518.40호에는 가청주파증폭기가 분류됨

- 리피터(repeater)<sup>29)</sup>: 디지털 방식의 통신선로에서 신호를 전송할 때, 전송하는 거리가 멀어지면 신호가 감쇠하는 성질이 있다. 이 때 감쇠된 전송 신호를 새롭게 재생하여 다시 전달하는 재생중계장치를 리피터라고 한다. 종류는 비트 리피터(Bit Repeater)와 축적형 리피터(Buffered Repeater)가 있다.

- 제8518.40호는 우리나라에서 하위분류가 없으나, 미국에서는 두 가지로 세분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선전화기의 리피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8518.40-10호에, 기타의 것은 제8518.40-20호에 분류되며, 일반세율은 각각 0%, 4.9%인 것으로 확인됨

## ③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AMP ASSY - G/ANT RADIO(96270-3X000)

29) 네이버 지식백과

- 자동차 뒷창유리 측면부 프레임(C-Pillar)에 부착되어 리어글라스안테나(Rear Glass Antenna)로부터 라디오(AM/FM) 방송 전파를 수신·증폭(평균 +8dB)하여 오디오 장비로 전송하는 물품
  - Top Cover, Bottom Case, PCB, Lead Wire Assy, SMB 커넥터 등으로 구성

< 그림 6-5 > AM/FM 안테나 증폭기



□ 결정세번: 제8543.70-9010호

- 관세율표 제17부 주2(바)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 (중략)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 (중략)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중략) (9)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증폭기 및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라디오(AM/FA)방송 전파를 수신·증폭하여 자동차의 오디오 장비로 전송하는 증폭기로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43.70-9010호에 분류함

#### ④ 수출자 유의사항

- 우리나라에서는 기타의 전기기기(제8543호)에 분류하나, 미국에서는 가청주파증폭기(제8518호)에 분류하여 품목분류 상이사례에 해당함
- 우리나라에서는 안테나증폭기를 다음과 같이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기타의 기기로 보아 제8543호에 분류하였음
  - 관세율표상 고유의 기능을 가진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해당되어야 제8543호에 분류 가능

#### < 표 6-5 > 관세율표 제8479호 및 제8453호 고유의 기능 정의

< 고유의 기능 >

제8479호 및 제8543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 (i)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 (ii)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 (iii)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

- 또한 제8543호 해설에는 ‘9)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증폭기 및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은 동일 물품을 제8518호의 가청주파증폭기로 보았으며, 이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해설은 다음과 같음

### < 표 6-6 > 제8518호 가청주파증폭기 정의

#### (D) 가청주파증폭기

가청주파증폭기는 가청주파수의 전기신호를 증폭시키는데 사용된다. 대다수의 것은 트랜지스터 또는 집적회로에 기초를 두었으나, 소수의 것은 여전히 열전자관에 기초를 두었다. 이들 기기는 일반적으로 주전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조입된 전력함에 의하여 전력이 공급되며, 특히 휴대용 증폭기의 경우에는 축전지 또는 배터리로부터 공급받는다.

가청주파증폭기에의 입력신호는 마이크로폰 · 레이저광학디스크판독기 · 픽업카트리지 · 자기테이프용 헤드 · radio feeder unit · 필름녹음대용헤드 또는 기타 몇 개의 가청주파수에 의한 전기 신호원으로부터 나온다. 일반적으로 출력은 확성기에 공급된다. 다만, 모든 경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사전증폭기(pre-amplifiers)는 다음의 증폭기애로 공급되거나 또는 증폭기애내장될 수 있다).

가청주파증폭기는 증폭기의 이득을 변경시키는 음량조정기를 갖고 있으며 또한 보통 주파수의 특성을 변경시키는 조정기(bass boost, treble lift 등)도 갖추고 있다.

이 호에는 전화의 중계기 또는 측정증폭기로서 사용되는 가청주파증폭기가 포함된다.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는 전기기기로서 제8543호에 분류된다. 또한 오디오믹서와 이퀄라이저는 제8543호에 분류한다.

- 관세율표 해설서상에도 증폭기는 제8518호에 분류된다고 하였으나,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는 고유의 기능으로 보아 제8543호에 분류한다고 한 점이 쟁점
  -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간 차이는 해당 증폭기가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 증폭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일반적으로 라디오 수신에 사용되는 FM · AM 주파수는 중간주파 이상의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의가 국가별로 확립된 것은 아님<sup>30)</sup>

30) 눈에 보이는 빛은 과학적으로는 가시광선이라고 불리는 전자기파로 주파수가 450조에서 750조이다. 노란색의 경우 대략 500조 근처이다. 그런데 전자기파는 주파수가 아주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X선은 가시광선보다 천배 정도 큰 주파수의 전자기파이고 AM라디오에 사용되는 라디오파는 주파수가 약 백만 정도이다. (무선통신과 주파수 분할. 경향신문)

## 4) 사각지대 감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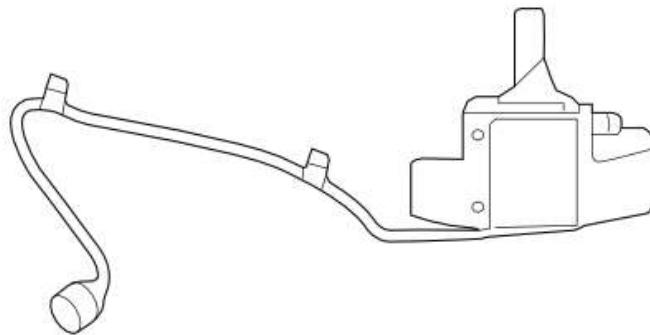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9843

□ 신청물품: 사각지대 감지기(Blind Spot Detection)

- 레이더 장치의 일종으로서 차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됨. 동 물품은 차량에 가까이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고데이터를 전송함. 그러나 동 물품은 청각 또는 시각적 경고는 내보내지 않음

< 그림 6-6 > 사각지대 감지기



□ 결정세번: 제8526.10-0040호

- 동 물품은 “레이더기기 · 항행용 무선기기 · 무선원격조절기기. 레이더 기기: 기타”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세율은 0%임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526.10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율 (기본/KORUS)
1000	항공기용	00	레이더기기	0
9000	기타			

-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 · 항행용 무선기기 · 무선원격조절기기” 가 분류되며, 제8526.10호에는 레이더기기를 분류함
- 제8526.10호의 레이더 기기는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하위구분이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항공기용과 기타로 구분하며, 미국은 6단위 이하 하위구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③ 유사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VOLVO P1006 BLIS(Blind Spot Information System); SANJG3822A
  - ABS재질의 케이스와 커버내에 전기적인 ON/OFF기능을 하는 스위치와 전기적 신호를 처리하는 제어반, 외부로부터 전기적 신호를 접속하고 내부적으로 PCB와 접속하기 위한 커넥터가 부착된 케이블이 결합되어 제시. 자동차 사각지대 경고장치를 구현하기 위한 모듈
    - ① CASE(케이스) : ABS재질의 제품의 외형을 구성하는 부품
    - ② COVER(커버) : ABS재질로 제품의 하면에 조립되며 케이스와 결합되어 PCB등의 내장부품을 고정
    - ③ HARNESS(하네스) : PCB와 결합되어 PCB에 외부의 전기를 공급하고 PCB에서 나오는 신호를 제어UNIT에 전달하는 연결선
    - ④ KNOB(노브) :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제품의 외장부품이며 상하동작되는 슬라이드와 조립됨
    - ⑤ KNOB(노브) :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제품의 외장부품이며 상하동작되지 않음
    - ⑥ LIGHT PIPE(라이트파이프) : PMMA 노브와 조립되며 PCB의 LED부품에서 점등되는 빛을 외부로 확산시켜주는 역할

- ⑦ MOUNT ASSY (PCB) : 기본적회로가 구성되어있고 러버메트와 접촉으로 ON신호를 하네스로 보내고 하네스로부터 전류를 공급받아 LED를 점등 시킴 (저항-공급되는전류를 감소시켜 LED발광을 조절, LED-전류가 공급되면 점등됨)
- ⑧ RUBBER(러버메트) : SLIDER를 동작시 복귀되는 필링이 나오도록 하며 PCB의 접점과 접촉되면서 PCB접점을 쇼트시켜 ON신호를 만듦
- ⑨ SLIDER A(슬라이드) : POM제품의 내장부품이며 상하동작으로 러버메트를 눌러서 PCB에 접점을 ON할 수 있게 함

□ 결정세번: 제8537.10-9000호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솔(console)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측면 사각지대의 경고장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제8536호에 분류되는 스위치와 커넥터, 회로신호를 제어하기 위한 능수동 소자가 결합된 제어반 등을 모듈형태로 제작하여 하우징 속에 장착한 전기제어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16부 주2 가항, 제853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37.10-9000호에 분류함

#### ④ 수출자 유의사항

- 사각지대 검지기: 미국은 ‘레이더기기(제8526호)’로서, 우리나라는 ‘전기제어용 기기(제8537호)’로 분류 가능성
- 동 물품은 사각지대 검지기로서 물체의 접근사실을 전기적 신호를 이용하여 다른 기기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 미국 결정사례의 물품은 별도의 시각적 · 청각적 경고기능이 제외된 것이 차이
  - 우리나라 결정사례에서는 ‘라이트파이프’ 및 ‘Mount Assy’ 등 LED를 점등시키는 추가기능이 있는 사각지대 검지기임
- 이러한 차이로 동 사례를 품목분류 상이사례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나, 여전히 품목분류 분쟁가능성이 남아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제8537호 분류 근거로서, 동 물품이 회로기판 위에 스위치와 커넥터 및 능동 · 수동소자가 결합되었다는 사실을 제시하여 물품의 ‘형상’에 따라 분류하였으나
  - 미국은 물체접근사실을 감지하고 데이터신호를 송신한다는 ‘기능’에 초점을 두고 품목분류하였음
- 따라서 LED 점등기능이 있는 동일물품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여전히 제8526호에 분류할 가능성이 있어, 해당 분류근거를 참조해야 할 것임
  - 특히 미국 수입관세율의 경우 제8526호는 0%, 제8537호는 2.7%이므로 가능한 제8526호에 분류하는 것이 유리할 것임

## 5) 모션센서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1280

□ 신청물품: 모션센서(wireless light sensor)

- oblong-shaped 형상의 동 물품은 2.6인치×2.1인치×1인치 크기의 제품으로서 3.3볼트의 전압으로 작동함
  - 전면 및 후면 케이스, 마이크로컨트롤러, 플래시메모리, RF필터(인덕터 및 축전기), 다운로드 커넥터, PIR 센서 및 렌즈, 스위치 및 센서의 위치를 알려주는 LED 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물품은 무선으로 불을 끄거나 켜거나 또는 흐리게 하는데, 이러한 동작은 무선컨트롤러에서 신호를 받아 작동하게 됨
  - 또한 움직임이 감지되면 빛을 켜고 움직임이 없으면 끄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함

< 그림 6-7 > 모션센서



□ 결정세번: 제8537.10-9060호

- 동 물품은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기타”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제8537.10-9060호에 분류함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537.10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 율 (기본/KORUS)
1000	배전반	30	제8421호, 제8422호, 제8450호, 제8516호 물품의 것으로서 하우징 또는 지지물과 조립된 것	2.7/0
2000	제어반	60	모터컨트롤센터	2.7/0
9000	기타	90	기타	2.7/0

-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제8537.10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을 분류함
- 제8537.10호의 하위구분으로서 우리나라는 배전반, 제어반, 기타 등으로 구분하나, 미국은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것(제8537.30-10호)과 모터컨트롤 센터 및 기타 등으로 구분됨
- 다만, 세율이 동일하므로 품목분류상 관세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③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 신청물품: 모션센서

- 실내 현관문 천장에 장착되어 조명기기의 점등유무와 점등시간 등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
  - 플라스틱 하우징 안에 초전형 적외선 센서, 조도센서, 렌즈, IC, 계전기, 커넥터, 스위치 등이 실장된 PCB기판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센서에서 적외선 및 밝기의 변화량을 감지하면 IC가 계전기의 접촉단자를 on/off함
- 결정세번: 제8537.10-2000호
- 관세율표 제16부 주3호 및 제90류 주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제16부 총설에서 부주 제3호의 부속기기에 대하여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 · 온도계 · 액면계 또는 기타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 · 컨트롤패널 · 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기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된다. 이를 부속기기들은 하나의 특정기계를 측정 · 검사 · 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어야 한다[이들은 복합기계 또는 기능단위일 경우도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초전형 적외선 센서, 조도센서, 렌즈, IC, 계전기, 커넥터 등이 구성된 PCB기판으로 제16부와 90류의 물품이 결합된 제16부 주3호 및 제90류 주3호의 복합기기에 해당되나 제16부 총설 부속기기의 규정을 적용하여 IC, 계전기, 커넥터, 스위치 등으로 구성된 PCB기판에 주된 기능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을 설명하며 제8537.10호로 세분류토록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 · 패널 · 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 · 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 · 진공관 또는 전압조정기, 가감저항기 또는 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 · 3개의 스위치 · 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 · 압연기 · 발전소 · 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조명용 기기의 점등유무와 점등시간을 제어하기 위해 플라스틱 하우징 안에 초전형 적외선 센서, 조도센서, 렌즈, IC, 계전기, 커넥터, 스위치 등이 실장된 PCB기판으로 구성된 전기제어용 보드(전압 1,000볼트 이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 ④ 수출자 유의사항

- 동 물품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품목분류가 동일한 사례로서 별도의 수출자 유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6) 진공인터럽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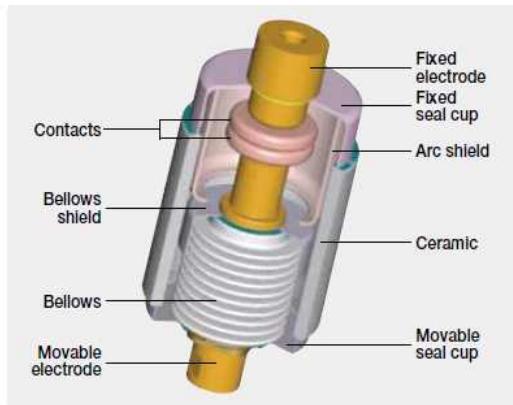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70844

□ 신청물품: 진공인터럽터

- 전기접점과 세라믹 절연체로 이루어진 진공인터럽터로서 진공차단기의 부분품임. 전기접촉이 진공상태로 변하면서 전기아크를 최소화하는 기능이 있음
  - 실린더 모양이며 고정접점(fixed contact)과 이동접점(movable contact)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동접점이 고정접점에서 분리될 때 전기의 흐름이 차단됨
  - 진공차단기 (Vacuum Circuit Breakers: VCB): 고압 배전선로에 설치하여 과전류, 단락 및 지락사고 등 이상전류 발생시 회로차단방식으로 보호하는 기기. 외부의 별도 계전기에 의해 차단기 내부의 진공 인터럽터에서 진공 소호방식으로 회로를 차단하여 인명 및 부하기기를 보호
  - 진공인터럽터(Vacuum Interrupter: VI): 고진공(약  $5 \times 10^{-5}$  Torr)으로 높은 절연내력을 가지고 있는 기기. 접점은 아크 소호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고 그 접촉면은 특수 합금 (동-크롬)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는 완전히 밀봉되어 진공도의 저하를 방지함

< 그림 6-8 > 진공 인터럽터



□ 결정세번: 제8538.90-8020호

- 제8535호, 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기타: 기타: 기타: 자동서킷브레이커의 것으로 일반세율 3.5%의 물품임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538.90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 율 (기본/KORUS)
1000	개폐기의 것		인쇄회로	
2000	자동차단기의 것	10	-제8537호의 것으로서 HTSUS 제85 류 주11(미국 추가주)에 규정된 물 품 중 하나에 사용되는 것	0
3000	계전기의 것	30	- 기타	3.5/0
4000	제어반의 것	40	제8535.90.40호, 제8536.30.40호 또는 제8536.50.40호의 것, 세라믹 또는 금 속재료의 것, 전기적 또는 기계적으 로 온도변화에 반응하는 것	3.5/0
9000	기타		기타	
		60	- 금형의 것	3.5/0
		80	- 기타	3.5/0

□ 제8538호에는 “부분품(제8535호 · 제8536호 · 제8537호의 기기에 전  
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 제8538.90호에는 기타의 것이 분류됨

□ 제8538.90호 하위 구분으로서 우리나라는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개  
폐기, 자동차단기, 계전기, 제어반, 기타 등으로 구분되나, 미국은  
크게 인쇄회로의 것인지 특정 호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따라 구분함

- 특히 제8538.90-10호와 같이 미국 추가 주(Note)에 규정된 물품에 사용되는 것을 별도로 분류하고 이에 일반세율 0%를 부과하므로 수출 물품의 해당 주 적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표 6-7 > 제85류 미국 추가 주 11**

11. For the purposes of subheading 8538.90.10, the expression "articles described in additional U.S. note 11 to chapter 85" means any of the following goods: photocopying apparatus of subheading 8443.32.30, 8443.32.50, 8443.39.20 or 8443.39.40; word processing machines of heading 8469; articles of heading 8470 or heading 8471; automatic teller machines of subheading 8472.90.10; articles of subheadings 8486.10 through 8486.40; articles of heading 8517; articles of subheading 8519.50; transmission apparatus of subheading 8525.50.10; articles of subheading 8525.60; digital still image cameras of subheading 8525.80.40; articles of subheading 8543.70.92; plotters of subheading 9017.10.40 or 9017.20.70; instruments and apparatus of heading 9026; instruments and apparatus of heading 9027 except of subheading 9027.10 or 9027.90.20; instruments and apparatus of subheading 9030.40; instruments and apparatus of subheading 9030.82; optical instruments and appliances of subheading 9031.41; optical instruments and appliances of subheading 9031.49.70; articles of subheading 9031.80.40.

### ③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신청물품: 진공차단기

- 272mm(높이)×145(폭)mm 크기의 원통형 물품으로 세라믹 재질의 케이스 내부는 진공 상태이며, 고정접점과 가동접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모델은 VCB(Vacuum Circuit Breaker)에 전용되어 사용되며, 정격전압은 36KV임
- 수리를 위해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전극을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전극을 단락시킴으로써 전기를 차단하는 기능과 전기의 개폐가 이루어지는 접점을 진공상태로 배치함으로써
  - 진공 중에 높은 절연내력을 이용하여 전극 단락시 발생되는 아크 생성물을 소호해 주는 기능

결정세번: 제8538.902000호

-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억제기·플러그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은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제8538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아크를 소호해 주고 수동으로 전극을 단락시키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서 자동차단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고안된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38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8.90-2000호에 분류함

#### ④ 수출자 유의사항

-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간 이견이 없는 물품으로서 별도 유의사항은 없음
- 동 물품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일관되게 제8538.90호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반세율 3.5%(한-미 FTA 0%)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임

## 6) 탑승감지센서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6961
- 신청물품: 탑승감지센서(capacitive body sensor)
  - 동 센서는 차량 좌석의 아래에 장치되어 탑승자의 상대적인 크기를 감지하는 역할을 수행함
    - 동 센서는 전극간 커패시터(electrostatic capacitance)를 사용하여 측정한 후 ECU(electronic control unit)에 보내어, 탑승자가 어린이인지 또는 작은 사람인지를 결정하도록 함. ECU에 의해서 신체크기가 결정이 되면 에어백이 작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신호를 보내어 부상을 방지함
  - 결정세번: 제8543.70-4000호
    - 동 물품은 기타의 전기기기 및 그 부속기기가 분류되는 제 8543.70-4000호에 분류함
    - 신청인은 동 물품이 제9031.80호에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동 물품은 단지 탑승자의 존재를 ‘감지(detecting)’ 하기만 할 뿐, ‘실제 측정값(measurement)’ 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측정 또는 검사(measurement or checking)하는 기기가 분류되는 제90류로 분류할 수 없음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543.70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울 (기본/KORUS)
1000	일렉트릭 펜스 에너자이저	20	물리증착기기(Physical vapor deposition )	2.5/0
20	가정형	40	전기싱크로와 트랜스듀서(Transducer); 비행데이터 기록장치; 항공기용의 전기저항기가 달린 서리제거장치 및 데미스터(Demister)	2.6/0
10	이온정수기	60	전신 또는 전화장치, 전신 또는 전화네트워크에 연결을 위한 물품	2.6/0
20	미용기기	70	전기형광램프	2/0
30	오디오믹서		기타	
40	이퀄라이저	80	- 마이크로웨이브 증폭기	2.6/0
50	오존 발생기		- 기타	
90	기타	85	-- 전기신경시뮬레이션	0
3000	전자번역기 · 전자사전	93	-- 번역 또는 사전 기능을 가진 전기기계; 소호 제8528.51호 또는 제8528.61호를 제외한 제8528호 이외의 평면패널디스플레이; 콘솔의 다양한 기능과 능력을 작동하거나 접근하기 위한 적외선 전송을 사용하는 비디오 게임 콘솔컨트롤러	0
40	전자담배	96	-- 기타	2.6/0
10	니코틴 용액을 포함한 것			
90	기타			
90	기타			
10	고주파증폭기			
20	디텍터(광센서를 포함한다)			
30	전기신경자극기			
90	기타			

□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제8543.70호에는 입자가속기, 신호발생기, 전기도금용·전기분해용·전기영동용 기기를 제외한 그 밖의 기기를 분류함
- 제8543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를 분류하며, 고유의 기능이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 (i)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 (ii)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 (iii)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

### ③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Seat Belt Remind MAT Sensor :: 88882-A5000
  - 조수석 승객 안전벨트 미 착용시 경고음 등을 발생시키기 위해 승객 착석여부를 감지하는 센서로,
    - 승객 착석시 평소 상하충간 분리되어 있던 압전 부위가 승객의 무게로 접촉이 될 때 압력의 변화에 따른 전기적 변화량을 감지하는 SBR MAT 와 차량내부 BCM (BODY CONTROL MODULE)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절연전선과 커넥터 등이 결합된 물품
- 결정세번: 제9031.80-9099호
  - 관세율표 제9026호의 용어에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측정계).”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 물품은 힘의 중량에 의한 압력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기이므로 제9026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또한 압력변화값을 측정하는 부분과 절연전선, 커넥터 등이 결합되어 제시된 물품이므로 제8533호의 저항기, 제8536호의 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 제8544호의 절연전선 등으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응력을 받으면 전선의 저항치가 변화는 것, 전극간에서 커패시터(CAPACITY)가 변하는 것, 수정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에 압력이 가해지면 전하가 발생하는 것을 이용한 응력 및 왜력의 전기식 측정기와, 힘 또는 중량의 작용에 따른 변화를 전압의 변화로 전환시켜주는 로드셀”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 물품은 승객 무게(힘 또는 중량)의 작용에 따른 변화를 전기적량의 변화로 전환시켜 승객의 착석 여부 등을 검사(Checking)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9031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④ 수출자 유의사항

- 우리나라(제9031호)와 미국(제8543호)의 품목분류 상이사례에 해당하므로, 수출시 품목분류 주의
- 동 물품은 차량 탑승자 탑승유무를 감지하고 이를 ECU에 전송하는 장치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제9031호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분류하며, 미국에서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제8543호로 분류함
- 미국 세관에서는 동 물품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인지하였으나, 제9031호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측정’ 또는 ‘검사’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 동 기기는 탑승자의 유무를 감지(detecting)할 뿐이므로, 측정이나 검사에 해당하지 않아 제9031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미국 수입세율이 일반세율의 경우, 제8543호는 최대 2.6%, 제9031호는 1.7%로서(한-미 FTA는 모두 0%)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제9031호에 분류하는 것이 유리함
  - 동 감지센서를 수출하는 수출자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품목분류 결정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제8543.70호로 발급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

## 4. 소결

- 전기기기산업에 속하는 물품의 사전심사는 주로 물품이 가지는 기능과 용도, 특징, 기술적 사양 등 다방면의 검토가 요구되므로 품목 분류가 쉽지 않음
- 품목분류표에서도 다양한 전기기기를 호 또는 소호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주로 통칙 제1호에 의거 분류되는 경우보다는 통칙 제3호<sup>31)</sup>에 따라 분류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 키리스 리시버(참조번호 N268326)의 경우, 무선통신기기(제8517호)와 제어반(제8537호)의 경합세번이었으나, 미국에서는 주 기능이 무선통신기기에 있다고 본 반면 우리나라는 제어반으로 본 것
  - 안테나증폭기(참조번호 N265335)는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에 대한 국제적 통일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품목분류 사례. 관세율표상 명시된 ‘고주파’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해당 안테나증폭기가 고주파의 증폭기라 보지 않는다는 것이며, 미국은 고주파 증폭기라고 본 것
  - 탑승감지센서(참조번호 N266961)의 경우 미국은 관세율표의 단어 해석에 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임. 우리나라는 동 물품이 승객 무게의 작용에 따른 변화를 검사하는 기기로 보았으나, 미국은 탑승자의 유무를 감지(detecting)하는 것과 측정이나 검사(measuring or checking)와는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
- 전기기기산업 물품은 품목분류에 있어 국제적 통일이 가장 요구되는 물품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

31) 통칙 3)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 VII. 자동차 부품

### 1. 산업동향

#### 가. 생산동향

##### 1) 일반 생산동향

- 우리나라를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완성차 업체의 매출 및 생산량 증가에 따라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도 함께 상승
- 일본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고, 품질과 기술 측면에서는 중국을 크게 앞지르며 일본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음
  - 현대모비스(세계 6위), 현대위아(세계 32위), 만도(세계 45위) 등 국내 다수 기업이 세계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상위를 차지
-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은 신차 출시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부품 공급 비중 확대, 모듈화 및 사양 고급화 등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 유지
  - 2016년 가동하는 기아차의 멕시코 공장 등 신규 공장 가동에 따른 물량 증가로 자동차 부품 생산은 더욱 증가할 전망
- 2014년 말 기준 국내 자동차회사와 직접 거래하고 있는 1차 협력업체 수는 879개사이며, 이중 대기업이 231개사(26.3%), 중소기업이 648개사(73.7%)임

< 그림 7-1 > 한국 자동차 산업 입지 현황



자료: 인베스트코리아

## 2) 미국 생산동향

- 자동차부품 전문기관 Auto Care Association에 따른 미국의 자동차 부품 시장규모는 2014년 기준 약 3,282억 달러
- 신규 연비기준 도입으로 친환경차 개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에 따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부품 수요 및 생산이 증가할 전망
  - 신연비기준 : '09년 27.3 mpg → '16년 35.5 mpg(리터당 15km)
- 미국 내 자동차부품 주요 1차 벤더이자 엔진 및 변속기 부품 제조업체

Borgwarner의 2014년 업체 순이익은 전년대비 12.6% 증가한 7억300만 달러 기록

- 미국 자동차부품 시장은 OE(Original Equipment) 시장과 애프터마켓 (After Market) 시장으로 분류
  - 북미지역 OE 시장의 경우 전체 미국 자동차부품 산업의 약 83%를 차지하며, 시장규모는 약 2,727억 달러임
  - 북미지역 애프터마켓은 전체 자동차부품 산업의 약 17%를 차지하며 555억 달러를 기록함
    - 미국 애프터마켓 유통채널은 크게 DIY(Do-It-Yourself) 부품 소매시장과 DIFM(Do-It-For-Me) 자동차 정비업 시장으로 구분됨
    - 매출 기준 약 65%를 점유하고 있는 DIFM 시장은 순정부품 및 비순정부품 유통채널로 나뉘며, 자동차 딜러 및 정비소가 최종 소비자임
    - DIY 시장은 자동차 소유자들이 직접 자동차 수리를 위해 구매하는 자동차부품을 말하며 AS시장의 약 20%를 차지함
    - 2008년 경기불황 여파로 중고차 평균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애프터마켓 부품 수요도 증가세를 보임
- 신차 출시는 대부분 미 남동부 및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
  - 2020년까지 신차 출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향후 5년간 신규 모델 생산은 미국 남동부 지역과 멕시코 신축 공장에 집중될 것으로 추정
    - 2016~2020년 북미에서 출시 예정인 신차 총 193대 중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59대(약 30%)로, 지난 5년 평균치 비중(20%)에 비해 증가 예상
    - Big 3 본사 소재지인 미시간 주 등 미국 중서부에서 멕시코 및 멕시코 접경지역으로 미국 자동차 생산이 분산됨에 따라 디트로이트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부품 공급업체 생산역량 재편 추세

## 나. 수출동향

### 1) 일반 수출동향

-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산업은 전방산업인 완성차 산업의 성장에 힘 입어 꾸준히 성장
  - 특히 자동차 부품 수출은 연평균 20%이상 증가하며 자동차 부품 산업의 성장을 주도
    - 2014년 기준 자동차 부품 수출은 국산자동차의 제품 경쟁력 및 신뢰도 향상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한 266억 3531만달러 달성
    - 수출지역은 아시아가 99억 3680만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37.3%)을 차지하였고, 북미(25.8%), EU(21.6%), 중남미(9.3%), 중동(4.6%) 순임
    - 국내 자동차 업체의 해외생산 확대로 인한 KD(Knock Down)부품<sup>32)</sup>의 수출 증가, 해외 A/S 부품의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수출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 국내 자동차 기타 부품(HS 870899)은 5년 연속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유지

### 2) 대미 수출동향<sup>33)</sup>

- 우리나라의 2015년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금액은 총 59억 달러로 2014년 60억 달러 대비 약 1.6% 감소한 수치
  - 우리나라의 대미 상위 14대 수출품목 중, 주요 수출품목인 기타 부품(제8708.99호)의 수출은 전년대비 6.6% 증가한 30억2천만 달러를 기록, 전체 자동차 부품 수출의 약 50%를 차지

32) 자동차 반조립 부품. 녹다운(Knock Down: KD) 방식이란 완성품이 아닌 부품을 수출해서 현지에서 조립·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완성품을 수입하는 것보다 녹다운 방식이 고용의 확대나 조립기술의 습득 등 공업화에 기여하는 면이 많아 받아들이기 쉽고, 수출국으로서는 완성품을 수출할 경우에 비해 관세가 싸고 현지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유리한 면이 있다.

33) 대미수출 동향은 관세율표 제8708호(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의 물품을 대상으로 함

- 그러나 차체의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제8708.40호) 7.9%,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제8708.30호) 22.2%, 운전대 ·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제8708.94호) 19.5% 등 다수 품목에서 감소가 나타남
- 반면,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제8708.40호) 0.2%, 구동 · 비구동 차축(제8708.50호) 5.2% 등은 제품수출이 증가
- 안전벨트(제8708.21호)의 경우, 자동차 부품 수출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나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92.1%)이 가장 크게 나타남

**< 표 7-1 > 우리나라의 對미국 자동차 부품 일반수출 상위 20대 품목**

[단위: 천 달러, % ]

HS 6	품목명	2014	2015	
		금액	금액	증감률
870899	기타	2,837,442	3,025,339	6.6
87084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835,350	836,866	0.2
870829	기타(차제의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	906,760	834,675	-7.9
87083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376,826	293,269	-22.2
870894	운전대 · 스티어링칼럼 ·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306,583	246,868	-19.5
870850	구동 차축,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208,523	219,438	5.2
87087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 · 부속품	184,570	177,075	-4.1
870880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	169,451	151,674	-10.5
870892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108,207	82,103	-24.1
870893	클러치와 그 부분품	43,988	41,115	-6.5
870895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39,837	35,730	-10.3
870810	완충기와 그 부분품	19,034	16,523	-13.2
870891	방열기와 그 부분품	7,347	7,450	1.4
870821	안전벨트	1,807	3,472	92.1
	합계(자동차부품류)	6,045,724	5,971,595	

자료: 무역협회

## 2. 주요 통관규제

### 가. 미국 배기ガス 기준 관련 자동차 및 엔진 수입

#### 개요

- 미국의 배기ガス 기준(Tier)은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 포름알데히드(HCHO), 비메탄 유기ガ스(NMOG), 비메탄 탄화수소(NMHC) 등과 같은 배기ガス를 제한하는 규제
  - 차량유형(총중량 기준), 배기ガス 카테고리, 차량 내용연수 등을 기준으로 각 배기ガス 종류별로 g/mi (grams per mile)을 정하여 제한

#### 미국 배기ガス 규제 (Tier)

- 미국 엔진과 차량에 대한 배기ガス 규제인 Tier는 미국 환경부(Environment Protect Agency; EPA)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1~4단계가 있어 단계가 높을수록 배출기준이 엄격
  - 현재는 ‘Tier2-Bin5’ 규제를 시행하며, Tier3 규제는 2017년에 적용

< 표 7-2 > 미국 배기ガス 배출 허용 기준

Standard	Emission Limits at 50,000 miles					Emission Limits at Full Useful Life (120,000 miles) <sup>a</sup>					
	NOx (g/mi)	NMOG (g/mi)	CO (g/mi)	PM (g/mi)	HCHO (g/mi)	NOx (g/mi)	NMOG (g/mi)	CO (g/mi)	PM (g/mi)	HCHO (g/mi)	
Federal	Bin 1	–	–	–	–	0	0	0	0	0	
	Bin 2	–	–	–	–	0.02	0.01	2.1	0.01	0.004	
	Bin 3	–	–	–	–	0.03	0.055	2.1	0.01	0.011	
	Bin 4	–	–	–	–	0.04	0.07	2.1	0.01	0.011	
	Bin 5	0.05	0.075	3.4	–	0.015	0.07	0.09	4.2	0.01	0.018
	Bin 6	0.08	0.075	3.4	–	0.015	0.1	0.09	4.2	0.01	0.018
	Bin 7	0.11	0.075	3.4	–	0.015	0.15	0.09	4.2	0.02	0.018
	Bin 8 <sup>b</sup>	0.14	0.100 / 0.125	3.4	–	0.015	0.2	0.125 / 0.156	4.2	0.02	0.018
	Bin 9 <sup>b</sup>	0.2	0.075 / 0.140	3.4	–	0.015	0.3	0.090 / 0.180	4.2	0.06	0.018
	Bin 10 <sup>b</sup>	0.4	0.125 / 0.160	3.4 / 4.4	–	0.015 / 0.018	0.6	0.156 / 0.230	4.2 / 6.4	0.08	0.018 / 0.027
	Bin 11	0.6	0.195	5	–	0.022	0.9	0.28	7.3	0.12	0.032

자료: [www.hybridcars.com](http://www.hybridcars.com)

#### 자동차 및 엔진 수입요령 (US Version)

- 인정요건

- 연방정부 배기ガス 기준에 따라 제조

- EPA의 인증서 (Certificate of conformity)
- 영어로 된 U.S. emissions compliance label을 엔진측에 부착
- 수입요건
  - 영어로 된 EPA emissions label 부착
  - 제조업체 미국대리점의 서면진술서 (처음부터 US version으로 제조되었거나, 아니면 제조된 후에 EPA의 요건에 맞춰 개조되었다는 내용)
- 수입 통관 시 유의사항
  - EPA Form 3520-1의 declare code에 “B”로 표기하여 제출
  - 세관이나 EPA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입업자는 US version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촉매, 산소센서, 필터넥 제어장치 등이 제거되거나 개조된 US version 차량의 경우
  - 수입업자는 반드시 수입된 후에, 제거되거나 개조된 차량의 촉매, 산소 센서, 필터넥 제어장치 등을 재설치 또는 교체
  - 만약 가연가솔린이 사용된 경우, 가연가솔린이 들어있는 연료탱크나 리필을 비우고, 가연가솔린 사용시에 있던 촉매와 산소센서를 교체

## 나. FMVSS (미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 □ 개요

- FMVSS(미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은 DOT(미국운수성)산하 NHTSA(미국 도로교통 안전관리국)에 의해 관리되는 국가규격으로, 인증 방식이 제조업자의 자가인증(self certification)인 강제 인증 규범이며, 해당 규격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을 시험함

### □ 내용

- 인증품목
  - 합법적으로 미국에 수입되기 위해서 규정된 자동차 부품(새것 혹은 중고)은 제조 날짜에 유효한 해당 FMVSS의 버전을 준수해야하며 제

### 조 업체에 의해 인증되어야 함

- 인증 대상은 브레이크시스템, 제어 시스템 관련, 연료시스템, 오토바이 헬멧, 안전벨트 부품, 운전자 충돌보호, 브레이크 호스, 램프, 반사장치 관련 장비, Air 브레이크 시스템 등

#### ○ 인증기관

- 미국운수성(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및 미연방 고속도로 안전관리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ssociation; NHTSA)
- NHTSA는 FMVSS 규격에 자동차류 및 장비 아이템 제조업자가 적합성을 인증 받아야하는 규정에 관한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음

#### ○ 인증절차

- FMVSS 인증은 기존 형식의 승인과는 다른 자가 인증 방식임
- 일반적으로 제조업자는 제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FMVSS를 수행하는 시험소에서 테스트를 실시함<sup>34)</sup>
- 제조업체는 NHTSA가 관리하는 법령 및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실질적인 민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다. 미국 기업평균연비 규제 (CAFE)

### □ 개요

- 미국 도로교통 안전관리국(NHTSA)이 제정한 미국 기업평균연비 규제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는 미국에서 1만대 이상을 판매한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업체가 생산하는 승용차 또는 경트럭 국내 전 차종별로 적용하는 연비 규제임

### □ 내용

- NHTSA는 승용차 및 경트럭의 평균연비를 2025년까지 49.6mpg로 목표
  - 기준미달 시 북미 판매 대당 5.5 \$/0.1mpg 과태로 부과
  - 기준 초과 달성 시 모델연도에서 3년 전후로 발생하는 초과분에 대한 상

34) 각 제품별 Test 절차는 [www.safercar.gov/Vehicle+Safety/Test+Procedures](http://www.safercar.gov/Vehicle+Safety/Test+Procedures)에서 확인 가능

쇄에 이용 가능

< 표 7-3 > 2017년 - 2022년 평균 목표 연비

[ 단위: mpg ]

	MY Model Year	2017	2018	2019	2020	2021
	Baseline					
Passenger Cars	2008	39.5	41.5	43.8	46.3	47.9
	2010	39.4	41.1	43.3	45.1	47.1
Light Trucks	2008	29.3	30.3	31.9	33.3	35.2
	2010	28.8	29.3	31.3	32.8	34.9
Combined	2008	35.0	36.6	38.7	40.8	42.6
	2010	34.8	36.0	38.2	39.9	42.0
Model Year	Baseline	2022	2023	2024	2025	
Passenger Cars	2008	49.3	50.0	51.5	52.9	
	2010	48.1	49.6	51.3	52.1	
Light Trucks	2008	36.1	36.8	37.9	39.0	
	2010	35.5	36.5	37.4	37.6	
Combined	2008	43.8	44.6	46.0	47.4	
	2010	42.9	44.2	45.6	46.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3. 품목분류사례

#### 가. 상이사례

##### 1) 크로스멤버

- 크로스멤버를 우리나라에서는 제8708.99호(기타 부분품)로 분류하였으나, 미국에서는 제8708.80호(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로 분류한 사례

사례출처	수출업체 민원(FTA콜센터)	
물품설명	자동차 부분품으로 차량의 앞뒤 좌우 방향의 구부러짐을 막기 위해 사용됨. 철강재질로 되어 있어 차량의 범퍼와 엔진 사이에 위치하여 엔진이 있는 공간의 비틀림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보강재임	
사 진		
국 가	우리나라	미국
H S	8708.99	8708.80
분류근거	본 건 물품은 차량의 뒤쪽 새시 부분에 위치하여 차량의 타이어와 차체를 연결해 주고 차량의 강성을 지지하고 비틀림을 억제해 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708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99-9000호에 분류함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제8708.80호에는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를 분류 미국 관세당국은 동 물품을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708.80호에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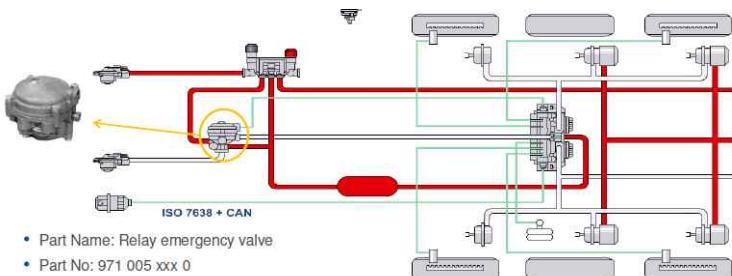
## 2) 스틸피팅

- 스틸피팅을 우리나라에서는 제7307호(철강제 관연결구류)로 분류하였으나, 스위스에서는 제8708호(자동차의 부분품과 부속품)로 분류한 사례

사례출처	수출업체 만족도 조사	
물품설명	자동차 내부의 연료탱크 또는 진공펌프와 각 관료들을 연결시키는데 사용 되는 철강제 관연결구로써 연결부 내부에서 발생되는 공기의 방향을 전환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사 진		
국 가	우리나라	스위스
H S	7307.99	8708
분류근거	<p>제7307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된 칼라를 갖춘 평판 플랜지와 플랜지·엘보와 밴드 및 리턴밴드·리듀서·티이·크로스·캡과 플러그·랩조인트 스타브엔드(lap joint stubend)·관상의 레일 및 건축용 품의 연결구·옵세트·멀티브랜치피스(multi-branch pieces)·커플링 또는 슬리브·소제구용트랩·리플·유니언·클램프와 칼라를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해설함</p> <p>본 품은 기타 철강제 관연결구류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07.99-9000호에 분류함</p>	<p>동 물품은 본 물품은 자동차 내부의 연료탱크 또는 진공펌프와 각 관료들을 연결시키는 용도로 쓰이는 물품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며, 제17부의 제외물품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으므로 제8708호에 분류함</p>

### 3) 공기압 전송용 밸브

-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우리나라에서는 제8481호(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 등에 사용하는 템·코크·밸브)로 분류하였으나, 인도에서는 제8708호(자동차의 부품과 부속품)로 분류한 사례

사례출처	수출업체 직접 문의	
물품설명	트레일러의 제동을 위한 공기압력을 전달하는 장치로서, 트랙터-트레일러의 제동파이프 분리시 비상제동 가능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art Name: Relay emergency valve</li> <li>Part No: 971 005 xxx 0</li> <li>제작 관종·모드 트레이너</li> </ul>	
국가	우리나라	인도
H S	8481.20	8708.30
분류근거	<p>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템·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p> <p>본 물품은 브레이크밸브에서 오는 에어신호를 받아 릴레이파이스톤이 하강하여 인네트밸브를 열어 에어탱크에 있는 공기를 브레이크챔버에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20-2000호에 분류함</p>	
	<p>제8708호에는 ‘부품과 부속품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H) 브레이크(shoe · segment · disc 등)와 그 부품(플레이트 · 드럼 · 실린더 · 부착된 라이닝 · 유압식제동장치용의 오일탱크 등), 서보브레이크(servo-brakes)와 이들의 부품’을 분류한다고 규정</p> <p>동 물품은 밸브로서 기능하나 제동장치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품으로서 제8708호로 분류함</p>	

## 나. 사전심사사례

- 2015년 미국 관세청에 신청된 우리나라 자동차부품관련 사전심사물품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을 포함함

순번	HS	품 명
1	8708.80-6590	서스펜션 에어튜브
2	8708.92-5000	수소연료차량의 소음기
3	8708.29-5060	번호판 마운트
4	8708.40-7580	변속기 케이블
5	8708.50-8900	차동장치
6	8708.93-6000	클러치 페달
7	8708.94-5000	스티어링 칼럼
8	8708.99-6805	드라이브 샤프트
9	9801.00.2000	자동차부품

### 1) 서스펜션 에어튜브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9631

□ 신청물품: 서스펜션 에어튜브

- 차량용 플라스틱 에어튜브로서 승용 자동차 에어서스펜션에 사용됨. 차량의 압축기로부터 발생된 공기압이 공기를 솔레노이드 밸브로부터 에어튜브로 이동시키고, 에어튜브에서 다시 에어서스펜션으로 이동시킴

- 동 튜브는 각 구성요소를 연결시키고 공기압을 에어서스펜션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함
- 에어튜브는 특정 모양의 폴리아미드로 만든 튜브와 열가소성 탄성중합체로 이루어져 있음. 튜브는 폴리아미드 클립과 결합되어 자리에 고정되어 있음

□ 결정세번: 제8708.80-6590호

- 동 물품은 HTSUS 제8708.80-6590호의 물품으로서 “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부분품: 기타: 기타: 기타”에 분류되며, 일반세율은 2.5%임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708.80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 율 (기본/KORUS)
0000 서스펜션 시스템 (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서스펜션 시스템(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	
	- 농업용에 적합한 트랙터의 것	
	03 -- 맥퍼슨스트럿(McPherson struts)식의 것	0
	05 -- 기타	0
	- 기타 차량용의 것	
	13 -- 맥퍼슨스트럿(McPherson struts)식의 것	2.5/0
	16 -- 기타	2.5/0
	부분품	
	51 - 농업용에 적합한 트랙터터의 것	0
	55 - 기타 트랙터의 것(로드 트랙터를 제외한다)	0
	- 기타	
	60 -- 주조의 것	0
	65 -- 기타	2.5/0

□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제8708.80호에는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을 분류함

- 서스펜션시스템: 현가장치라고도 함<sup>35)</sup>
  - 쇼크업소버, 스프링, 서스펜션암 등이 주요 구성요소임
    - 노면에서 발생하는 충격이 차체나 탑승자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지지 않게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과 타이어를 노면에 확실하게 접지시키는 기능이 주요한 역할
- 맥퍼슨스트럿식 서스펜션(McPherson struts suspension)은 서스펜션 방식의 일종으로 고안자인 맥퍼슨(Earle S. MacPherson)의 이름을 따 맥퍼슨스트럿식(또는 스트럿 방식)이라 불림
  - 이것은 간결하고 컴팩트한 구조가 장점이며, 가격이 저렴하여 자동차용 독립 현가장치로서는 197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됨
- 제8708.80호 하위구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가장 큰 차이는 서스펜션의 별도구분 여부임
  - 미국은 서스펜션과 그 부품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농업용 여부에 따라 구분함
    - 농업용의 것은 일반세율 0% 적용이 가능하나, 기타의 것은 대부분 2.5%의 세율이 적용됨

### ③ 유사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Air Spring
  - 버스 등 대형 차량의 서스펜션(현가장치)에 장착되는 벨로우 형태의 에어스프링
- 결정세번: 제8708.80-0000호

---

35) 두산백과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III)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 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호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IJ) Suspension shock-absorbers(마찰식 · 유압식 등) 및 기타 현가장치용 부분품(스프링을 제외한다) · torsion bars”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쿠션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타 현가장치 용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80-0000호에 분류함

**< 그림 7-2 > 에어스프링**



#### ④ 수출자 유의사항

- 서스펜션 시스템 부분품 수출시, 농업용 서스펜션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품목분류 할 것
- 미국의 제8708.80호의 서스펜션 시스템 및 그 부분품의 품목분류는 우리나라와 달리 세분화 되어 있으며, 특히 농업용 트랙터의 것에는 일 반세율 0%를 부과함
  - 우리나라는 농업용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품목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미국 수출시에는 추가적인 품목분류가 필요하게 됨
- “트랙터란 주로 다른 차량·기기·화물을 끌거나 밀기 위하여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히 HTSUS 제8701.30-10호와 제8701.90-10호에 농업용 트랙터를 특게하고 있으므로, 해당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분품이 동 트랙터에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 2) 수소연료차량의 소음기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8112

□ 신청물품: 수소연료차량의 소음기

- 동 물품은 수소연료차량(hydrogen fueled vehicle)에 장착된 배출시스템의 소음기임. 수소연료차량이 주행시 엔진에서 발생되는 물과 공기를 배출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함
  - 일반적인 차량과는 달리 수소연료차량은 물을 배출함. 동 소음기는 발생한 물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며, 파이프에는 어떠한 종류의 촉매나 필터도 장착되어 있지 않음

□ 결정세번: 제8708.92-5000호

- 동 물품은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부분품: 머플러와 배출관; 그 부분품: 머플러와 배출관: 기타 차량의 것”에 분류되어, 일반세율 2.5% 적용됨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708.92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율 (기본/KORUS)
0000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소음기와 배기관	
	10 - 농업용 트랙터의 것	0
	50 - 기차 차량의 것	2.5/0
	부분품	
	60 - 농업용 트랙터의 것	0
	65 - 기타 트랙터의 것(로드 트랙터는 제외한다)	0
	70 -- 주조의 것	0
	75 -- 기타	2.5/0

-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 제8708.92호에는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이 분류됨
- 미국은 소음기 · 배기관과 그 부분품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농업용 여부에 따라 구분함
  - 농업용의 것은 일반세율 0% 적용이 가능하나, 기타의 것은 대부분 2.5%의 세율이 적용됨

### ③ 유사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소음기의 부분품
  - SUS소재 코일을 프레스로 작업하여 형상을 딴 후, 등근 모양으로 원형 용접 및 가장 자리를 압인 가공하여 제조된 제품으로, 내연기관에서 발생한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시 통과하는 최종 통로이자 외관장식
    - 용도 : 소음기(Muffler)의 부품
    - 규격 : 가로 212mm × 세로 130mm
- 결정세번: 제8708.92-0000호
  - 제8708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또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소음기(머플러) · 배기파이프’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머플러 끝단 부위에 설치되어 내연기관에서 발생한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시 통과하는 최종 통로를 구성하므로 자동차 배기관의 부분품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2-0000호에 분류함

#### ④ 수출자 유의사항

- 수소연료자동차는 휘발유·경유 등 기름이나 가스를 전혀 쓰지 않고 수소를 연료로 한 자동차임
- 이것은 전기자동차에서 배터리 대신 수소저장탱크와 수소연료전지 즉 미니 발전소가 들어간 방식으로, 수소연료전지자동차와 구분됨
- 동 물품은 수소연료자동차에 사용되는 소음기로서 일반적인 소음기와는 달리 어떠한 부가장치도 탑재되어 있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음기와 동일한 제8708.92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결정함
- 미국 수출시 해당 소음기가 농업용의 것인지 확인하여 0%세율 적용 가능
- 미국의 제8708.92호의 소음기 및 그 부분품의 품목분류는 우리나라와 달리 세분화 되어 있으며, 특히 농업용 트랙터의 것에는 일반세율 0% 을 부과함
  - 우리나라는 농업용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품목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미국 수출시에는 추가적인 품목분류가 필요하게 됨

### 3) 번호판 마운트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2517

□ 신청물품: 차량 번호판 마운트

- 동 물품은 차량번호판마운트(License Plate Mounting)로서 차량 전후면 범퍼에 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하여 장착되는 물품임. 몰딩공법으로 만들어지며, 100% 폴리에틸렌으로 제작됨. 크기는 32mm × 325mm × 116mm임

< 그림 7-3 > 차량 번호판 마운트



□ 결정세번: 제8708.29-5060호

- 동 물품은 HTSUS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기타: 기타: 기타”의 물품으로서 제8708.29-5060호에 분류되며, 일반세율 2.5%(한-미 FTA 0%)가 적용됨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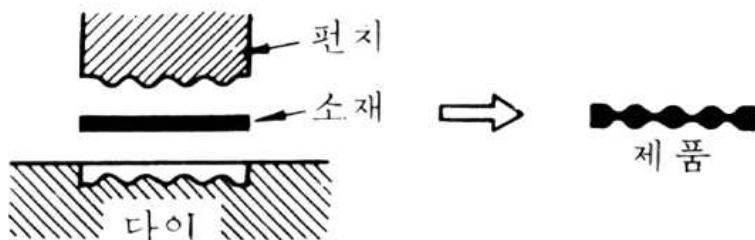
□ 제8708.29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 을 (기 본/KORUS)
29	기타	15	도어 조립품	2.5/0
			차체 스템핑	
		21	- 농업에 적합한 트랙터의 것	0
		25	- 기타	2.5/0
		50	기타	2.5/0

□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 용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 제8708.29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안전벨트를 제외한 기타의 물품이 분류됨
- 제8708.29호 하위구분으로서 우리나라에는 별도 추가구분이 없으나, 미국은 크게 도어조립품, 차체 스템핑, 기타 등으로 구분함
- 특히 차체 스템핑으로서 농업에 적합한 트랙터의 것은 일반세율 0%가 적용되는 물품임
  - 스템핑36): 형단조(型鍛造)라고도 하며, 요철(凹凸)이 있는 위아래의 형(型) 사이에 소재(素材)를 끼우고, 충격으로 압력을 가해 소재의 평면에 요철을 만드는 가공법

< 그림 7-4 > 스템핑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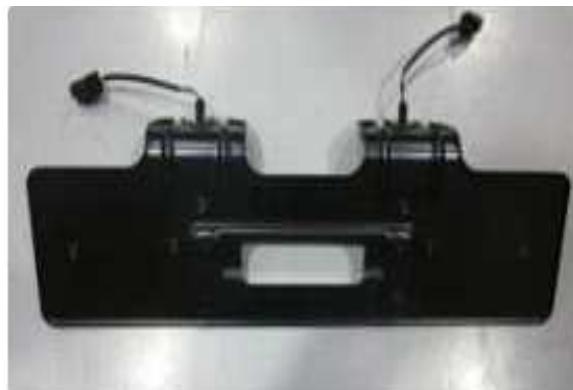


### ③ 유사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BRAKET ASSY - LICENSE PLATE, 61280-4F020

- 차량 번호판용 브라켓으로 야간에 번호판 식별이 용이하도록 램프가 결합되어 있음(571mm×86mm×203mm)

< 그림 7-5 > 차량 번호판용 브라켓



□ 결정세번: 제8708.29-0000호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①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 ②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③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번호판 브라켓’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번호판용 브라켓으로 램프가 결합되었다 하더라도 물품의 주기능은 브라켓에 있으므로 차체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나)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④ 유사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 신청물품: D-CUT EMBLEM(QL(스포티지))

- 자동차 스티어링 휠 하단부위에 장식용으로 부착되는 제품으로 차량명이 인쇄된 알루미늄 sheet를 크롬도금된 플라스틱 사출물에 양면테이프로 결합하여, 스티어링 휠에 부착 시 차량명이 인쇄된 알루미늄 부분만 노출되도록 제작
  - 규격 : 가로 약 37mm x 세로 약 8mm

##### □ 결정세번: 제8708.29-0000호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8310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10호의 용어는 ‘비금속으로 만든 사인판 · 명판 · 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 · 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사인판 · 명판 · 광고용판 · 주소용판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판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문자 · 숫자 또는 디자인으로 표지(에나멜 · 바니시 · 인쇄 · 조각 (중략) 기타의 방법으로)한 비금속제의 판이 포함된다. 이러한 판은 일반적으로 영구히 고정시키거나(예: 도로용 표지판 · 광고용판 · 기계의 명판) 또는 반복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해설하면서 ‘(5)기계 · 계기 · 자동차용(예 : 번호판) 등과 유사한 판과 상징물’이 포함된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자동차의 스티어링 휠 하단에 부착되는 차량명이 인쇄된 비금속제의 상징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제8310.00-0000호에 분류함

## ⑤ 수출자 유의사항

- 동 물품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사례결과 동일한 품목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동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차량용의 번호판은 제8708호가 아닌, 제8310호에 분류됨에 유의해야 할 것임
  - 제8310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사인판·명패·광고용판·주소용판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판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문자·숫자 또는 디자인으로 표지(에나멜·바니시·인쇄·조각(중략) 기타의 방법으로)한 비금속제의 판이 포함된다. (생략) ‘(5)기계·계기·자동차용(예 : 번호판) 등과 유사한 판과 상징물’이 포함된다”고 해설함

## 4) 변속기 케이블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5162

□ 신청물품: 변속기 케이블(cable assembly for transmission)

- 작동하는 힘을 변속기에 전달함으로써 기어를 변경하는 역할을 수행함
  - 변속기 케이블은 2개의 이너케이블 와이어, 2개의 아우터 케이싱, 2개의 아우터 프로텍터, 2개의 변속기 커넥터, 2개의 변속기 캡, 2개의 레버 커넥터 및 2개의 레버 캡 등으로 구성됨

< 그림 7-6 > 변속기 케이블



□ 결정세번: 제8708.40-7580호

- 동 물품은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기타: 기타: 기타”의 물품이 분류되는 제8708.40-7580호에 분류함. 세율은 일반세율 2.5%임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708.40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율 (기본/KORUS)
000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기어박스	
		11 - 제8701.20호 또는 제8702호,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의 차량의 것	2.5/0
		30 - 농업용에 적합한 트랙터의 것	0
		50 - 기타 차량의 것	2.5/0
		부분품	
		60 - 농업용에 적합한 트랙터의 것	0
		65 - 기타 트랙터(로드 트랙터를 제외한다)	0
		- 기타	
		70 -- 주조의 것	0
		75 -- 기타	2.5/0

-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  
용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고, 제8708.40호에는 기어박스와 그 부  
분품이 분류됨
- 우리나라는 하위 구분이 없이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을 단일한 호에  
분류하고 있으나, 미국은 기어박스와 부분품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음
- 또한 기어박스와 부분품 내에서도 농업용에 적합한 트랙터의 것 또는  
기타 트랙터 등은 일반세율 0%를 적용받으며, 기타의 것은 2.5%의 일  
반세율이 적용됨

### ③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cable assembly(Shift) ; 275532-02740TD(TATA Daewoo, NOVUS 트럭, 수동미션차량)
  - 대형버스나 트럭의 운전자가 기어변속 시 선택한 변속단수대로 밀고 당김을 전달하여 트랜스미션(수동)의 기어변속을 일으키는 케이블로서, 와이어 끝단에 각 레버를 연결할 수 있도록 결합장치가 부착된 형태로 제시됨
    - 작동원리 : 운전자가 기어변경을 위해 Shifter를 상하좌우로 움직임→ Shifter에 연결된 Cable conduit(외피) 내의 Core(내부철심)가 움직임→ Cable의 Core가 움직이며 트랜스미션에 연결된 Shift레버 및 Select레버를 밀고 당김→트랜스미션 기어변경
- 결정세번: 제8708.40-0000호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 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N) 신축성이 있는 아웃터케이싱과 가동성 인너케이블로 구성된 클러치케이블·브레이크케이블·액세레이터케이블과 그와 유사한 케이블’을 예시하면서 ‘그들은 특정한 길이로 절단되어 있고 고정하는 끝부분이 접합장치되어 있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대형버스나 트럭의 운전자가 기어변속 시 선택한 변속단수대로 밀고 당김을 전달하여 트랜스미션(수동)의 기어변속을 일으키는 케이블로서,

-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제17부의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며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차량 변속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 ⑤ 수출자 유의사항

- 자동차용 기어박스 및 그 부분품(제8708호)과 기타 기계용 기어박스 및 그 부분품(제8483호)의 관세율 차이 최대 3.8%
  - 동 물품은 차량의 수동 변속기에 동력을 전달하는 케이블로서, 기어박스 및 그 부분품에 해당되는 제8708호의 물품이나, 관세율표에는 제8483호에 기타 기계용 기어박스 부분품도 분류
  - 차량용의 기어박스(제17부)와 기타 기계용의 기어박스(제16부)를 구분하는 기준은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 규정되어 다음과 같이 있음
    - ①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 ②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③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 위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차량용의 기어박스 및 그 부분품으로 분류 가능
  - 제8708호(차량용)의 기어박스 및 그 부분품은 일반세율이 최대 2.5%로서 제8483호(기타 기계용)의 일반세율이 개당 25센트(¢) 및 3.9% 인 것과 차이가 존재하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5) 차동장치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8325

□ 신청물품: 차동장치(Differential sub assembly)

- 수동 승용차량에 사용되는 차동장치로서 엔진동력을 각각 두 개의 드라이브 휠에 다르게 전달하여 구동차축에 속도의 차이를 만들어 줌
  - 차동장치에는 볼 베어링, 케이스, gear-speedometer drive, space differential gear, gear differential side, gear differential pinion, 워셔, shaft pinion, pin lock, gear differential dirve와 bolt seal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결정세번: 제8708.50-8900호

- 동 물품은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 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부분 품: 제8703호 차량의 것: 기타: 기타: 기타”에 해당되어 제 8708.50-8900호에 분류되며, 일반세율 2.5%가 적용됨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708.50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 을 (기본/KORUS)
10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 의 동력전달장치 의 부분품과 구성 품을 갖추었는지 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	차동장치를 갖는 구동차축(다른 변속기 구성요소와 함께 제시되었는지 상관없다) 및 비구동차축	
		- 트랙터용의 것(로드 트랙터는 제외한다)	
		11 -- 농업용에 적합한 트랙터의 것	0
		31 -- 기타 트랙터의 것	0
		51 - 제8703호의 차량의 것	2.5/0
		- 기타 차량의 것	
		61 -- 차동장치를 갖는 구동차축(다른 변속 기 구성요소와 함께 제시되었는지 상 관없다)	2.5/0
		65 -- 비구동차축	2.5/0
		부분품	
		- 트랙터용의 것(로드 트랙터는 제외한다)	
2000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70 -- 농업용에 적합한 트랙터의 것	0
		75 -- 기타 트랙터의 것	0
		- 제8703호 차량의 것	
		79 -- 비구동차축의 부분품	2.5/0
		-- 기타	
		81 ---- 주조용의 것	0
		---- 기타	
		85 ----- 하프 소프트	2.5/0
		89 ----- 기타	2.5/0
		- 기타 차량용의 것	
		91 -- 비구동차축의 부분품	2.5/0
		-- 기타	
		93 ---- 주조용의 것	0
		---- 기타	
		95 ----- 하프 소프트	2.5/0
		99 ----- 기타	2.5/0

-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  
용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 제8708.50호에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문  
품” 이 분류됨

- 우리나라는 크게 구동차축과 비구동차축으로 구분하나, 미국은 구동차축 · 비구동차축과 부분품으로 구분하므로 품목분류에 주의 요망
  - 우리나라는 구동차축과 부분품(제8708.50-1000호) 및 비구동차축과 부분품(제8708.50-2000호)로 구분
  - 미국은 구동차축과 비구동차축을 하나의 그룹으로 하면서, 트랙터의 차축에는 0%를, 기타 승용자동차(제8703호)의 것에는 2.5%의 일반세율을 적용함
    - 부분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트랙터의 부분품에는 모두 0%를 적용하나, 기타 차량의 것에는 주조용의 것을 제외하면 모두 2.5%의 일반세율을 적용

#### □ 구동차축 · 비구동차축과 차동장치

- 구동차축 및 비구동 차축
  - 구동차축(Driving Axle)이란 엔진의 동력을 추진축으로부터 전달 받아 차량을 움직이는 회전축. 비구동차축은 구동차축 이외의 것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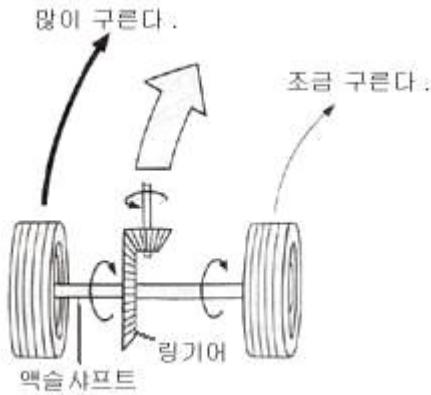
**< 그림 7-7 > 구동차축 및 비구동 차축**



자료: 현대자동차

- 차동장치(Differential assembly)
  - 디프렌셜 또는 데후라고도 불림. 자동차 4개의 타이어는 자동차가 회전 중일 때 저마다 다른 궤적을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구동되는 2개의 타이어는 같은 엔진의 회전력을 전달받기 때문에 좌우가 연결되어 있음

< 그림 7-8 > 차동장치의 원리



자료: 다우카(DOWDCAR)

- 만일 이 좌우바퀴가 오직 1개의 축으로만 연결되어 있다면 회전시나 불규칙한 노면에서 좌우타이어는 같이 회전하므로 미끄러질 수 있음
- 회전시나 노면의 요철에 따라 좌우타이어의 구르는 거리가 다를 경우 좌우바퀴에 적절하게 회전차이를 부여하여 차량이 정상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디프렌셜이라고 부름

### ③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DIFFERENTIAL ASSY; F45830-3B2017-1; R.KOREA
  - 자동변속기의 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차동장치로 구동바퀴에 회전수를 다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
  - 재질 : 철강, 고무
  - 제조공정 : SUB품 조립 → Assembly → Dim's Check → Blacklash Test → Airleak Test → Marking

< 그림 7-9 > DIFFERENTIAL ASSY



□ 결정세번: 제8708.50-1000호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E) 차동치차부의 구동축, 비구동축(앞 또는 뒤) 차동치 차의 케이싱, 유성치차장치, 허브·스터브 차축의 브래킷”을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III)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 해설서에서는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差動齒車)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은 제외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차동장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 ⑤ 수출자 유의사항

- 차동장치와 구동차축(비구동차축)은 용도(트랙터용의 것)에 따라 적용되는 일반세율이 구분됨
- 차동장치는 일반적으로 구동차축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구동차축의 부분품으로 분류함
  - 미국에서는 차동장치와 구동차축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708.50-61호(일반세율 2.5%)에 분류하며, 차동장치가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사례와 같이 제8708.50-89호(일반세율 2.5%)에 분류함
  - 또한 트랙터의 구동차축(차동장치를 갖춘 것)은 제8708.50-11호 또는 제8708.50-31호에 분류되어 일반세율 0%를 적용받으며, 트랙터용의 차동장치는 제8708.50-70호 및 제8708.50-75호에 분류되어 역시 일반세율 0%를 적용받음
- 즉 차동장치가 구동차축과 함께 제시되는지 상관없이, 용도가 트랙터용의 것이면 0%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이에 우리나라 수출물품이 트랙터용에 해당한다면, 차동장치의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6) 클러치 페달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6167

□ 신청물품: 클러치 페달

- 동 물품은 기어를 수동변속기에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기능을 하는 클러치 페달임

□ 결정세번: 제8708.93-6000호

- 동 물품은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클러치와 그 부분품: 기차 차량의 것: 기타”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일반세율 2.5%가 적용됨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708.93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율 (기본/KORUS)
0000	클러치와 그 부분품		농업용에 적합한 트랙터용의 것	
		15	- 클러치	0
		30	- 기타	0
			기타 차량의 것	
		60	- 클러치	2.5/0
		75	- 기타	2.5/0

□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93호에는 클러치와 그 부분품이 분류됨

- 제8708.93호 이하 우리나라는 별도의 하위구분이 없으나, 미국은 용도에 따라 ‘농업용에 적합한 트랙터용의 것’에는 0%의 세율을, 기타 차량의 것에는 일반세율 2.5%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③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PEDAL ASSY CLUTCH ; 32802-A6600
  - 차량 실내 운전자측 아래에 위치하며 차체에 고정되어 운전자가 자동차의 기어변속을 하기 위해 발로 조작하는 장치
- 결정세번: 제8708.93-0000호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III)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L) 조종장치(Control equipment)”로 ‘액셀러레이터 · 브레이크 및 클러치 페달, 브레이크용의 연결봉 및 클러치’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차량 실내 운전자측 아래에 위치하며 차체에 고정되어 운전자가 자동차의 기어변속을 하기 위해 발로 조작하는 CLUTCH PEDAL로서,
    -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 · 제작되었고 제17부의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3-0000호에 분류함

< 그림 7-10 > CLUTCH PEDAL



#### ④ 수출자 유의사항

- 일반적인 차량용 부분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농업용 트랙터의 것에는 0%, 기타 차량용의 것에는 2.5%의 일반세율이 적용
- 동 물품은 우리나라와 미국간 품목분류에 관한 이견이 존재하지 않으며, 품목분류체계 역시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품목분류에 따른 통관애로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7) 스티어링 칼럼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7095

□ 신청물품: 스티어링 칼럼(Steering column)

- 동 물품은 운전자가 스티어링을 제어할 수 있게 해 주는 유니버설 조인트가 결합된 스티어링(스티어링 칼럼)으로서, 샤프트와 튜브, 요크(yoke)와 결합된 스파이더, 네 개의 니들베어링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물품은 바퀴와 스티어링 휠 사이에 연결된 링크모션으로 작동되며, 스티어링 휠의 회전을 일정한 속도로 기어박스에 전달함. 또한 운전자의 회전힘을 전달하면서 충돌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기도 함

□ 결정세번: 제8708.94-5000호

- 동 물품은 제8708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운전대 · 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 ·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기타 차량용의 것”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제8708.94-5000호에 분류되며, 일반세율 2.5%가 적용됨
  - 신청인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동 물품을 유니버설 조인트(universal joint)라고 주장하나, 스티어링 칼럼으로 판단됨
- 유니버설 조인트(universal joint)<sup>37)</sup>: 자재 이름이라고도 함. 위치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두 개의 동력 전달 축을 연결한 커플링. 각종 장비나 차량의 변속기에 사용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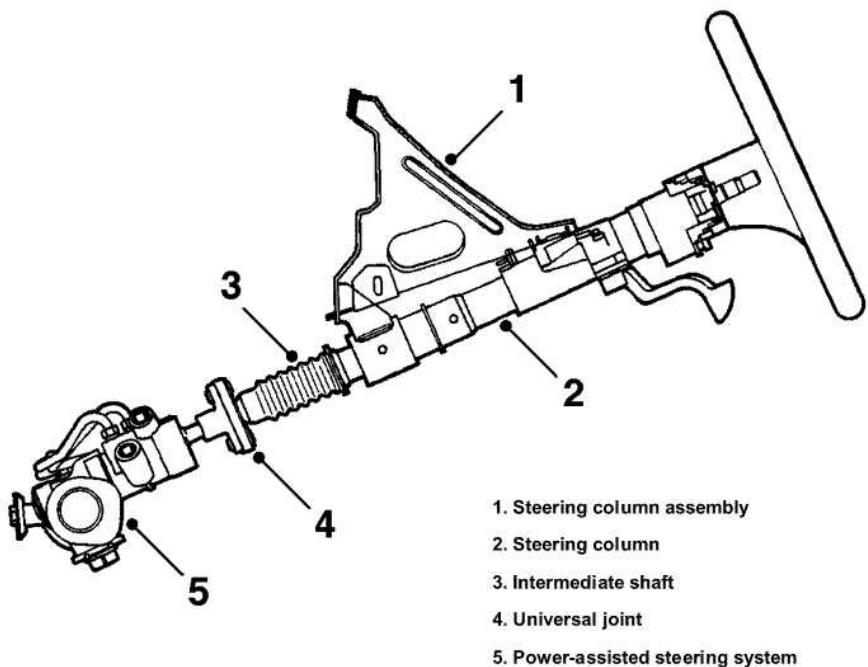
37) 보다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https://www.youtube.com/watch?v=LCMZz6YhbOQ>>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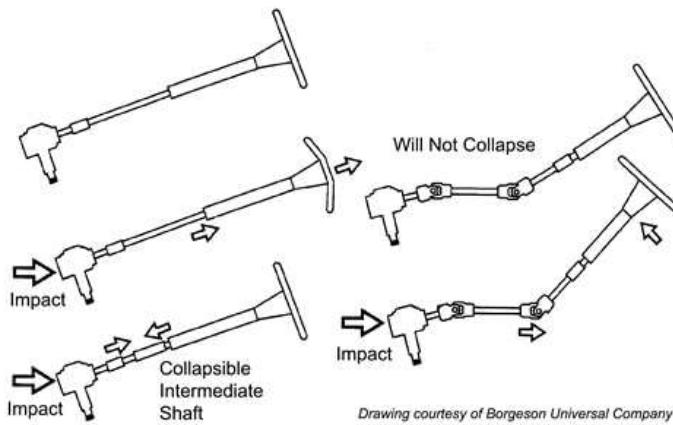
< 그림 7-11 > 유니버설 조인트



- 스티어링 칼럼(steering column): 핸들의 조작력을 조향기어에 전달하는 축으로서 조향축, 조향칼럼이라고도 함. 윗부분에는 핸들과 결합되어 있고, 아랫부분에는 조향기어가 결합되어 있음

< 그림 7-12 > 스티어링 칼럼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708.94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 율 (기본/KORUS)
0000	운전대 · 스티어링 칼럼 (steering column) ·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운전대 · 스티어링 칼럼 (steering column) · 운전박스	
		10 - 농업용에 적합한 트랙터용의 것	0
		50 - 기타 차량의 것	2.5/0
		부분품	
		60 - 농업용에 적합한 트랙터용의 것	0
		65 - 기타 트랙터용의 것(로드 트랙터를 제외한다) - 기타 차량용의 것	0
		70 -- 주조용의 것	0
		75 -- 기타	2.5/0

□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94호에는 “운전대 · 스티어링 칼럼(steering column) ·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됨

- 우리나라는 추가적인 하위구분이 없으나, 미국은 크게 운전대 · 스티어링칼럼 · 운전박스와 부분품으로 구분하고 있음
  - 미국은 다시 농업용에 적합한 트랙터용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며, 농업용 트랙터는 일반세율 0%를 적용함
    - 스티어링 칼럼인지 그 부분품(예: 유니버설 조인트 등)인지에 따라 실질적인 세율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음

### ③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Steering Column ; LDB A/B Tilt ;; JDR445-000
  - 구성 및 형태
    - 운전대를 구성하는 총 20개의 부품 중 중국에서 조달하는 6개 물품을 제외한 14개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제시
    - 수출물품(14개 부품)과 중국에서 조달하는 6개의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된 상태(운전대)로 제시
  - 기능 및 용도
    - 기아자동차(주)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인 세라토의 운전대(Steering Column)로 사용
    - 운전대는 스티어링 휠과 연결된 샤프트의 베어링으로 회전하도록 하여 자동차의 조향력을 전달하는 기능과 자동차 충돌시 충격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상해를 방지하는 구조(충격 흡수 구조)로 되어 있음
- 결정세번: 제8708.94-0000호
  -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제8708.94호에는 “핸들(Steering Wheels) · 운전대(Steering Column) 및 운전박스(Steering Boxes)”가 분류되는 바, 수입물품은 완성품인 틸트형의 운전대로서 제8708.94-0000호에 해당됨

- 수출물품은 운전대를 구성하는 20개의 물품 중 중국에서 프레스가공을 통하여 제작되는 6개의 물품을 제외한 14개의 물품이 미조립된 상태로서, 운전대의 주요형태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향력 전달 및 충격흡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품들을 포함하고 있어 운전대의 주요한 특성을 갖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2.가.에 의거 8708.94-0000호에 분류함

### ③ 유사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Shroud Assy-Steering Column, Upper ; 84850-2V000 ; korea
  - Cockpit Module의 외관을 구성하며 Cockpit Module에 장착되는 Steering Column의 상단부 커버역할
  - 원재료(플라스틱 PP+PE) 입고 → 건조 → 사출성형 → 탈형 → 도장 → 포장 출하
- 결정세번: 제8708.94-0000호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Cockpit Module의 외관을 구성하며 Cockpit Module에 장착되는 Steering Column의 상단부 커버역할을 수행하는 차량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됨

#### ④ 수출자 유의사항

- 스티어링 칼럼(제8708.94-50호)와 유니버설 조인트(제8708.94-75호)의 구분
  - 동 사례물품은 스티어링 시스템의 일부인 유니버설 조인트가 결합된 스티어링 칼럼으로서, 완전한 스티어링 칼럼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니버설 조인트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임
    - 우리나라에서는 스티어링 시스템의 완제품과 부분품의 품목분류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나, 미국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으며 농업용 트랙터인지 여부에 따라 세율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특징임
  - 농업용 트랙터에 사용되는 스티어링 칼럼 및 유니버설 조인트 등은 한-미 FTA 협정 적용 없이도 일반세율 0% 적용이 가능함
- 스티어링 칼럼의 상단부 커버는 차량의 차체 부분품으로서(제 8708.29호) 미국 관세율 2.5% 적용
  - 우리나라 사례로서 스티어링 칼럼의 상단부 커버는 스티어링 칼럼의 부분품(제8708.94호)이 아닌, 차체의 부분품(제8708.29호)으로 결정함
  - 또한 미국 사례(NY I85261)에서도 체코에서 수입된 스티어링 칼럼 상단부를 차체의 부분품으로 분류·결정한 사례가 있음
  - 이에 따라 스티어링 칼럼과 스티어링 칼럼의 커버는 품목분류를 구분 할 필요가 존재함

## 8) 드라이브 샤프트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78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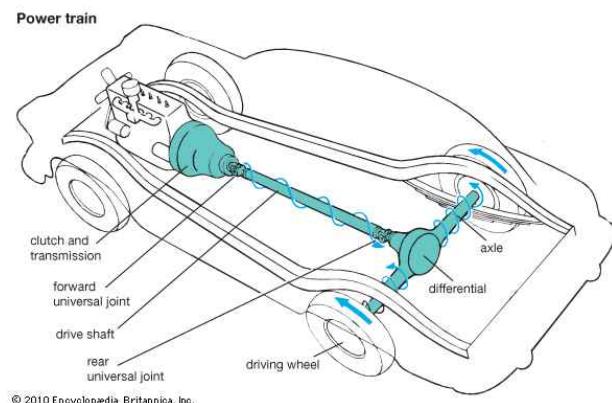
□ 신청물품: 드라이브 샤프트(Drive shaft)

- 영국에서는 프로펠러 샤프트(Propeller shaft)라고도 함. 드라이브 샤프트는 파워트레인의 일부분으로서 엔진으로부터 동력을 차량의 뒷바퀴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 뒷바퀴나 또는 4륜 바퀴에 장착되어 있으며, 캐플링, 빙 스틸튜브, 센터 베어링, 플랜지 요크, 유니버설 조인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결정세번: 제8708.99-6805호

- 동 물품은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타: 기타: 기타 파워트레인의 부분품”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제8708.99-6805호에 분류되며, 일반세율 2.5%가 적용됨
- 동력전달장치(power train): 동력전달장치란 엔진의 힘을 유효하게 타이어에 전달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말함. 주로 트랜스미션, 프로펠러 샤프트, 디프렌셜, 드라이브 샤프트를 일컬음

< 그림 7-13 > 동력전달장치



자료: 브리태니커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708.99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 을 (기본/KORUS)
10		농업용에 적합한 트랙터의 부품	
10	제8701호의 것	03 - 고무를 포함한 진동제어물품	0
20	제8702호의 것	06 - 볼 베어링을 포함한 더블플랜지휠허브	0
30	제8703호의 것	16 - 기타 파워트레인의 부품	0
40	제8704호의 것	26 - 기타	0
50	제8705호의 것	기타 트랙터(로드 트랙터를 제외한다)의 부품	
9000	기타	27 - 고무를 포함한 진동제어물품	0
		31 - 볼 베어링을 포함한 더블플랜지휠허브	0
		41 - 기타 파워트레인의 부품	0
		48 - 기타	0
		기타	
		53 - 주조의 것	0
		- 기타	
		55 -- 고무를 포함한 진동제어물품	2.5/0
		58 -- 볼 베어링을 포함한 더블플랜지휠허브	2.5/0
		-- 기타	
		68 --- 기타 파워트레인의 부품	2.5/0
		81 --- 기타	2.5/0

-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99호에는 기타의 물품이 분류됨
- 우리나라는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에 따라, 미국은 사용되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크게 하위구분을 규정함
- 우리나라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반면,
  - 미국은 농업용 트랙터, 기타 트랙터, 기차 차량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다시 세부물품별로 구분

- 그러나, 다른 부분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농업용 또는 기타 트랙터에 사용되는 부분품에는 0%의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기타의 부분품에는 2.5%의 일반세율(주조용의 것은 제외)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③ 유사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1

□ 신청물품: DRIVE SHAFT;

- 쓰레기 수거 · 압축 트럭의 PTO와 PUMP 사이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엔진의 동력을 PTO로부터 전달받아 PUMP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 결정세번: 제8483.10-9010호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마목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의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캡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등’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이 분류되고, 전동축(캡 샤프트와 크랭크 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등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엔진의 동력을 PTO로부터 전달받아 PUMP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87류 차량용 전동축’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 ④ 유사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2

□ 신청물품: Drive Shaft; PR. KOREA

- 지게차의 동력 전달부에 장착되는 부품으로 위상차이가 나는 트랜스미션의 Output flange와 드라이브 액슬의 Input flange에 볼트, 너트 체결로 장착되어 트랜스 미션의 Output Flange를 통해 출력되는 동력 및 회전력을 드라이브 액슬의 Input flange에 전달함

- Flange yoke : 트랜스미션 또는 드라이브 액슬과 연결
- Universal joint : 각도 차이가 나는 두 축을 연결하여 동력 및 회전력 전달
- Yoke shaft assy : 유니버설 조인트와 연결되어 동력 및 회전력 전달

□ 결정세번: 제8483.10-9090호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 1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 목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 제16부 총설 (II) 부분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 그러나 부분품 그 자체가 이 부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다음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 (6)전동축...(제8483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transmission shaft)’이 분류되며 동해설서는 전동축을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양쪽 끝에 연결구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본질적인 기능은 트랜스미션으로부터 전달받은 동력을 드라이브 액슬에 전달하기 위한 물품이고 이러한 기능은 동력의 전달이라는 전동축(transmission shaft)의 기능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3.10-9090호에 분류함

## ⑤ 수출자 유의사항

- 우리나라와 미국의 품목분류 상이사례에 해당하므로 수출시 미국 품목번호(제8708.99호)에 적합한 원산지증명서 또는 수입신고 필요
  - 동 물품은 차량에 사용되는 파워트레인의 일부인 드라이브 샤프트로서 엔진의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함. 차량에 사용되므로 제87류에 분류하거나,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에 분류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83호(전동축 등)로 분류하였음
  - 제17부 주2 마목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규정을 적용하여, 제84류로 분류하였으며
    - “전동축과 크랭크 등”으로서 동일 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 특정부분품으로 보아 제8483호에 분류함
- 미국에서는 차량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708호(차량의 부분품)로 분류하였음
  - 제8708호에 분류할 수 있는 근거는 제17부 주 규정의 차량의 부분품 규정으로서 다음의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판단됨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 따라서, 드라이브 샤프트는 차량에 전용되며 제8483호의 용어에서 전동축의 일종인 ‘드라이브 샤프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8708호에 분류한 것으로 판단됨

## 4. 재수입 감면사례

### ① 사례개요

□ 참조번호: N263924

□ 신청물품: 자동차부품

- 동 물품은 자동차 브레이크패드 하드웨어 키트로서 구성요소는 중국, 대만, 한국, 덴마크, 독일에서 벌크상태로 미국으로 수입되었음(수입관세 완납)
  - 수입 후 세트포장을 위해 멕시코 내 보세구역으로 재수출하여 소매용으로 개별포장한 후, 일부는 제3국으로 수출하고 일부는 미국으로 재수입 할 예정임

□ 쟁점사항

- 동 자동차 브레이크패드 하드웨어 키트는 재수입면세 대상인 제9801호 물품인가?

### ② 제9801호 해당 여부

- 이와 같은 재수입물품에 관한 19 C.F.R 141.2 규정(Liability for duties on reimportation)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수입물품이 이전에 수입되었다 재수출된 물품이고, 당시 관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다시 미국 내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Dutiable merchandise imported and afterwards exported even though duty thereon may have been paid on the first importation, is liable to duty on every subsequent importation into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 다만, HTSUS에 따라 제98류의 재수입물품으로 분류되어 제외되는 경우에는 수입관세 면제가 가능함. 제9801.00.2000호의 용어는 아래와 같음

#### < 표 7-4 > HTSUS 제9801.00.20호의 용어

Articles, previously imported, with respect to which the duty was paid upon such previous importation or which were previously free of duty pursuant to th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or Title V of the Trade Act of 1974, if

- (1) reimported, without having been advanced in value or improved in condition by any process of manufacture or other means while abroad, after having been exported under lease or similar use agreements, and
- (2) reimported by or for the account of the person who imported it into, and exported it from, the United States

- HTSUS 제9801.00.2000호에는 이전에 수입되어 관세 등이 납부된 물품 또는 CBERA 협정(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or Title V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라 무관세로 반입된 물품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을 분류함

(1) 해외에서 어떠한 제조 또는 기타 다른 과정을 통하여 가치의 증대 또는 상품의 개선이 없이, 임대 또는 이와 유사한 조건으로 수출되어 재수입되는 경우

(2) 이전에 미국으로 수입하였다 수출한 자가 재수입하는 경우

- 수입자는 재수입물품이 제9801.00.2000호의 용어에 해당함을 주장
  - 과거 수입시 관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당시 수입자와 재수출자, 재수입자 모두 동일한 자이며, 이에 따라 재수입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
- 이에 대하여 미 관세당국은 동 물품과 같이 단순한 소매용 포장을 ‘가치의 증대(advanced in value) 또는 상품의 개선(improved in condition)’으로 간주하지는 않으며, 수입과 재수출, 재수입 사실을 근거로 관세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결정
  - 다만 재수입시 수입지 세관장(district director)의 승인을 필요로 함을 강조

### ③ 수출자 유의사항

- 미국 HTSUS의 특징: 제98류 및 제99류
  - 미국은 HS를 국내법화한 HTSUS(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로서 운용하고 있으며, HS code 공통 6단위 하에 2 단위를 추가한 8단위를 사용 중
    - HS협약에서는 제1류부터 제97류까지 공통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미국은 자체적으로 제98류(관세감면대상), 제99류(한시적으로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을 규정하여 운용

**< 표 7-5 > 미국 제98류 및 제99류의 표제**

	류의 표제	주요 내용
제98류	특별분류규정(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수출 후 재수입물품, 컨테이너와 케이스 등
제99류	임시입법; 무역입법에 따른 임시개정; 개정 농업 조정법 제22절에 따른 추가적 수입제한(Temporary legislation; temporary modifications proclaimed pursuant to trade agreements legislation; additional import restrictions proclaimed pursuant to section 22 of the Agricultural Adjustment Act, as amended)	가산세에 관한 임시규정, 임시 관세율 경감 등

- 우리나라 관세법은 제99조(재수입 면세)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음

### < 표 7-6 > 미국 제99조 재수입 면세 조항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자가 환급받을 권리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 우리나라 재수입면세와 공통점 및 차이점

-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재수입면세 규정을 통하여 수출되었다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음. 다만, 재수입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어떠한 제조나 가공이 없어야 하며, 추가적인 공정이 발생하는 경우 재수입면세 대상에서 제외됨
- 그러나 우리나라 재수입면세 규정은 수출신고수리 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반면, 미국은 3년 이내(제9801.00.10호)에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면세함
  - 동 사례의 경우 제9801.00.20호의 것이며, 이 경우 기간제한은 없으나 '동일한 수입자 요건'이 추가된 것이 차이점

- HTSUS 제98류 조항은 미국내 소재한 우리나라 업체가 활용 가능
  - 제98류의 재수입면제 조항은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FTA특혜세율의 적용과는 무관한 법 규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우리나라 수입자가 특혜세율 적용물품을 인접국인 제3국(멕시코 또는 캐나다 등)에서 단순한 가공 등(세트물품으로의 조합)을 수행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조항임
- 한-미 FTA 협정문 제6.9조(세트물품)의 활용 가능성
  - 동 사례는 한국산 물품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수입 후, 멕시코로 재수출하여 세트로한 후 재수입한 경우임
  - 해당 수입자가 한-미 FTA세트물품 규정을 활용한다면, 당초 한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음
    - 한-미 FTA 협정문 제6.9조에 따르면, “세트의 모든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조정가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품의 세트는 원산지 상품이다”고 규정
  - 세트물품 규정을 활용하여, 당초 제3국의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 및 세트물품으로 한 후, 미국으로 한 후, 미국으로 한-미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
    - 이 경우 동 사례와 같이 각 물품별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수출 후 재수입과정도 필요없게 됨
  - 미국에 지사를 둔 우리나라 수출자는 세트물품규정을 통하여 불필요한 물품의 이동 및 추가적인 관세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5. 소결

- 미국의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체계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세분화되어 있고, 용도에 따라 일반세율이 구분되는 것이 특징
  - 제8708.xx호 이하 세분류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단순한 것에 비하여 미국은 농업용, 트랙터용, 주조된 것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세분류되어 있음
    - 특히 농업용의 것에는 대부분 일반세율 0%가 적용되어 한-미 FTA 특혜 세율을 적용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특징
- 제8708호 품목분류의 대부분의 문제는 부분품의 분류에 있어서 제17부와 기타 호(일반적으로 제9부 및 제16부)와의 경합에서 발생하며, 이는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규정으로 사전심사가 반드시 필요
  - 자동차 부분품의 품목분류 문제는 보통 제17부 부분품 분류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제17부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제17부에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러나 ‘전용 또는 주로 사용’이라는 것은 해당 부분품을 사용하는 주체 또는 용도나 기타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항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차량용으로 분류되는 부분품에는 기타 기계용으로 분류되는 부분품에 비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향이 존재
    - 경우에 따라 한-미 FTA 특혜적용을 받지 않고도 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출자는 우선적으로 해당 물품이 차량용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인지 증빙하는 것이 우선임

## VIII. 정밀기기산업

### 1. 산업동향

#### 가. 생산동향

##### 1) 일반 생산동향

- 국내 센서 산업의 생산액은 약 17.7억 달러 규모로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2.2%)은 매우 낮은 수준
- 정부는 ‘첨단 스마트 센서 육성사업’에 2015년부터 6년간 1,508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2020년 기준 42억 달러 생산과 21억 달러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목표

**< 표 8-1 > 국내 센서산업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2020	CAGR
국내 내수시장	54	60	65.7	99	10.4%
국내 생산액	13.3	15.3	17.7	42	15.5%
수출액	7.6	8.6	9.8	21	13.5%
수입액	48.3	53.3	57.8	78	8.2%
세계시장에서 국내생산 비중(%)	1.9%	2.1%	2.2%	3.4%	-
국내기업의 내수시장 점유율(%)	10.5%	11.2%	12.0%	21.2%	-

자료: 지식경제부(2012), “센서산업 발전전략” 보도자료 기반 ETRI 산업전략연구부 추정

- 최근 5년간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은 연평균 10%의 높은 성장률 기록<sup>38)</sup>
- 2015년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은 5조 16억 원으로 2014년(4조 6,048억 원) 대비 8.6% 증가
  - 의료기기 생산실적은 2011년 3조 3,664억 원에서 2014년 4조 48억 원, 2015년 5조 16억 원으로 연평균 10.4%의 성장률을 기록
  - 유형별 생산은 방사선영상진단기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3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 개별 품목으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치과용 임플란트의 생산이 가장 많았으며, 초음파영상진단장치가 뒤를 이음

**< 표 8-2 > 의료기기 유형별 생산액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유형군	2012		2013		2014		2013 대비 증감률
		생산액	비중	생산액	비중	생산액	비중	
1	방사선영상진단기기	911,714	23.5	975,915	23.1	1,013,794	22.0	3.9
2	생체계측기기	176,094	4.5	152,108	3.6	163,897	3.6	7.8
3	체외진단기기	148,881	3.8	157,741	3.7	161,930	3.5	2.7
4	진료장치	102,082	2.6	104,363	2.5	109,898	2.4	5.3
5	마취 및 호흡 기기	34,918	0.9	41,504	1.0	35,223	0.8	-15.1
6	전동식 수술·치료기기	283,842	7.3	298,682	7.1	334,230	7.3	11.9
7	비전동식 수술·치료기구	128,646	3.3	134,677	3.2	139,313	3.0	3.4
8	정형용품	169,107	4.4	157,692	3.7	156,232	3.4	-0.9
9	내장기능대용기(인공장기)	31,834	0.8	52,351	1.2	82,284	1.8	57.2
10	의료용경	25,980	0.7	30,187	0.7	26,505	0.6	-12.2
11	의료용품	608,194	15.7	675,520	16.0	697,148	15.1	3.2
12	치과용기기	54,920	1.4	59,580	1.4	76,696	1.7	28.7
13	치과재료	803,001	20.7	895,901	21.2	913,080	19.8	1.9
14	가정용 치료기기	261,099	6.7	252,555	6.0	239,436	5.2	-5.2
15	재활기기	136,605	3.5	150,839	3.6	169,081	3.7	12.1
16	체외진단용 시약	458	0.0	83,627	2.0	284,863	6.2	240.6
17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	-	928	0.0	1,204	0.0	29.7
합 계		3,877,374	100.0	4,224,169	100.0	4,604,814	100.0	9.0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국내 물리·화학 분석용 기기는 선진국에 비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실정
- 국내 수출과 수입의 비중은 31:69인 반면, 미국은 61:39, 일본은 70:30 수준임

## 2) 미국 생산동향

- 미국 광센서 산업은 향후 5년간 연평균 11%씩 성장하여 2020년 140억 달러 규모를 달성할 전망
  - 원유 시추 작업에 사용되는 광섬유(Fiber-optic) 센서가 원유 및 천연 가스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가운데, 미국의 방대한 유류 매장량은 광센서 시장의 주요 성장 요인으로 작용
  - 광센서의 용도는 소비자 가전, 자동차, 의료, 그리고 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 Honeywell, Rockwell Automation社와 같은 주요 업체들이 미국 광센서 시장 선점을 위해 지속적 개발 시행
- 세계 1위인 미국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15년 1,401억 달러로 2010년 이후 연평균 5.0%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43.2% 차지
  - 진단영상기기가 414억 달러로 전체의 29.5%를 차지하였으며, 환자보조 기기가 164억 달러, 정형외과/보철기기가 155억 달러로 각각 11.7%, 11.1% 차지

**< 표 8-3 > 미국 의료기기 제품군별 시장규모**

[ 단위: 백만 달러,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E)		CAGR ('10~'15)
						규모	비중	
의료용품	11,438	12,175	12,595	13,218	13,990	14,770	10.5	5.2
진단영상기기	33,146	35,373	36,840	37,937	39,587	41,363	29.5	4.5
치과기기/용품	7,113	7,512	7,887	8,481	8,975	9,541	6.8	6.1
정형외과/보철 기기	13,215	13,589	14,036	14,603	14,870	15,542	11.1	3.3
환자보조기기	12,904	13,520	13,872	14,684	15,700	16,354	11.7	4.9
기타 의료기기	32,115	35,365	35,905	38,237	40,472	42,575	30.4	5.8
합계	109,931	117,535	121,133	127,159	133,594	140,144	100.0	5.0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나. 수출동향

### 1) 일반 수출동향

- 의료기기 수출은 2015년 27.1억달러로 전년 대비 5.2% 증가한 반면 수입은 29.4억달러로 전년 대비 0.9% 감소해 무역적자가 2014년 대비 41% 감소
  - 의료기기가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미국(4.8억달러), 중국(3.3억달러), 독일(2.3억달러), 일본(1.9억달러) 순
    - 특히,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은 사우디아라비아(43%)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그 다음으로 중국(30.3%), 미국(18.2%), 베트남(14.2%), 독일(14.3%), 태국(14.6%) 순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에 고루 수출이 증가
  - 의료기기 수출 상위 품목은 초음파영상진단장치(5억달러)이며, 그 다음으로 치과용임플란트(1.5억달러),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1.2억달러)임
- 안경광학기기 산업의 수출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안경·광학 기기의 전체 수출액은 4억51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011년 6억739만 달러보다 25% 줄었고, 이는 5년 연속 감소한 수치

### 2) 대미 수출동향<sup>39)</sup>

- 우리나라의 2015년 대미 정밀기기 수출금액은 총 12억 3천만달러로서 2014년 11억 9천만달러 대비 약 3.3% 증가한 수치
- 우리나라의 대미 상위 20대 수출품목 중, 주요 수출품목인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제9018호)의 수출이 전년대비 13.9% 증가한 2억8천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 이외에도 기타 측정용·검사용 기기(제9031호) 44.3%, 엑스선·알파선·베타선·감마선 사용기기(제9022호) 9.7%, 광섬유과 광섬유 다발(제9001호) 35.2%, 정형외과용 기기(제9021호) 20.8%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39) 대미수출 동향은 제90류(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물품을 대상으로 함

- 한편, 자동조절용·자동제어용 기기(제9032호) 33.2%, 액정디바이스 및 기타 광학기기(제9013호) 9.8% 등의 제품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대미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온도계 등(제9025호)으로 64.2% 증가한 반면, 방향탐지용 컴퍼스 등(제9014호)은 가장 큰 폭(53.6%)으로 수출이 감소

**< 표 8-4 > 우리나라의 对미국 정밀기기 일반수출 상위 20대 품목**

[단위: 천 달러, % ]

HS 4	품목명	2014	2015	
		금액	금액	증감률
9018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	253,159	288,404	13.9
9031	그 밖의 측정용, 검사용 기기	113,587	163,951	44.3
9032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204,844	136,890	-33.2
9013	액정디바이스 및 기타의 광학기기	133,636	120,585	-9.8
9022	엑스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사용 기기	106,679	117,004	9.7
9001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등	54,648	73,900	35.2
9021	정형외과용 기기 등	55,852	67,493	20.8
9030	오실로스코프 등 전기적 양 측정, 검사용 기기	71,373	66,534	-6.8
9027	물리나 화학분석용 기기 등	59,361	62,526	5.3
9002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 광학용품 등	38,155	40,332	5.7
9026	액체나 기체의 변량 측정, 검사용 기기	16,145	18,044	11.8
9003	안경, 고글이나 유사한 물품 등	17,876	15,670	-12.3
9029	적산회전계, 생산량계, 속도계 등	17,295	10,598	-38.7
9025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온도계 등	5,752	9,448	64.2
9023	교육용, 전시용 기기와 모형	6,756	6,413	-5.1
9004	시력교정용 안경 등	3,980	6,007	50.9
9033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 기기등 의 부분품	5,509	5,632	2.2
9006	사진기 등	5,257	5,398	2.7
9019	마사지용 기기, 오존흡입기 등	4,378	4,847	10.7
9014	방향탐지용 컴퍼스 등	7,553	3,506	-53.6
합 계(제90류)		1,199,000	1,238,456	

자료: 무역협회

## 2. 주요 통관규제

### 가. 의료기기의 수입규제

#### □ 개요

- 미국 이외에서 제조된 의료기기는 외국에서 승인 되었더라도, 처음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경우 의료기기 등록이 의무화 되어있으며, 수입자는 수입 의료기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중상, 사망 사고에 관해 FDA에 보고해야 함

#### □ 관련규제

##### ① 의료기기 등록 및 목록 제출

- 의료기기 업체 등록 : 미국에서 사용하기 위한 의료기기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해 시설 또는 설비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매년 FDA에 등록해야 함
  - 제조 회사로 등록하는 것은 수입면허를 받는 것을 포함하므로, 별도의 수입 면허 불필요
  - 외국 시설은 미국 대리인 지정 및 FDA에 통보
  - FDA의 라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통가능
  - 판매 후에도 규제 대상(디자인, 포장, 라벨링 등)이며, 시설 운영인은 물품 관련 사망 및 중상에 대하여 FDA에 보고해야 함
  - 시설 운영인은 FDA에 연간 요약보고서 제출
- 의료기기 목록 제출 : 대부분의 시설은 의료기기 및 해당 의료기기의 수행 활동 목록을 만들어 FDA에 등록해야 함
  - 의료기기가 미국에서 판매되기 전 Premarket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소유자/운영자는 FDA premarket 제출 번호를 제출해야 함

### ② 의료기기 판매 전 승인(PMA)

- PMA승인은 Class III<sup>40)</sup> 의료 기기의 안전성 및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Class III 장비 및 일부 Class I, II 장비는 판매 전 통지(PMA)에 대한 승인 하에서만 유통 가능
- 사람의 삶을 지원하거나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Class III 기기는 상당히 중요한 기기들이기 때문에 마케팅 허가를 얻기 위해선 PMA 승인 신청이 필요
- PMA 승인 주요 구비서류 : 신청인 인적 사항, 차례 및 요약본 (용도설명 등), 기기에 대한 세부 사항 (구성요소, 특징, 작동법 등), 성능 기준 및 기준 충족 증빙, 기술 자료, 검사 결과, 참고자료 목록, 라벨 사본 및 설치설명서 사본, 환경평가서 등

### ③ 의료기기 마케팅 전 통지 의무

- 판매 전, 제조자 또는 최초 유통업자는 등록하여야 하며, FDA에 기기 목록을 제출해야 함 (판매 전 통지는 Class III 및 일부 Class I, II 물품에 대하여만 필요)

## 나. 방사선 생산 장비의 수입 규정

### □ 개요

- 방사선 관리 규정(Radiation Control for Health and Safety Act of 1968)은 전자제품으로 정의되는 모든 제조 또는 조립제품(또는 구성요소, 부품 또는 제품의 부속품)이 ‘전자 회로의 일부 역할을 하는 제품’ 이거나 ‘방사선이 방출되는 전자제품’ 일 경우, 각각 제품에 대해 방사선 노출 제한 규정을 적용한 것임

### □ 전자제품 방사선의 정의

- 이온화 비 이온화 전자기, 미립자 방사선 또는
- 제품의 전자 회로 작동의 결과로 전자 제품에서 방출되는 음파, 초저주파 또는 초음파

---

40) FDA 의료기기 승인은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Class I, Class II, Class III으로 분류되고 등급에 따라 판매 전 승인 및 허가 절차가 다르다. 특히 Class III의 고위험도 의료장비의 경우엔 FDA 검사절차 이외에 PMA(Pre-Market Approval, 시판 전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성능 기준에 대한 규정

### ① 진단 X-ray 시스템

- 제조자는 x-ray system의 모든 구성 요소가 방사선 관리 규정을 충족함을 증명해야 함
- 기기로부터 1m의 거리에서 측정하였을 때, 방출되는 방사능은 한 시간에 0.88 milligray (mGy) 이하이어야 규정 충족
- 제조자는 사용자와 제품 조립자에게 규정 충족에 대한 지침과 정보를 제공하고, 전원 스위치를 켜는 제어판에 “이 기기를 방사능 차단 요소 없이 작동시키는 것은 위험합니다”라는 경고문을 표시해야 함

### ② 초음파 치료 제품

- 물리치료를 위해 16kHz 이상으로 운영되는 발전기 또는 초음파 분사기 (Applicators)에 적용
- 방사선 파라미터는 다음을 표시 : 평균 및 일시적인 첨두 전력 또는 강도, 펄스 기간 및 펄스 반복율, 비균일 빔(Beam) 및 공간적 분포 등
- 전원의 +/-20%의 정확도, 타이머 +/-10%의 정확도 필요

### 3. 품목분류사례

#### 가. 상이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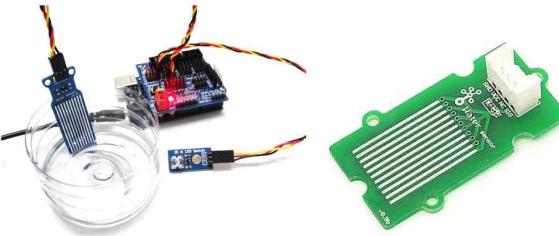
##### 1) 절대압력센서

- 절대압력센서를 우리나라에서는 제9025호(액체비중계 및 부력식 측정기 · 기압계 등)로 분류하였으나, 말레이시아·싱가포르에서는 제8542호(전자집적회로)로 분류한 사례

사례출처	만족도 조사	
물품설명	절대 진공에 대한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 <sup>41)</sup> . 압력을 받으면 물체가 반응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압력을 감지함. 공업계측, 자동제어, 전기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됨	
사 진		
국 가	우리나라	말레이시아/싱가포르
H S	9025.80	8542.39
분류근거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 온도계 · 고온계 · 기압계 · 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호에 분류	제8542호 해설서에 따르면 '전자집적회로는 수동소자 또는 수동부품 및 능동소자 또는 능동부품을 고밀도로 조합시킨 초소형화 된 장치이며, 단일유닛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다만, 수동소자만으로 구성되는 전자회로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고 규정 절대압력센서는 입력신호를 받아 이를 증폭시켜 디지털 방식에 따라 값을 산출하는 초소형 장치이므로 제8542호에 분류

## 2) 워터센서

- 워터센서를 우리나라에서는 제9026호(액체 및 기체의 유량 · 액면 · 압력 측정용 · 검사용 기기)로 분류하였으나, 인도에서는 제9032호(자동조절용 · 자동제어용 기기)로 분류한 사례

사례출처	수출C/O상이	
물품설명	워터센서(Water Sensor)는 물에도 전기가 통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세로로 길게 배치된 전극에 전류를 흘려보내서 전류의 흐름을 측정하여 물이 감지되는지의 여부 또는 물의 깊이(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임.	
사진		
국가	우리나라	인도
H S	9026.10	9032.10
분류근거	<p>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 · 액면 · 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 · 액면계 · 압력계 · 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 · 제9015호 · 제9028호 · 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제9026.10호에는 특히 '액체의 유량이나 액면의 측정용 · 검사용의 것'을 분류함</p> <p>동 물품은 물 속에 집어넣고 물의 깊이를 측정하는 측정용 기기이므로 동 호에 분류함</p>	<p>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며, 제9032.10호에는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를 분류함</p> <p>동 물품은 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기기이나, 수위에 따라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기에 부착되는 경우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p>

41) 절대 진공을 기점(제로)으로 하여 측정하는 압력: 게이지 압력 + 대기압

### 3) 혈당측정기

- 혈당측정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제9027호(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로 분류하였으나, 인도에서는 제9018호(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 용 기기)로 분류한 사례

사례출처	해당업체 문의	
물품설명	혈당측정기, 채혈기, 혈당측정전극, 휴대용 가방 등이 종이 박스로 소매포장된 물품으로 인체로부터 채취한 소량의 혈액을 이용하여 혈액 속의 포도당을 측정하는 혈당측정 세트임	
사 진		
국 가	우리나라	인도
H S	9027.80	9018.90
분류근거	동 물품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측정하는 혈당측정 세트로서 제9018호의 해설에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혈액 · 채액 · 오줌 등 의 검사용 기기(진단용의 것 여부를 불문한다)(일반적으로 제9027호)를 제외한다'고 규정  또한 동 물품은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 해당 세트물품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없으며, 혈당을 측정하는 혈당측정기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동 물품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측정하는 혈당측정 세트로서 제9018호의 해설에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혈액 · 채액 · 오줌 등 의 검사용 기기(진단용의 것 여부를 불문한다)(일반적으로 제9027호)를 제외한다'고 규정  또한 동 물품은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 해당 세트물품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없으며, 혈당을 측정하는 혈당측정기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4) 개인용 마사지기

- 개인용 마사지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제9018호(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로 분류하였으나, 불가리아에서는 제9019호(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등)로 분류한 사례

사례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사례 비교	
물품설명	지압요법, 온열요법, 저주파요법 및 로링 마사지요법 등을 혼합한 개인용 온열저주파 조합자극기로 척추/골반, 견갑골 교정, 신경이완, 혈액순환 개선, 혈전용해 및 면역력 증강과 세포 재생효과가 있다고 함	
사    진		
국    가	우리나라	불가리아
H    S	9018.90	9019.10
분류근거	동 물품은 전기적 에너지를 운동에너지, 열에너지 및 일종의 저주파로 변환하여 신경자극, 근육이완 및 피로회복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료용 기기로서 해설서상 열거하고 있는 '전기요법 및 전기투열요법용기기'에 해당하므로 제9018.90호에 분류함	제9019호 해설서에는 '마사지용 기기'를 설명하면서,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 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 또는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안마기)의 것이 있다. 특히 후자의 것은 호환성의 부속품(보통 고무제)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가지의 사용 방법이 있다(브러시·스푼지·평판 또는 치상판 등)."을 설명

## 나. 사전심사사례

- 2015년 미국 관세청에 신청된 우리나라 정밀기기관련 사전심사물품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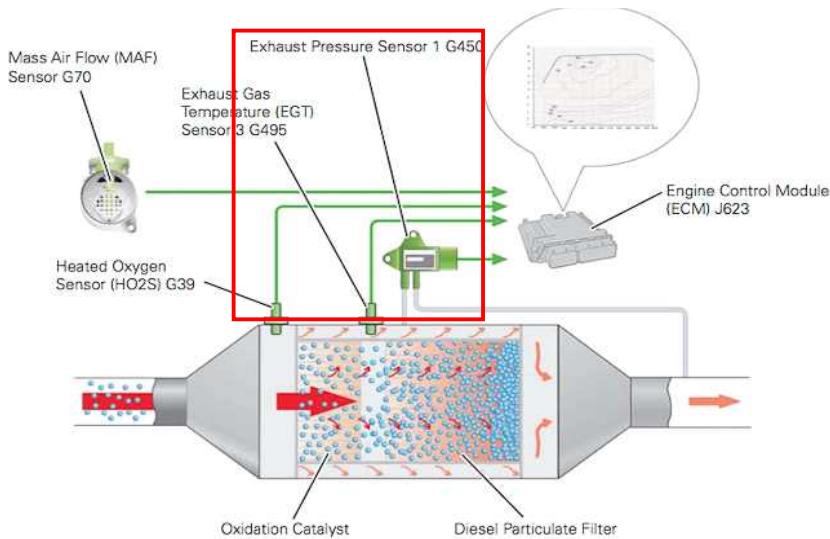
순번	HS	품 명
1	9026.20-4000	차압센서
2	9029.20-4080	차량용 계기판
3	9031.80-8070	노킹센서
4	9032.89-6085	전조등 조정기
5	9018.90-80	의료기기세트

### 1) 차압센서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9295
- 신청물품: 차압센서(differential pressure sensor)
- 동 물품은 차압센서, 실리콘 고무호스, 강철 클램프, 강철 프라켓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 차량의 배기가스후처리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에 장착된 것으로서 전면부와 후면부의 압력호스 내 차이를 측정하여 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임
  - 센서가 일정 수준의 압력을 감지하면, 신호를 ECU(electronic control unit)으로 송부함. 신호를 받은 ECU는 엔진에 배출가스온도를 높이고 DPF의 누적된 그을음을 제거하도록 명령을 내림
- 배기가스 후처리장치(DPF):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중 PM(입자상물질)을 물리적으로 포집하고 연소시켜 제거하는 배기 후처리장치의 일종

< 그림 8-1 > 배기ガ스 후처리장치(DPF)



자료: UKPARTSDIRECT.COM

□ 결정세번: 제9026.20-4000호

- 동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센서’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함
  - 신청인은 동 물품이 차량의 부분품으로서 제8708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에 따르면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8) 제90류의 기기(특정차량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a) 사진용 또는 영화용 카메라(제9006호 또는 제9007호)
      - (b) 항행용 기기(제9014호)
      - (c) 의료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 과학기기(제9018호)
      - (d) 제9022호의 X선을 사용하는 기구와 기타의 기구
      - (e) 압력계(제9026호)**
      - (f) 제9029호의 적산회전계·택시미터·속도계와 회전속도계 및 기타의 기구
      - (g) 제9031호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 동 물품이 제8708호의 차량용 부분품이기는 하나, 제9026호의 압력센서에도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026.20-4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9026.20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율 (기본/KORUS)
1	압력계	40	전기식의 것	0
11	일반형	80	기타	0
10	액체형			
20	금속형			
90	기타			
1900	기타			
9000	기타			

-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제9026.20호에는 압력의 측정용·검사용기기를 분류함

- 우리나라의 하위분류체계는 크게 압력계와 기타로 구분하고, 압력계를 다시 일반형과 기타형으로 세분화하고 있음

  - 일반형 압력계에는 액체형, 금속형, 기타로 구분함

- 미국의 하위분류체계는 단지 전기식의 것인지 유무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우리나라의 분류체계에 비해 단순한 것으로 나타남

  - 세율 역시 일반세율 0% 적용되어 품목분류상의 실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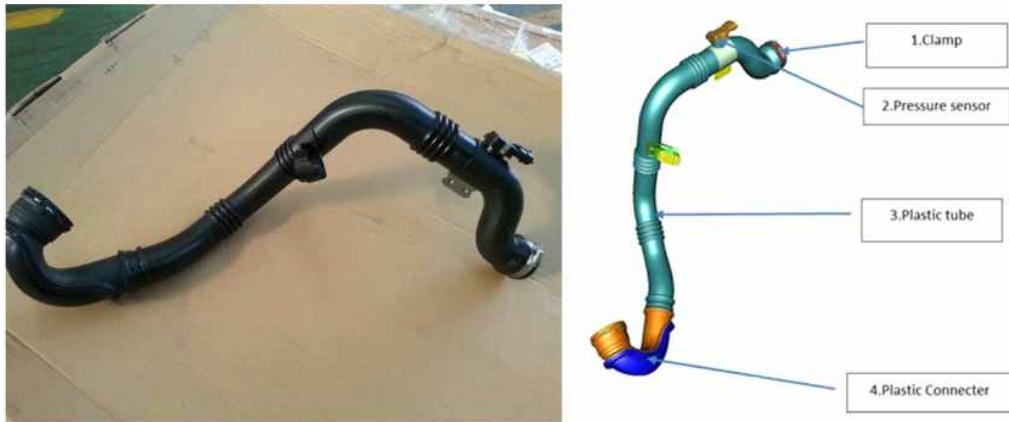
### ③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smart Differential pressure transmitter(APT3100-D)
  - 정전용량식 차압센서로 배관(가스, 석유 등), 탱크 등의 압력을 측정하여 표시판에 수치를 표시하고,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DCS(distributed control system)나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와 같은 제어장치에 전송
    - 차압센서의 측정원리 : 인가되는 압력에 따라 High/Low 양측의 각막과 중심 다이어프램 사이의 용량 변화를 측정
- 결정세번: 제9026.20-1190호
  -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 압력 ...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Ⅲ)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에서 “압력계는 밀폐된 공간내의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 이라고 설명하고 (4) 전기식압력계를 예시하면서 “전기적현상(例 : 저항 · 전기용량)의 변화 또는 초음파를 이용하는 것.” 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배관, 탱크 등에 설치되어 차압센서를 이용하여 가스 또는 액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의거 기타 일반형의 압력계가 분류되는 9026.20-1190에 분류함

### ④ 유사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Hose ASM-CHRG AIR OUT
  - 플라스틱 튜브, 플라스틱 커넥터, 압력센서, 클램프로 구성된 관 형상의 물품으로, 인터쿨러와 자동차 엔진흡기 사이에 장착됨
    - 인터쿨러에서 냉각된 압축공기의 통로역할과 부착된 압력센서로 압축공기의 압력, 온도를 측정 후 ECU에 전송하여 ECU가 연료분사 지속시간, 점화시기 등을 판단하게 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 그림 8-2 > Hose ASM-CHRG AIR OUT



□ 결정세번: 제8708.99-9000호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용할 경우에는 그 부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 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엔진과 인터쿨러 사이에 장착되어 압축공기의 통로역할과 압축공기의 압력과 온도를 측정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기타 차량용 부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 제3호, 제8708호)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⑤ 수출자 유의사항

- DPF에 사용된 차압센서는 품목분류상 이견이 없으나, 엔진흡기에 사용된 차압센서의 경우 차량용 부분품(제8708호)으로 분류한 사례가 존재
  - 동 물품은 차량 배기ガ스 후처리장치(DPF)에 사용된 차압센서로서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동일하게 기체의 측정·검사용기기로 보아 제9026호에 분류한 사례가 존재함
  - 그러나, 사례의 물품과 형상 및 기능이 모두 동일한 차압센서로서 사용되는 위치가 엔진흡기에 장착된 물품의 경우 차량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708호에 분류된 사례가 존재
    - 미국 수입관세율 (제9026호: 0%, 제8708호: 0~2.5%)상 품목별로 차이가 존재하므로, 품목분류에 유의해야 함
- 미국 사전심사사례에 따르면, 특정 변량을 단순히 감지(detect)만 하는 것은 차량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7류에 분류하나, 측정(measure) 및 검사(check)하는 것은 제90류에 분류하도록 결정한 사례가 존재함

## 2) 차량용 계기판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6507

□ 신청물품: 차량용 계기판(instrument cluster)

- 스티어링 휠 뒤쪽에 위치하여 운전자에게 차량의 각종 상태를 알려주는 계기판. PCB, 액정디스플레이, 포인터가 있는 다이얼 및 다양한 플라스틱 구성요소가 구비되어 있음. 주로 RPM, 거리, 가속도, 연료상태, 엔진온도, 램프 등의 상태를 표시함

< 그림 8-3 > 차량용 계기판



□ 결정세번: 제9029.20-4080호

- 동 물품은 “적산(積算)회전계 · 생산량계 · 택시미터 · 주행거리계 · 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나 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기타 속도계 및 타코미터: 기타”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제9029.20-4080호에 분류되며, 일반세율 0%가 적용됨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9029.20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 을 (기본/KORUS)
10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20	자전거 속도계	6/0
10	시계식	40	기타 속도계 및 타코미터	0
90	기타	60	스트로보스코우프	16¢ each + 2.5%/0
2000	스트로보스코우프			

- 제9029호에는 “적산(積算)회전계 · 생산량계 · 택시미터 · 주행거리계 · 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나 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가 분류되며,

- 제9029.20호에는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가 분류됨
  - 스트로보스코프(strobo scope): 피사체의 움직임에 끊어짐을 주기 위하여 연속적으로 발광함으로써 정지했을 때와 유사한 상태로 관측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

< 그림 8-4 > 스트로보스코프(strobo scope)



### ③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Instrument meter cluster; SU EV
  - 본 건물품은 플라스틱 하우징 안에 PCB, LCD 표시반 및 플라스틱 창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속, 배터리 잔량, 파워 소모량, 파워 충전량, 주행 가능 거리, ODO meter, Trip meter 및 각종 경고등을 표시하는 전기자동차의 계기판으로 운전자가 차량의 상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차량의 상태를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
  - 속도, 전력 충전량 및 소모량, 배터리 잔량 등의 측정값은 ECU에 입력된 정보를 차량용 네트워크 시스템인 CAN(Controller Area Network)을 통해 서 직접 전달되고 도어, 안전벨트 등 일부 경고 기능을 제외한 기타 차량의 상태를 나타내는 경고 기능 역시 CAN을 통해 직접 전달되어 계기판에 표시됨
- 결정세번: 제8708.29-0000호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III)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플라스틱 하우징 안에 PCB, LCD 표시반 및 플라스틱 창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속, 배터리 잔량, 파워 소모량, 파워 충전량, 주행 가능 거리, ODO meter, Trip meter 및 각종 경고등을 표시하는 전기자동차의 계기판으로, ECU 등에서 측정된 속도값, 엔진회전수,

연료량 등을 차량 통신 체계 인터페이스(CAN 등)를 통해 전달받아 표시하는 등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본 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④ 수출자 유의사항

- 동일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품목분류가 상이한 사례로서, 우리나라 수출자는 미국 세관에서 요구하는 제9029.20호를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 또는 기타 서류를 구비해야 함
- 차량용 계기판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차량용품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708.29호에 분류하였으나, 미국에서는 속도계로 보아 제9029호에 분류한 것으로 나타남
  - 차량용 부분품(제8708.29호)으로 간주하는 경우, 미국의 수입세율은 일반 세율 2.5%, 한-미 FTA 0%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9029.20호에 분류하는 것이 유리
  - 한-미 FTA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이 제8708.29호는 공제법 기준 55% 이상, 제9029.20호는 공제법 45%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산지기준 충족상 동 물품이 제9029.20호로 분류되었을 경우가 더 유리함

### 3) 노킹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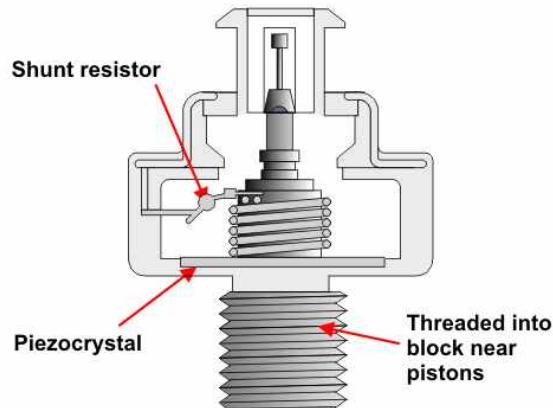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7461

□ 신청물품: 노킹센서

- 승용차의 엔진실린더에 장착되어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엔진 실린더의 기계적 진동을 감지하는 센서. 감지한 정보는 압전소자(piezo electric effect)를 통과하면서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되어 ECU로 전송됨

< 그림 8-5 > 노킹 센서



자료: Schwaller A.E.(2005). Total Automotive Technology. USA, New York: Thomas Delmar Learning

□ 결정세번: 제9031.80-8070호

- 동 물품은 HTSUS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 그 밖의 기기: 기타: 내연기관엔진의 특성을 측정하는 기기”로 분류되어 제9031.80-8070호에 분류되며, 일반세율은 1.7%가 적용됨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9031.80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율 (기본/KORUS)
1000	초음파 어군탐지기	반도체 웨이퍼 또는 레티클의 취급 및 운송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장비와 결합된 전자빔마이크로스코프	0	
2000	로드셀			
90	기타			
10	내연기관 특성 시험기			
20	기어 테스터			
30	면적계			
40	구면계			
50	직물 검사장치			
60	초음파 두께 측정기			
70	흄 · 균열 등 측정기			
80	동력시험기			
9	기타	기타	1.7/0	
91	반도체 제조용			
99	기타			

-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하며,
- 제9031.80호에는 그 밖의 기기를 분류함
- 제9031.80호 이하 하위분류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측정 · 검사용 기기를 각 용도에 따라 분류하여 총 11개의 특정용도 기기와 기타의 기기로 구분하고 있음
  - 반면 미국은 오직 하나의 분류기준인 전자빔마이크로스코프 해당여부에 따라 분류하며, 기타의 것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세율 1.7%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③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Knock Sensor; Cable type

- 본 건 물품은 압전소자(piezo)에 의해 엔진의 knocking을 감지하는 것으로 piezo가 장착된 센서하우징, 케이블 및 접속자로 구성되었으며, 감지된 신호는 ECU로 보내져 엔진의 점화시기를 조절함
  - 작동원리를 살펴보면, 엔진에서 생성된 Knocking은 실린더 내부에 압력파를 발생시키고 이 발생된 압력파는 body를 통해 Knock Sensor의 내부에 있는 Piezo-Ceramic에 전달돼 전압으로 변환, 최종적으로 ECU에 신호를 전달하게됨
- \* knocking : 엔진이 과열되거나 연소실내 압력이 상승하여 압축혼합가스의 온도가 점화온도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자기발화에 의해 연소가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킴
- \* Piezo-Electricity : 압력이나 가속도 등의 기계적인 현상이 전기적 현상으로 나타나거나 반대로 전기적인 현상이 기계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Knock sensor는 이중 기계적인 현상을 전기적인 현상으로 변환하는 Piezo-Electricity 원리를 이용한 Sensor임

□ 결정세번: 제9031.80-9099호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I)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로 “(18)진동·팽창·충격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를 예시함
- 본 건 물품은 압전소자(piezo-ceramic)등이 조립된 센서부, 케이블, 커넥터로 구성된 것으로 센서부의 압전소자(piezo)가 진동을 감지해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본 건 물품이 제8541호의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호 해설서에서 “그러나 기타의 구성요소를 부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물품(결정소자를 가한 것)이 이미 단순한 결정소자로 간주되지 않고 기기의 특수부분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 조립품은 해당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된다.”고 설명하며,

- “마이크로폰 또는 확성기용 압전기전지(제8518호) · 사운드헤드(제8522호)
  - 초음파 두께 측정기 또는 초음파 검사기용의 핀업엘리먼트(feelers)(일반적으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9033호에 분류) · 전자시계용 쿼츠 발진기(quartz oscillators)(제9114호)”를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엔진 실린더의 노킹 검출’이라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압전소자(piezo)에 다른 부품들과 수동소자인 Resistor를 부가시켜 ‘노크센서’라는 고유 품명을 가진 완성된 물품으로 제작되었으므로, 단순한 결정소자의 범위를 넘어선 물품이기에 제8541호의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로 볼 수 없음
- 본 건 물품은 엔진 실린더 외벽의 진동을 감지해 전기적인 신호로 ECU에 보내줌으로써 노킹을 검사하는 물품이므로, ‘진동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9031.80-9099호에 분류함

#### ④ 유사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Body for Knock Sensor
  - 쾌삭강(SUM24L)을 CNC선반으로 가공한 중공( $\phi$ 8mm)이 있는 18mm(L) X  $\phi$ 24mm(4mm(t)) X  $\phi$ 13mm(14mm(t)) 크기의 물품
    - 실린더 외벽의 진동을 압전소자로 전달
  - 결정세번: 제9031.90-9000호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가목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 · 제85류 · 제90류 · 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 · 제8548호 · 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 · 제9013호 ·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같은 호 (I)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의 (A)에서 이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8) 진동 · 팽창 · 충격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 : 기계 · 다리 · 땀 등에 사용된다.” 을 예시하고 있음
- Knock Sensor는 자동차엔진의 실린더 외벽의 진동을 감지하여 전기적인 신호로 ECU에 보내줌으로써 노킹을 검사하는 물품이므로 진동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며,(201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본 물품은 Knock Sensor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기타의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31.90-9000호에 분류함

## ⑤ 수출자 유의사항

- 제90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되며, 대부분 과학분야 및 특수한 기술 또는 공업분야, 의학분야에 사용됨
- 노킹센서는 당초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제8541호)로 분류되었으나, 품목분류 변경 후 현재 기타의 측정 · 검사용 기기(제9031호)로 분류
- 압전소자(piezo)에 의해 엔진의 노킹(knocking)을 감지하는 것으로 동물품은 당초 제8541.60-9000호에 분류되었으나, 관세청고시 2014-78호(2014. 6. 24)에 의하여 기타의 측정 · 검사용 기기인 제9031.80-9099호에 분류하도록 결정

- 미국 수출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제8541.60호)는 0%의 일반세율이 적용되나, 동 사례와 같이 기타의 측정·검사용 기기(제9031.80호)로 분류되는 경우 1.7%의 세율이 부과됨
  - 이에 따라 과거 우리나라에서 압전기 결정소자로 분류된 것을 근거로 미국 수출시 제8541.60호로 신고 및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불충족의 위험이 있으므로 품목분류시 주의가 요망됨

## 4) 전조등 조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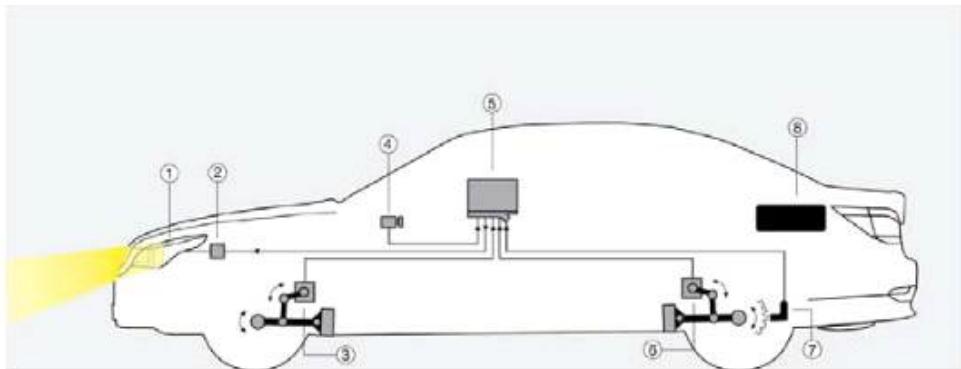
### ① 미국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268760

□ 신청물품: AHL(automatic headlamp leveling unit)

- 동 물품은 운전자의 조작 없이 차량의 헤드램프가 주의 환경에 따라 최적의 각도로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임
  - 동 물품은 SI-ECU(제어장치)와 마운팅 브라켓, 막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SI-ECU가 브라켓을 통하여 차량에 부착되고 각도를 측정함. 막대의 기능은 기계적 움직임과 측정된 위치를 SI-ECU에 전송하는 역할을 함
  - 이러한 측정을 통하여 SI-ECU는 다른 기기장치에 적절한 지시를 내림

< 그림 8-6 > AHL 시스템



- |                     |                 |                      |                 |                 |
|---------------------|-----------------|----------------------|-----------------|-----------------|
| 1. Headlamp         | 2. Actuator     | 3. Front axle sensor | 4. Light switch | 5. Control unit |
| 6. Rear axle sensor | 7. Speed sensor | 8. Load              |                 |                 |

□ 결정세번: 제9032.89-6085호

- 동 물품은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기타의 기기: 기타: 기타” 의 물품으로서 제9032.89-6085호에 분류되며 일반세율 1.7%가 적용됨

##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9032.89호의 우리나라와 미국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한 국		미 국		세 율 (기본/KORUS)
10	습도 자동조정기		전압 및 전류 자동조정기기	
10	항공기용	20	- 6, 12, 24V 시스템용으로 고안된 것	1.1/0
90	기타	40	- 기타	1.7/0
20	전압 자동조정기	60	기타	1.7/0
10	항공기용			
90	기타			
30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자동조정 기기			
10	항공기용			
90	기타			
90	기타			
10	항공기용			
90	기타			

-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며, 제9032.89호에는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 액압식이나 공기식 기기를 제외한 기타의 기기가 분류됨
- 제9032.89호 하위분류는 우리나라가 습도·전압·기타 전기량 등의 자동조정기기로 분류한 반면, 미국은 전압 및 전류 자동조정기기 중 일정 수준의 전압(6V, 12V, 24V)용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10단위 분류에서 항공기용 여부에 따라 추가 분류하여 해당 물품의 용도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 미국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전압(V)만을 확인하면 분류가 가능함

## ③ 동일물품의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례

- 신청물품: AFLS(Adaptive Front Lighting System) ECU, 5WY7K01E
- 야간 주행, 도심 또는 고속도로 주행시, 주행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여

전조등의 조도와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지능형 전조등 시스템의 ECU임

- 외부 센서로부터 차량의 기울기, 차속, 조향각 값이 들어오면 이 값을 바탕으로 차량 진행 방향이나 주행 환경 등을 연산하여 전조등의 조사각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작 신호를 전조등 구동장치로 전송함

□ 결정세번: 제9032.89-9090호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전기적 양의 자동 조절기 및 비전기적 양의 자동 조절기”에 대해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 또는 비전기적인 양의 실제 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완전 자동 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기 위한 것이다.”
  - “이것들은 주로 측정장치(감응장치·변환기·저항탐침·열전대등), 전기 조절장치(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신호(일반적으로 변조전류의 형태)를 부여), 점화·정지 또는 조작 장치로 구성되며, 전기식 조절장치는 불완전 자동 조절기기로 제9032호에 분류되며, 전자식 조절기는 전부 전기식 원리로 작동하는 것으로, 이 기기의 특징은 반도체(트랜지스터) 또는 집적회로가 있다는 것이다.”
  - “전자식 조절기는 전기적 량[예: 볼트수·암페어수·주파수 및 전력] 뿐만 아니라 기타의 량[예: 분당 회전수·염력(捻力)·견인력·수면·압력·유량 또는 온도]에 사용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외부 각종 센서로부터 입력되는 값(차량의 기울기, 차속, 조향각 등)을 주기적으로 연산하여 전조등의 조사각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조등 구동장치로 작동 신호를 출력하여 주행 상황에 맞도록 전조등을 제어하는 물품으로서, 비전기적 양의 자동 제어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2.89-9090호에 분류함

#### ④ 수출자 유의사항

- 제9032호에는 사용자의 별도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제어 또는 조절하는 기기가 분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특히 제9032호에 분류되는 요건으로서 제90류 주7 나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
  - 나.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애에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만일 동 전조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사람의 개입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자동제어용 기기 또는 자동조절용 기기로 볼 수 없으며, 단순 시각 신호용 기기로 보아 제8512호에 분류되어야 할 것임
  - 제8512.20호에 분류되는 차량용의 조명용 기기는 일반세율 0%의 물품으로서 제9032.89호의 일반세율 1.7%에 비하여 수출시 유리함
- 따라서 차량용의 조명용 기기가 자동제어용의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제어가 가능한 기기인지에 대한 구분이 중요할 것임

## 4. 원산지 결정사례

### ① 사례개요

- 참조번호: HQ H237742
- 신청물품: 의료기기세트(Medical kits)
  - 동 물품은 다양한 의료기기를 세트로 하여 멕시코에서 수입된 의료기기세트임(제9018.90.80호)
    - 주사바늘, 가위, 수건, 카테터(catheter), 스펀지, 메스, 플라스틱 보울, 거즈, 포셉 등 다양한 의료용품이 포함되어 있음
    - 의료용품들은 관련성에 따라 서브키트별로 그룹화되어 있으며, 이들 서브키트들을 하나로 구성한 것이 동 의료기기세트임
  - 의료기기세트는 다양한 원산국의 개별요소로 구성됨
    - 개별 의료용품은 다양한 국가(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 도미니카공화국, 한국, 태국, 베트남 등)의 것이며, 제3의 국가에서 이들을 서브키트로 구성
    - 동 서브키트들은 다시 멕시코로 집하하여 최종 의료기기세트를 구성함
  - 의료기기세트의 원산지표시는 최종세트 밖에 레이블로 “다음의 용품을 제외하고는 미국산(Products of USA except those listed below)” 으로 표기
    - 레이블 형식으로 ‘물품명-원산국’ 이 기재되어 있음
    - 또한 “멕시코에서 조립됨(Assembled in Mexico by ...)” 이 함께 표기되어 있으며, 반대쪽에는 미국, 유럽, 호주 내 다양한 연락주소지가 표기되어 있음
    - 그러나 세트 내 개별 의료기기에는 원산지표기가 되어 있지 않음

□ 쟁점사항

- 동 의료기기세트의 원산지표시는 적절한가?
- 당해 수입건 이전의 기통관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수수료(marking duties)는 적절한가?
- 해당 수입건에 대한 정산(liquidation)시기는 적절한가?

**(2) 원산지표시의 적절성**

- 미국 관세청은 신청된 물품 중 일부물품의 원산지가 세트에 부착된 레이블에 표기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
  - 19 C.F.R. 134에 따르면 일부 제외물품을 제외하고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원산지표시가 적절히 되어야 함
    - 수입자는 “Packaged in Canada with goods from Taiwan, China, Argentina, etc” 와 같이 원산국을 모두 기재하지 않고 그 표시방법도 규정과 달리 정확하지 않게 표기하였음
- “Assembled in Mexico” 표시의 부적절성
  - 미 관세청은 기존의 다수의 판례에서 “assembled in”이라는 표시는 “made in” 또는 “product of” 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됨을 지적하면서
    - 멕시코는 서브키트를 하나로 포장하는 국가이므로 원산국이 아니며, 따라서 원산국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assembled in”은 적절한 표시가 아님을 강조
    - 이에 수입자는 “assembled in”이라는 표현 대신, “packaged in”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고, 미 관세청은 이를 적절한 표시로서 승인함

- 원산국이 아닌 국가로서 미국, 독일, 영국, 네델란드 및 호주 및 주 소지를 레이블 또는 스탬프로 박스에 표기한 것의 부적절성

- 원산지표시 외에 다음과 같은 표시가 박스에 표시됨

“Manufactured and Distributed By: Mectra Labs, Inc. Two Quality Way P.O. Box 350 Bloomfield, IL 47424,”

“EC REP European Authorized Rep: Medical Device & QA Services 78, Stockport Road \* Timperley Cheshire \* WA157SN United Kingdom”

“Atrium Australia-Pacific Rim Pty. Ltd. Level 6, 579 Harris Street Ultimo NSW 2007 Australia”

- 위와 같은 표시가 원산지표시와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최종소비자는 이를 원산지로 오인할 수 있음
- 이러한 표시는 “made in” 등 적절한 원산지표시와 함께 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함

### ③ 원산지표시수수료 부과의 적절성

- 19 U.S.C 1304(i)에 따르면 수입시 원산지표시가 적절하게 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해당 물품이 세관의 통제 하에 수출, 폐기 또는 적절히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는 한, 과세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원산지표시수수료(marking duties)를 부과한다고 규정

#### < 표 8-5 > 19 U.S.C 1304(i) (원산지표시수수료 관련조항)

If at the time of importation any article (or its container, as provid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is not mark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and if such article is not exported or destroyed or the article (or its container, as provid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marked after impor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such exportation, destruction, or marking to be accomplished under customs supervision prior to the liquidation of the entry covering the article, and to be allowed whether or not the article has remained in continuous customs custody),  
there shall be levied, collected, and paid upon such article a duty of 10 per centum ad valorem, which shall be deemed to have accrued at the time of importation, shall not be construed to be penal, and shall not be remitted wholly or in part nor shall payment thereof be avoidable for any cause.

- 위 규정에 따르면, 원산지표시수수료가 부과되는 조건은 다음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임
  1. 물품이 수입시 원산지표시가 적절히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해당 물품이 세관의 관할 하에서 수출, 폐기 또는 적절히 원산지표시되지 않은 경우
    - 이에 따라 미 관세청은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므로 미 관세청은 동 수입 건 및 이전 수입건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수수료 10%를 부과한다고 결정
- 그러나 수입자는 이전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수입자는 이전 수입물품은 모두 재수출되고 미국 내로 반입되지 않아 원산지표시수수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미 관세청은 모든 수출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세관의 관할(supervision)하에서 수출되어야 함을 강조
  - 동 수입자는 이전 수입물품이 수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함을 들면서, 원산지표시수수료 부과대상임을 설명
- 결과적으로, 수입자는 첫째, 수입물품에는 원산지표시가 적절히 되어 있지 않았으며(assembled in Mexico 및 원산국이 아닌 국가의 주소 기재 등) 둘째, 이전 수입물품이 수출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산지표시수수료 부과대상임을 결정함

#### ④ 재정산시기의 적절성

- 동 수입건의 재정산(reliquidation)이 최종정산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동 건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되며, 따라서 동 최종정산은 적절한 것으로 결정함

< 그림 8-7 > 미국 수입통관 프로세스



자료: 주요국의 통관제도, 조세연구원

- 정산(Liquidation)이란 수입자가 납세신고에 따라 납부한 관세액과 심사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절차
  - 정산은 보통 납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정산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함
  - 또한, 정산 이후라도 추가자료요청, 오류 등이 발견될 경우 90일 이내에 최초정산에 대한 재정산을 할 수 있음
- 동 사례에서 세관은 최초 정산기간(납세신고일로부터 1년) 내, 정산기간을 1년 연장한다는 연장통지서를 통보하였고, 따라서 재정산 시기는 연장된 정산기간 내에 해당함
  - 따라서 재정산시기는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원산지표시수수료는 적절히 부과된 것임

## ⑤ 수출자 유의사항

### □ 동 사례의 결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1. 의료기기세트의 원산지 표시는 부적절함
  2. 원산지가 부적절하게 표시된 물품이 수출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이에 따라 원산지표시수수료를 부과함
  3. 원산지표시수수료는 연장된 정산기간 내에 적절히 부과됨
- 이에 따라 동 의료기기세트 수입자는 동 수입건 뿐만 아니라 이전 수입건에 대해서도 과세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원산지표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우리나라 원산지표시규정과 공통점
- 원산지표시방법 중, “Assembled in 국가명” 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임
    - 따라서 원산국이 아닌 국가명을 “Assembled in 국가명” 과 같이 사용한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 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는 각각의 원산지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함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에 따르면,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물품에 각각 원산지를 표시하고,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해야 함
- 우리나라 원산지표시규정과 차이점
- 미국은 원산지가 부적절하게 표시되고 수출, 폐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산지표시수수료를 부과(과세가격 10%)하나, 우리나라는 수수료 규정이 없음
    - 우리나라는 원산지표시 위반시 관세법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따라 지정받은 보세구역으로 물품을 반입하고 반송, 폐기 또는 정정후 반출 등을 하여야 함

- 국내 반입된 원산지 부적정표시에 대한 통제방법으로서 미국은 납세 신고일 이후 최대 3년간 원산지표시수수료를 부과하나 우리나라는 세관장이 보세구역반입을 명함
  - 관세법 제238조의 보세구역반입명령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해당 부적정 표시물품을 통제할 수단이 없어짐
  - 이에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또는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수출입 신고금액의 10% 또는 최대 3억원 중 적은 금액)
- 미국은 원산지판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세번 변경기준(6단위), 부가가치기준(주요부품기준 등) 등 객관적인 판정절차를 마련
- 미국의 원산지표시규정은 우리나라의 규정에 비하여 더 엄격하고 위반시 엄격한 벌칙이 부과되는 만큼, 미국 원산지표시규정에 대한 숙지가 반드시 필요

## 5. 소결

- 제90류의 정밀기기는 기술개발에 따른 신제품 출시주기가 짧은 품목들로서, 일반적으로 다른 기기와 결합되어 사용되므로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많은 품목임
- 특히 사전심사 사례분석 결과 미국은 정밀기기의 품목분류 결정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해당 기기가 단순 기계와 구분되는 정밀기기로서의 특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음
  - 기존 사례에서 미국 관세청은 특정 변량의 ‘감지(detect)’ 와 ‘측정(measure) 및 검사(check)’ 를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정밀기기로서 인정한 바 있으며,
  - 속도계에 있어서도 그것이 차량용에 사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부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90류에 분류한 사례가 존재함(참조번호 N266507)
- 우리나라와 미국은 품목분류 6단위 이하 세 번에서도 차이점이 존재
- 우리나라는 6단위 이하 세분류에 있어서, 열거식으로 일일이 품명을 나열하는 식이라면, 미국은 ‘전기식의 것’, ‘특정 용도로 고안된 것’ 등 기능과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 제90류의 정밀기기가 경합될 수 있는 제17부 및 제16부의 품목에 비하여 세율이 낮은 것을 감안하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제90류에 분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다만, 정밀기기의 특성상 동일 또는 유사물품인 경우가 매우 한정적일 것 이므로, 기존의 사전심사사례를 참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직접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임

## 제3장 시사점

-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타결이 요원한 현 시점에서, 무역 원활화 협정의 주요 안건인 사전심사(Advance ruling)은 국제교역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로서 주목받고 있음
  - 지난 10년간 급격한 증가를 보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는 관세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통관절차가 복잡해지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점에서 사전심사제도는 WTO회원국에 큰 의미를 지니게 됨
-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FTA체결 상대국인 미국의 2015년 주요 사전심사사례를 선정 및 번역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음
  - 우리나라에서 선적된 물품을 중심으로 총 50건의 사례를 화학산업, 섬유산업, 금속산업, 기계산업, 전기기기산업, 자동차부품, 정밀기기산업의 7개 카테고리로 분류함
    - 화학산업은 HS 제28류부터 제40류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사전심사 사례로서, 최근 10년간 총 49건의 사전심사가 공개되었음. 화학산업은 크게 화학 원재료(제28류 · 제29류)와 석유화학제품(제30류부터 제40류까지)로 구분되는데, 화학 원재료는 분류기준이 명확한 반면 석유화학제품인 플라스틱과 고무 등은 자동차, 기계산업 등과의 연관성이 높아 품목분류 상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섬유산업은 HS 제50류부터 제64류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사전심사 사례로서, 최근 10년간 총 51건의 사전심사가 공개되었음. 미국의 섬유산업 품목분류 체계는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며 기술적 용어가 다수 규정되어 있는 산업임. 특히 미국 관세청은 단어선택에 따라 사전심사 결정이 배제된 사례가 존재할 정도로 해석상에 민감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금속산업은 HS 제71류부터 제83류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사전심사 사례로서, 최근 10년간 총 46건의 사전심사가 공개되었음. 우리나라 국내 주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미국 국내 주(Additional US Notes)가 각 주마다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을 고려한 품목분류의 결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계산업은 HS 제84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사전심사 사례로서, 최근 10년간 45건의 사전심사가 공개되었음. 기계산업의 특성상 일반세율 0%인 품목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이 많아, 이들이 미국 내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므로 특혜적용을 위한 증명서의 발급은 여전히 중요하다 할 수 있음.
- 전기기기산업은 HS 제85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사전심사 사례로서, 최근 10년간 82건의 사전심사가 공개되었음. 전기기기 산업은 물품의 기능과 용도, 특징, 기술적 사양 등 다양한 부분이 검토되어야 하는 만큼 품목분류에 있어 국제적인 분류기준의 통일이 가장 요구되는 산업임
- 자동차 부품은 HS 제8708호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사전심사 사례로서, 모든 산업 중 가장 많은 87건의 사전심사가 공개되었음. 미국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체계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세분화 되어 있고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특징임. 대부분 제9부(플라스틱과 고무), 제16부(기계 및 전기기기 등)과의 경합이 발생하며, 통칙 제3호 (나)목의 '전용 또는 주로 사용'에 있어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임
- 정밀기기산업은 HS 제90류, 제91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사전심사 사례로서, 최근 10년간 16건의 사전심사가 공개되었음. 정밀기기 산업물품에서는 과거 제16부 및 제17부에 분류되었으나 기술개발로 인하여 정밀기기 산업물품인 제90류로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밀기기 산업은 섬유 산업과 함께 대표적인 수출산업으로서, 품목분류 기준 적용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보고서는 실제 우리나라 수출자(또는 미국 수입자)가 신청한 사전심사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의 발생 원인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점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전심사와 관련한 통관애로의 예방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보고서에서 범위를 2015년 우리나라 선적물품에 한하여 선정·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자료로서의 한계점을 가지면서, 향후 사전심사 사례를 계속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축적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함
  - 또한 미국의 사전심사를 이해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자가 부당한 결정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우리나라 관세당국은 이에 대한 시정요구 및 외교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모습이 필요할 것임
  - 품목분류(classification)란 근본적으로 하나의 일관된 국제적 기준에 가능한 한 모든 국가의 법 규정을 조화(harmonization)시키는 것이니 만큼, 개별 국가의 자국기준 요구보다는 적정한 선에서 합의(agreement)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